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by

Israel M. Kirzner

Copyright © 1973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All rights reserved.
Korean edition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Illinois, U. S. A. through Shin Won Agency Co., in Seoul.
Translation rights © 1995 by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한스-허만 호페 저 • 이선환 역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한스-허만 호페 저 • 이선환 역

1판1쇄 인쇄 • 1992년 02월 12일

1판1쇄 발행 • 1992년 02월 22일

2판1쇄 인쇄 • 1995년 12월 10일

2판1쇄 발행 • 1995년 12월 15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조석래

편집인 • 손병두

등록번호 • 제13-53

주소 •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화 • (대표) 780-0821 ~ 30 (직통) 786-7756 팩시밀리 • 785-0270

© 한국경제연구원, 1995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서는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02) 786-7756

ISBN 89-8031-040-4

값 9,000원

지난 3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국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의 살림살이에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나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엇이 오늘의 한국을 있게 했습니까? 우리의 성공은 근면한 근로자와 과감한 기업가, 그리고 헌신적인 정부관료 등의 노력에 힘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던 자유시장경제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번영은 우리가 자유시장경제라는 체제와 이념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경기의 규칙 아래에서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체제가 오늘의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에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날이 풍족해지는 이면에는 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와 사회복지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 문

제 등 숨한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일각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같은 생각은 국민들의 사고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지난 세월 동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이념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의 삶을 파멸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절실히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와 기업을 싫어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사회에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반시장주의와 반기업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시장경제와 기업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를 기초로 보다 나은 시장경제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이같은 취지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주의 시리즈’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이라는 이념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자유주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고전과 현대문을 번역하고, 한걸음 나아가 자유주의 이념에 걸맞는 학술사업도 함께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손병두 부원장이 총괄을 맡고, 공병호 연구위원과 전인우 선임연구원이 실무책임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네번째 사업으로 한스-허만 호페Hans-Hermann Hoppe의 저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A Theory of Socialism and Capitalism』를 내놓습니다. 이 책은 1992년 2월에 이미 발간한 바 있는데, 좀더 널리 읽혀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새롭게 단장하여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경제연구원의 ‘자유주의 시리즈’가 이 땅에 시장경제의 이념과 원리를 널리 알리고, 한걸음 나아가 이 사회에 자유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 한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5년 12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조석래

차 례

발간사 • 5

저자 서문 • 10

제 1 장 서론 • 15

제 2 장 재산, 계약, 침해,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 25

제 3 장 러시아형 사회주의 • 45

제 4 장 사회민주주의형 사회주의 • 71

제 5 장 보수주의의 사회주의 • 107

제 6 장 사회공학의 사회주의 및 경제분석의 기초 • 149

제 7 장 자본주의의 이론적 정당성 및
사회주의가 도덕적으로 방치될 수 없는 이유 • 191

제 8 장 사회주의의 사회심리적 기초, 또는 국가의 이론 • 219

제 9 장 자본주의 생산과 독점의 문제 • 251

제 10 장 자본주의적 생산과 공공재의 문제 • 279

본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데 세 곳의 연구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다. 필자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하이젠베르크 연구교수(Heisenberg scholar)로 독일과학재단(German Science Foundation)으로부터 가장 너그러운 재정 지원의 혜택을 누렸다. 본 연구는 이 기간중 완성한 가장 최근의 작품이다. 필자가 1984년에서 85년까지 1년간 방문교수를 지낸 존스 홉킨스 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 Bologna Center for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서도 추가지원을 받았다. 그곳에서의 강의들은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가 현재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필자가 뉴욕에서 보냈던 1985년에서 86년의 교 육년도 기간중 Center for Libertarian Studies로부터 가장 비관료주의 적이며 따뜻한 도움을 받았다.

아내 마가렛은 본 연구에 대하여 꼼꼼한 지적과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나의 고집센 저항에도 아랑곳 않고 저작을 외국어로 편집하는 임무를 맡아주었다.

가장 깊은 감사를 스승이자 친구인 로드바드Murray N. Rothbard에게 보낸다. 필자는 그의 학자적 면모와 개인적 성품에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빛을 지고 있다. 그는 본 연구의 초고를 읽고 매우 귀중한 도움말을 주었다. 그와의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토론들은 결코 끊이지 않는 학문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으며, 그의 열의는 끊임없는 격려가 되었다.

이분들과 연구기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스 -허만 호페

제1장

서 론
Introduction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학, 정치학 및 이론적 원칙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는 본 저서는 정치이론에 관한 체계적 연구로서, 여러 인접학문 분야에 걸쳐 정치경제 및 정치철학의 중심적 문제들을 토의할 것이다. 즉 부의 생산을 증진시키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사회를 어떻게 조직할 것이며, 또한 공정한 사회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사회를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자는 또한 사회 및 정치 문제들을 보다 협의의 보다 상식적 의미로 충실하게 취급하여 밝힐 것이다. 사실 어떠한 형태의 경험적 사회, 또는 정치체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이념상·논의상의 도구들(경제적 및 이론적)을 발전시키고 설명하는 것, 어떠한 사회변화의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어떤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다른 사회들의 사회구조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유사성들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목표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이론) 자체가 경험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명백한 설명(의적으로 가정된 공준과는 대단히 다른 것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순수하게 연역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게다가 아마도 명시적으로 도입된 실증적 및 실증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정을 사용하여)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반론의 여지가 없는(따라서 어떠한 실증적 검증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결과들에 도달할 수 있는 경제적 및 도덕적 이론의 수단에 의해서만 오로지 서로 관련이 없고, 유리된 사실들이나 견해들의 혼돈되고 지나치게 복잡한 나열을 체계화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사실이 이 연구의 끝부분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그와 같은 이론 없이는 정치경제와 철학은 기껏해야 이런저런 결과를 야기했었을지도 모르는, 또는 그 밖의 무엇보다도 낮거나 못한

것에 관한 임의적인 의견들이나 만들어내면서 암중모색하는 것과 아무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의견들이란 그 반대로 원래의 주장 그 자체만큼이나 쉽게 일반적으로 방어될 수 있는 것들이다(그것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전혀 방어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산 및 재산권에 관한 이론이 발전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결코 19세기 마르크스주의의 발명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인데, 그것은 사유재산 및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도화된 간섭, 또는 침해로서 개념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설명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반면에 사유재산과 사유재산 소유자들간의 비침해적 계약에 의거하는 교환의 명시적 인정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제도이다. 이 언급 속에 내포되어 있는 바는, 앞으로 본 연구의 과정 속에서 분명해질 것인데, 그렇다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는 여러 변형과 변화하는 단계가 존재함이 분명하다는 생각이다. 즉 사유재산권이 존중되거나 무시되어지는 변화의 정도를 말한다. 모든 사회는 단순히 자본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사실 모든 현존하는 사회들은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이다(심지어 미국만 하더라도 틀림없이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다 자본주의적 사회인데, 미국이 놀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며 점진적으로 더욱 그렇게 변화되어 왔다는 것이 앞으로 분명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 목표는 사회주의화의 전반적인 정도, 즉 한 나라에 존재하는 재산권에 대한 간섭의 전반적인 정도가 그의 전반적인 부를 설명한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다. 한 나라가 사회주의적으로 되면 될수록 새로운 부의 생산과정과 기존의 부의 유지가 보다 방해를 받을 것이며, 따라서 그 나라는 보다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거나

되어갈 것이다.¹⁾ 미국이 대체로 서구보다 부유하고 서독이 동독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사실은 이들 나라들의 보다 약한 정도의 사회주의화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위스가 오스트리아보다 풍요롭다거나 19세기에 가장 부유했던 영국이 지금은 저개발도상국가로까지 불리어지는 것이 적절한 상태로 전락하였다는 사실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관심은 전적으로 전반적인 부의 효과나 그 문제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한 예로서, 실제의 역사적

1) 시작부터 어떠한 오해도 피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제시된 이론은 어떠한 주어진(가정된) 사회의 전반적 부유는, 만약 사회주의의 전반적 정도가 감소되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즉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성장하리라는(그 역의 경우도 성립) 것이다. 미국은 보다 넓게 자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수준(달리 달성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독일 등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주어진 시점에 있어서 상이한 사회들의 (전반적 부와 관련하여) 상대적 지위를 설명한다는 것은 아주 다른 과제가 될 것인데, 이는 그 시점에 있어서 물론 '기타의 사항들'이 더이상 반드시 '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기타 사항들은, 기존의 사회주의 정도에 뿐만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사회의 전반적 부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주어진 사회의 역사는 그의 현재의 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회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조건들로 인하여 부유하거나 가난한데, 이는 우리의 선조들에 의하여 자본이 축적되었거나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보다 자본주의적인 사회는 보다 사회주의적인 사회보다 현저하게 빈곤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동일한 단지 걸음으로 보기에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들이 부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이전에 또는 현재에 작용하는 요소들과 관련하여 다를 수 있기(그리고 실제 다르기) 때문이다. 예로서 사회들간에는 작업가치관에 있어서, 또는 지배하는 세계관과 관습에 있어서 차이들이 존재 가능하거나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 사회의 현재의 사회주의의 정도와 관련하여 사회들의 부의 생산에 있어서의 같거나 다른 괴리들(또는 유사성들)의 이유가 설명 가능하고, 실제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정도는 비교사회분석에 있어서 사회의 부와 역함수관계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론의 타당성을 설명· 입증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최선의 방법은, 사회주의의 정도에 따른 차이들을 제외하고는 역사와 사람들의 현재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동일 한, 또는 예로서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적어도 대단히 흡사한, 사회들을 비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예기되는 영향은 이하 취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장 극적인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들(분명히 아주 흔히 사회주의로 불리어지지 않고 대신 보다 마음을 끄는 다른 이름²⁾이 주어진 예들)이 존재하는 사회주의의 여러 다른 형태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아무데나 대소 여기저기예의 모든 간섭이 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회구조에 대한 특수한 교란적 효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말하자면 걸만 보는 이론적으로 숙련되지 못한 관찰자는 특정의 간섭이 가지는 당장의 '긍정적' 결과에 눈이 가리어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르는 교란적 효과이다.

그럼에도 이 부정적인 효과는 존재하기 마련이며, 얼마 후에는 최초의 간섭행위에 의하여 당초 해결되었던 것들보다도 더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사회구조 속의 다른 곳에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예로서 '싼 식료품 가격' '낮은 주택 임대료' 이것 '공짜' 저것 '공짜' 하는 식의 고도로 눈에 띄이는 사회주의정책들의 긍정적 효과들은 다른 모든 것에 결부되어 있지 않고 공중에 걸려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현상들로서 적은 양과 보다 저품질의 식료품에 의하여, 주택부족·퇴락 및 슬럼화에 의하여, 긴 기다림의 대열과 부패, 더 나아가 보다 낮은 생활수준, 자본형성의 감소 및 자본소모의 증가에 의하여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덜 눈에 띄이면서 거의 항상 '긍정적'으로 언급되는 한 가지 사실, 예를 들면 동독사람들간에 그들의 상대방인 보다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적인 서독사람들과 비교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사이의 보다 큰 단결의식, 가족·친척, 또는 친구들과 같은 사항들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 등은 단순히 유리된,

2) 그런데 미국의 '사회주의'는 '진보주의'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부르는 사회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자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

분석이 불가능한 사실이 아니다. 그와 같은 의식들은 항상 부족함 속에서 살고 자기의 수단으로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킬 기회가 끊임 없이 억압되어 온 사회제도의 결과인 것이다.

동독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 전화 한 통화 이상 요하지 않는 집 수리 같은 가장 간단한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저 보다 심하게 '사적' 관계(비사적 상업관계와 비교하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사람들의 '공공'생활이 '사회'에 의하여 항상 감시받고 있는 곳에서는 매사를 그저 사적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특정의 교란적 효과들을 발생시키는 경로들이 상세히 분석될 것인데, 이는 (1)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거나 사회화하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정책에 의한, 혹은 차라리 생산수단의 개인소유자로부터의 강제수용에 의한, (2) 평등주의적 소득재분배의 수정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에 의한, (3) 경제적 및 행위적behavioral 규제들과 가격 통제를 통하여 현상유지를 시도하는 보수주의적 성향의 정책에 의한, 그리고 (4) 실용주의적 단편적 사회·경제공학과 간섭의 기술관료적 성향의 제도에 의한 교란적 효과들이다.

순서에 따라 분석될 이들 정책형태들은 완전히 동질적이지도 상호배타적이지도 않다. 각각은 서로 다른 정도에 따라 수행될 수 있고, 이들 각 정책 카테고리하에서 일을 처리하는 상이한 방식이 존재하며, 상이한 정책계획들은 어느 범위까지 통합될 수도 있다. 사실상 사회는 세력과 영향력에 있어서 상이한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의 결과이므로 모든 주어진 사회는 이들 전부의 하나의 혼합체이다. 이들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이유는(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토의될 수 없다는 분명한 이유 말고도) 그것들이 분명히 구분되어질 수 있는 사회집단들, 운동들, 정당들과 결부된 정책계획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각 정책계획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전체적 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는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분석될 수 없다. 물론 사회주의는,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또는 소위 '과학적' 변형은 항상 자본주의의 '생산의 무정부상태³⁾'와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보다 우수한 사회조직임을(그의 주장된 기타의 모든 특성들은 차치하고라도) 자임해왔다. 그러나 일단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것이 논증되면 사회주의는 붕괴되지는 않을지라도, 부가 아니라 빈곤을 가져올 것이다. 정말이지 사회주의는 일단 그것이 이해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대부분의 매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경제적 실속이 어떠한지간에 그것이 보다 높은 논리성을 대변하고 보다 공정하며 윤리적으로 보다 우수한 기초를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한 결코 그의 논쟁을 다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속에 내포된 재산이론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의하여 아무것도 진실에서 멀리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회주의 속에 내포된 재산이론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요구하는 인간행위의 필요법칙들에 관한 첫째의 결정시험조차도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한다(충분조건은 고사하고 필요조건조차도).

소위 황금률로, 또는 유사하게 칸트의 지상명령categorical imperative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시험은 어떤 법칙이 공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 법칙은 여러 카테고리

3) 후르시초프시대에 이르기까지 소비에트 러시아 공산주의의 초기에, 자본주의세계는 곧 경제적으로 능가할 것이라는 그 반복된 선언들을 상기하라!

의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권리와 의무를 구분지어 명시할 수 없으며(머리털이 붉은 사람들에게 하나, 기타 사람들에게 하나, 또는 여자에게 하나, 남자에게 다른 하나), 그와 같은 '특정성'의 법칙은 당연히 원칙에 있어서 조차도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공정한 법칙으로 수락될 수 없다.

한편 '나는 너를 비난할 수 있으나, 너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식의 특정성의 법칙들은, 이 연구의 과정 속에서 분명해질 것인데, 모든 실천된 형태의 사회주의의 근거를 이루고 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주의는 잘못 생각된 사회조직 제도임이 드러난다. 자본주의의 나쁜 평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것은 사유재산과 사유재산 소유자들간의 계약적 관계의 인정 위에 공정하게 기초를 두고 있는 사회제도인 자본주의인 것이다.

자본주의 속에 내포된 재산이론은 '보편화'의 첫째의 시험을 통과함은 물론 어떠한 종류의 논쟁적 정당성의 논리적 전제조건(die bedingung der Moeglichkeit)임이 밝혀질 것임이 논증될 것이다. 즉 무엇을 선호한다고, 특히 어떤 규범을 공정한 것으로 선호한다고 말하는 어느 누구도 적어도 은연중 자본주의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재산규범(노르마)의 정당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보편적 수용성의 규범으로서의 그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이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윤리성 및 윤리성의 정당성 부흥은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에 대한, 그리고 사회주의적 재산권의 구현체로서의 그 국가조직에 대한 재평가로 인도한다. 그런데 그 국가조직은 그의 존속을 위하여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제적인 구성원 자격부여(시민권)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그 국가는 그의 존립

을 위한 확고한 경제적, 또는 논리적 이성을 결여한다면, 단지 사회심리적 연관현상으로 변모되어 설명되어질 것이다.

상기 고찰들에 인도되어 토의는 마침내 경제학으로 돌아온다. 결론부분의 장들은 윤리적·경제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질서의 운용을 설명하는 건설적인 과제를 다룰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유재산 가치관체계 위에 기초하는 사회제도가 어떠한 독점의 문제와 소위 '공공재', 특히 경찰 및 사법서비스와 같은 보안의 생산문제를 다룰 것인가 하는 분석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독점과 공공재에 관하여 경제학 문헌에서 다루어온 많은 것들과는 달리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설사 존재한다 해도 의미있는 순수한 시장제도의 경제적 결함을 입증하는 데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논의될 것이다. 자본주의질서는 항상 예외없이,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경찰 및 법원분야를 포함하여 자발적 소비자들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이 건설적인 과제가 완성되면 논의는 충분히 전개되어 마침내 사회주의의 지적 신임도의 파괴가 윤리적·경제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제2장

재산, 계약, 침해,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¹⁾
Property, Contract, Aggression, Capitalism, Socialism

1)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ed. Selby-Bigge), Oxford, 1968, 특히 chapters 3 · 2, p.484;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nquiries*(ed. Selby-Bigge), Oxford, 1970; L. Robbins, *Political Economy: Past and Present*, London, 1977, 특히 pp.29~33 참조.

경제이론과 정치철학의 관점으로부터 다양한 정책계획들을 분석하는 보다 흥미로운 분야로 진행해가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본개념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사실 이 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재산, 계약, 침해,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의 개념들은 것처럼 기본적인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은연 중에라도 이들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떠한 종류의 인간행위 및 어떠한 종류의 대인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들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편에 가까운 것 같다. 예로서 재산의 개념은 이처럼 기본적인 것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에 대해 당장의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관하여 결코 주의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기껏해야 대단히 모호한 정의를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부정확하게 설명되었거나 가정된 정의들로부터 착수하여 그 위에다 어떤 복잡한 사고의 조직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단지 지적 재난으로 인도할 따름이다. 원래 의미의 부정확함과 탈루는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 그로부터 도출된 모든 것을 왜곡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첫째 재산의 개념이 분명히 정의되지 않으면 안된다.

행위의 개념 다음으로 재산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선형적 근본개념category이다. 사실 이 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기타의 모든 개념들, 즉 침해, 계약,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는 재산의 관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침해는 재산에 대한 침해로, 계약은 재산소유자들간의 비침해적 관계로, 사회주의는 재산에 대한 한 제도화된

침해정책으로, 그리고 자본주의는 재산과 계약주의를 인정하는 제도화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재산의 개념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하자. 재산의 개념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재화가 소위 '자유재'여서 어떤 한 목적을 위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한 이의 사용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한 이의 사용을 조금도 차단(방해, 또는 제한)하지 않는다면 재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파라다이스와 같은 바나나의 초풍요를 가상할 때, 나의 현재의 바나나의 소비가 나 자신의 미래의 바나나의 공급(가능한 소비)은 물론 어떠한 다른 사람을 위한 현재, 또는 미래의 바나나의 공급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바나나에 대한 재산권의 부여는 불필요해질 것이다. 재산의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화의 희소성이 요구되며, 이에 이들 재화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된다.

독점적 소유권을 부여하여 희소한 자원의 사용에 관한 그와 같은 발생 가능한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재산권의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재산은 규범적 개념이다. 즉 희소자원들에 관한²⁾ 상호 구속하는 행동법칙들(규범들)을 규정하여 분쟁이 없는 상호작용을 가능하

2) 그런데 재산개념의 규범적 성격 또한 한 개념으로서의 그의 등장을 위한 사전적 충분조건을 분명하게 만든다. 희소성의에도 '행위자들의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즉 행위자들은 의사를 전달하고 토의하고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그들은 규범적 문제들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와 같은 의사전달 능력이 없다면 규범적 개념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테면 코끼리와 재산권을 규정함에 있어 주어진 희소자원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코끼리와 의논하여 소유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서의 미래의 충돌들을 회피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술적(규범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문제이다.

게 만들기 위하여 창안된 개념이다.

어디에서나 진정으로 재화의, 모든 종류의 재화의 희소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재산권의 필요성은 분명해진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설사 우리가 생명유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위락에 탐닉하기 위해서도, 그저 손을 뺀기만 하면 되는 모든 것의 초풍요가 존재하는 에덴동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가상해도 재산의 개념은 반드시 발전되어야 한다. 이들 ‘이상적인’ 환경하에서도 모든 사람의 신체는 여전히 희소한 자원이며, 따라서 재산법규들, 즉 사람들의 신체에 관한 법규들을 설정할 필요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통상 자신의 신체를 희소한 재화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는데, 우리가 희망해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 즉 에덴동산을 상상하는 가운데에도 인간의 신체는 충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즉 독점적 소유권이 그의 사용에 설정되어야 할 바로 희소자원의 원형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엄연한 사실로서, 인간이 행위하는 한³⁾, 즉 사람이 주관적으로 덜 만족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고 평가되는 사물들의 한 상태를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한에 있어서, 이 행위는 필연적으로 이 사람의 신체의 사용에 관한 선택을 수반한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어떤 것, 또는 한 상태를 선택하고 선호함은 분명히 모든 것, 즉 가능한 모든 즐거움과 만족이 동시에 가

3) 사람은 의도적으로 행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심지어 행위하지 않는 시도조차도,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 어떤 이전에 확보된 위치나 상태에 남아 있고자 하는 결정 그 자체도 행위로서 적합하다. 따라서 이 석명(즉 경험에 의하여 도전될 수 없는 석명)을 선행적으로 진실로 만든다. 그것에 의거하여 이를 반증하고자 하면 누구도 선택을 해야 하며 싫든 좋은 특정용도에 그의 신체를 사용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질 수 없다는 것을, 대신 덜 값어치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어떤 것이 보다 값어치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외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포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항상 비용의 초래를 의미한다. 즉 그것들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수단은 희소한 것이며, 그 수단은 잃게 되는 기회들보다 높게 평가되는 수확을 약속하는 어떤 다른 대체적 사용에 묶여 있는 것이므로 이는 가능한 즐거움의 희생을 의미한다.⁵⁾

에덴동산에서도 나는 사과를 먹고 담배를 피우고 마시고 나무를 타고 책을 읽고 집을 짓고 고양이와 놀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등의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단지 순서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 사항들을 행하고 이들을 행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즐길 수 있는 신체는 오로지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나는 나로 하여금 단 하나의 지상의 행복 속에 모든 가능한 만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해줄 신체들의 초풍요(많은 신체들)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의 희소성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것이다. 즉 희소한 자원인 이 ‘신체’는 파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영원한 건강과 에너지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한, 반대로 단지 한정된 생명기간을 가진 유기체인 이상 시간은 희소한 것이다. A 목적의 추구에 사용된 시간은 다른 목적들의 추구에 남아 있는 시간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어떤 욕망의 결과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4) L. v. Mises, *Human Action*, Chicago, 1966, 특히 part 1; M.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1970; L. Robbins,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London, 1935 참조.

5) 비용의 개념에 관하여, 특히 M. Buchanan, *Cost and Choice*, Chicago, 1969; *L.S.E. Essays on Cost*(ed. Buchanan and Thirlby), Indianapolis, 1981 참조.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기다림에 수반될 대가는 보다 클 것이며, 이들 대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대만족은 보다 높은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신체와 시간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에덴동산에 있어서도 재산규정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들 규정들이 없이는, 한 사람 이상이 존재하고, 그들의 행위의 범위가 중복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 사람들간에 미리 설정된 이해들의 조화와 동조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지금 가정할 때, 각기 자신의 신체의 사용에 관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차 한잔 마시는 것을 즐기기 위해 나의 신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과 더불어 정사를 시작하기 원한다면, 이는 나로 하여금 차를 마시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한 이 신체를 수단으로 하여 나 자신의 목적들을 추구하는 데 남아 있는 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와 같은 충돌들을 피하기 위하여 독점적 소유에 관한 법칙들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상 행위가 존재하는 한 재산규범들 설정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문제를 단순화하고 산만한 설명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분석의 또 다른 연장을 위해서, 사람의 신체, 이의 설자리 및 시간만이 희소한 자원들이 되고 있는 에덴동산에서 우리가 정말로 거주하고 있다고 계속 가정하자. 희소재화의 원형인 사람의 신체가 재산 및 이에서 유도되는 개념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로지 한 종류의 희소자원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도 희소수단에 대한 독점적 소유를 규정하는 모든 종류의 규범들은 원칙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예로 '월요일에는 내가 신체의 용도를 결정하고 화요일에는 네가 결정한다'는 등과 같은 법칙). 그러나 그것들의 모두가 실제로 제의되고 수락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재산규범과 더불어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이는데, 그 규범은 신체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의 부여에 관한 '자연적 주장^{natural position}'으로서 에덴의 거주자들에 의하여 수락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틀림없이 이 단계의 논의에서 우리는 아직 논리관이나 규범들의 도덕적 정당성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자연적 주장은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방어될 수 있는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가 분명히 차후에 논의하고자 한다는 점은 바로 출발에서부터 충분히 시인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단계에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방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수증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연적이라 함은 어떠한 도덕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단지 이 주장이 아마도 여론의 가장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한 사회심리적 개념을 의미한다.⁶⁾ 사실 이의 자연성^{naturalness}은 신체를 말함에 있어서 소유적(소유를 가리키는) 표현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거의 피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신체는 통상 어떤 특정인의 신체로 언급된다. 즉 나의 신체, 너의 것, 그의 것들(우리가 행위를 말할 때도 같다), 따라서 나의 것 너의 것 등등을 구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분명히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희소한 자원들의 고유의 소유자들을 분간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체에 관한 자연스러운 언급하는 속에 내포된 재산에

6) 논의될 모든 것의 타당성이 물론 자연적 주장을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정확성에 좌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설사 자연적 주장에 임의의 출발점의 지위를 분명히 인정할 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분석은 타당성을 가진다. 용어가 문제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자연적 주장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자체로서 함축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음의 분석들은 전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것이다.

대한 자연적 주장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신체표면의 영역내에서 그의 신체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그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관리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한, 그가 당장, 또는 장기적 이익·복지, 또는 만족을 위하여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용도에 신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의 신체와 더불어(신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행하도록 초청할(또는 동의할) 각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즉 신체와 더불어 원하는 무엇이든 행할 나의 권리는, 내가 좋아하고 동의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신체를 사용하도록 청하고, 그리고 사용하게 할, 이를 사랑하게 할, 검사하게 할, 주사나 약을 투입하게 할, 신체적 외모를 변경시키게 할, 그리고 심지어 때리거나 손상하거나 죽이게 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와 같은 종류의 대인간의 관계를 계약적 교환이라고 부르며, 또한 불리어질 것이다. 계약적 교환은 각자 모든 교환당사자들의 그들 각자의 신체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초 위에 입각하는, 희소자원들의 사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의하여 특징지어지고 있다. 정의상 그와 같은 계약적 교환은 사후적으로 반드시 모든 교환당사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나(설명 외과의사가 내가 그에게 요청한 대로 정확하게 나의 얼굴에 수술을 가했다 하더라도 나는 수술 후의 외모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항상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데, 사전적으로는 모든 참가자에게 상호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육체적 보전을 불청으로 침해하거나 변경시키고, 그리고 바로 이 사람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용도에 이 신체를

사용하는 어떤 행위가 수행되었을 경우, 이 행위는 재산에 관한 자연적 주장에 따라 침해라고 불리어진다.⁷⁾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명시적 동의를 획득함이 없이 타인의 신체를 겁탈하거나 때리는 것에 의해 그의 성적, 또는 변태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침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신체와 더불어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어떤 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육체적으로 저지된다면 이 또한 침해가 되겠는데, 예로서 분홍색 양말을 신는다고거나 곱슬머리를 기른다고거나, 또는 매일같이 술주정한다거나, 또는 두루 다른 방법을 써서 일을 수행하는 것 대신에 우선 잠이나 자고 궁리나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어떠한 다른 사람의 육체적 보전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⁸⁾ 그렇다면 정의상 침해적 행위란 항상, 반드시 어떤 사람이 실행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만족의 감소를 대가로 하여 그의 만족을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재산에 관한 이 자연적 주장의 기초를 이루는 논거는 무엇인가?

7) ‘침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평가상의 의미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유의하라. 오로지 이 연구의 후반부에서 필자는 상기 정의된 바의 침해가 진정 도덕적으로 방어될 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여 밝힐 것이다. 이름들은 텅빈 것이며, 유독 중요한 것은 침해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8) 제7장에서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때, 바로 침해를 어느 누구의 신체적 보전에 대한 침략으로 정의내린 것과, 반면에 침해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 어느 누구의 가치 체계의 보전에 대한 침략간의 구분의 중요성을 다시 취급할 것이다. 한 사람의 재산권의 다른 사람의 그것에 대한 경계결정은 물리적, 객관적, 상호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용어들로서 정식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재산이론(여기에서 설명된 바로 그 자연적 주장이 아닌)을 위해서도 일종의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여기에서는 주목해두기로만 하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특정행위가 침해인지 아닌지를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노르마들(어떠한 재산노르마들)의 사회적 기능(즉 분쟁이 없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은 단지 기술적 이유들로 수행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연적 재산이론의 밑바닥에는 소유자와 피소유재산간에 객관적이며 상호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결의 존재 위에 독점적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상세한 사항을 생략하고) 단지 순전히 자기에게 유리한 주관적 증거만을 제시하고,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재산클레임을 침해적이라고 부르는 생각이 놓여 있다.

‘나는 나의 신체에 관한 나의 재산클레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가 그 신체의 최초의 점유자(그의 최초의 사용자)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신체를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것을 전혀 입증할 수 없다.’ 아무도 나의 신체를, 마치 내가 그것을 나의 생산물로 주장할 수 있듯이, 그의 의지의 산물로 주장할 수 없는데, ‘나의 신체’라는 희소자원의 사용을 결정할 권리에 대한 그와 같은 클레임은 비사용자의, 비생산자의 클레임이며, 그리고 전적으로 주관적인 견해, 즉 사물이 이런, 또는 저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구두선언 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구두클레임도 어떤 사실들을 나타낼 수(그리고 항상 대단히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있겠는데(‘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가난하다, 혹은 나는 대단히 특별하다 등등’), 따라서 그에 의거하여 자신들을 합법화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그런 사실들은 어떤 주어진 희소자원과 어느 특정한 사람(들)간에 어떠한 객관적 연결을 설정하지 못한다(할 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특정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이 그와 같은 논거에 입각하여 똑같이 잘 설정될 수도 배제될 수도 있다. 그것은 무에서 도출된, 소유자들과 피소유물들간에 순전히 구두의 연결만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재산클레

임인 것이며, 이는 재산의 자연이론에 따라 침해적으로 불리어진다.

이에 비교하여 나의 신체에 대한 나의 재산클레임은 어떤 확정적인 자연적 연결을 나타낼 수 있다. 나의 신체는 생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산된 (사물들이 ‘주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은 어떤 확정적 개개생산자(들)와 명확한 연고를 가지며, 그것은 나에게 의하여 생산된 것이다. 어떠한 오해도 피하기 위하여, ‘생산한다는 것’은 ‘무에서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어찌되었건 나의 신체는 또한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타고난 것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어떤 계획에 따라 어떤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을 변경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신체의 각 부분을 모두 변경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어찌되었건 내가 결코 아무것도 한 바 없는 나의 신체는 많은 구성부분들을 갖고 있다), 대신 경계선내에서 (포함·배제하여) 어떤 사물을 변경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좀더 정확하게 말하여, 사물들에 경계선을 확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한다는 것’ 또한 생산의 과정이 무기한 지속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어찌되었건 나는 때로 잠을 자는데, 나의 신체는 바로 그런 나의 행위들의 산물은 분명히 아니다), 이는 단지 그것이 과거에 생산되었고, 그 자체로 인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생산적 노력에 경계선을 구획지면서, 과거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그리고 특정한 개인을 생산자로 결부지을 수 있는 ‘자연적’, 또는 ‘비침해적’이라고 불리어지는 그와 같은 재산클레임인 것이다.⁹⁾

9)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유권은, 어린이의 경우와 같이 생산된 사물 그 자체가 또 다른 행위자-생산자인 경우에만 그의 자연적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언급할 가치가 있다. 재산의 자연이론에 의하면 어린이는 일단 태어나면 스스로 신체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어린이는 당연히 신체적으로 침해받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신체의 소유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사상은 이 지점에서 거의 분명해진다. 그러나 에텐동산을 영구히 떠나기 전에 침해적으로 구축된 소유권의 요소들을 낙원에 도입함으로써 가져오게 될 결과들에 대한 검토가 취해져야 하는데, 이는 모든 형태의 실제의 사회주의, 즉 포괄적인 희소의 세계 속에서 사회주의의 핵심적인 경제 및 사회문제를 순수하고 단순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후 이의 상세한 분석은 다음 장들의 관심사가 된다.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사람들은 분명히 다양한 생활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들을 위한 다양한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이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어떤 부류의 인격 및 무슨 성취를 애써 이룰 것인가에 대한 여러 다른 표준을 가질 수 있다. 사실 모든 것의 초풍요가 존재하므로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하여 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말하여 사람들은 여전히 술주정꾼이 될 것인가, 철학자가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즉 보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행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소간 당장 보상을 가져다주는 용도들에 자신의 신체를 사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는 원근간에 단지 먼 장래에 열매를 맺을 용도들에 자신의 신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의 형태의 결정은 ‘소비결정’으로 불리어질 수 있다. 반면에 오로지 미래에 보상하는 용도에 자신의 신체를 사용할 결정, 즉 행위자로 하여금 기다림의 불효용을 극복할 것을 필요로

로서 부모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 만큼 신체적으로 성장하면 부모들이 다시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있을 수 있는 시도에 대하여 ‘노’를 말할 수 있게 되면 그의 부모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모는 그들의 어린아이에 대하여 그 어린아이의 생산자로서의 독특한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도망갈 수 없고 ‘노’를 말할 수 없는 한 그들은(그리고 그의 아무도) 그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하는(시간은 희소하다) 원근간에 먼 장래에 예기되는 어떤 보상, 또는 만족에 의하여 촉진된 선택결정은 ‘투자’결정으로 불리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자본’, 즉 자기자신의 신체로 구체화된 자본에 대하여 투자하는 결정이다.¹⁰⁾

이제 침해적으로 구축된 소유권이 도입되었다고 가정하자.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그의 신체의 독점적 소유자였으며, 자신의 임의대로 술주정꾼이 될 것인가, 철학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었던 데 반하여,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인간의 권리가 축소, 또는 완전히 제거되고 대신 이 권리가 각기의 신체에 그 신체의 생산자로서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위임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자.

이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폐지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비생산자들이 어느 때건 나의 신체의 ‘모든’ 사용을 결정할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또는 그렇게 할 그들의 권리가 시간 및 권한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고, 이들 제한은 다시 신축적일 수 있거나(그 비생산자들이 그들 멋대로 그 제한적 정의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서),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면 그 영향은 물론 심대한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무엇이든시간에 소유권의 사회화는, 항상 그리

10) 노동과 기다림의 비효용에 관하여 미제스에 의하여 주장된 시간선호이론을 참조. L. v. Mises, *Human Action*, Chicago, 1966, chapters 5·18·21; *Socialism*, Indianapolis, 1981, chapter 8; M.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1970, chapters 6·9; E. v. Boehm-Bawerk, *Kapital und Kapitalzins. Positive Theory des Kapitals*, Meisenheim, 1967; F. Fetter, *Capital, Interest and Rent*, Kansas City, 1976 참조.

‘인간자본’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관하여, 특히 이 개념이 시카고 경제학자들에 의해 다루어졌던 열도당토양은 취급에 관하여, G. Becker, *Human Capital*, New York, 1975); A. Rubner, *The Three Sacred Cows of Economics*, New York, 1970 참조.

고 반드시 그러한데, 다음 두 가지 종류의 영향을 만들어낸다. 첫째의 영향은 그 개념의 협의의 의미에 있어서 ‘경제적’인 것으로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액의 감소이다. 신체의 자연적 소유자는 그의 소유권이 아무리 제약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자살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기를 결정하는 한 그 신체에 관한 결정들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이미 타인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그의 신체를 무슨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의하여 신체에 부가된 가치는 이제 보다 낮아졌다. 말하자면 그가 신체를 어떤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그의 신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욕망충족, 즉 심리적 소득은 그에게 가용한 선택범위가 제한되었으므로 감소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행위는 반드시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리고 예상보상이나 이윤과 교환으로 비용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주어진 성향을 감안할 때, 자연적 소유자는 행위의 비용이 감소된 예상소득과 나란히 끌어내려지기 위해서는 축소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한다. 에텐동산에서 이를 시행할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이 남아 있다. 즉 기다림의 비효율을 감소시키고 조기의 수확을 약속하는 행위의 과정을 선택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침해적으로 구축된 소유권의 도입은 투자결정을 축소시키는 경향으로 인도하며 소비결정을 유리하게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는 철학자를 술주정꾼으로 변모시키는 경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경향은 자연적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간섭의 위협이 영구적일 때 영구적이 되며, 또한 한층 뚜렷해질 것이고, 그 위협이 일정한 기간과 영역에 제한되는 정도에 따라 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율은

자연적 소유자들의 그들 신체에 대한 독점적 관리의 권한이 손상되지 않고 완전한 경우보다 낮아질 것이다.

두번째 효과는 사회적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다. 침해적으로 구축된 소유권 요소들의 도입은 사회구조의 변화, 즉 인격이나 성격형태와 관련하여 사회구성체에 있어서의 변화를 수반한다. 재산의 자연이론을 포기함은 분명히 소득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적 신체의 사용자 자격으로서, 즉 이 신체로써 자신들을 표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사람들의 심리적 소득은 다른 사람들의 신체에 대한 침해자로서의 자격으로 얻는 심리적 소득의 증가를 대가로 하여 감소된다. 타인의 신체를 범함이 없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만족을 얻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다 어렵게 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며, 그리고 자기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신체를 이용하여 만족을 얻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어렵고 덜 비용이 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사회변화도 암시하지 않는데, 그러나 일단 어떤 단 하나의 실증적 가정을 도입하면 그러할 것이다. 즉 타인의 신체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가질 수 있는 만족의 손실을 대가로 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인간의 한 욕망으로 존재한다는 것, 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도로 주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때로 어느 정도 일부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컨대 어떤 주어진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억압, 또는 고무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선호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가정할 때, 그 영향은 당장 나타난다.

정말로 이 가정은 사실이다. 따라서 소득획득을 위한 기회의 재분배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침해를 이용

하는,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침해적이 되는, 즉 점점 더 비침해적으로부터 침해적 역할로 변모해가고, 이의 결과로서 서서히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임에 틀림없다. 이 성격구조상의, 즉 사회의 논리적 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 다음으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수준에서의 또다른 감소로 인도한다.

요약하면 이와 같은 두 효과와 더불어 우리는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열등한 재산조정제도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을 이미 정확히 지적하였다. 정말로 두 효과는 사회주의의 정책계획에 관한 다음의 분석과정 속에서 거듭 나타날 것이다. 이제 남아 있는 일의 전부는 전반적인 희소의 실제세계에 대하여 재산의 자연이론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형태의 실제의 사회주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신체와 기타 모든 희소자원들간의 몇몇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념상의 구분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어려움 없이 거듭 적용될 수 있다. 신체가 결코 '비소유'된 적이 없고 항상 자연적 소유자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타의 모든 희소자원들은 사실 비소유될 수 있다. 이것은 그것들이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된 바 없는 그들의 자연적 상태로 남아 있는 한에 있어서의 경우이다. 그것들은 일단 희소수단으로 취급되면 비로소 누구의 재산이 되는데, 즉 그것들이 어떤 객관적 경계 속에 점유되어 누구에 의하여 어떤 특정항 용도에 이용되는 순간부터이다. 이와 같은 이전에 비소유된 자원을 획득하는 행위를 '최초의 전용'이라 부른다.¹¹⁾

일단 비소유된 자원이 전용되면 그들의 물리적 특성을 불청으로

11) 자원전용에 관한 이론에 관하여, J. Locke, *Two Treatises of Government*(ed. Laslett), Cambridge, 1960, 특히 2, 5 참조.

변경시키거나 소유자가 이들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가 되는데(마치 신체의 경우에서와 같이), 어떤 특정의 사용이 타인의 재산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의 침해이다. 오로지 계약적 관계의 과정 속에서만, 즉 희소수단의 자연적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 다른 누군가 이전에 취득된 사물들을 활용하고 변경시킴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최초의, 또는 이전의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의 재산소유권을, 무엇과의 교환으로든 공짜의 선물로든 이전하는 경우에만 타인은 그것들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체가 똑같은 '자연적' 이유에서 결코 비소유될 수 없고, 또한 자연소유자에 의하여 완전히 분리될 수 없고, 단지 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한 한에 있어서 '대여'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당연히 기타의 모든 희소자원들은 양도될 수 있으며, 이것들에 대한 재산소유권이 영구적으로 포기될 수 있다.¹²⁾

재산권 부여에 관한 이와 같은 자연관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제도는 순수자본주의적이며, 또 이후 그렇게 불리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의 사상이 사법私法의, 즉 사인私人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들이 지배하는 사상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또한 순수 사법제도로 불리어질 수 있을 것이다.¹³⁾ 이 제도는 재산에 대한 클레임이 비침해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의 전용 및 이전의 소유권의

12) 기타 모든 희소재화들과 대조적으로 신체의 독특한 성격으로부터 의당 연유하는 '양도 불가능한' 및 '양도 가능한' 재산권리간의 구분에 관해, W. Evers, "Toward a Reformation of a Law of Contract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977 참조.

13) 사법 위에 공법을 상위에 두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상당한 정도로 전자를 오염시키고 손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사법체계를 해방시켜 여기에서 자연적 주장으로 불리어지는 것이 그의 핵심적 요소들을 구성하는 것으로(다시 한 번 이 재산이론의 '자연성'을 강조하는 사실인) 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제8장 주 13 참조.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또는 상호이익이 되는 계약적 관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 관계는 재산소유자들간의 의도적 협력이나 한 소유자로부터 다른 소유자에게로의 재산소유권의 의도적 이전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제도가 변경되고 대신 희소수단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을, 아무리 부분적이라도, 관련 물건의 이전의 사용권 행위임을, 또는 어떤 이전의 사용자-소유자와의 계약적 관계임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그룹에 부여하는 어떤 정책이 제도화된다면, 이는 (부분적) 사회주의라 불리어질 것이다.

다음 네 장의 과제는 순수한 자본주의제도에서 이탈하는 여러 다른 방법들이, 즉 사물의 자연적 소유자들로부터 재산소유권을 유리시켜 재분배하는(즉 어떤 특정한 자원을 어떤 구체적 용도에 사용한 바 있고, 그렇게 하여 자연적으로 이것들에 연결된 사람들에서부터 그 자원들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한 바 없고 단지 이것들에 대하여 구두의 선언적 클레임을 주장한 바 있는 사람들에게로), 어떻게 투자를 감소시키며 소비를 증가시키는가를, 그리고 이에 더하여 생산적인 사람들보다 비생산적인 사람들을 유리하게 함으로써 인구의 구성에 변화를 야기시키려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제3장

러시아형 사회주의
Socialism Russian Style

우리는 사회주의를 재산소유권의 제도화된 재분배정책으로 정의한 바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희소수단들을 어떤 용도에 실제로 사용한 바 있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그렇게 한 바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것들을 계약적으로 취득했던 사람으로부터 현안의 사물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한 바 없거나, 또는 그것들을 계약적으로 취득한 바 없는 사람들에게로의 재산소유권의 이전인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던 대단히 비실제적 세계인 에덴동산의 예에서 그와 같이 재산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가져오게 되는 사회경제적 결과들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의 감소와 비생산적 인격형을 형성시키는 인센티브의 증가이다.

필자는 이제 여러 다른, 그러나 동등하게 전형적인 몇몇 사회주의의 형태들을 검토하여 사회주의 및 이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본 분석을 확대하고 실체화하고자 한다. 본장에서 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수평가의 사회주의’(실존하는 유일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먼로 관찰해오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에 집중할 것이며, 이는 아마도 사회주의에 대한 어떠한 토론을 위해서도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우수평가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들, 즉 소비재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희소자원들이 ‘국유화’되었거나 ‘사회화’된 사회제도이다.

사실 칼 마르크스와 현대의 대부분의 좌파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처럼 거의 전적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적·사회적 결함들에 관한 분석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의 모든 저술에서 자본주의의 우수한 대안이라고 주장된 사회주의하에서의 생산과정의 조직에 관한 구조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몇몇 개괄적이며 모호한 언급만을 하였다. 이것은 그가 사회주의정책의 이정표로서, 그리고 보다 나은 번영된 미

래에의 관건으로 생각했던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¹⁾

따라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그 이후 모든 정통 마르크스파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왔다. 이는 서방의 공산당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설사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기를 점차 꺼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서방의 모든 사회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 있어서도 여러 다양하고 솔직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공감을 주는 소수정파들이 또한 존재하는데, 이들은 그와 같은 계획을 끈기있게 지지하며, 모든 생산수단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대산업 및 대기업의 그것을 사회화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크고작은 산업부분들의 국유화는 소위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들에서조차도 사회현실의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생산수단의 거의 완전한 사회화가 소비에트연방에서 강력히 시도되었으며, 이후 소비에트가 지배하는 모든 동구국가들에 있어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도 시도되었다. 따라서 다음 분석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그것들이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특히 우리들로 하여금 러시아와 그의 위성국들을 괴롭히고 있는 핵심적 문제들을 이해하게끔 도울 것인데, 이들 나라들은 지금까지 사회화정책을 수행해왔으므로 그들의 주요한 구조적 특성으로 정당하게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형태를 ‘러시아’형으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사실 때문이다.²⁾

1) 마르크시즘과 그의 발전에 관하여, L.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3 vols., Oxford, 1978; W. Leonhard, *Sovietideologie, Die politischen Lehren*, Frankfurt/M., 1963 참조.

2) 우리가 러시아형 사회주의를 말할 때 어떠한 사회제도를 특징짓는, 그리고 사회들간

사회화계획들을 밀고 나가는 동인이 되는 원동력에 관한 한 그들은 평등주의자로 자임한다. 일단 생산수단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허용하면 차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자원 A를 소유하면 너는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이 자원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달라진다. 사적 소유권을 폐지함으로써 생산수단에 대한 모든 사람의 지위는 일거에 동등화되었으며, 또는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입장을 반영하는 모든 것의 공동소유자가 된다. 그와 같은 계획(평등화)의 경제적 논거는 그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가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가격의 행위조정적 기능에 익숙해 있지 않은 비숙련된 관찰자에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그저 무질서하게 보일 것이다. 그것은 중복되는 노력, 파멸적인 경쟁 그리

의 다른 점에 관한 수많은 구체적 자료들로부터 결론을 추출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러시아형 사회주의는 웨버M. Weber에 의하여 '이상적 형태'로 언급된 바 있다. 그것은 '하나의, 또는 여러 측면들의 한 측면만의 강화를 통하여, 그리고 갖가지의 흩어진 단편적 개개현상들의 한 내재적으로 일관된 개념적 표현 속으로의 통합을 통하여 도달된' 것이다(M.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Tuebingen, 1922, p.191). 그러나 그 개념의 추상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그 속에 존재하는 어떠한 결함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그것은 행위하는 개개인들 자신들이 의미에 있어서 당해 유사성들, 또는 차이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특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리고 그들이 자기자신의,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들의 어느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거의, 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무시해버리기 위한 이상적 형태들을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채택된 추상적 개념의 수준 위에서 러시아형 사회주의를 기술하고, 이후 여러 사회주의형태들의 유형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통상 각종 정당들이나 사회운동들에 그들 자신들이 이념적으로 첨가하는 개념상의 특징들을 재현하고, 따라서 사실상 오늘날의 사회들을 형성하고 있는 이념적 세력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시도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사회학적 연구를 위한 사전적 필수조건들로서의 이상적 형태들에 관하여, L. v. Mises,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New York, 1981, 특히 pp.75ff; *Human Action*, Chicago, 1966, 특히 pp.59ff; H. H. Hoppe, *Kritik der kausalwissenschaftlichen Sozialforschung*, Opladen, 1983, chapter 3, 특히 pp.33ff 참조.

고 협동적 상호조정적 행위의 결여로 특징지어지는 낭비적인 제도로 보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멸시적으로 부르듯이 그것은 '생산의 무정부상태'이다. 사적 소유권 대신 집단적 소유권이 대체되었을 때만이 포괄적으로 상호조정된 단일의 생산계획을 시행하는 것에 의하여 이와 같은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인이나 약속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³⁾ 사회화계획하에 채택된,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의 기본적인 법적 원칙을 구성하고 있는 재산법칙들은 다음과 같은 두 보완적 특징에 의하여 특성화된다.

첫째, 아무도 사회화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소유되며, 정확하게 말해서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어느 그룹도, 또는 모두 포괄하여 그것들을 취득하거나 사적으로 매각하여 매각영수금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들의 사용은 소유자역할로서가 아니라 사물의 관리자^{caretaker}역할로서의 인민에 의하여 결정된다.

둘째,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어느 그룹도, 또는 모두 포괄하여 신규로 사적 투자에 관여하거나 새로운 사적 생산수단을 창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 누구도 기존의 비생산적으로 사용된 자원들을 생산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본원적 저축에 의하여, 다른 사람과 자원들을 공동화하는 것에 의하여, 또는 이들 기술의 어떤 혼합에 의하여 투자할 수 없다. 투자는 오로지 사물의 관리자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을 뿐이다. 결코 사적 이윤을 위해서가 아닌 항상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윤을 함께 나누어야 될 관리자 등의 공동체를 대표하여 시행될 수 있을 뿐이다.⁴⁾

3) 특히 L. v. Mises, *Socialism*, Indianapolis, 1981 참조.

그와 같은 관리자 경제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특히 재산의 자연이론 위에 구축된 경제로부터 사회화된 경제로 바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다음의 두 관찰은 앞에서 언급한 평등과 효율에 관한 사회주의의 약속에 관하여 어느 정도 규명해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의 공동소유자임을 선언함은 단지 명목상으로 소유권에 있어서의 차별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은 진정한, 근거에 놓여 있는 문제, 즉 지배권에 있어서의 차별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사적 소유권에 기초하는 경제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생산수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사회화된 경제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소유자가 없으므로 이것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생산수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모든 사람들 간에 미리 안정화되고 미리 동조화된 이해의 조화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문제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터인데) 대신 상당한 정도의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오로지 하나의 견해만이 사실상 지배적 이 될 수 있고 기타는(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배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시 사람들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즉 어느 누구의, 또는 어느 그룹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누르고 지배하기 마련이다. 사유재산 경제와 사회화된 경제간의 차이는 단지 의견의 불일치가 해결되어야 할 경우 누구의 의사가 어떻게 지배적 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지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사람들간에 실제적 차이

4) 물론 주 2 하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적 투자의 이 완전한 불법화는 오로지 완전히 사회화된 경제에만 적용된다. 만약 경제의 사회화된 부분과 나란히 개인부분이 존재한다면, 그 경우 사적 투자는 경제가 사회화된 정도에 따라 단지 축소되고 방해받을 것이다.

가 존재한다. 그러나 누구의 의견이 지배적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최초의 점유 및 계약에 의하여 해결된다. 사회주의에 있어서도 관리자와 비관리자간에 실제적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유독 사회주의의 경우 의견대립에서 이기는 쪽 사람들의 주장이 이전의 사용권이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수단에 의하여 결정된다.⁵⁾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본장의 후반에서, 그리고 다시 후반부의 여러 장에서 그 문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회주의의 평등주의적 약속과는 달리) 지배권에 관한 한 그것은 비평등주의와 평등주의 제도간의 차이가 아니라 는 것만을 말해두기로 하자.

둘째 관찰은 첫째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주의의 우수한 조정능력의 주장에 관한 것이다. 다시금 보다 면밀한 조사는 그 차이가 단지 가상적이며, 오로지 어의론(語意論)에 의하여 조성된 것임을 드러내줄 것인데, 개인소유자들의 경제가 국유화된 경제에 의하여 대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의사결정단위 대신 갑작스럽게 오로지 하나의 그와 같은 단위가 존재한다는 인상을 조성한다.

사실 아무것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는 각종 생산수단의 사용을 조정할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차이는 다시금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지는가

5)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에 연관되는 중요한 차이는 전자하에서는 소비자들의 자발적 행위들이 궁극적으로 생산의 구조 및 과정을 결정하는 데 반하여, 사회주의하에서는 이를 행하는(즉 자발적 행위들) 사람이 생산자-관리자들이라는 것이다. 제9장 참조.

의 문제이지, 사회주의 어의론이 넉넉히 비추듯 무질서와 조정간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대신에 자본주의의 사람들에게 이전의 사용자-소유권을 존중하도록 계약을 가하여 행위들을 조정한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에 이전의 소유권과 상호교환정들을 무시하고 한 사람의, 또는 그룹의 계획을 다른 반대자나 그룹의 그것 위에 내리엿는 방법에 의하여 개인의 계획들을 조정한다.⁶⁾ 이 차이 또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논평할 만한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르크스사회주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대로, 사회계획과 무계획간의 차이가 아니며, 반대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조정메커니즘들이 공개화되고 재구축되는 순간 사회주의의 보다 큰 효율성의 주장은 곧 그의 대부분의 신인도(信認度)를 상실하기 시작할 것이며, 따라서 그 반대의 주장이 보다 수긍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이론이 얼마나 잘 구축되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조정메커니즘이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왜 입증되는가가 사람들이 표면상의 차이에서 눈을 돌려 대신 실질적인 차이에 집중하고, 그리고 재산소유권의 재분배 및 이에 따르는 소득의 재분배를 검토할 때 분명해질 것이다(그와 같은 재분배는 위에서 그의 특성이 설명된 것처럼 관리자 경제를 지지하여 자본주의를 포기할 때 반드시

6) 미제스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회주의의 근본적 징표는 단 하나의 의사만이 행위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의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지도자는 카리스마의 힘으로 통치하고 있는, 성유를 뿌려 정해진 왕일 수도 독재자일 수도 있을 것이며, 총통일 수도 인민의 투표에 의하여 임명된 총통들의 위원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주요한 사항은 모든 생산요소들의 고용이 오로지 하나의 행위 에 의해서만 지도된다는 것이다.”(L. v. Mises, *Human Action*, Chicago, 1966, p.695)

수반된다).

자본주의의 기본인 재산의 자연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관리자 경제의 기본원칙들의 채택은 재산소유권이 실제의 생산자들과 생산수단의 사용자들로부터 유리되어, 그리고 이들 수단을 이전의 사용자들로부터 상호동의를 의하여 취득한 바 있는 사람들로 부터 유리되어, 기껏해야 모든 사람이 그가 이전에 소유하였던 사물들의 관리자로 남아 있게 되는 관리자들의 공동체에게로 재분배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매 이전의 사용자와 매 계약자는 손해를 보는데, 그는 더이상 생산수단을 매각할 수도 사적으로 그 매각영수금을 자기 것으로 할 수도 없으며, 또한 그들이 해왔던 대로 그것들의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인하여, 이에 따라 그를 위한 생산수단들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상세한 사항들을 생각하고). 이들 생산수단의 모든 비사용자와 비계약자는 그가 이전에 사용한 적도 사용계약을 한 바도 없는 자원들에 대하여 적어도 부분적 발언권을 가지면서 이들 자원의 관리자계급으로 승진하는 혜택을 입을 것이며, 이에 따라 그의 소득은 상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재분배계획에 더하여 또다른 재분배효과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개인자본의 신규창조의 금지에 의하여, 또는 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경제의 사회화된 부분의 크기에 좌우되는) 수반되는 것으로, 그 아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변화의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 즉 그것은 가능한 소비를 절제하고 대신 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즉 미래의 소비재를 생산할 목적으로 저축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더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지금 다른 선택의 여지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 부터 유리시켜,

재분배계획을 채택함에 있어서 아무리 부분적일지라도 저축자의 자급에 대하여 발언권을 획득하는 비저축자들에게로의 재분배이다.

사회화정책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결과들은 근본적으로 이들 체계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검토를 가지기 전에 이와 같은 사회화계획이 들리는 바대로 일어나고 있는 실제세계의 핵심적 특성들을 검토하여 명백히 밝히는 것은 값어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음 사항들이 상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하여 인간은 이 세계에 대하여 알 수 있으나 그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알게 될 것을 오늘 반드시 잘 알지는 못한다는 것, 수많은 재화의 부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인간은 수많은 필요에 의하여 압박을 받고 있으나 그가 그들 모두를 동시에, 또는 다른 필요의 만족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인간은 그를 위한 필요의 긴급순위에 따르는 선호도 속에서 그의 필요를 선택하고 주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희소한 것으로 식별된 자원의 최초의 점유과정이나 새로운 생산수단의 생산과정과 기존 생산수단의 유지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인간에게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들 모든 활동은 적어도 시간이 드는 것으로, 예를 들면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더하여 우리는 노동분업에 의하여 특성화된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는 자급자족의 생산자의 세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이 독립된 소비자들의 시장을 위하여 수행되는 세계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유의하면서, 그렇다면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용어의 구어적 의미에 있어서 ‘경제적’ 결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거기에는 세 가지 밀접하게 연관된 효과가 있다.⁷⁾

첫째(이는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의 당장의 일반적 영향이다), 투자율, 즉 자본형성률의 상대적 감소이다. ‘사회화’는 생산수단의 비사용자, 비생산자, 그리고 비계약자를 이롭게 하고 (상세한 사항을 생략하고) 사용자, 생산자 및 계약자에 대하여 비용을 증가시킴으로 인하여, 보다 적은 사람들이 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부족이 역력히 나타난 자연자원의 최초의 점유는 줄어들 것이며, 새로운 생산요소들의 생산은 감소할 것이며, 기존 생산요소들의 유지는 줄어들 것이며, 그리고 계약을 맺는 활동이 줄어들 것이다.

이들 모든 활동은 비용을 수반하며, 이들 활동을 수행하는 비용은 증가되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게 된, 행위자들에게 보다 쉽게 열리게 되고 쓸 수 있게 된 여가소비활동과 같은 대체적 행위의 과정이 존재하게 된다. 동일선상의 논거에서, 개인저축을 개인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더이상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투자배출구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또는 그 배출구가 경제가 사회화된 정도에 따라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저축이 감소하고 씹씹이가 증가하고 노동이 감소하고 여가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결국 너는 더이상 자본가가 될 수 없으며, 또는 자본가가 될 수 있는 너의 가능성은 제한되었으며, 그래서 덜 저축할 적어도 하나의 이유가 존재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의 결과는 교환 가능한 재화의 생산감소와 이들 재화로 본 생활수준의 하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낮아진 생활수준이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그 생활수준

7) L. v. Mises, *Socialism*, Indianapolis, 1981, 특히 part 2; *Human Action*, Chicago, 1966, 특히 Chapters 25·26 참조.

은 노동의 결과로서의 여가와 교환 가능한 재화들에 대한 그들의 상대적 평가를 꼼꼼하게 저울질하면서 변경시키는 소비자들의 자연적 선택이 아니므로, 즉 원하지 않는 궁핍을 경험하게 되었으므로, 지하경제에 의존하여 야간 아르바이트와 암시장 조성에 의하여 그와 같은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향이 전개될 것이다.

둘째, 생산수단의 사회화정책은 그 수단의 낭비적 사용으로, 즉 최선이라 해야 2급 필요를 충족시키는, 최악으로는 전혀 아무 필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비용만 증가시키는 사용으로 결과할 것이다.⁸⁾ 이 이유는 변화의 존재 및 불가피성이다. 소비수요에 있어서의 변화, 기술지식에 있어서의 변화, 그리고 생산과정이 그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자연환경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시인되면(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생산의 전체 구조를 재조직하고 개편해야 할 계속적이며 끊임 줄 모르는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생산라인에서 기존의 투자를 철수하여 새 투자와 함께 다른 라인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항상 존재하며, 따라서 어떤 생산업소, 어떤 분야, 심지어 경제의 어떤 부문까지도 축소시키고 다른 것은 확장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다. 집산적으로 소유된 생산수단을 개인손에 매각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거나 극히 어렵다고 가정하자. 이는 정확하게 사회화계획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구조를 재조직하는 과정은 적어도 심각하게 방해받을 것이다. 설사 아주 정지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유는 기본적으로 간단한 것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생산수단들이 매각될 수 없거

나, 매각한다는 것이 매각하는 관리자에게나 개인구매자에게나, 또는 양자 모두에게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그와 같은 가격형성이 방해를 받으며 보다 비싸진다.

그렇다면 사회화된 생산수단의 관리자·생산자는 자원들을 사용하는 데, 또는 생산구조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데 드는 실제의 화폐적 비용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없어진다. 그는 이들 비용을 매각으로부터 예상되는 그의 화폐적 소득과 비교할 수도 없다. 어떤 주어진 생산수단들을 사용하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적 개인들로부터 어떠한 제의도 받을 수 없으므로, 또는 그런 제의를 받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관리자는 그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포기된 대안의 기회가 무엇인지 그저 알지 못하며, 또한 자원들을 유보하는 화폐적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도 없다.

그는 자원을 사용, 또는 사용을 변경하는 그의 방식이 화폐적 수확으로서의 결과를 가져올 만한 것인지, 또는 수반되는 비용이 실제로 수확보다 더 큰 소비재생산의 가치의 절대적 하락을 야기시키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낼 수 없다. 또한 그는 소비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의 생산방법이 정말로 가장 긴급한 소비자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효율적 방법인지(생각될 수 있는 다른 방법들과 비교하여), 또는 덜 긴급한 필요가 보다 긴급한 필요를 무시하는 대가로 충족되어지고 있는지, 따라서 적어도 생산된 재화의 가치에 있어서의 상대적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도 없다. 경제계산의 수단에 제약 없이 의존하지 않고는 알 방법이 없다.

물론 진행해가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다. 설사 그렇게 되리라 확인할 방법은 없겠으나, 공

8) F. A. Hayek(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London, 1935;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parts 5·1, 1981(An Economic Critique of Socialism) 참조.

급해야 할 소비자시장이 크면 클수록, 다양한 소비자그룹의 선호에 관한, 역사적 시대와 지리적 공간의 특별한 환경에 관한, 그리고 기술의 가능성에 관한 지식이 여러 개인간에 보다 분산되어 있을수록 더욱 오류를 범하기 쉽다. 동전의 양면처럼 낭비와 부족을 수반하는 생산수단의 잘못된 배분이 이의 결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개인기업가들이 가격경쟁으로 생산수단을 관리자로부터 따돌리는 것이 저지되어 있고, 물론 그 이상으로 불법화되고 있으므로, 사회화된 생산제도는 그들이 알아차린 개선할 기회가 충분히 살려지지 못하게 한다. 다시금 이 또한 궁핍화에 기여하리라는 점은 거의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⁹⁾

셋째,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은 주어진 생산요소들의 과사용으로 인도하여 상대적 궁핍화, 즉 전반적 생활수준의 하락원인이 된다. 이 이유는 다시금 개인소유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관리자의 이상한 위치에 있다. 생산요소들을 매각할, 그리고 사적으로 이의 금전영수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소유자는 고용된 자본가치를 대가로 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생산증가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의 목표는 생산된 제품의 가치플러스 생산에 사용된 자원들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그는 양자 모두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그는 생산된 제품의 한계생산가치(the value of the marginal product)가 생산에 사용된 자본의 상각보다 낮아질 때 생산을 멈출 것이다. 만약 그가 생산된 제품의 미래가격의 상승을 예기한다면 생산하는데 드는 상각비용을 줄이고 대신 보존을 증가시킬 것이다(또는 반대로).

9) 경제적 계산과 합리적 자원배분을 위한 사전적 필요조건으로서의 자유시장에 관하여, 제9·10장 참조.

관리자의 사정은, 즉 그가 직면하고 있는 인센티브 구조는 이 점에 있어서 아주 다르다. 그는 생산수단을 매각할 수 없으므로 자본가치의 과도한 감소를 대가로 하는 생산을 하지 않을, 그에 따라 고용된 자본을 달리 활용할 그의 인센티브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사실 사회화된 경제의 관리자도 제품의 판매수입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관리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체에 인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이들의 재량에 의하여 사용될 것이며,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그의 인센티브는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보다 낮은 자본형성률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리자가 조금이라도 일하고 생산하는 한, 설사 소득이 개인의 자본형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단지 개인소비 및 비생산적으로 사용된 사적 부의 창조를 위하여 사용될지라도, 소득을 획득하려는 그의 관심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관리자의 생산수단의 매각불능은 자본가치를 대가로 하여 그의 개인소득을 증가시키려는 인센티브는 상승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그가 그의 소득이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에 좌우될 것임을 아는 한(관리자들 공동체에 의하여 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이것에 좌우될 것이다), 자본을 대가로 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그의 인센티브는 상승할 것이다. 게다가 실제의 관리자는 그가 관리자들 공동체와 동일하지 않은 한 결코 완전하게 영속적으로 감독되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목적 위해 생산수단을 사용하여 소득을 얻어낼 수 있으므로(즉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시장, 또는 암시장 재화의 생산) 그는 소득이 사적 생산에 달려 있다고 보는 한 자본가치를 대가로 하는 그와 같은 생산을 증가토록 고무될 것이다.

어쨌든 자본소모와 기존자본의 과사용이 일어날 것이며, 미래의 교환재 생산이 그 결과로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증가된 자본소모는 또 한 번 상대적 궁핍화를 의미하게 된다.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가져오는 3종의 경제적 결과들에 관한 이와 같은 분석에서 함축된 바 있는데(투자의 감소, 자원의 잘못된 배분 및 과사용, 이들 모두는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인도한다), 러시아형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기분석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도 적용됨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는 것은 흥미있고 중요한 일이다. 노동에 대해서도 사회화는 낮은 투자, 잘못된 배분 및 과사용을 의미한다.

첫째, 노동요소의 소유자들은 더이상 자영업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둘째, 노동요소의 소유자들은 더이상 그들의 노동서비스를 최고가 경매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므로(경제가 사회화되어 있는 한 노동에 지불할 돈을 포함하여 특정의 보완적 생산요소들에 대하여 독자적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기회와 위험을 택하는 독립된 경매자들이 더이상 존재하도록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주어진 노동요소를 사용하는, 또는 이를 다른 보완적 요소들과 결합하는 데 드는 화폐적 비용이 결코 수립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노동의 잘못된 배분이 초래된다.

셋째, 사회화된 경제에 있어서 노동요소의 소유자들은 기껏해야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받는 수입의 단지 일부만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관리자 공동체에 귀속되므로, 이들 관리자들이 노동자들로서 구체화된 자본가치의 손실을 대가로 하여 그들의 개인소득을 확충하

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증가할 것이며, 결국 노동의 과사용이 일어날 것이다.¹⁰⁾

마지막으로, 그러나 결코 가장 작은 것이 아닌, 생산수단의 사회화정책은 사회의 인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요성은 조금도 과장될 수 없다. 반복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재산의 자연이론에 기초하는 자본주의 대신에 러시아형 사회주의를 채택함은 생산요소의 재산권리와 이들 요소들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과 관련하여 비사용자들, 비생산자들 및 비계약자들에게 상대적 유리함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고, 가능하다면 증가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사용자-생산자-계약자의 역할에서부터 비사용자-비생산자-비계약자의 역할로 비교적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면(틀림없이 그 가정들의 정당성이 거의 논란될 수 없겠는데), 사회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인센티브 구조에 있어서의 변경에 반응을 보여 사람들은 점점 더 비생산적이며 비계약적인 활동에 종사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들의 성품은 변화될 것이다.

부족한 상황을 감지하고 예기할 수 있는, 생산적 기회를 취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눈치챌 수 있는, 수요에 있어서 변화를 예기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교환기회를 탐지할 수 있는 이전과 같은 능력, 요약하면,

10) 그런데 이것은 사회화된 경제가 노예경제보다도 생산성이 낮으리라는 것을 입증한다. 물론 노예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 인센티브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노예경제에 있어서, 노예를 팔아치워 사적으로 그의(노예의) 시장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노예주는 노예의 가치를 노예의 한계생산가치(the value of his marginal product) 이하로 감소시킬 노동량을 그의 노예로부터 짜내는 데 비교적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노동관리자에게(사회화된 경제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역인센티브(disincentive)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G. Reisman, *Government Against the Economy*, New York, 1979 참조.

사업을 창시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꺼져버리지 않았다면 줄어들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재능을 가진 다른 사람이 될 것이며, 정책이 갑자기 변경되고 자본주의가 재도입된다고 가정해도 이들은, 설사 그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즉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의 옛 생산적 정신을 다시 불붙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어떻게 하는지를 잊어버렸을 것이며 서서히 다시 배워야 하는데, 여기에는 마치 그들이 최초의 그들의 생산적 재능을 짓누르는 데 높은 비용이 들었던 것처럼 높은 정신적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들에 관한 반쪽 묘사에 불과하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드러진 특징에 관한 상기의 발견들을 상기시키는 것에 의하여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생산적 능력에 있어서의 손실에 관한 앞에서의 언급을 보충하면서 사회화에 의하여 야기된 인격변화의 또다른 측면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사회주의 또한 누가 각종의 생산수단들을 관리하고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상기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자본주의의 해결과는 달리 사회주의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생산구조 속의 여러 다른 직위를 부여하는 일은 정치적 사안이 되는데, 즉 이전의 사용자소유권 및 계약적 상호합의 가능한 교환의 존재에 대한 고려와 상관없이 차라리 한 사람의 의사(반대하는) 다른 사람의 의사 위에 내리었어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분명히 생산구조 속에서의 각자의 지위는 교환 가능한 재화, 심리적 소득, 직위, 그리고 유사한 무엇으로든지간에, 그의 소득에 당장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를 원하고, 관리자들과 직계제 속에서 보다 높이 평가되는 자리로 옮겨가기를 원함에 따라 점점 더 그들의 정치적 재능을 사용해야 한다. 소득계층의 직계제 속에서 보다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생산자, 또는 계약자가 되는 것은 상관없는 일이거나 적어도 중요성이 감소된다. 대신 점점 더 정치인의 특유한 기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말하자면 설득·선동 및 음모를 통하여, 약속·뇌물 및 협박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에 대한 일반의 지지를 모아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보다 높은 소득에 대한 욕망의 강도에 따라 사람들은 그들의 생산적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시간을 덜 쓰고, 정치적 재능을 배양해가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기 상이한 정도의 생산적 정치적 재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제 별난 사람들이 최고의 지위에 오를 것이며, 그래서 관리자들과의 직계제 서열 속 어디에서나 점점 더 많은 수의 정치인들을 발견하게 된다. 최고 지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수행하는 데 무능한 사람들을 목격하게 된다. 관리자의 경력에서 유구 무언의 자세를 취하고 나태하고 비능률적이며 무관심한 태도는, 그가 우수한 정치적 기술을 구사하는 한 장애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생산수단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¹¹⁾

생산수단의 사회화정책이 상당한 정도로 시행되어 온 러시아와 기타 동구블럭 국가들에 대한 검토는 상기 결론들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의, 그리고 주 결론의 타당성을 발견하는 데는 이들 나라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만으로도 충분하다. 동

11) H. H. Hoppe, *Eigentum, Anarchie und Staat*, Opladen, 1987, 특히 Chapter 5·3.2 참조.

구블릭 국가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나(차이 그 자체도 사회화계획이 과거 및 현재에 걸쳐 실제로 수행되어 온 엄격성의 정도 여하에 따라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서방의 소위 자본주의국가들보다는 분명히 훨씬 낮은 것이다(서방국가들이 사회화되고 있는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자체는 상당한 정도이다. 그리고 후반부의 장들에서 분명해질 것인데, 통상 대단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사회화정책의 궁핍화효과가 얼마나 심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론이 정확한 예측을 하지도 할 수도 없다 할지라도(그것이 현저한 것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한 사회화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러시아에서 최초로 실시되었을 때, 이의 경험은 문자 그대로 수백만명의 인명을 대가로 치렀으며, 불과 몇 년 후인 1921년에는 이들 참화적인 결과들을 견딜 수 있음이 입증되는 수준으로까지 완화시키기 위하여 개인소유권의 요소들을 다시 도입하는 신경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NEP)과 같은 현저한 정책변경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은 실로 언급할 가치가 있다.¹²⁾

사실 거듭되는 정책변경은 소련으로 하여금 여러번에 걸쳐 유사한 경험을 겪게 하였다. 다소 덜 심각한 것이었긴 하지만, 사회화정책으로부터의 흡사한 결과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동구국가들에서 경험된 바 있다. 여기에서도 완전한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영농, 수공업, 또는 소기업들의 온건한 사유화가 수차례 걸쳐 허용되어야만 했다.¹³⁾ 그럼에도 한편 사회주의선전과는

12) 러시아는 '비상시'에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축적된 자본을 별로 가지지 못하고 시작한 가난한 나라였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사회경제사에 관하여, B. Brutzkus, *Economic Planning in Soviet Russia*, London, 1935; A. Nove, *Economic History of the USSR*, Harmondsworth, 1969, 또한 S. Wellisz, *The Economics of the Soviet Bloc*, New York, 1964 참조.

13) 소비에트 지배하의 동구블럭의 경제체제에 관하여, T. Rakowska-Harmstone(ed.), *Communism in Eastern Europe*, Bloomington, 1984; H. H. Hohmann, M. Kaser, and K. Thalheim

달리 경제적 실적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사적 소유권이 아닌 사회적 소유권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그와 같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론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상할 수 있게 인도하는 바, 야간고용, 불법적인 생산활동, 물물교환 및 암시장거래가 이들 모든 나라에 있어서 존재하고, 또한 이 지하경제가 경제의 느슨한 부분을 담당하고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구블럭 국가들의 생활수준은 통탄할 정도로 낮은 것이다. 모든 종류의 기초소비재는 너무나 부족한 공급에 지극히 저급한 품질의 것으로 전적으로 부족하다.¹⁴⁾

동서 독일의 경우는 특히 교훈적이다. 여기에서 역사는 아마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랄 만한 통제된 사회실험에 가까운 한 예를 우리들에게 제공한다. 대단히 똑같은 역사, 문화, 인격구조 및 노동가치관을 갖고 있는 아주 동질적인 인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히틀러·독일의 패망 이후 분단되었다. 서독에서는 여론의 압력이라고 보다는 다행한 환경 덕분에 놀랄 만한 자유시장경제가 선택되었고, 이전의 전반적인 가격통제제도가 일거에 폐지되었으며, 또한 거주의 이동, 상업거래 및 직업의 거의 완전한 자유가 도입되었다.¹⁵⁾

(eds.), *The New Economic Systems of Eastern Europe*, London, 1975; C. M. Cipolla(ed.), *Economic History of Europe. Contemporary Economies*, vol. 2, Glasgow, 1976 참조.

14) 러시아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H. Smith, *The Russians*, New York, 1983; D. K. Willis, *Klass, How Russians Really Live*, New York, 1985; S. Pejovich, *Life in the Soviet Union*, Dallas, 1979; M. Miller, *Rise of the Russian Consumer*, London, 1965 참조.

15) 전후 경제정책의 창시자이자 대표적 정치자인 L. Erhard 참조. *Prosperity through Competition*, New York, 1958; *The Economics of Success*, London, 1968; W. Eucken,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 Hamburg, 1967; W. Roepke, *A Humane Economy*, Chicago, 1960; *Economics of a Free Society*, Chicago, 1963 참조.

서독의 경제정책이 불충분하게 자본주의적이었으며, 여러 비일관성들로 시달림을 받아온 나머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점점 더 사회주의적 간섭으로 이끌려가게 된 데에 대한 비평으로, 예언적 관찰인 L. v. Mises, *Human Action*, Chicago, 1966, p.723 참조.

반면에 동독에서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배하에 생산수단의 사회화, 즉 이전의 개인소유자에 대한 몰수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두 상이한 제도적 체계가, 두 상이한 인센티브 구조가 동일한 인구에 적용된 것이다.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는 인상적인 것이다.¹⁶⁾ 두 나라는 그들이 속해 있는 각기의 블록 속에서 분발하여, 서독은 주요 서구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가지게 되었고, 동독은 동구블럭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임을 자랑하게 되었다.

한편 서구의 생활수준은 그렇게도 높은 것이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다 그래왔는데, 개인시민뿐만 아니라 정부에 의한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상당한 금액의 이전지불과 서독에서의 증대하는 사회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문객은 그가 거의 완전하게 상이한 궁핍화된 세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저 깜짝 놀란다. 사실 모든 동구국가들이 증대되는 기회를 갖고 있는 보다 번영된 자본주의의 서방으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주문제도 골치를 앓아왔으며, 이들 모두는 점차 보다 엄격한 국경통제를 수립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들 나라들을 이와 같은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거대한 수용소 캠프로 변모시켰는데, 독일의 경우는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주자에게 가장 심각한 자연적 장벽이 되고 있는 언

16) 두 독일에 관한 비교연구로, E. Jesse(ed.), *BRD und DDR*, Berlin, 1982; H. v. Hamel (ed.), *BRD-DDR. Die Wirtschaftssysteme*, Muenchen, 1983; K. Thalheim,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r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Opladen, 1978 참조.

정직하고 순수한 경험적 비교연구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경제통계가 최선이라고 해도 행동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느껴진 현실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P. R. Gregory and R. C. Stuart,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Boston, 1985, Chapter 13(East and West Germany); O. Morgenstern, *National Income Statistics: A Critique of Macroeconomic Aggregation*, San Francisco, 1979; L. v. Mises, *Theory of Money and Credit*, Irvington, 1971, part 11, Chapter 5 참조.

어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두 독일간의 생활수준의 차이는 그렇게 큰 것으로 입증되어 동에서 서로의 이주는 1961년 동부독일의 사회주의정권으로 하여금 마지막 절망적인 조치로 드디어 서방에 연한 그의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야만 할 규모의 것이 되었다. 인민들을 가두어놓기 위하여 동독은 세계가 일찍이 본 바 없는 거의 9백 마일 길이의 장벽, 철조망, 전기방책, 지뢰밭, 자동사격장치 및 감시망루 등과 같은 것들로 구성된 국경봉쇄체계를 수립해야 했는데, 이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인민들을 러시아형 사회주의의 귀결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 관점을 실증하는 것 외에 두 독일의 경우는 그의 실험실과 같은 성격 때문에 특히 상기 이론적으로 도출된 결론들의 나머지 부분의 진실성을 예시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됨을 입증해주고 있다. 비교되는 사회적 직위를 대비·검토해볼 때, 서독에서는 거의 아무 곳에서도 동독사람들같이 적게 천천히, 또는 게을리 일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노동시간은 동독이 더 많은데, 물론 규제되어 있다). 이는 분명히 그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상 같은 민족이므로 어떤 민족정신이나 노동가치관과 같은 (주장된) 차이 때문이 아니라 개인투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배출구를 사실상 막아버린 정책계획으로 인하여 일할 인센티브가 상당히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동독에 있어서 효율적인 작업은 지하경제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일할, 특히 ‘공적으로’ 통제된 경제에서 일할 사기를 죽이는 것들에 대한 반발로 동독사람들간에는 공적 생활에서 물러나 프라이버시,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 및 연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서독에서 나타나는 것을 훨씬 능가한다.¹⁷⁾

이론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기할 수 있게 인도하는 바와 같이 자원의 잘못된 배분의 풍부한 증거가 또 있다. 보완적 요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요소들이 사용되지 않고 (적어도 계속적으로가 아닌) 그저 비활용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현상은 물론 서독에서도 목격될 수 있는데, 동독에 있어서는(독일의 경우 이는 분명히 조직상의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생활의 영구적 현상으로 어디에서나 목격된다. 소비재 생산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을 가져오게 할 어떤 생산수단의 사용상의 변경을 지적한다는 것은 서독에서는 통상 대단히 어렵고, 또한 특별한 기업가적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동구블럭 국가들의 경우 비교적 쉽다.

동독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 더 긴급한 용도에 생산요소들을 사용할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다. 여기에서 요소들은 분명히 낭비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보다 격심하게 수요되는 재화의 부족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가격경쟁으로 이들을 따돌릴 수 없고 대신 어떤 변화를 착수해가기 위해서는 지루한 정치적 절차들을 거쳐가야 하므로 아무것도 될 수도 정말 되지도 않는다.

경험은 동전의 다른 측면에 관하여 지금까지 언급되어 온 것, 즉 공적으로 소유된 생산수단의 과사용문제를 확증시켜 준다. 서독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공공재가 존재하는데, 예상되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비교적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동독에 있어서, 또한 모든 생산요소들이 사회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기타 소비에트 점령하의 나라들에 있어서 별로 다를 바 없는데, 실제보다 열악한 상태

17) 동독의 생활에 관하여 E. Windmoeller and T. Hoepker, *Leben in der DDR*, Hamburg, 1976 참조.

로 불충분하게 유지된, 부식하고 있는, 보수되지 않은, 녹슬어 가는, 심지어 그저 훼손당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생산요소들, 기계 및 건물들이 참으로 만연되고 있다. 더구나 환경위기는 전체경제의 상대적 저개발상태에도 불구하고 서독보다 동독이 훨씬 심각하다. 이 모든 것이 독일의 경우가 분명하게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는데, 이는 보살핌과 꼼꼼함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타고난' 체질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끝으로, 이론적으로 예기되는 사회 및 인격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와 관련하여, 예로서 상사에 대한 불만은 물론 어느 곳이나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러시아형 사회주의국가들에 있어서 관리자들의 직계제 속에서의 직위 부여는 전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인 정치적 사안이 되고 있는데, 오로지 무능한 상급자들에 대한 그와 같은 불만은, 설사 보다 요란스럽게 소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자주 있는, 가장 심각한, 그리고 논거가 잘 확립된 것이며, 따라서 선량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흔히 자주 절망과 냉소 속으로 내몰아지게 된다. 그리고 아직도 노동력이 있는 연령층에서 일부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고 있다. 일부는 탈출자로, 그러나 흔히는 몸값이 지불된 사람들인데, 장기적으로 사회화된 경제는 사람들의 생산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설명·입증해주는 충분한 자료 또한 존재한다.

서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동독에서 아주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언어 및 문화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이며 경쟁적인 기술과 정신을 보다 크게 필요로 하는 서방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되거나, 또는 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제4장

사회민주주의형 사회주의
Socialism Social-Democratic Style

전장에서 필자는 정통 마르크스주의형 사회주의(러시아형 사회주의라고 부름)를 분석하고 생산과정과 사회윤리구조에 미치는 이의 영향을 설명하였다. 필자는 이론적으로 예기되는 상대적 궁핍화의 결과들이 그토록 심각한 것으로 입증되어 사실상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정책이 실제에 있어서는 그의 필연적 목표(즉 당장의 경제적 재난을 야기하지 않고 모든 생산요소들을 사회화한다는)로서 결코 수행될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사실 마르크스사회주의의 모든 실제적 실천들은 명약관화한 과산을 극복 내지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수단에 있어서의 개인소유권의 요소들을 곧 재도입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온건 ‘시장’ 사회주의조차도, 만약 생산의 사회화사상이 전적으로 결연히 포기되지 않는다면, 인구의 상대적 궁핍화를 막을 수 없다.

어떠한 이론적 논의보다도 한층 더, 정통 마르크스사회주의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은, 그리고 현대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의 출현과 발전을 촉진시켜 온 것은 러시아형 사회주의와 더불어 실망시키는 경험이었으며, 이는 본장의 관심대상이 될 것이다.

양형태의 사회주의는 분명히 동일한 이데올로기적 원천에서 유래한다.1) 양자는 적어도 이론적 동인에 있어서2) 평등주의적이며, 근본적으로 동일한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다. 즉 개인소유권에 기초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자본주의의 폐지와 형제적 결속과 부족의 근절로 특성화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 즉 모든 사람이 ‘그의 필요에 따라’ 지분되는 새로운 사회의 수립이다. 그렇지만 19세기 중엽 사회주의 운동의 시초부터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알맞은 방법에 관하여 대립되는 생각들이 존재하였다.

1) L.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3 vols., Oxford, 1978; W. Leonhard, *Sovietideologie heute. Die politischen Lehren*, Frankfurt/M., 1963 참조.

2) 상당히 다른 실천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주 16 참조.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을 사회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이 일치했으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졌다.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운동 내부에 혁명적 행동노선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현존하는 정부의 폭력적 전복과 모든 자본가로부터의 완전몰수를 일거에 시행할 것을,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자본가가 아닌 자신의 노동서비스를 팔아야 하는 사람들의 일시적인(즉 부족함이 약속된 바와 같이 진정으로 근절될 때까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주창하였다.

반면에 점진주의적 접근을 주창한 개혁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선거권의 확장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보통선거권 제도와 더불어 사회주의의 승리가 민주적 의회주의적 행동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공통적인 사회주의교리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프롤레타리아화 경향, 즉 보다 적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고 대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고용자가 되는 경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회주의 신조에 따르면, 이 경향은 그 다음으로, 부풀어가는 사회당 지지의 투표자 참여로 인도하게 될 점점 더 동질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을 낳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 전략은 훨씬 여론과 같이 가고 있으므로(주로 평화적 정신의 노동자들에게 보다 호소력을 가지며 동시에 자본가들에게도 공포를 줄여주는), 이를 채택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궁극적 성공은 단지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하였다.

한편 이들 두 세력은 설사 그들의 관계가 때로는 아주 긴장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에서의 1917년 8월의 볼셰비키혁명까지 사회주의운동내에서 공존해왔다. 사회주의운동은 이데올로기 논쟁분야에 있어서는 혁명주의자들이 지배했던 반면, 행동에 있어서는 일반적으

로 개혁주의노선을 취하였다.³⁾ 러시아사건은 이를 바꾸어놓았다. 레닌이 앞장을 서고, 최초로 혁명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계획을 실현하였으며, 사회주의운동은 전체적으로 그 러시아실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입장을 취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운동은 두 분리된 정당을 가진 두 개의 분파로 갈라졌는데, 공산당은 대체로 러시아사건을 지배하였고, 사회당, 또는 사회민주당은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그 분열은 사회화의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며, 양자는 모두 이를 지지하였다. 그것은 혁명적 변화 대 민주적 의회주의적 변화의 문제에 대한 공개적 분열이었다. 러시아혁명의 실제적 경험에 직면하여(폭력, 살육, 횡행하는 몰수의 자행, 흔히 의문시되는 평판의, 또는 그저 뿔뿔히 못한 열등한 인격의 수천의 새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도자의 지위에 휩쓸려 올라갔었다는 사실 등)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일반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로 그들의 혁명적 이미지를 포기하고 실천뿐만 아니라 이론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개혁주의적 민주주의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서방의 일부 공산당들조차도 혁명적 변화론에 헌신적이었으면서도 일반의 지지를 필요로 했던 만큼 적어도 혁명을 수행하는 특이한 볼셰비키 방법에서 어떤 과오를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들 또한 점점 더 단지 실천에 있어서나마 개혁주의적 민주주의개임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혁명에 영향받은 사회주의운동의 변천의 첫 단계에 불과하였다. 지적한 대로 소비에트 러시아의 뚜렷하지 못한 경제적 실적의 경험은 사회주의운동에 그 다음 단계를 가져오게 하

3) 개혁주의적-보수주의적 과정의 주요해설서로서, E. Bernstein,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Bonn, 1975, 마르크스 정통주의를 주창하는 이론서로서, K. Kautsky, *Bernstein und das sozialdemokratische Programm*, Bonn, 1976 참조.

였다.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혁명적 변화의 당위성에 관한 그들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론적 경제이론에 똑같이 익숙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할 의사가 없었던 나머지 그 새로운 실험이 가치있는 것이라고 느꼈던 일종의 밀월기간을 통하여 사회화개혁의 경제적 성취에 관한 가장 환상적인 희망들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으며,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사실들에 직면해야 했고, 결과들을 평가해야 했다.

조심성있게 중립적인 사물들의 어떤 관찰자에게도, 그리고 후에는 주의깊은 어떤 방문자와 여행자에게도, 러시아형 사회주의는 보다 많은 부가 아니라 차라리 보다 적은 부를 의미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민간자본 형성의 아무리 작은 장소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단지 묵시적으로라도 이미 자신의 경제적 열등함을 사실상 제시한 바 있는 제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경험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소비에트실험이 동구 여러 나라들에서 반복되어 마찬가지로 희미한 성과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이에 따라 그 소비에트의 혼란이 단지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아시아적 정신상태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의 오류를 입증하게 되자, 서방의 사회주의, 즉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정당들은 일반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 속에서 더욱 더 그들의 계획들을 수정해야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사회화계획의 러시아적 실행방법에 있어서의 각종 결함 또한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설사 그들이 결코 생산의 사회화사상을 전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 더 보다 분권화된 계획과 의사결정, 부분적 사회화, 즉 단지 주요기업들과 산업들의 사회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지작거리게 되었다.⁴⁾

반면에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애초부터 사회주의의 러시아형 모델에 대하여 덜 동정적이었으며, 그들의 단호한 개혁주의적-민주주의적 정책을 통하여 부분 사회화와 같은 절충안을 수락하는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어서, 한층 더 적응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만 하였다. 이들 정당들은 러시아와 동구의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점차 생산의 사회화이론을 아주 포기하게 되었으며 대신 소득과세와 소득의 균등화라는 사상에, 그리고 또다른 조치로 사회주의의 진정한 이정표가 되는 것으로서 기회의 균등화사상에 더욱 더 강조를 두게 되었다.

러시아형 사회주의로부터 사회민주적 사회주의로의 이와 같은 전향이 발생했고, 모든 서방사회에서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데, 모든 곳에서 똑같이 강력한 것은 아니었다. 대체적으로 말하여 그리고 유럽만을 볼 때,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정당들이 지배자와 투표자를 (그속에서) 찾아야 했던 전체인구에 대하여 러시아형 사회주의와의 경험이 보다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진 경우일수록 그 새로운 종류의 사회주의에 의한 구형태의 것의 대치는 보다 뚜렷하였다.

모든 주요국가들 가운데서도 서독의 경우 이 형태의 사회주의와의 접촉은 가장 직접적이었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독사람들에게 가해진 피해를 그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대치는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1959년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당 계획을 채택하였는데(차라리 여론에 의하여 채택하도록 요구되었다), 마르크스주의의 과거의 모든 분명한 흔적들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 이 계획은 개인소유권과 시장의

4) '시장사회주의' 사상에 관하여, 선도적 학자인 O. Lange, "On the Economic Theory of Socialism", M. I. Goldman(ed.),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New York, 1971 참조.

중요성을 상당히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사회화에 관해서는 단지 단순한 가능성으로만 언급하였다. 대신 집중적으로 재분배적 조치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정책의 지지자들은 사회민주당내에서 그 이래 숫자적으로 상당히 열세하였으며, 공산당들은 단지 평화적이며 부분적 사회화를 지지하는 경우에도 사소한 존재로 축소되었다. 철의 장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 이 변화는 크게 극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늘날 가장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회민주당에 의하여 대표되는 사회민주적 사회주의만이 서방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⁵⁾

사실상 부분적으로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정당의 연합체)의 영향으로 사회민주적 사회주의는 우리시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전파된 이데올로기들로 언급될 수 있다. 그런데 점점 더 공개적인 사회주의정당의, 훨씬 적은 정도에서 서방 공산주의자들의 정치계획과 실제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연안의 '자유주의적' 민주당원들 같은 가장 무리한 억지 속에서조차도 자신들을 사회주의자라고 결코 부르지 않는 그룹 및 정당의 계획과 정책도 발전시켜 가고 있다.⁶⁾ 그리고 국제정

5)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념에 관하여, T. Meyer(ed.), *Demokratischer Sozialismus*, Muenchen, 1980; G. Schwam(ed.), *Demokratischer Sozialismus fuer Industriegesellschaften*, Frankfurt/M., 1979 참조.

6) 사회주의운동의 사회민주화 지표들을 열거하면, 프랑스 사회당의 융성과 이에 따르는 교조적 공산당의 쇠퇴, 영국의 교조적인 노동당의 라이벌로서의 사회민주당의 출현, 서구에서 유일하게 잔존하는 강력한 공산당으로서 이탈리아 공산당의 사회민주적인 정책으로의 온건화 경향, 그리고 곤잘레스Gonzales 및 소아레스Soares하의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사회주의적 사회민주당들의 성장(양자는 모두 독일사회당과 밀접한 유대를 갖고 있음) 등이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밀접하게 독일노선을 좇아온 바 있는, 그리고 후에 나치박해 기간중 저명

치분야에 있어서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사상들은 특히 소위 남북분쟁 양상에 대한 재분배적 접근의 사상은 모든 ‘박식한’, 그리고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간에 거의 공식적 입장과도 같은 것이 되어왔다. 즉 자신들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훨씬 넘어서 그 영향이 미치는 대다수 합의가 되어왔다.⁷⁾

사회민주주의형 사회주의의 핵심적 특징들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첫째, 전통적 마르크스형 사회주의와 대조·구별을 지어 사회민주적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권을 불법화하지 않으며, 심지어 모든 생산수단들의 사적 소유까지도 수용한다. 단지 교육, 교통 및 체신, 중앙금융, 경찰 및 법원만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소유할, 판매, 구매, 또는 이들을 신규로 생산할, 이들을 선물로 증정할, 또는 이들을 계약적 협정하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권리를 가진다.

반면 둘째로,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그의 생산수단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전부를 정당하게 소유하지 못하며, 소유자는 생산에서 발생하는 총소득 가운데 얼마를 소비와 투자에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생산소득의 일부는 정당하게 사회에 귀속되며, 사회에 인도되어야 하고, 평등주의, 또는 분배 정의의 사상에 따라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재분배된다. 더욱이 생산자와 사회에 돌아가는 각기의 소득분배 몫은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한 사회주의자들(가장 잘 알려진 인물들로는 브란트W. Brandt와 크라이스키B. Kreisky를 들 수 있음)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던 스칸디나비아의 사회주의정당들은 그와 같은 수정주의사상에 오랫동안 신뢰를 주어왔다.

7) 남북분쟁에 관한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에 관해, *North-South: A Programme for Survival*, Independent Commiss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s(Chair: W. Brandt), 1980 참조.

고정될지라도 생산자에게 정당하게 귀속되는 몫은 원칙적으로 신축적이다. 또한 그 크기의 결정은 물론 사회의 분배몫을 포함해서 생산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사회에 귀속된다.⁸⁾

재산의 자연이론(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법칙들의 채택은 자연적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적으로 침략되었음을 암시한다. 상기되어야 할 것은, 이 재산이론에 의하면 생산수단의 사용자-소유자는 그것과 더불어 하고자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 자신의 개인소득인 것이며, 한편 타인의 재산의 물리적 보전을 변경(손상)시키지 않고 전적으로 계약적 교환에 의존하는 한 그는 그것(소득)을 자신이 좋을 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재산의 자연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개의 분리된 과정들(즉 소득의 생산과 소득이 생산된 후의 그의 분배라는)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과정이 존재한다. 즉 소득을 생산함에 있어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분배되며, 생산자가 그 소유자이다. 이것과 비교하여 사회민주주의형 사회주의는 생산으로부터의 소득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것에 의한 자연적 소유자에 대한 부분적 몰수를 주창하는데, 이 재분배는 문제의 소득을 틀림없이 생산하지 않은(그것 외에 그들의 공과가 무엇이든간에), 그리고 틀림없이 이(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적 클레임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로의, 이에 더하여 이 부분적 몰수가 어느 정도까지 실시될 수 있는지를 일방적으로(즉 이에 영향을 받

8) 이와 같은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의 특성화는 한 ‘이상적 형태’(제3장의 주 2 참조)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유의할 것. 이는 실제하는 정당의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의 설명으로 취급하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현대의 사회민주주의형 사회주의의 요체가 되어온 것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이념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핵심으로서의 여러 다른 이름을 가진 각종 정당들이나 운동들의 계획들 및 정책들의 훨씬 더 다양한 현실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는 생산자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로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사회민주주의형 사회주의가 대중 속에 조성하고자 의도하는 인상은 달리 두 형태의 사회주의간의 차이는 범주적(categorical)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설명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그것은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분명히 첫번째 언급된 법칙은 그것이 개인소유권을 허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 차이를 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둘째 법칙은 원칙적으로 생산으로부터의 생산자소득의 전부를 몰수할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소유자권리는 단순히 명목상의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물론 사회민주적 사회주의는 개인소유권을 단지 이름만의 것으로 축소시키는 데까지 가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정하는 대로 생산자가 사회에 인도해야 할 소득의 몫이 사실은 아주 적당한 것이 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적 실적과 관련하여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생산자들의 소득의 몰수 정도는 편의주의적 문제이며, 이는 두 형태의 사회주의, 즉 러시아형과 사회민주주의형간의 차이를 확정적으로 단지 정도의 차이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중요한 사실이 생산자에게 암시하는 바는 분명해진다. 그것은 현재의 고정된 몰수의 정도가 아무리 낮다고 해도 그의 생산적 노력이 장차 사회에 인도되지 않으면 안될 소득의 몫이 일방적으로 상승될 것이라는 항시 존재하는 위협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부담, 또는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투자율을 떨어뜨리는가를 아는 데는 많은 논의가 필요치 않다.

이 설명과 더불어 앞으로 진행되는 분석의 첫단계가 이미 취해졌다. 용어의 어의론적 의미로 볼 때,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제도를 채택하는 경제적 결과들은 무엇일까? 바로 언급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보건대, 적어도 그 효과의 일반적 방향에 있어서 그것들은 전통적 마르크스형태의 사회주의와 아주 흡사하다고 듣는 것은 아마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민주적 사회주의가 부분적 몰수와 생산자소득의 재분배로 만족하고 있다는 정도에서 생산수단을 완전히 사회화하는 정책으로부터 결과하는 공평화효과들의 일부는 우회되어 회피될 수 있다.

이들 자원들이 여전히 매매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 경제의 가장 대표적 문제인 생산수단에 대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화폐적 계산이나 회계가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의 결과로 기껏해야 단지 이차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용으로의 희소한 자원들의 잘못된 배분과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 회피된다. 이에 더하여 과사용의 문제는 적어도 감소된다. 또한 생산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일부가 생산자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는 정도에서 민간투자자와 자본형성이 여전히 가능하므로 사회민주주의형 사회주의하에서 비교적 보다 높은 일할, 저축할, 그리고 투자할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모든 공평화효과들이 결코 회피될 수는 없다. 사회민주주의형 사회주의는 러시아형 사회주의와 비교하여 아무리 좋게 보일지라도, 자본주의하에서의 그것과 비교해볼 때는 여전히 필연적으로 투자의 감소와 이에 따르는 미래의 부의 감소로 인도할 것이다.9)

9) L. v. Mises, *Socialism*, Indianapolis, 1981, 특히 part V; *Human Action*, Chicago, 1966, 특히 part 6 참조.

생산으로부터의 소득의 일부를 소유자-생산자로부터 떼어내, 아무리 적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문제의 소득을 생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를 줌으로써 생산비용(즉 생산하고 자금을 사용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일들은 적어도 시간의 사용을 수반하므로 생산비용은 결코 제로가 될 수 없는데, 시간의 사용은 예로서 여가소비나 지하노동 등의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은 상승한다. 또한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비생산 및 지하생산의 비용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락할 것이다.

이의 결과로 곧 설명하게 될 이유에서 설사 생산과 부의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상승할지라도 생산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여가, 보다 많은 소비, 그리고 보다 많은 겹치기 근로가 존재할 것이며, 결국은 상대적 궁핍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생산으로부터의 소득 가운데 재분배될 부분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미래에 일방적이며 비계약적인 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증가될 가능성이 임박해 있을수록 이 경향은 보다 뚜렷해질 것이다.

오랫동안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의 일반적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생각은 소득과세, 또는 일반적 판매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수단에 의하여 화폐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었다. 이 특수한 방법에 대한 검토는 우리의 난점을 한층 더 분명히 해줄 것이며, 상대적 궁핍화의 일반적 영향에 관해 자주 직면하게 되는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전에 없던 소득세나 판매세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과세수준을 새로운 높이로 상승시키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¹⁰⁾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필자는 세금을 각 개인이나 개인들의 그룹들에게 재

분배하는 여러 다른 가능한 방법으로부터 결과하는 복잡성을 무시할 것이며, 이것들은 본장의 후반에서 토의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재분배제도의 정의상 진실이라 할 수 있는, 즉 어떠한 과세금액의 재분배는 화폐소득 생산자 및 계약상의 화폐수령자로부터 비생산자 및 계약상의 화폐소득의 비수령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로의 이전이라는 일반적 사실만을 고려에 넣을 것이다. 따라서 과세를 도입하거나 증가시키는 생산으로부터 흐르는 화폐소득이 생산자에게는 감소되고 비생산자 및 비계약자로서의 역할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증가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화폐적 보수를 위한 생산 대 비생산 및 비화폐적 보수를 위한 생산간의 상대적 비용을 변경시킨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경이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한 사람들은 점점 더 여가적 소비 및 물물교환의 목적을 위한 생산에 의존할 것이며, 동시에 화폐적 보수를 위하여 취해지는 그들의 생산적 노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여하튼 화폐로 구매될 재화의 생산은 하락할 것이며, 이는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에 따라 일반적 생활수준이 하락할 것임을 말해준다. 이 논거에 대응하여 과세수준의 상승은 실제로 GNP의 상승(하락이 아닌)을 수반하였다는 것이 자주 경험적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상기 논거가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실증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자주 논의되었다. 이 반론의 주장은 한 가지 단순한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감소의 절대 및 상대수준간의 혼동이다.

상기 분석에서 보다 높은 세금의 효과는 화폐적 보수를 위한 생산의 상대적 감소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즉 이 감소는 만약 과세의 정도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면 달성되었을 생산수준에 대비한 것

10) M. N. Rothbard, *Power and Market*, Kansas City, 1977 참조.

이다. 그것은 실제로 생산된 생산의 절대수준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말하거나 함축하고 있지 않다. 사실 GNP 성장의 절대수준은 우리의 분석과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정도내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생산기술의 개선을 통하여 똑같은 투입으로 (비용의 관점에서) 보다 높은 생산량을, 또는 감소된 투입으로 동등한 생산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그때의 증가된 과세와 증가된 생산량의 일치는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이 과세로부터 결과하는 상대적 궁핍화에 관하여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의 타당성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또다른 이의는 세금인상이 화폐적 소득의 감소로 인도하고, 따라서 이 감소는 다른 형태의 소득(여가와 같은)과 대비하여 돈의 한계효용을 증가시키며, 결국 이는 실제로 화폐적 보수를 위한 생산의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증가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 관찰은 완벽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적 궁핍화이론을 무효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전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세를 통해 생산자들의 화폐적 소득이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생산자들의 화폐적 소득이 증가하며, 이들에게 돈의 한계효용은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화폐적 보수를 위한 생산의욕도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이 언급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가 절대로 교환 가능한 재화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즉 과세는 일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화폐소득의 한계효

용을 감소시킬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두 효과가 서로 상쇄될 것이기 때문에)을 여전히 남기고 있으므로, 이것이 언급되어야 할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오류로 지적될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는 애초에 가정되었던 것의 부정이 될 것이다. 즉 세금인상(관성하지 않는 소득생산자에게 강제되는 보다 높은 화폐적 기여)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렇게 인지되어졌다는 것(따라서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게 될 것이다. 직감적으로 과세가 생산에 대하여 '중립적'이라는 생각의 결함은 논의가 이의 궁극적인 극단으로 다가가는 순간 분명해진다. 이는 생산자의 화폐적 소득의 전부에 대한 완전한 몰수조차도, 그리고 이를 비생산자 그룹에 이전하여도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설명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이 재분배로부터 결과하는 비생산자의 증가된 게으름이 생산자 쪽의 증가된 일증독에 의하여 충분히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정말이지 당치 않은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논거 속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과세의 도입이나 어떤 주어진 과세수준의 상승은 생산자의 희생으로 비생산자를 이롭게 함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화폐소득의 생산자 및 비생산자 모두에게 (증가하는) 화폐소득을 달성할 여러 다른 방법에 수반된 비용을 변경시킨다는 것이다. 비생산적 수단을 통하여, 즉 실제로 보다 많은 재화들을 생산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생산된 재화들의 비계약적 취득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의하여 추가적 화폐소득을 획득하는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사 생산자들이 보다 높은 세금의 결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돈을 획득하는 데 진정으로 보다 열중한다 해도 그들은 점점 더 그들의 생산적 노력을 배가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착취적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왜 과세가 중립적이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가를 설명한다. (증가된) 과세와 더불어 다른 법적 인센티브 구조가 제도화될 것이다. 즉 화폐적 소득을 위한 생산 대비생산(여가적 목적을 위한 비생산과 화폐적 보수를 위한 비생산을 포함하여) 대비화폐적 보수(물물교환)를 위한 생산간의 상대적 비용을 변경시키는 인센티브 구조이다. 그와 같은 다른 인센티브 구조가 하나의 동일한 인구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화폐적 보수를 위해서 생산된 재화들의 생산감소가 결과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¹¹⁾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의 재분배적 방법들 가운데 소득 및 판매과세가 가장 진취적인 수단이나, 그것이 방법의 목록일람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재분배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로까지 화폐소득이 균등화된다 할지라도, 이들 개인은 각기 다른 생활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거나 하고 있으므로, 그리고 이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화폐소득의 각기 다른 부분을 소비에, 또는 비생산적으로 사용된 사적 부의 형성에 할당할 것이므로 조만간 사람들간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들이, 그들의 화폐적 소득과 관련해서가 아니라면 사적 부와 관련하여 다시금 나타날 것이다.

놀랄 필요도 없이 이 차이들은, 만약 순수하게 계약적인 상속법이 존재한다면, 꾸준히 현저해질 것이다. 따라서 평등주의적 열의에 의하여 실제 동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민주적 사회주의 또한 그의 정책계획 속에 사적 부를 수용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

11) 이에 더하여, 설사 이것이 과세된 사람들에 의한 노동의 증가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보다 높은 정도의 과세는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며, 이로 인하여 그들의 생활수준을 감소시킬 것이다. M. N. Rothbard, *Power and Market*, Kansas City, 1977, pp.95f, 참조.

며, 특히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불로不勞의 부’에 대한 일반의 원성 내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경제적으로 이와 같은 조치들은 곧 사적 부의 형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사적 부의 향유가 과세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비싸짐에 따라 신규로 창조될 부는 감소하게 될 것이며, 소비의 증가가 비생산적으로 사용된 부의 기존스톡의 그것(소비의 증가)을 포함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점점 낮아질 것인데, 생활수준은 사적 부로부터 얻는 생활의 안락함에 의해서도 좌우될 것이다.

‘자연적 자산’에 대한 과세정책의 세번째 중요한 분야에 분석이 가해질 때 궁핍화효과에 관한 흡사한 결론들에 도달한다. 이하 토의될 이유에서 이 분야는, 화폐소득 및 사적 부에 대한 과세의 두 전통적 분야 다음으로 기회균등화의 제목하에 그동안 보다 유명해져 왔다. 생활 속에서의 위치가 전적으로 화폐적 소득, 또는 비생산적으로 사용된 재화들의 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화폐나 기타 교환재의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중요하며, 추가적 소득을 가져다 주는 다른 것들, 즉 좋은 가정, 교육, 건강, 훌륭한 용모 등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들 비교환성의 재화를(그로부터 심리적 소득이 얻어질 수 있는) ‘자연적 자산’이라고 부르려 한다. 평등주의적 이상에 의하여 인도된 재분배적 사회주의는 또한 그와 같은 자산에 존재하는 차이 때문에 구애받는다. 따라서 이들 차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들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들 자산은 비교환성의 재화들이므로 쉽게 몰수되어질 수 없으며, 거기에서 발생되

는 수입을 재분배할 수도 없다. 예로서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파괴하여 그들을 병자와 똑같이 되게끔 만드는 것에 의하여, 또는 잘생긴 사람들의 얼굴을 망가뜨려 행운이 덜한 못생긴 친구들과 똑같이 보이게끔 만드는 것에 의하여, 보다 높은 소득의 사람들의 자연적 자산으로부터 얻는 비화폐적 소득을 보다 낮은 소득의 사람들의 수준으로 직접 감소시킴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별로 실제성 있는 일이 되지 못한다.¹²⁾ 따라서 사회민주적 사회주의가 ‘기회의 균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주창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자연적 자산에 대한 과세이다.

건강과 같은 어떤 자산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비화폐적 소득을 얻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추가적 과세의 대상이 되며, 이는 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이 세금은 해당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게(낮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은 보상하는 데 돕도록 재분배된다. 예로서 추가적 세금이 건강한 사람들에게(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데 돕도록), 또는 잘생긴 사람들에게(못생긴 사람들의 정형외과 수술비용을 지불하는 데 돕도록, 또는 스스로 대포 한잔 사 마셔 자신들의 불운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부과된다.

그와 같은 재분배적 계획의 경제적 결과들은 분명하다. 예로서 건강으로 대표되는 심리적 소득이 상당한 생산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드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생산적인 역할에서 비생산적인 역할로 변경할 수 있다. 혹은 그들의 생산적인 노력을 다른 비과세된, 또는 덜 무겁게 과세된 비교환성이나 교환 가능한 재산들의 생산계통으로 쏟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개인건강

12) ‘미국장애인사위원회의 부당한 경계하에’ 감독을 받는 정책실행의 가상적 이야기는, K. Vonnegut, “Harrison Bergeron”, *Welcome to the Monkey House*, New York, 1970에서 소개되고 있다.

의 생산에 드는 증가된 비용 때문에 그렇게 할(변경하거나 쏟을) 것이다. 문제의 부의 전체적 생산은 떨어질 것이며, 즉 건강의 일반적 수준은 감소될 것이다. 지능과 같은 진정으로 자연적인 자산과 더불어 어도(사람들이 명백히 그에 대하여 거의,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인되고 있는) 같은 유형의 결과들이 단지 한 세대가 경과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일어날 것이다. 지능있게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지능이 없게 되는 것이 덜 그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자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소득(모든 종류의)을 원한다고 할 때 지능있는 사람들이 자손을 생산할 인센티브는 낮아지며 지능이 없는 사람들의 그것은 높아진다.

유전학의 법칙에 따라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능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 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어떤 경우에도, 지능의 예에서 뿐만 아니라 건강의 예에서도 이는 사실인데, 화폐적 소득이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과세로부터 결과하는 것과 흡사한 경향이 발생할 것이다. 이는, 즉 화폐적 보수를 위한 노력을 줄이고 대신 점점 더 비화폐적 보수를 위한 생산적 활동이나 모든 종류의 비생산적 사업에 전념하게 되는 경향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시금 일반적 생활수준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사회민주주의형 사회주의의 결과들에 관하여 언급되어야 할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사회윤리적 구조에 대하여 멀지만 대단히 중요한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재분배적 정책을 도입하는 것의 장기적 효과들을 고찰할 때 가시화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러시아형태의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형 사회주의간의 차이는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주된 종류의 것(근본적 차이)이 아니라는 것은 결

코 놀라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상기되어야 할 것은, 전자(러시아형 사회주의)가 인격형태의 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이중의 것으로, 생산적 기술을 개발시키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재능의 개발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확하게 사회민주적 사회주의가 가져오는 전반적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민주적 사회주의가 일반의 눈에 띄지 않는, 그래서 과세가 미칠 수 없는 생산적 역할은 물론 비생산적 역할을 유리하게 하므로 인구의 성격이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 과정은 느린 것이 될 수 있으나, 재분배적 정책에 의하여 수립된 특이한 인센티브 구조가 지속하는 한 계속 작용할 것이다. 자신의 생산적 기술의 개발과 향상을 위한 투자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며, 이의 결과로 사람들은 생산하거나 계약하는 것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과세의 정도가 상승하고 과세된 소득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는 확실적이고 평범한 인격을 발전시켜 가려고 할 것이다(적어도 공적 등장에 관한 한 동시에 이와 함께 사람들의 소득이 정치에 의해서도 좌우되므로). 즉 조세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의 결정에 의하여(그것은 분명히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한 사람의 의사를 저항하는 다른 사람의 의사 위에 세워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소득이 정치에 보다 의존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보다 정치화(politicalize)해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비계약적 방식으로), 또는 그와 같은 착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대가로 개인적 이득을 달성하기 위한 그들의 특별한 재능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야 될 것이다.

두 형태의 사회주의간의 차이는 (오로지) 다음 사항에 놓여 있다. 즉 러시아형태의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들에 대한 사회의 관장 과, 이에 따라 그 수단들과 더불어 생산된 소득에 대한 사회의 관장이 완전하다. 따라서 사회의 정치화(politicalization of society)의 적절한 정도에 관한 정치적 논쟁에 몰두할 더이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가 결정되는데(논의범위의 다른 끝쪽에서 결정되듯이), 순수한 자본주의하에서는 정치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으며 모든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적이다.

반면에 사회주의적 사회주의하에서는 사적으로 생산된 소득에 대한 사회의 관장이 실제에 있어서는 단지 부분적이다. 증대된, 또는 완전한 관장은 단지 개인생산자들의 머리 위에 드리울 잠재적 위협을 주는 아직 실제화되지 않은 사회의 권리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전부 과세될 것이라는 위협과 더불어 생활한다는 것이 차라리 실제로 그렇게 과세되어지는 것보다 더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의 그의 일반적 발전이 점점 더 정치화되어 가는 성격을 띠게 한다는 흥미로운 특징을 설명해준다.

그것은 왜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정치화의 유형이 러시아형태의 사회주의하에서의 그것과 다른지를 설명해준다. 후자하에서 사회적으로 소유된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토의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비생산적으로 쓰여진다. 전자하에서도 틀림없이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소득 가운데 사회적으로 관리된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크거나 작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싸움에 시간과 노력이 사용된다. 이 문제가 일단 확정되어 버린 생산수단들이 사회화된 제도하에서는 이 경우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공적 생활로부터의 사퇴, 사직, 그리고 냉소주의가 관찰된다.

반면에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에서는 그 문제가 아직 열려 있고, 생산자 및 비생산자 할것없이 과세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킴에 의하여 그들의 지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부 희망을 아직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사생활주의화를 덜 가지게 되고, 대신 사람들은 사적으로 생산된 소득에 대한 사회의 관장을 증대시키는 것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정치적 선동에 활성적으로 보다 관여하게 된다.¹³⁾

설명된 두 형태의 사회주의간의 이와 같은 구체적 차이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 유사성과 함께 이제 과제는 비생산적인 정치화된 인격형성으로의 일반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일부 보완적 세력에 대한 간명한 분석을 제시하는 일을 남겨두고 있다. 이것들은 소득분배의 바람직한 패턴을 찾는 몇몇 상이한 접근에 의하여 초래된다.

러시아형 및 사회민주적 사회주의는 모두 사회적으로 권장될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러시아형태의 사회주의에서 그것은 관리자 경제에 있어서 각종의 지위에 임명된 개인들에게 급료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재분배적 사회주의에서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원칙적으로는 이를 수행할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겠는데, 두 유형의 사회주의의 평등주의적 철학은 사실상 그 가능한 선택옵션을 세 가지 일반적 형태로 축소시킨다.¹⁴⁾

13) 정치화현상에 관하여, K. S. Templeton(ed.), *The Politicization of Society*, Indianapolis, 1977 참조.

14) 평등에 관한 교조적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의 관심사에 관하여, S. Lukes, "Socialism and Equality", L. Kolakowski and S. Hampshire(eds.), *The Socialist idea*, New York, 1974; B. Williams, "The idea of Equality", P. Laslett and W. G. Runciman(eds.),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2nd series, Oxford, 1962 참조.

첫번째 접근은 모든 사람의 화폐적 소득을 다소간에 균등화시키는 방법이다(아마도 개인의 비생산적으로 사용된 부 또한). 교사들, 의사들, 건설노동자들 및 광부들, 공장관리자들 및 청소부들 모두는 거의 같은 급료를 받거나 적어도 차이가 상당히 축소된다.¹⁵⁾이 접근은 일할 인센티브를 가장 심하게 위축시키는 것임을 인식하는 데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나 대부분의 시간을 빈둥거리고 지내나 더이상 별차이를(급료의 관점에서 볼 때) 만들지 않

사회주의적 평등개념의 비평을 위하여, M. N. Rothbard, "Freedom, Inequality, Primitivism and the Division of Labor", K. S. Templeton(ed.), *The Politicization of Society*, Indianapolis, 1977; *Egalitarianism as a Revolt Against Nature*(title essay), Washington, 1974; H. Schoeck, *Envy*, New York, 1966; *1st Leistung unanstaendig?*, Osnabrueck, 1971; A. Flew, *The Politics of Procrustes*, London, 1980; *Sociology, Equality and Education*, New York, 1976 참조.

15) 전통적으로 이 접근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교조적 마르크스사회주의에 의하여 선호된 바 있다. "고타강령 비판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K. Marx, *Selected works*, vol. 2 London, 1942, p.566)에서의 마르크스의 유명한 언명인 "그의 능력에 따라 누구로부터도, 그의 필요에 따라 누구에게나 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가 그것이다. 그러나 경제현실은 러시아형 국가들로 하여금 실천에 있어서는 상당한 양보를 하게끔 요구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각종 직업에 있어서(대단히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으로 가정된) 화폐적 소득을 균등화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만들어졌으며, 경제의 진행을 유지하기 위하여(덜 눈에 띄는 것으로 가정된) 비화폐적 보상들(여행, 교육, 주택 및 쇼핑 등의 특권들)의 상당한 차별이 도입되어야만 했다.

그레고리 P. Gregory · 스투어트 R. Stuart(*Comparative Economic Systems*, Boston, 1985)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수입은 미국보다 동구 유고슬라비아 및 소비에트연방에서 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소련연방에서, 이는 1957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에트의 수입은 미국보다 더욱 불평등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형 국가들에 있어서 "자원들의 상대적으로 보다 큰 규모의 양이 시장외적으로 on an extra market bases 근거하여 제공되었다....." (p.502) 결론적으로 "소득은 국가가 비교적 작은 재분배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본주의국가들에 있어서 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 그런데 국가가 주요 재분배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 있어서도(영국, 스웨덴) 소득분배는 계획경제의 사회주의국가들(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에서 보다 약간 더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1966년의 소비에트연방은 그의 동구국가들보다 덜 평등주의적 소득분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504)

F. Parkin,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New York, 1971, 특히 Chapter 6, 참조.

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의 불효용(disutility)이 실제의 사실인 이상 사람들은 점점 더 빈둥거리고 지낼 것이며, 모든 사람이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평균소득은 상대적 측정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접근은 직장으로부터의 사퇴, 환멸감, 냉소적인 사고방식의 성향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며,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정치화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두번째 접근은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보다 온건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평균소득과 연결되고 있으나, 그 이하로 훨씬 떨어지게 된다.¹⁶⁾ 이것 또한 일할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데, 그들이 단지 최저수준을 약간 상회할 뿐인 생산소득을 갖고 있는 한 계적 소득생산자들일 경우, 이제 그들의 작업을 줄이거나 심지어 중지하고 대신 여가를 즐길 것이다. 따라서 최저소득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성향을 강하게 보일 것이다. 결국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최저선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저생존 급료의 지불이 가지게 되어 있는 특성들을 갖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시금 최저급료가 연결되어 있는 평균소득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도달되었을

16) 이 접근은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최근 들어 전문경제학자들로부터 널리 선전된 지지를 받았는데, 프리드만 M. Friedman의 ‘부의 소득세’ 제의(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1962, Chapter 12 참조), 롤즈 J. Rawls의 철학적 측면에서의 ‘차별원칙’과 더불어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두 저자들은 사회민주당의 지식인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프리드만은 오로지 최저소득을 충분히 높게 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특정지점에서 이를 설정하는 원칙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다.

롤즈는 ‘가장 혜택받은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개선할 때마다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끔 하는 것을 강제로 달성할 것을 원하였는데, 때로는 그의 평등주의와 더불어 너무 멀리 극단으로 간 것으로 나타난다(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1971, pp.60, 75ff, 83).

G. Schwan, *Sozialismus in der Demokratie. Theorie eine konsequent sozialdemokratischen Politik*, Stuttgart, 1982, Chapter 3. D, 참조.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물론 일할 인센티브는 첫째 계획보다는 둘째 계획하에서 보다 적은 정도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에 두번째 접근은 비교적 높은 정도의 활성화적인 정치화(그리고 사직 및 사퇴의 감소)로 인도할 것인데,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평균소득과는 달리, 최저소득이 고정되어진 그 수준은 완전히 주관적이며 임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며, 특히 영구적인 정치문제가 되기 쉽다.

의심할 필요없이 세번째 분배상의 접근이 선택되었을 때, 가장 높은 정도의 활성화적인 정치화가 이룩된다. 이의 목표는 사회민주주의에 점점 더 명성을 얻게 해주는 기회균등을 달성하는 것이다.¹⁷⁾¹⁸⁾ 그 상상은 재분배적 수단을 통하여 가능한 (소득)생활 속의 위치도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회가 동등해지는 상황을 창조하는 것이다(복권에서 어느 표도 당첨자나 낙첨자가 될 기회를 똑같이 갖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이에 더하여 복권게임의 진행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첨되지 않은 불운’(그것이 무엇이든간에)의 상황을 수정하는 데 돕는 어떤 교정적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물론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다. 알프스 산 속에 살고 있는 사람과 해변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기회를 균등화할 방법은 없다. 이에 더하여 교정적 메커니즘의 생각이 복권의 생각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 같다. 그럼에도 이 개념이 대중적 호소력에 기여하는 것은 정확하게 바로 이

17) 기회균등에 관한 사회민주적 성향을 띤 대표적 연구로서, 특히 교육에 관하여, C. Jencks, *Inequality*, London, 1973 참조. 점점 더 유명해진 기회균등화 사상은 또한 196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바 있는 ‘생활의 질’과 ‘사회적 지표들’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들의 홍수를 설명해준다. A. Szalai and F. Andrews(eds.), *The Quality of Life*, London, 1980 참조.

18) R. Merklein, *Griff in die eigene Tasche*, Hamburg, 1980; *Die Deutschen werden aermer*, Hamburg, 1982 참조.

높은 정도의 모호성과 혼동이다. 무엇이 기회를 조성하고, 무엇이 기회를 다르거나 같게, 보다 나쁘거나 좋게 만드는 것이며, 물리적 관점에서 균등화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기회들을 균등화시키는 데(알프스 해변가에서처럼) 얼마나, 그리고 무슨 종류의 보상이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당첨되지 않은 불운이고, 무엇이 교정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주관적 사안들이다. 그것들은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되며, 그것들 나름대로 변화하고, 게다가(만약 우리가 정말 기회균등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모든 종류의 이유들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모든 종류의 분배상의 요구의 무제한의 저수지가 존재한다.

이것은 특히 기회균등화는 화폐적 소득, 또는 개인의 부에 있어서의 차이들의 필요성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A와 B는 똑같은 소득을 가질 수 있으며 양자 모두 똑같이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A는 흑인이거나, 여자인거나, 시력이 나쁘거나, 텍사스 거주자인거나, 열 명의 자녀를 가졌거나, 남편이 없거나, 혹은 65세 이상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B는 상기와 아무것도 같지 않은 다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A는 생활 속에서 가능한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는 그의 기회는 B의 것보다 다르거나 아주 못하다고, 따라서 그는 이로 인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전에 똑같았던 그들의 화폐적 소득을 이제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B 역시 상기 언급된 기회의 평가를 그저 거꾸로 역순하여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 결과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정치화가 발생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공정하게 보이며, 생산자와 비생산자 모두가 전자는 방어적, 후자는 침해적 목적을 위하여 분배상의 요구들을 제기하고 파괴하고, 또 맞서는 역할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끔 내몰

아질 것이다. 분명히 이 활동은 여가적 활동에의 몰두처럼 비생산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역할과도 분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미 생산된 부의 새로운 생산은 물론 이의 방해받지 않는 향유를 실제로 교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회균등화 사상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하여 고취된 정치화만이 증대된 것은 아니다(일반적으로 사회주의에 의하여 수반된 수준 이상을 넘어서). 이것은 아마도 새로운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의 전통적인 마르크스형태와 대비한 가장 흥미로운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금 마르크스형태에 의하여 수반된 그런 종류의 정치화에 대하여 새롭고 다른 성격의 것이 존재한다. 어떠한 분배정책 하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증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통상적으로 이것은 그로부터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소득 및 부의 균등화의 제도하에서, 또한 최저소득정책의 제도하에서 사회생활의 정치화의 지지자들은 주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평균적으로 그들이, 특히 말하는 능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적어도 지적 정교함을 상당히 결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치들만든다. 보다 쉽게 말하면, 정치가 심지어 상당한 숫자의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자신들에게조차도 완전히 둔감하고 귀머거리가 되고 충격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기회균등화 사상을 채택함에 있어서 화폐소득과 부의 차이는 존재하도록 허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주 현저해지기도 한다. 만약 전자의 차이가 기회구조에 있어서의 일부 기본적인

격차를 보상해주도록 돕는 것에 의하여 이것(기회균등화 사상)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종류의 정치에 가진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두말할 필요없이 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우수한 화술을 구사하는 사람들이고, 기회들을 보다 낮거나 못한 것으로 명시하는 임무가 근본적으로 설득력있는 수사학적 능력에 달려 있으므로 이것은 정확하게 그들 류의 게임인 것이다. 따라서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정치화과정에서 떠받치는 지배적 세력이 될 것이다.

점점 더 사회주의 정당조직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들 계급 출신일 것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정치의 외관과 화술은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이다. 점점 더 지성화되고 그의 호소를 바꾸어가며 새로운 지지자 계급을 끌어모을 것이다.

이것으로 필자는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상기 이론적 고찰들의 타당성을 설명·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단지 몇몇 언급과 관찰만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설사 그것이 위에서 도달된 결론들의(그것들 나름대로 전적으로 전체의 사실성과 도출의 정확성에 좌우되는) 타당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행하게도 러시아형태의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동서 독일의 경우에서 존재하였던 것과 같은, 자본주의에 대비하여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의 운행을 설명해줄 수 있는 거의 완전한 준실험적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을 설명하는 일은 ‘기타 조건들이 분명히 같지 않은’ 명백하게 서로 다른 사회들의 비교를 포함하며, 따라서 어떤 원인들을 어떤 결과들에 간결하게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민주적 사회주의내에서의 실험들은 전혀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았으며, 사회민주적 사회주의로 확정적으로 분류되어질 수 없

는 정책들에 의하여 거듭 중단되기도 하였다. 혹은 그외에 애초부터 현실적으로 여러 다른 원인들과 결과들이 그렇게 서로 얽혀 있어 어느 정도의 특이성을 갖고 있는 어떤 이론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도출될 수 없게끔 정치적 절충의 결과로서 그렇게 서로 다른(심지어 일관성이 없는) 정책들과 혼합되어 있다. 이때 인과관계의 얽힘을 푸는 임무는 실험적으로 생산된 증거가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특유한 설득력을 결여한 채 다시 진정한 이론적 임무가 된다.

그럼에도 단지 보다 의심스러운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몇몇 증거가 존재한다. 첫째, 크게 전세계적 관찰수준에서 재분배적 사회주의가 가져온 상대적 궁핍화에 관한 그 일반적 이론은 생활수준이 서구에서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공동체(EC) 국가들에서보다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보다 높으며, 시간을 통하여 그래왔다는 사실에 의하여 설명·입증된다. 두 지역은 인구규모, 인종구성과 문화적 다양성, 전통과 전송, 또한 부존자원과 관련하여 대체로 비교가 되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보다 자본주의적이며 유럽은 보다 사회주의적이다.

어느 불편부당한 관찰자도 이 점, 특히 국가지출의 GNP 대비 %와 같은 전세계적 측정이 가리키는 점을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대체로 서구에서 약 50% 이상인 것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대체로 35%이다. 또한 유럽국가들이(특히 영국) 역사가들에 의하여 거듭 고전적 자유주의 시기로 기술되는 19세기에, 대조적으로 사회주의와 국가통제주의 시기로 규정되어지는 20세기에서 보다 인상적인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는 것도 상황설명에 들어맞는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 이론의 타당성은 유럽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와 같은 일부 태평양연안 국가들에 의하여 점차

경제성장률에서 추월당해 왔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설명·입증된다. 한편 후자는 비교적으로 보다 자본주의적 과정을 택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대체로 같은 경제개발의 기초를 가지고 출발한 인도와 같은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생활수준을 달성하였다.

이제 보다 구체적인 관찰로서, 포르투갈의 최근의 경험을 보자. 포르투갈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폐쇄시켜 놓은 보수적 사회주의(이 형태의 사회주의에 관하여 다음 장 참조)의 전제적專制的 살라자르Salazar정권은 1974년 재분배적 사회주의(국유화의 요소들을 포함하는)의 붕괴에 의하여 대체되었는데, 그 이후 생활수준은 한층 더 떨어져 이 나라를 문자 그대로 제3세계 지역으로 바꾸어놓았다. 또한 미테랑 정권하의 프랑스의 사회주의 실험을 들 수 있다. 이 정권이 만들어낸 경제사정의 즉각적인 악화는 것처럼 현저한 것이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실업의 심각한 증가와 반복적인 통화가치의 평가절하였음) 2년도 채 못되는 사이 정부에 대한 일반의 지지의 급격한 감소는 정책의 역전을 가져왔으며, 불과 수주일 전에는 그의 가장 소중한 신념으로 주장되어 왔던 것의 완전한 부정이 되는 희극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교시적인 사례가 이번에는 서부독일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1949년에서부터 1966년 기간 동안 시장경제의 원칙들에 주목할 만한 공약을 제시했던 자유주의적 보수정부가 존재하였다. 설사 애초부터 상당한 정도의 보수적 사회주의의 요소들이 혼재해 있었으며, 이들 요소들이 시간을 통하여 보다 중요성을 차지하였을지라도, 모든 주요 유럽국가들 가운데 서독은 이 기간중 상대적 관점에서 확실히 가장 자본주의적 국가였다. 따라서 이의 결과는 그의 모든 이웃나라들을 능가하는 성장률과 더불어 유럽의 가장 번영하

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1961년까지 수백만의 독일 피난민들과 이후 남부 유럽국가들로부터 수백만 외국노동자들이 그의 확장해가는 경제 속에 융합해 들어왔으며, 따라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짧은 전환기를 거친 후 1969년부터 1982년 사이(거의 똑같은 기간폭) 사회민주적으로 인도된 사회주의적 자유주의정부가 집권하였다. 정부는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을 증가시켰으며, 공무원 수를 증가하고, 기존 사회계획들에 추가적 조세기금을 쏟아넣고 새로운 계획들을 창설하였다. 또한 모든 종류의 소위 ‘공공재’에 지출을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기회를 균등화하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적자지출과 예기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케인지안 정책의 수단에 의존하여 보다 무겁게 과세된 생산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한 비생산자를 위한 사회적으로 보장된 최저준비금의 인상이 야기할 효과들은 몇 년 동안 지연될 수 있었다(전 서독 수상 헬무트 슈미트의 경제정책의 표어는 ‘5%의 실업보다 차라리 5%의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러나 예기되지 않은 인플레이션과 신용확장이 호황에서 대표적 인 파투자나 차라리 잘못된 투자를 만들어내고 연장시킴으로써 그 효과는 얼마 후 단지 보다 심각해졌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5%보다 훨씬 높은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업 또한 꾸준히 상승하여 10%에 접근하였다. GNP성장은 점점 완만해져 마침내 동기간의 마지막 몇 년 사이에는 절대적 측정으로 실제로 떨어졌다. 확장하는 경제가 되는 것 대신 고용된 사람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점점 더 외국노동자들로 하여금 독일을 떠나도록 하는 압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동시에 입국이민 장벽은 일찍이 없었던 수준으

로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지하경제의 중대성이 점차 커졌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협의로 정의된 경제적 유형의 보다 확증적인 효과들이었다. 거기에는 상이한 종류의 다른 효과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실제보다 지속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들이었다. 새로운 사회주의적 자유주의정부와 더불어 기회균등화 사상은 이념적 전면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예기되었던 바, 그것은 특히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정도의 정치화로 인도한 사상, 즉 ‘좀더 민주주의의 모험을 무릅쓰지(mehr Demokratie wagen; risk more Democracy)’의 공식적 전수였다. 이는 최초 신(벨리 브란트)시대의 가장 대중적 슬로건의 하나였다. 모든 종류의 요구가 기회균등의 이름으로 제기되었으며, 유아에서 노령에 이르기까지, 여가에서 노동조건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된 기회들이 상이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차이의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점검되지 않은 생활분야는 없었다.

놀랍지 않게도 그와 같은 기회들과 그와 같은 차이들이 끊임없이 발견되었으며,¹⁹⁾ 따라서 정치의 영역이 거의 매일같이 확장되는 것으로 보였다. ‘정치적인 것이 아닌 문제는 없다’라는 소리가 점점 더 자주 들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에 한발 앞서 있기 위해서는 집권정당들도 변화해야 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블루칼라 노동자의 당인 사회민주당은 새로운 이미지를 발전시켜야 했다.

기회균등화 사상이 기반을 획득함에 따라 그것은 점점 더 예기될 수 있는 바, 인텔리겐차, 사회과학자 및 교사들의(행동이 아니라 말의)

당이 되었다. 정치화과정이 주로 그의 분배상의 계획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떠받쳐질 것이라는 점과 기회를 정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임의적이며 화술의 힘에 좌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새로운’ 정당은 작동하기 시작한 가장 다양한 정치적 에너지를 무엇보다도 교육기회를 균등화하는 분야에 쏟아넣는 것을 그의 핵심적 관심사들로 만들었다. 특히 그들은 각급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큰 집단의 학생들에게 이들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돈까지 주어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기회를 ‘균등화’시켰다.

이는 교육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수요를 증가시켰음은 물론인데, 그들의 급료지급은 의당 세금에서 나와야 했다. 이는 교육기회의 균등화는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로의 소득의 이전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장한 사회주의정당에게는 약간 아이러니컬한 것인데, 사실상 덜 지능있는 사람의 상보하는 소득감소를 대가로 하여 보다 지능있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보조금이 되는 셈이다. 또한 하위계층에서보다 중상위 사회계층에서 보다 많은 수의 지능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이는 말하자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불된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금이 되는 셈이다.²⁰⁾

증가된 수의 학생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증가된 수의 교육자들(세금으로 급료가 지불됨)에 의하여 인도된 이와 같은 정치화과정의 결과로 사람들의 정신상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예기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점점 더 모든 종류의 요구를 정치적 수단을 통하여 충족시키는 것과 형편이 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사람들 및 그들의 재

19) 대표적 예로서, W. Zapf(ed.), *Lebens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Frankfurt/M., 1978 참조.

20) 이에 관하여, A. Alchian,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Free Tuition”, *Economic Forces at Work*, Indianapolis, 1977 참조.

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로 간주되었다. 이 기간 동안 성장한 전체세대에 있어서 생산적인 노력에 의하여, 또는 계약하는 것에 의하여 자신의 몫을 개선시킬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점점 덜 당연시되었다. 따라서 재분배적 정책에 의하여 피할 수 없게 된 실제의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덜 된 셈이었다. 이는 오랫동안 그 동일한 정책이 이제 가장 긴급하게 필요되는 기술과 재능을 약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1982년에 사회주의적 자유주의정부가 주로 명백하게 형편없는 경제실적 때문에 축출되었을 때 일반적 여론은 여전히 그 위기는 그의 원인들(비생산자들, 또는 비계약자들을 위한 과도한 최저준비금)을 제거하는 것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대신 또다른 분배적 조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고용된 사람들과 실직된 사람들간에 가용한 근로시간을 강제로 균등화시키는 것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신에 따라 새로운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정부는 실상 과세의 성장률을 완만하게 하는 것 이상은 하지 않았다.

제5장

보수주의의 사회주의
The Socialism of Conservatism

앞의 두 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그 자체로 확인된, 그리고 틀림없이 기본적으로 같은 이념적 원천에서 도출되고 있는 사회주의 유형들이 토의되었다. 즉 동구블럭의 공산주의국가들에 의하여 가장 뚜렷하게 대표된 러시아형 사회주의와 서구의 사회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속에 가장 전형적인 대표자들을, 그리고 보다 약한 정도에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 속에도 대표자들을 갖고 있는 사회민주적 사회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의 정책계획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재산법칙들이 분석되었으며, 그 사상(재산관)은 러시아형, 또는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의 재산 원칙들이 여러 다른 정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모든, 또는 단지 몇몇 생산수단들이 사회화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소득 및 거의 모든 형태의 소득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재분배할 수 있고, 단지 몇몇 형태의 소득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론적 수단에 의하여 덜 엄격하게 몇몇 설명적 실증적 증거를 통하여 예시된 바와 같이, 이들 원칙에 일단 집착하고 소유자권리가 비생산자(비사용자) 및 비계약자에게 속한다는 생각을 영영 포기하지 않는 한 상대적 궁핍화의 결과는 필연적이다.

이 장은 보수주의, 즉 이것도 사회주의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보수주의도 또한 궁핍화를 낳을 것인데, 사회주의가 단호하게 적용될수록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러나 보수주의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 그 특이한 방식에 대한 체계적이며 상세한 경제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왜 보수주의가 진정 사회주의이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앞에서 토의된 바 있는 두 평등주의적 형태의 사회주의와 연관되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짚막한 역사적 고찰을 가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될 것이다.

개략적으로 말하여 18세기 이전에 유럽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봉건주의’, 실제로 보다 장대한 규모의 봉건주의였던 ‘절대주의’의 사회제도가 존재하였다.¹⁾ 봉건주의 사회질서는 어떤 영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이에는 그의 모든 자원들과 재화들을, 아주 흔히 그 위에 위치한 모든 사람도 포함하여) 지역 대군주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하지만 원래 그 자신이 그것들을 사용했거나 근로를 통하여 전용한 적이 없으며, 또한 그것들에 대하여 계약적 클레임을 가진 바도 없다. 반면에 그 영토는 보다 잘 표현하면, 그의 각종 부분들과 그 위에 있는 재화들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자연적 소유자들’)에 의하여 활성적으로 점유되고 사용되고 생산되어졌던 것들이다. 그러므로 봉건영주들의 소유권 주장은 무에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유자권리의 주장에 기초하는 관행(대군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해진 재화와 용역의 지불을 대가로 받고 자연적 소유자들에게 토지와 기타 생산요소들을 임대하는 것)은 이들 자연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사 귀족계급의 협력으로 잔혹한 무력과 군사적 폭력에 의하여 강제되어야 했다. 이들 무사 귀족계급은 그의 착취적 방법에 참여하고 수입의 분배몹을 나누어 받도록 허용되는 것에 의하여 대영주로부터 서비스의 대가를 보상받았다. 이와 같은 질서하에 예속된 평민들에게 있어서 삶은 곧 폭정, 착취, 경제적 침체, 빈곤, 굶주림, 그리고 절망을 의미하였다.²⁾

예기되듯이 이 제도에 대한 저항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1) 다음에 관하여 특히 M. N. Rothbar의 우수한 논문 “Left and Right: The Prospects for Liberty”, *Egalitarianism as a Revolt Against Nature*, Washington, 1974 참조.

2) 봉건제도의 사회구조에 관하여, M. Bloch, *Feudal Society*, Chicago, 1961; P. Anderson, *Passages from Antiquity to Feudalism*, London, 1974; R. Hilton(ed.),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London, 1978 참조.

것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기존질서로부터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라 봉건질서에 대한 선도적 반대자들이 되었던 일반상인들과 무역상들이었다. 그들이 행했던, 즉 한 곳에서 낮은 가격으로 사서 다른 곳에서 높은 가격으로 파는 일은 한 봉건영주에 대한 그들의 복종관계를 비교적 약화시켰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 봉건영토의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인’ 계급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상업을 영위하기 위한 안정되고 국제적으로 유효한 법률제도를 필요로 하였는데,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효하며 재산과 계약을 규정하는 법률제도를 필요로 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상거래에 필수적인 신용금융 및 보험제도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으레 이것은 각종의 임의적인 지역적 법률제도의 대표자들로서의 봉건영주들과 상인들간에 마찰을 야기시켰다. 상인들은 봉건제도의 버림받은 계층이 되었으며, 그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무사 귀족계급에 의하여 항상 위협과 시달림을 받았다.³⁾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인들은 스스로를 조직화하기에 이르렀고, 봉건권력의 중심부의 바로 가장자리에 요새화된 작은 거래소들을 설립하는 것을 도왔다. 부분적인 영토권 외의 최소한 부분적인 자유의 장소로서 그곳은 곧 봉건착취와 경제적 빈곤에서 도망쳐온 점증하는 수의 농민들을 끌어들여 작은 도회지로 성장하였고, 봉건질서 그 자체의 특징으로 가지는 착취와 법적 불안정의 환경 속에서는 등장할 수 없었던 수공업과 생산적 기업의 발달을 육성시켰다. 이 과정은 봉건권력이 비교적 약하고 권력이 다수의 흔히 대단히 작은 서로 반목하는 봉건영주들간에 분산된 곳에서 한층 뚜렷

3) H. Pirenne, *Medieval Cities. Their Origins and the Revival of Trade*, Princeton, 1974, Chapter 5, 특히 pp.126ff; M. Tigar and M. Levy, *Law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 1977 참조.

하였다. 자본주의의 정신이 최초로 꽃을 피우고 따라서 상업과 생산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곳은 북부 이탈리아의 도시들, 한자동맹의 도시들 및 플랑드르(Flanders)의 도시들이었다.⁴⁾

그러나 봉건제도의 제약과 정체로부터의 이 부분적인 해방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반동과 쇠퇴가 뒤따랐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상인계급운동 자체의 내부적 취약성에 기인하였다.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들에게 부여된 상이한 신분계급의, 권력의, 그리고 강압을 통하여 명령이 가해져야 하는 봉건적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따라서 신흥상업 중심부에 비계약적 규칙들과 제한들의 한 새로운 제도(이제 ‘부르주아’ 원류의 구성이 되는)가 곧 제정되었다. 또한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길드조합이 형성되고 새로운 상인 과두정치가 대두하였다.⁵⁾

4) 여러 민족주의적 역사가들이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과는 달리 상공업의 부흥은 중앙정부들의 약화에 의하여, 즉 근본적으로 봉건제도의 무정부주의적 성격에 의하여 야기되었다는 것은 강조할 가치가 있다. 이 통찰력은 J. Baechler, *The Origins of Capitalism*, New York, 1976, 특히 제7장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시장의 끊임없는 확장은 그 범위와 심도에 있어서 서부유럽 전역에 걸치는 정치적 질서결여의 결과였다.”(p.73)

“자본주의의 확장은 그의 기원과 존재이유를 정치적 무정부상태에 두고 있다…… 집산주의와 국가관리는 단지 학교교과에서만 성공하였다(교과서들이 콜버트주의(Colbertism), 즉 중상주의정책에 주고 있는 호의적 평가에 주목할 것).”(p.77)

“모든 권력은 절대권자에게 향해 있다. 만약 절대적 권력이 아니라면, 이는 어떤 제약들이 작용되었기 때문이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제약들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는 본인이 생각하건대 국제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외적으로 행동할 권력의 제약과 항상 존재하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의 위협(다국화제도의 두 특징들은 권력이 국내적으로도 제약되어 있고, 그들은 의사결정의 자치적 중심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이것들(권력)을 단지 절약해서 사용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p.78)

자본주의의 출현을 위한 생태학적 인구학적 압력들의 역할에 관해, M. Harris, *Cannibals and Kings*, New York, 1978, Chapter 14 참조.

5) 이에 관해 아주 열의있는 설명이 주어지고 있다. H. Pirenne, *Medieval Cities*, Princeton,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진행과정 속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었다. 여러 봉건영주들의 착취적 간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 속에서 상인들은 자연발생적인 동맹자를 찾아야 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로 이들은 봉건영주 계급출신 속에서 그와 같은 동맹자를 찾았는데, 이들은 그들의 다른 귀족친구들보다 비교적 강력하나 그들의 권력중심부를 원조를 청하는 상업 도회지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갖고 있었다. 그들은 상인계급과 제휴하여 다른 소영주들을 희생시키면서 현재의 영역을 넘어 자신들의 노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⁶⁾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융성하는 중심도시들에 봉건제하의 신하들에게 가해지는 ‘통상적인’ 의무로부터 면책특권을 부여 해주었으며, 따라서 부분적인 자유의 장소로서의 그들의 존재를 보증해주고, 이웃 봉건세력들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었다. 그러나 그 연합이 지방영주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성공하고, 상업도시들의 ‘외부의’ 봉건동맹자가 이에 따라 자신의 전통적인 영토 밖에서 실질적인 세력으로 구축되자마자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자신을 봉건 초강대세력으로, 즉 이미 존재하는 봉건적 도시들 위에 자신의 독점적인 통치권을 내리 가하는 왕을 가진 세습군주국을 수립하였다. 절대주의가 탄생된 것이었다. 이는 대규모

1974, pp.208ff 참조.

6) 이 제휴에 관하여, H. Pirenne, *Medieval Cities*, Princeton, 1974 참조.

“대 봉건제도의 반대자들을 지지하는 것은 군주제로서는 명백한 이익이었다. 그들의 영주들에 반항하여 봉기함에 있어서 사실상 국왕의 대권을 위하여 싸웠던 이들 중간계급들에게 의무적으로 구속됨 없이 도울 수만 있다면 항상 도움을 제공하였다. 그들 싸움의 증거자로서 왕을 수락한다는 것은 분쟁 당사자들에 대하여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왕권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의 이익을 위하여 애쓴 바 있는(의도적으로 그러할 생각이 없이) 지방자치체들에 호의를 나타낼 모든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pp.179~80, p.227f 참조)

의 봉건제도의 아무것도 아니므로 경제적 감퇴가 다시 시작되고 도회지들은 와해되었으며, 침체와 비참함이 되돌아왔다.)

그런데 봉건제도가 진짜로 맹렬한 공격을 받은 것은 17세기말, 18세기초 이전까지는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 공격은 실무종사자들(상인들)이 실제 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대적 자유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층 심각하였다. 이는 점차 봉건제도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이념적 싸움이 되었다. 한때 경험한 적이 있는 상업과 산업의 융성과 쇠퇴의 원인에 대한 지식인들의 심사숙고와 국제적 상법을 발전시키고 이에 맞서는 봉건법률의 주장에 대항하여 이를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상인들의 투쟁과정 속에서 재발견된 바 있는 고대 로마, 특히 자연법Natural Law에 관한 보다 집중적 연구는 자유의 개념에 대한, 경제적 변영으로 가는 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로 인도하였다.⁸⁾

J. 로크J. Lock의 『정부에 관한 두 논문』(1688년)과 A. 스미스A. Smith의 『국부론』(1766년)과 같은 저작들에서 절정에 달했던 이들 사상이 전파되고 꾸준히 확장되어 광범위한 계층의 마음을 사로잡게 됨에 따라 구질서는 적법성을 상실하였다. 봉건적 속박에 갇힌 구식의 사고방식은 점차 계약적 사회사상에 길을 내주었다. 마침내 일반여론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변화하는 상황의 밖으로의 표출로서 1688년의 영국의 명예혁명, 1776년의 아메리카혁명, 그리고 1789년의 프랑스혁명이 등장하였다. 이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하였다. 이 혁명들은 구질서가 극복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결연히 입증하였으며, 자유와 변영의 길을 향한 가일층의 전진을 위한 새로운

7) P. Anderson, *Lineages of Absolutism*, London, 1974 참조.

8) L. Tigar and M. Levy, *Law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 1977 참조.

희망에 불을 붙였다.

이들 지축을 뒤흔드는 사건들을 발생시킨 그 이념적 운동을 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이들 혁명으로부터 등장하였으며, 그후 반세기 이상 서부유럽을 지배하는 이념적 세력이 되었다. 그것은 자유를 옹호하는, 점유와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재산을 옹호하는 정당이었으며, 국가에 대해서는 단지 이들 자연법규들의 집행자로서의 역할만을 부여하였다.⁹⁾ 아직 도처에 남아 있는 봉건제도의 잔재들과 더불어 그들의 이념적 기초에 아무리 흔들림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내부적 및 외부적으로, 즉 대외문제 및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내문제 및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더 자유화되고 규제에서 벗어난 계약화된 사회를 대표하는 정당이었다.

자유주의사상의 압력하에서 유럽사회들이 점차 봉건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 감에 따라 그것은 이 자유화과정에 영향받은 산업혁명의 정당이 되기도 하였다. 인류가 이전에 경험한 바 없는 속도로 경제개발이 시작되었다. 공업과 상업이 번성하고 자본형성과 축적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모든 사람의 생활수준이 즉각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으나 점증하는 수의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봉건제도하에서 경제적 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굶어죽었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생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인구성장이 자본성장률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이제 모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활수준의 향상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¹⁰⁾

9) L. v. Mises, *Liberalismus*, Jena, 1929; E. K. Bramsted and K. J. Melhuish(eds.), *Western Liberalism*, London, 1978 참조.

10) F. A. Hayek(ed.), *Capitalism and the Historians*, Chicago, 1963 참조.

보수주의의 현상을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서,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기원하는 두 형태의 사회주의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이다(물론 다소 간략화되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의 전진에 의하여 제기된 도전에 대한 이념적 반응인데, 자유주의와 봉건주의(자유주의가 파괴하고자 도운 구질서)에 대하여 취한 그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 자유주의의 전진은 그 범위와 변화에 있어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속도로 사회변동을 자극하였다.

사회의 자유화는 점점 더 오로지 자발적 소비자들의 가장 긴급한 필요에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의하여, 그리고 생산요소들의, 특히 노동의 고용에 있어서 전적으로 계약적 관계에 의거하여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획득한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무력에 의하여 지탱된 제국들은 이 압력하에서 무너질 것이다.

이제 생산구조가 점점 더 그에 적응해가야 될(그러나 역순으로는 불가) 소비자요소가 항상 변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의 출현이 점점 더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그것이 최초의 전용 및 계약의 결과인 한에 있어서) 소득과 부의 위계 피라미드 속에서 어느 누구의 상대적 지위도 더 이상 안정된 것이 아니다. 대신 특정한 요소소유자들, 특정한 노동 서비스 소유자들 어느 누구도 각기의 수요변화에 더이상 면역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승 및 하락의 사회적 변동성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들(요소소유자들)에게 더이상 안정적 가격이나 안정적 소득은 보장되지 않았다.¹¹⁾

11) 자본주의의 사회적 동학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원한에 관하여, D. Mc. C. Wright, *Democracy and Progress*, New York, 1948; *Capitalism*, New York, 1951 참조.

구마르크스주의와 신사회민주적 사회주의는 이와 같은 변화, 불확실성 및 변동성의 도전에 대한 평등주의적 진보적 대답이다. 자유주의와 같이 그들도 봉건주의의 파괴와 자본주의의 전진을 환호하였다. 그들은 착취적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경제에 엄청난 개선을 만들어낸 것이 자본주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져온 생산적 힘의 개발은 사회주의를 향해 가는 필수적이며 실제적인 발전적 단계라고 이해하였다.

사회주의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번영이라는 동일한 목표들을 자유주의와 함께 나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그것은 사회구조 속에 방금 언급한 변화, 변동성, 불확실성 및 불안을 야기시키는 개인경제자들의 생산의 부정상태이다)를 그의 발전의 최고단계에서 이와 같은 변화에서 연유하는 불안정이 각 개인수준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된 경제로 대체하는 것에 의하여 자유주의가 이룩해놓은 것을 보다 개선하리라고 가정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물론 앞에서의 두 장들이 충분히 예시·설명한 대로 이것은 혼동된 생각이다. 미래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은 정확히 재분배적 조치를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에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소비자평가의 관점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고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한 사람에 의한 정부가 증대하게 된 것은 정확하게 하나의 계획이 많은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계획들을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수주의는 자유화된 사회에 의하여 태동된 동태적 변화에 대한 반평등주의적 반동적 대답이다. 그것은 반자유적이며, 자유주의의 성취를 인정하기는커녕 봉건주의의 구제도를 정돈되고 안정

된 것으로 이상화하고 예찬한다.¹²⁾ 후기혁명적 현상으로서 이는 철저하게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주창하지 않으며, 어떤 변화는 설사 유감스럽다 할지라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수락한다.

그러나 상황이 뒤흔들리자마자 자유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자연적 소유자들에게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토지 등)을 상실한 바 있는 구봉건 세력들은 옛 위치로 복귀되었다. 그것(보수주의)은 결정적 공개적으로 재산, 부 및 소득의 기존의 고도로 불평등한 분배의 보존을 널리 선전한다. 그들의 이상은 가능한 한 완전하게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가져온 그 항구적 변화와 변동과정들을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것이며, 대신 모든 사람들이 과거가 그에게 부여했던 위치에 확고하게 남아 있는 정돈되고 안정된 사회제도를 재창설하는 것이다.¹³⁾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보수주의는 재산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취득 및 보유에 있어서 비계약적 수단의 적법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실제 그렇게 하였다. 소득과 부의 상대적 분배에 있어서 변화의 영속성을 가져온 것이 정확하게 계약적 관계에의 전적인 의존이었으므로 마치 봉건주의가 무력에 의한 재산 및 부의 취득과 관리를 인정한 것처럼, 보수주의는 사람들이 최초의 전용과 계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소득 및 부의 지위를 취득하였거나

12) 그들의 진보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좌파는 전적으로 봉건주의 과거에 대한 보수적 예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생산물로부터 생산자를 '소외'시키는 것(물론 그것은 노동분업에 기초한 시장제도의 정상적 결과이기도 하다)을 경멸하는 그들은 흔히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의 봉건정원을 편안하고 유익한 사회모델로 제시하였다. K.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New York, 1944 참조.

13) R. Nisbet, "Conservatism", R. Nisbet and T. Bottomore, *History of Sociological Analysis*, New York, 1978; G. K. Kaltenbrunner(ed.), *Rekonstruktion des Konservatismus*, Bern, 1978 참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관계에 관하여, F.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1960(Postscript) 참조.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무시한다. 대신 보수주의는 일단 수립된 소유자들 계급이 소득과 부의 사회적 사다리형 구조 속에서 그들의 상대적 지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사회적 변경도 정지시킬 권리를 가지는 것이 적절하며, 또한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사 생산요소들의 개개소유자-사용자들이 어떤 합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보수주의는 봉건주의의 이념적 상속자로 불리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봉건주의가 귀족적 사회주의aristocratic socialism(이의 상기 특성화로부터 충분히 분명해지는데)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수주의는 부르주아제도의 사회주의the socialism of the bourgeois establishment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평등주의적 및 보수주의적 형태의 두 사회주의가 이념적 반응이 되고 있는 자유주의는 19세기 중엽 그의 영향의 절정에 도달하였다. 아마도 그의 마지막이자 대단히 영예로운 성취들은 R. 콕덴R. Cobden과 J. 브라이트J. Bright, 그리고 반곡물법 동맹에 의하여 성취된 1846년의 영국에서의 곡물법 폐지와 유럽대륙에서의 1848년의 혁명들이다.

그러자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내부적 취약성과 비밀관성으로 인하여,¹⁴⁾ 여러 민족국가들의 제국주의적 모험이 가져온 방향전환과 분파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형태의 사회주의가 보안과 안정에 관한 여러 약속과 더불어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동태적 변화와 변동에 대한 혐오에 호소하고, 또 여전히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¹⁵⁾ 자유주의의 쇠퇴가 시작되었다. 사회주의는 점차

14) 자유주의의 비밀관성에 관하여 제10장 주 21 참조.

15) 통상적으로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양면적이다. 소비자로서의 역할로 볼 때, 변화는 보다 큰 선택의 다양성을 가져오므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본다. 반면에 생산자로서의 역할에서 볼 때, 안정성을 우려하는데, 이는 변화된 환경들에 계속적으로 적응하도록 생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사회주의의 안정화 계획들과 약속들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주로 생산자들인데, 이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을 해치는 일이

지배하는 이념적 세력으로서 그자리에 대신 들어섰으며, 이에 의하여 자유화과정을 역행시키고 다시금 사회에 점점 더 비계약적 요소들을 부과하였다.¹⁶⁾

여러 시기와 장소에서 여러 형태의 사회주의는 여러 다른 정도로 일반여론의 지지를 얻었으며, 따라서 오늘날 그의 모든 흔적이 도처에서 여러 다른 정도로 공존하고 있고, 또한 생산과정, 부의 유지, 성격형성에 관하여 궁핍화효과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특히 이는 자주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보수적 사회주의의 영향이다. 만약 오늘날 서구유럽의 사회들이 사회주의적이라고 기술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주의적 이상의 영향에 기인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보수주의적 사회주의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흔히 인식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 보수주의가 그의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특이한 방법이다.

보수주의는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은 물론인데, 특히 봉건적 과거가 결코 완전하게 털어버려지지 않았고, 게다가 많은 수의 봉건잔재자들이 자유주의의 최성기에도 살아남은 바 있는 유럽과 같은 사회들에서 그러하다. 보수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또한 대단히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단지 현상유지에 의

될 것이다. D. Mc. C. Wright는 *Democracy and Progress*, New York, 1948, p.81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유와 과학으로부터 급속한 성장과 변화가 왔다. 급속한 성장과 변화로부터 불안정이 왔다. 불안정으로부터 성장과 변화를 종식시킨 요구들이 왔다. 성장과 변화의 종식은 과학과 자유를 종식시켰다.”

16) 자유주의와 그의 쇠퇴 및 사회주의의 융성에 관하여, A. V. Dicey, *Lectures on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Public Opinion in England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1914; W. H. Greenleaf, *The British Political Tradition*, 2 vols., London, 1983 참조.

하여, 그리고 오래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일처리를 계속하는 것에 의하여 그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체적으로 보수적인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어떻게 상대적 궁핍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 문제와 더불어 보수주의와 그의 경제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눈을 돌리고자 한다. 보수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재산법칙들에 대한 이론적 특성화와 재산의 자연이론의 관점에서의 이들 법칙들에 대한 설명은 다시금 출발점이 될 것이다. 두 개의 그와 같은 법칙들이 존재한다.

첫째, 보수적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처럼 개인재산을 불법화하지 않는다. 아주 반대로 모든 것(모든 생산요소들과 모든 비생산적으로 사용된 부)은 다시금 교육, 교통 및 체신, 중앙금융, 보안생산과 같은 분야의 예외만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사적으로 소유, 판매, 구매, 임대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둘째로, 어떤 소유자도 그의 재산의 전부와 이의 활용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없다. 대신 이의 일부는 현재의 소유자들과 소득수혜자들로 구성되는 사회에 귀속되는데, 사회는 현재와 미래에 생산된 소득과 부를 기존의 소득 및 부의 상대적 분배가 보전되는 방식으로 각 개인구성원들에게 분배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게 관리될 소득 및 부의 몫이 얼마나 크거나 작아야 할 것인가를, 주어진 소득 및 부의 분배를 보전하는 데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의 권리가 된다.¹⁷⁾

17) 보수주의의 특성화 또한 이상적 형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언급해야겠다(제3장 주 2 및 제4장 주 8 참조). 이는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사회정책들이나 운동들에 자신들을 결부시키거나 분리시킴에 있어서 수락하거나 기각하는 생각들을 재현하기 위한 시도이다. 여기에서, 그리고 앞으로 기술될 보수주의정책은 유럽에서 '보수주의

재산의 자연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보수주의의 재산제도는 다시 자연소유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할 수반한다. 사물의 자연소유자들은 그들이 타인의 재산의 물리적 보전(physical integrity)을 불청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한 그것과 더불어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예상되는 수요의 변화에 적응하고 재산의 가치를 보전하거나 가능하면 고양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변경시키거나, 다른 용도에 그것을 사용할 그들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또한 예상되지 않은 수요의 변화(즉 그들에게 행인을 의미하는 그들이 예기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증가된 재산가치의 혜택을 사적으로 거둬들일 권리를 그들에게 준다.

그러나 동시에 재산의 자연이론의 원칙들에 따르면 모든 자연소유자는 단지 재산권에 대한 물리적 침략, 비계약적 취득 및 이전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으므로, 이는 또한 모든 사람이 수요의 변화를 통하여, 다른 소유자들이 그들의 재산과 더불어 수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의 가치가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적'이라고 이름붙여진 사상의 기본적이며 통일된 이념적 힘의 정당한 재현이라고 언급될 수 있다. 한편 '보수주의적'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흔히 좌파-자유주의적(사회)-민주당이 아닌 사람 모두를 보수주의자라고 이름붙이고 있다. 이 용어와 비교하여 우리들의 보수주의적이라는 용어는 훨씬 더 협의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념적 현실에 입각하고 있다.

'자유주의적'(미국적 의미에 있어서)이 아닌 모든 것을 '보수주의적'이라고 이름붙이는 것은, 미국에서 존재하는 자유의지론자들(재산의 자연이론에 기초하는 순수자본주의적 질서의 주창자들로서)과 순수보수주의자들(W. Buckley로부터 I. Kristol에 이르기까지 유명무실하게 사유재산제도를 환호하고,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평화적 경쟁과정 속에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항상 개인소유자들의 권리를 무시해버리는)간에 존재하는 근본적 이념적 차이들을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점에 있어서 부분적 일치에도 불구하고 얼버무리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업무분야에 있어서도 그들은 침해적 간섭주의정책의 추장을 통하여 똑같이 개인재산권의 불인정을 나타냈다. 자유의지주의와 보수주의의 극명한 차이에 관하여, G. W. Carey(ed.), *Freedom and Virtue. The Conservative/Libertarian Debate*, Lanham, 1984 참조.

항상 영구적으로 감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아무도 그의 재산의 가치를 소유하지 않으며, 따라서 누구도 어느 때고 그의 재산가치를 보존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이와 대비하여 보수주의는 정확하게 가치 및 그들의 상대적 분배의 보존이나 복구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은 물론 재산권리의 부여에 있어서의 재분배가 일어날 때에만 가능하다. 어느 누구의 재산 가치도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재산과 더불어 수행된 자기 자신의 행위에 좌우되고 있지 않으므로, 또한 피할 수 없게 그러한데, 타인이 그들 자신의 관장하에 있는(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장이 미치지 않는) 희소수단들과 더불어 수행된 행위에 의하여서도 좌우되고 있으므로, 주어진 재산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어떤 단 한 사람, 또는 어떤 사람들의 그룹) 모든 희소수단들을 정당하게 소유해야 할 것이다(어떠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그룹에 의하여 실제로 관장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것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도 기존의 재산가치에 영향(증가, 또는 감소)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그룹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신체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보수주의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재산권리의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는 말하자면 희소자원들의 사용자-소유자들인 사람들로부터 유리시켜 현재 그것들(그것들의 활용이 주어진 가치들의 분배에 있어서 변경을 가져오게 한)을 사용하지도, 계약적으로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로의(과거 생산자들로서의 그들의 공과가 무엇이든간에) 재분배를 의미한다.

이것이 이해되면 보수주의의 일반적 경제적 효과에 관한 첫번째

결론이 얻어진다. 즉 자연적 소유자들의 소유물이 비사용자, 비생산자 및 비계약자의 이익이 되게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몰수됨에 따라 보수주의는 기존재산의 가치에 무엇인가 보탬을 주고자 하는, 그리고 수요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전자의 인센티브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수요의 변화를 감지하고 예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기존재산을 신속히 조정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적 노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저축과 투자를 행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상기의 그와 같은 행위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사적으로 전용될 수 없고 사회화될 것이므로 감소할 것이다.

(용용상의 차이를 감안하여) 그와 같은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들이 사적으로 전용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이도 또한 사회화될 것이므로 자기 재산의 가치가 현재수준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언제나 존재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인센티브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모든 활동들(위험을 피하는 일, 감지하는 일, 적응하는 일, 일하고 저축하는 일)은 비싸지며, 동시에 다른 대체적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예로서 여가와 소비를 위한) 시간과 다른 희소자원들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활동들은 점점 줄어들고 후자의 활동들(즉 여가와 소비)은 점점 늘어날 것이며, 이의 결과로 일반적 생활수준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가치를, 그리고 각 개인들간에 가치의 기존의 분배를 보존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의 목표는 오로지 신규로 생산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구재화들의 전체적 가치에 있어서 일반적이며 상대적 하락, 즉 사회적 부의 감소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달성될 수 있을 것임을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제분석의 관점에서 보수주의적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적 사회주의간에는 확연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두 형태의 사회주의는 재산권리의 재분배를 생산자들-계약자들로부터 유리시켜 비생산자들-비계약자들에게로 돌리고 있는데, 양자는 이에 의거하여 생산하고 계약하는 과정을 소득과 부를 실제로 취득하는 과정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양자는 소득과 부의 취득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만들고 있다. 말하자면 한 사람(사람들의 그룹)이 희소수단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다른 저항하는 사람들의 의사 위에 내리엿는 과정 속의 사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두 형태의 사회주의는 설사 원칙에 있어서는 비생산자들을 대신하여 생산된 모든 소득과 부의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나, 그들의 계획들이 점진적 방식으로 집행되고, 또 여러 다른 정도로 수행되어질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는 각기의 정책이 실제로 제정·수행되는 한,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상대적 궁핍화에 이르게 될 것이다.

보수주의와 사회민주적 사회주의로 명명되어 온 것과의 차이는 전적으로 그들이 생산자들로부터 비계약적으로 짜낸 소득과 부가 비생산자들에게 재분배되는 각기 다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이한 사람들에게, 또는 같은 사람들내의 상이한 성향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재분배적 사회주의는 부의 소유자들로서, 소득의 수혜자들로서 비생산자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성취와 상관없이, 소득과 부를 부여하거나, 심지어 현존하는 차이를 근절시키고자 한다.

반면에 보수주의는 비생산자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평등하지 않은 소득 및 부의 위치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며, 기존의 소득분배와 기

존의 소득차이를 안정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¹⁸⁾ 따라서 차이는 단지 사회심리적인 것으로, 여러 다른 분배패턴을 선호함에 있어서 그들은 여러 다른 비생산자들의 그룹에 특권을 부여한다. 재분배적 사회주의는 특히 비생산자들 가운데서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유리하게 하며, 특히 생산자들 가운데 가진 사람들을 불리하게 한다. 따라서 그것은 주로 전자 속에서 그의 지지자들을, 후자 속에서 그의 적대자들을 찾는 경향이 있다.

보수주의는 비생산자들의 그룹 속에서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데, 특히 생산적인 사람들 가운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에 손해를 준다. 따라서 그것은 전자의 계층 속에서 그의 지지자들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 후자의 그룹 속에 체념, 절망과 원한을 만연시킨다.

그러나 두 사회주의체제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흡사하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사회심리적 기초와 관련한 이들간의 차이는 여전히 그들 각기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틀림없이 이 영향은 생산자에 대한 몰수로부터 결과하는 (위에서 설명한 바 있는) 그들 양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 궁핍화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신 그들 각기의 분배상의 목표들에 도달하기 위하여 쓸 수 있는 구체적 수단들, 또는 기술들 가운데 사회민주적 사회주의가 한편에서, 보수주의가 다른 편에서 취하게 될 선택에 영향을

18) D. Mc. C. Wright(*Capitalism*, New York, 1951, p.198)는 좌파 자유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생산자들-계약자들에 대한 부분적 몰수를 함축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몰수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에 있어서 양자간의 차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사실상 이에 관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 및 보수주의자들간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양그룹은 각기 '극단주의자들'과 '온건주의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을 사회민주주의자들, 또는 보수주의자들로 구분짓게 하는 것은 어느 그룹들이 다른 그룹들의 희생으로 혜택을 볼 것인가에 관한 생각의 차이이다.

미친다.

사회민주적 사회주의가 즐겨 쓰는 기술은 전장에서 설명되고 분석된 바 있는 과세의 그것이다. 보수주의도 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의 정책들의 집행에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만이라도 상당한 정도로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과세는 그것의 선호된 기술이 아니며 이의 설명은 보수주의의 사회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 소득, 부 및 신분에서 불평등한 지위의 현상유지의 보존에 충실하고자 할 때 과세는 보수적 목표들에 도달하기 위하여 단지 지나치게 진보적인 수단이 된다. 과세수단에 의존함은 부와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 변화들이 실재화한 연후에 사안들을 다시 수정하고 구질서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특히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실제로 자신들의 상대적 지위를 우선 개선하였는데 후에 다시 삭감당하게 되는 사람들간에 악감정을 유발시키는 물론이다. 또한 발전이 일어나게 하고, 이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한다면 보수주의는 자기자신의 정당성, 즉 주어진 소득과 부의 분배는 그것이 항상 효력을 지니고 내려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라는 논거를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변화가 일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선호하며,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을 약속하는, 또는 차라리 그와 같은 변화가 덜 확실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는 정책수단들을 사용할 것을 선호한다.

세 가지 그와 같은 일반적 형태의 정책수단들이 존재한다. 가격통제price-controls · 규제regulations · 행동규제behavior controls 등인데, 이들 모두는 과세가 그러한 것처럼 분명히 사회주의적 수단들이다. 그러나 이

들 모두는 충분히 흥미로운 사실로, 여러 다른 사회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전반적인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마치 이와 관련한 과세의 중요성이 과대평가되어 온 것만큼이나 일반적으로 무시되어 온 셈이다.¹⁹⁾ 필자는 이들 구체적 보수주의적 정책계획들을 차례로 토의할 것이다.

상대가격의 어떠한 변화도 각기의 재화들이나 용역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지위에 분명히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그들의 지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일은 가격을 고정시키는 일로 보인다. 이것은 가격통제를 도입하는 보수주의적 논거이다. 이 결론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고정가격의 경제적 효과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²⁰⁾

출발로서 한 제품, 또는 한 제품들의 그룹에 대하여 선택적 가격통제가 시행되고, 현재의 시장가격이 그 제품이 그 이상, 또는 이하로 판매될 수 없는 가격으로 포고되었다고 가정하자. 이제 그 고정가격이 시장가격에 일치하는 한 가격통제는 단지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가격고정화의 특이한 효과는 오로지 이 일치가 더이상 존속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가격고정화도 가격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을지 모를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원인들에 관심을 두지 말 것을 포고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가격고정화는 문제의 제품에 대한, 무슨 이유에서이든간에, 어떠한 수요의 변화가 일어날 때 발생된다. 수요가 증가하면(가격은 통제되지 않았다면 또한 상승할 것이다) 그 고정가격은 어떤 유효한 최고가격, 즉 그

19) 사회주의정책들의 사회학적 유형론과 로드바드M. N. Rothbard에 의하여 발전된 바와 같은 시장간섭의 논리적 유형론간의 관계에 대하여, M. N. Rothbard, *Power and Market*, Kansas City, 1977, p.10 참조.

20) 다음에 관해, M. N. Rothbard, *Power and Market*, Kansas City, 1977, pp.24ff 참조.

이상에서의 판매가 불법화되는 가격이 될 것이다. 만약 수요가 감소하면(가격은 통제가 없다면 떨어질 것이다) 그 고정가격은 유효한 최소가격, 즉 그 이하에서의 판매가 불법화되는 가격이 될 것이다.²¹⁾

최고가격을 부과하는 것의 결과는 공급된 재화의 초과수요이다. 고정된 가격으로 사기를 의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족함은 가격이 증가된 수요와 함께 상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생산자들이 (한계비용점에서, 즉 마지막번째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한계수입과 상등相等하는 지점에서 이미 생산해오고 있다고 가정되고 있는) 추가적 자원들을 특정 생산라인에 돌림으로써 손실 없이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줄서기, 배급, 특혜, 뒷거래, 그리고 암시장은 항시 존재하는 생활의 특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통제된 재화들의 초과수요가 기타의 모든 비통제된 재화들에 넘쳐나고(특히 물론 대체재들로) 그것들의 (상대적) 가격을 증가시켜 이에 따라 자원들을 통제된 생산라인에서 비통제된 생산라인으로 이동하게 할 인센티브를 만들어냄에 따라 상기 사항들이 가져올 부족과 기타 부작용은 한층 증가할 것이다.

최저가격, 즉 그 이하로 판매가 불법화되어 있는 잠재적 시장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수요에 대한 초과공급을 만들어낸다. 단지 구매자를 찾을 수 없는 생산된 재화들의 잉여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금 이 잉여는 가

21) 사회적 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가격동결이 필요하다. 가격동결은 최고, 또는 최저가격으로 결과할 수 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절대적 부의 지위가 잠식되는 것이 방지되어야 함이 보다 긴급한 일로 간주된다는 관점에서 명백하게 최저가격 통제를 선호한다.

격이 문제의 재화의 감소된 수요에 따라 하락할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그저 몇몇 예들을 인용한다면, 우유와 포도주의 호수, 버터와 곡물의 산더미가 조성되고 커갈 것이며, 저장소가 가득참에 따라 잉여생산물의 폐기가 거듭 필요해질 것이다(또는 이의 대안으로 생산자들에게 더이상 잉여를 생산하지 않도록 지불하는 것이 필요해질 것이다). 잉여생산은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이 이 특정분야에 한층 더 많은 자원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한층 더 악화될 것인데, 이에 따라 실제로 필요가 보다 크게 증대되는(소비자수요의 관점에서) 기타 제품들의 생산라인에서는 자원투자가 부족해질 것이며, 이의 결과로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최고, 또는 최저가격 어느 경우에도 가격통제는 상대적 궁핍화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하간 이것들은 지나치게 많은(소비자수요의 관점에서) 자원들이 중요성이 감소된 생산라인에 묶여 있게 되고 당해 중요성이 증대된 라인에서는 쓸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게 된다. 생산요소들은 가장 긴급한 필요가 맨처음으로, 그 다음 긴급한 것이 두번째로 충족되게끔 배분될 수가 없을 것이다. 또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여 어느 한 제품의 생산이 그 제품의 한계생산의 효용이 다른 어떤 제품의 한계효용 이하로 떨어지는(또는 이상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수준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또는 이하로 감소되지 않도록) 생산요소들이 배분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신 가격통제의 부과는 보다 긴급한 필요의 충족을 감소시키는 대가로 덜 긴급한 필요가 충족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생활수준이 감소될 것임을 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낮은 공급 때문에 재화들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데 시간을 허비하거나 인위적으로 높은 공급이 유지되기 때문에 재화들이 버려지

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감소된 사회적 부의 두 가지 가장 두드러진 징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앞에서의 분석은 또한 보수주의는 부분적 가격통제의 수단에 의하여 그의 분배상의 안정성의 목표에 조차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단지 부분적으로 통제된 가격으로는 기존의 소득과 부의 지위에 있어서의 교란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비통제된 생산라인, 또는 최저(제품)가격을 갖고 있는 생산라인의 생산자들이 통제된 라인, 또는 최고(제품)가격을 가지고 있는 라인의 생산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개생산자들이 한 생산라인으로부터 수익이 나온 다른 라인으로 생산을 이동시키고자 할 인센티브가 계속 존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수익성의 변화를 예기하고 구체화시킬 기업가격 기민성과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질서에 교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보수주의는 만약 현상유지의 보존을 위한 그의 공약에 있어서 진정 비타협적이라면 가격통제를 받는 재화들의 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해가야 할 것이며, 실제 완전한 가격통제, 또는 가격동결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²²⁾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자본 및 소비자재화 할것없이 어떤 주어진 수준에서 동결되고, 생산과정이 수요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만 한다면(부분적 가격통제하에 서와 같이 몇몇 가격지점들, 또는 산업분야들에 있어서만 생산과 수요를 차단하는 것 대신에) 기존 분배질서를 완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22) 실제로 보수주의자들은 결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되풀이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마지막으로 닉슨 대통령 제임기간중에 있었다. 게다가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전면적 가격통제로 특징지어지는 전시경제戰時經濟가 가져오는, 사회를 하나로 묶는 그 위대한 사회적 정신에 대하여 공개적 예찬을 표시하였다.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완전한 보수주의에서 지불되어야 할 가격은 단지 부분적 가격통제의 그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²³⁾ 전반적 가격통제와 더불어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권은 사실상 폐지된다. 명목상으로는 개인소유자들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들의 재산사용을 결정하고 유익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어떠한 계약적 교환에도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완전히 상실된다. 따라서 생산자에 대한 이와 같은 소리 없는 몰수가 가져오는 당장의 결과는 저축과 투자의 감소가 될 것이며,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소비의 증가가 될 것이다.

자신의 노동의 과실에 대하여, 시장이 지니는 값을 매길 수 없으므로 단지 일할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가 문제의 제품들에 부여하는 가치와 독립적으로 여전히 수행하거나 생산하게 되는 특정형태의 작업, 또는 제품의 품질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어느 것이나 모든 제품의 품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한층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 가격통제에 의하여 조성된 자원의 배분상의 혼란으로부터 결과하는 궁핍화이다. 모든 제품가격이, 모든 비용요소들의 그것들을 포함하여 특히 노동의 가격이 동결되어 있는 사이에도 각종 제품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가격통제가 없다면 가격은 이 변화의 방향을 따라갈 것이며, 이에 의하여 가치가 덜한 생산라인으로부터 보다 가치 있는 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할 인센티브가 조성될 것이다.

23) G. Reisman, *Government Against the Economy*, New York, 1979; J. K. Galbraith, *A Theory of Price Control*, Cambridge, 1952 참조.

전반적 가격통제하에서 이 메커니즘은 완전히 파괴된다. 어떤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족해질 것이며, 결국 그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익성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 생산요소들이 유인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과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채 다른 제품들이 넘쳐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립되었을 수준 이상으로 이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가격이 증가된 수요와 더불어 상승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다시 부족해질 것이다.

따라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제품에서부터 다음 중요도의 제품으로, 거기에서 더 낮은 중요도의 제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과정은 통제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시도가 다시금 충족될 수 없으므로, 계속 진행되어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마침내 가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고 사람들이 아직 사용해야 할 지폐는 판매가 가능한 가장 값어치 적은 제품보다도 더 낮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게 되므로 초과수요는 원래 수요가 감퇴되었던 제품들에도 넘쳐날 것이다. 따라서 수요감퇴의 결과로 잉여가 발생했던, 이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도록 허용되지 않았던 이들 생산라인에 있어서도 경제의 다른 곳에서의 충족되지 않은 수요의 결과로 판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한 인위적으로 높은 고정가격에도 불구하고 잉여제품들이 판매 가능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회복되고 여기에서도 자본의 유출이 방지될 것이다.

전반적 가격통제의 부과는 생산체계가 완전히 소비자보호(생산이 실제 이의 충족을 위하여 착수되는)와 무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생산자는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고 소비자는 그것이 무엇이든 사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 따라서 생산구조에 있어서 자유로이 변동하는

가격이 제공하는 도움 없이 어떠한 변경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지도록 명령된다는 것은 제공된 재화들의 임의적 배열을 또다른 똑같이 임의적인 배열로 대체시키는 암중모색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생산구조와 수요의 구조간에는 더이상 아무런 연관이 없다. 소비자경험의 수준에서 이는 라이스만 G. Reisman에 의하여 기술된 것처럼 ‘……사람들을 맨발로 다니게 만들면서 셔츠는 흥수지게 하고, 사람들을 셔츠도 못 입고 지내게 만들면서 구두는 범람하게 하고, 엄청난 양의 노트를 제공하면서도 펜이나 잉크는 주지 않는 (또는 그 역)……정말 얼토당토않은 재화들의 조합을 주는 것의’, 그러나 물론 ‘……단지 소비자들에게 불균형된 재화들의 조합을 주는 것 그 자체는 인간복지에 있어서의 그만큼의 손실을 나타내므로 생산의 주요 감소와 동등한 것이다.’²⁴⁾

생활수준은 단순히 생산의 어떤 물리적 총생산량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것은 잘 균형된 구성의 다양한 소비자재화들을 생산함에 있어서 각종 특성의 생산요소들의 적절한 배분, 또는 비율화에 훨씬 더 좌우된다. 전반적 가격통제는 보수주의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와 같은 잘 조화된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다. 질서와 안정성은 단지 겉으로만 조성된다. 사실 그것들은 자원배분상의 혼란과 임의성을 조성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 의하여 일반적 생활수준을 심각하게 감소시킨다.

이에 더하여 이는 두번째의 특정보수적 정책수단, 즉 규제에 대한 토의로 인도하는데, 설사 가격이 전반적으로 통제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제품들이 ‘정태적’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이 주어진다면, 이는 곧 소득과 부의 분배의 기존질서를 보장할 수

24) G. Reisman, *Government Against the Economy*, New York, 1979, p.141 참조.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새로운 다른 제품들이 생산되고, 제품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추가적 생산자들이 생기면 기존질서의 변화는 배제할 수 없다.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구제품들, 기술 및 생산자들은 이제 새로운 다른 제품 및 서비스와 경쟁해야 되고(그것들은 새로운 것이므로 가격통제를 받는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경쟁과정 속에서 그들의 기성의 소득분배 몫의 일부를 신참자들에게 상실할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은 기존질서에 대한 교란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와 같은 교란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수주의는 다시 한 번 과세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시행한다.

그러나 우선 혁신이 방해받지 않도록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 혁신자에게서 그 이득을 과세해가고, 구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의 정책을 위하여 지나치게 진보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이것들이 가져오는 혁신과 사회변화를 방지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수단으로 규제를 선호한다.

생산제도를 규제하는 가장 과격한 방법은 기술혁신을 불법화하는 것이다. 언급되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정책은 다른 사람들의 소비 확대주의에 대하여(즉 오늘날 이미 '지나치게 많은' 재화들과 용역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간에, 이와 같은 현재의 다양성을 동결, 또는 심지어 축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간에, 다소 다른 이유에서 노동절약적 장치들과 같은 기술혁신이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현재의 생산기술을 동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간에 그의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정책은 후생의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지극히 비싼 대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수궁할 수 없는 일반여론의 지

지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혁신적 변화의 완전한 금지는 이전에 심각하게 시도된 바 없다. 폴포트정권의 최근의 예외 말고는 시도된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인기있는 것이 되어온 것은 단지 약간 더 온건한 접근이다. 원칙적으로 변화가 배제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기술혁신도 그것이 시행될 수 있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즉 혁신자 자신외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승인된).

이런 방식으로 보수주의는 주장하기를, 기술혁신이 진정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발전이 점진적이라는 것, 그것이 모든 생산자에 의하여 동시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의 유익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다고 한다. 의무적, 즉 정부가 집행하는 카르텔은 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인기있는 수단이다. 모든 생산자들, 또는 한 산업의 모든 생산자로 하여금 한 감독조직의(카르텔) 구성원이 되게끔 요구함으로써 최저가격 통제(생산쿼터의 부과를 통하여)가 가져오는 너무나 명백한 초과공급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더욱이 어떠한 기술혁신의 수단에 의하여 야기된 교란들이 중앙에서 파악 및 조정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접근이 유럽에서, 그리고 다소 덜한 정도로 미국에서 꾸준히 입지를 확보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경제의 어떤 부문들이 실제로 이미 대단히 흡사한 통제하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자주 사용되는 사회주의의 규제수단은 여전히 미리 정해진 범주들의 제품들, 또는 생산자들에 대하여 모든 기술혁신이 준수되지 않으면 안되는 미리 정해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들 규정은 어떤 종류의 생산자로서 자신을 설정할 권리를 가지기 위하여 충족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격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사물의 정당

한 소유자라는, 그리고 자기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타인의 재산의 물리적 보전을 손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통상적인’ 것들(외에), 또는 그것들은 어떤 주어진 종류의 제품이 신규로 시장에 허용되기에 앞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시험의 종류들(예로서 자재, 외형, 또는 치수에 관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는 그것들은 어떠한 기술개선도 신규로 공인받는 생산방법이 되기 위하여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정한 검사들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규제적 수단으로 기술혁신이 완전히 배제될 수도 없으며, 어떤 변화는 아주 놀라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피할 수도 없다. 그러나 미리 정해진 기준들(변화가 그에 준수되어야 함)이 반드시 ‘보수주의적’이 되어야 하므로(즉 기존의 제품, 생산자, 또는 기술의 관점에서 작성된) 그것들은 진정 기술혁신의 변화속도와 놀라운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적어도 늦추게 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보수주의의 목적에 이바지한다.

여하간 이와 같은 형태의 모든 규제들은 일반적 생활수준의 감소로 인도할 것이다(처음에 언급한 것이 더하고, 나중의 것이 덜할 것이다).²⁵⁾ 기술혁신은 만약 그것이 진정으로 소비자에 의하여 경합되는 구제품보다 훨씬 중요하게 가치가 평가되면 분명히 성공적이 될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이는 혁신자로 하여금 소득과 부의 분배의 기존질서를 뒤흔들어놓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 셈이다. 그러나 규제의 부과는 혁신자에게 불리하고, 기존의 생산자·제품 및 기술에 유리한 재산권리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따라서 생산과정의 혁신적 변화로부터 발생 가능한 소득과 부의

25) 규제의 정치학 및 경제학에 관하여, G. Stigler, *The Citizen and the State. Essays on Regulation*, Chicago, 1975; M. N. Rothbard, *Power and Market*, Kansas City, 1977, Chapter 3.3; M.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1962, Chapter 9 참조.

이득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회화함에 있어서(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혁신화하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회화하는 것에 의하여 혁신을 만드는 사람들과 혁신은 감소할 것이며, 그 대신 있는 대로 해가는 경향이 강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보다 높게 평가되는 재화와 용역을 보다 효율적이며 비용절약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만족을 증대시키는 과정이 정지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적어도 방해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서 가격통제 때와는 좀 다른 방식이기는 하나 규제 역시 생산구조를 수요와 동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부의 분배를 옹호하는 것을 도울지는 몰라도 다시금 동일한 생산구조 속에 내포돼 있는 전체적 부의 일반적 감소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끝으로, 세번째 특정 보수주의적 정책수단은 행위적 통제(behavioral controls)이다. 가격통제와 규제는 경제체제의 공급측면을 동결시키고 이에 의하여 이를 수요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며, 단지 공급측면이 이에 무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수급의 괴리가 나타나고, 괴리 그 자체가 지독히 확실해지는 것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다. 행위적 통제는 수요측면을 통제하도록 고안된 정책수단이다. 그것은 공급측면의 무반응이 덜 가시적이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수요의 변화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렇게 하여 어떠한 종류의 교란적 변화로부터 기존질서를 보존한다는 보수주의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통제와 규제를 한편으로 하고, 다른 편의 행위적 통제

는 보수주의적 정책의 두 보완적 구성부분이 된다. 이들 두 보수주의의 보완적 측면 가운데 보수주의적 정책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 되는 것은 행위적 통제의 측면이라는 것이 주로 주장될 수 있다. 여러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가 여러 다른 범주의 잠재적 생산자들 및 혁신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 여러 다른 범주의 비생산적 및 비혁신적 사람들을 유리하게 만드는데, 기타 어떠한 사회주의의 변형만큼 보수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증가하도록, 또는 그들의 생산적 및 혁신적 에너지를 암시장으로 돌리게끔 조장시켜 덜 생산적이며 덜 혁신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 가운데 그의 계획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비와 비상업적 교환에 직접 간섭하는 것은 오로지 보수주의뿐이다(기타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들도 틀림없이 그것들이 생활수준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으나, 보수주의와는 달리 그것들은 소비자가 소비하도록 허용되어진 무엇이든 소비자 자신에 아주 맡기고 있다). 보수주의는 인간의 생산적 재능의 개발을 손상할 뿐만 아니라 ‘가부장주의’의 이름하에 인간의 독립된 소비자로서의, 또는 비상업적 형태의 교환에 있어서 교환당사자로서의 역할 속에서의 행위를 동결시키고자 원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휴양욕구를 최선으로 충족시키는 소비자생활 스타일을 발전시킬 인간의 재능을 질식시키거나 억압한다.

소비자행위 패턴에서의 어떠한 변화도 그의 경제적 부수효과를 가진다(만약 머리를 길게 기르면 이것은 이발사와 가위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면 이것은 변호사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하면 이것은 농업용지의 사용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등.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같은 모든 행위

는 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어느 누구의 기존의 가치체계가 균형을 잃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변화도 보수주의적 생산구조에 대하여 교란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보수주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행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소비자, 또는 비상업적 교환자로서의 역할을 행하는 사람들의 전체 생활스타일을 행위적 통제의 본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완전하게 형성된 보수주의는 전통적 방식의 행위(명시적으로 허용된) 외에는 모든 것이 불법화되는 사회제도 수립이 될 것이다. 실제로 보수주의는 규제와 연관하여 비용이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일반여론에서의 점증하는 저항을 계산해야 하므로 결코 여기까지는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적’ 보수주의는 독립된 소비자의, 또는 비상업적 교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각종 형태의 비침해적 행위를 불법화하고 처벌하는 적거나 많은 수의 특정의 법률들과 금지들로 특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행위들이 실제로 수행될 때 어떠한 다른 사람의 재산의 물리적 보전을 변경시키지 않는, 또는 유리해 보이지 않는 어떠한 교환도 거부할 수 있는 어느 누구의 권리도 유린하지 않는, 대신 (오로지) 기성의 ‘가부장적’ 사회가치 질서를 흔들어놓는 그와 같은 행위들의 비침해적 행위를 불법화하고 처벌하는 행위적 통제정책의 효과는 상대적 궁핍화이다.

그와 같은 통제의 부과를 통하여 한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비침해적 형태의 행위를 수행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그룹은 그들이 더이상 그와 같은 싫어하는 형태의 행위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그들이 싫어하는 행위가 규제될 경우) 점에서 이와 같은 통제로부터 혜택을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재분배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사물의 사용자 생

산자들이며, 그들의 소비가 이제 방해받게 되고, 그리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문제의 소비자재화들의 비사용자들-비생산자들이다. 따라서 생산, 또는 비생산과 관련한 새롭고 상이한 인센티브 구조가 수립되고 주어진 인구에 적용된다.

소비자재화의 생산은 그의 가치가 그의 사용과 관련한 통제에 부과된 결과로 하락하였으므로 보다 비싸지며,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비생산적 비계약적 수단을 통한 소비자만족의 획득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든다. 결과적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이며, 저축과 투자가 감소할 것이다. 대신 정치적, 즉 침해적 방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로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보다 강해질 것이다. 특히 행위적 통제에 의하여 부과된 제약들은 사람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신체)에 부과된 가치가 낮아질 것이며, 따라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가 감소될 것이다.

이것으로 사회주의의 한 특별한 형태로서의 보수주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끝에 도달한다. 다시금 토의를 마무리짓기 위하여 상기 결론들의 타당성을 설명·입증하는 데 필요한 몇몇 언급을 주고자 한다. 사회민주적 사회주의의 토의에서처럼 이들 설명적 관찰은 몇몇 예방적 단서들과 함께 관독되어야 한다.

첫째, 본장에서 도달한 결론들의 타당성은 경험과 독립적으로 수립되었고,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둘째, 경험과 실증적 증거에 관한 한 불행하게도 사회주의 및 자본주의의 여타 변형들에 대비하여 보수주의의 효과들을 검토할 수 있는 사회들의 실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상 '뚜렷한' 증거로 간주되어지는 실례를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준실험적 사례연구는 존재하지 않

는다. 현실은 차라리 모든 종류의 정책수단들인 보수주의적, 사회민주적, 마르크스사회주의적, 또한 자본주의(자유주의적)가 그렇게 혼합 및 통합되어 있어 그들 각기 효과들이 확정적 원인들과 긴밀하게 결부될 수 없으며, 다시 한 번 순수하게 이론적 수단에 의하여 매듭이 풀려져야 하고 결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염두에 두고, 역사적으로 보수주의의 실제행적에 관하여 무엇인가 잘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미국과 서부 유럽국가들(전부를 묶어서)간의 생활수준의 차이는 상기 이론적 설명에 적합한 관찰을 허용해준다. 전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은 미국보다 재분배적 사회주의를 갖고 있는데(전반적 과세 정도가 대체로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이 때문에 보다 가난하다. 그러나 보다 뚜렷한 것은 보수주의의 정도에 관하여 양자간에 존재하는 차이이다.²⁶⁾ 유럽은 바로 오늘날까지, 특히 상거래를 제한하고 신규참여를 방해하는 각종의 규제들과 비침해적 행동들의 금지형태로 인지할 수 있는 봉건적 과거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두드러지게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이것과 연관되는 것은 진정으로 보수주의적 정당이 미국에서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데 반하여 19·20세기를 통한 긴 기간 동안 유럽은 기타 어떠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보다 크든작든 명시적으로 보수주의적 정당들의 정책들에 의하여 형성돼 왔다는 사실이다. 실제 서구유럽의 사회주의정당들조차도 특히 노동조합들의 영향하에서 주목할 정도로 보수주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의 세력기간 동안 유럽의 사회들에 각종의 보수주의적 사회주의 요소들(즉 규제와 가격통제)을 부과하였다(반면에 그들은 자인하는 바

26) B. Badie and P. Birnbaum, *The Sociology of the State*, Chicago, 1983, 특히 pp.107f 참조.

와 같이 이 보수주의적 행위적 통제를 폐지하는 데 돕기도 하였다.

유럽이 미국보다 사회주의적이며 그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보다 낮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것은 유럽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사회주의의 영향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의 보다 높은 전반적 과세 정도가 그렇게 가리키는 바에 의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유럽에 있어서 현저하게 많은 수의 가격통제, 규제 및 행위적 통제가 가리키는 바에 따라 크다. 본인이 재빨리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은 실제보다 부유하지 않다는 것이며, 더이상 그가 19세기에 지냈던 경제적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이 시간을 통하여 점점 더 많은 재분배적 사회주의의 정책들을 채택하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규제와 가격통제의 수단에 의하여 경쟁으로부터 소득과 부의 분배의 현상유지를, 특히 기존생산자들간에 가진 사람들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원하는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²⁷⁾

한층 더 세계적 수준에서(또다른 관찰은 보수주의가 공평화를 야기하는 데 따른 이론적으로 도출된 설명에 맞는다), 이는 소위 서방세계 밖에서의 철저한 마르크스적 사회주의정권들의 형편없는 경제적 실적과 결부되는 유일한 나라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봉건적 과거와 결코 진정으로 단절한 적이 없는 남미와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부 사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회에 있어서 경제의 광범위한 부분들이 심지어 지금도 거의 완전히 자유화경쟁의 적용범위 대상과 압력에서 면제되어 있으며, 대신 이전처럼 순전한 침해에 의하여 집행된 규제적 수단에 의하여 그들의 전통적 위치 속에 폐쇄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 관찰수준에서 자료들은 또한 이론이 예상하도록 인

27) R. Radosh and M. N. Rothbard(eds.), *A New History of Leviathan*, New York, 1972 참조.

도하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서구유럽으로 돌아와, 주요 유럽국가들 가운데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특히 사회주의에 관한 한 보다 재분배적 형태로 기울어져 오고 있는 북구국가들과 비교한다면, 가장 보수적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²⁸⁾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의 과세수준(GNP 구성부분으로서의 국가지출)이 유럽의 다른 곳보다 그렇게 높지 않으며, 이들 두 나라는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더 많은 보수주의적 사회주의요소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두 나라는 그들의 경제에 있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자유로운’으로 불리어질 수 있는 경제부문이 존재하고 있는지 고도로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문자 그대로 수천의 가격통제들과 규제들로 가득차 있다. 결과적으로(그리고 예기될 수 있었던 대로), 두 나라의 생활수준은 북구보다 현저하게 낮다. 두 나라에 있어서 틀림없이 보수주의의 한 목적이 이룩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간의 차이가 잘 보전된 셈이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만큼 극단적인 소득과 부의 격차를 서독이나 미국에서는 거의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대가는 사회적 부의 상대적 하락이다. 이 하락은 너무나 현저해서 두 나라들에 있어서의 하위 및 중하위 계층의 생활수준은 기껏해야 동구블럭의 보다 자유화된 나라들의 그것보다 단지 약간 높은 정도이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남부 주들은, 특히 훨씬 많은 규제들이 전국적으로 유효한 것 위에 더 얹어져 있어 제3세계 나라들의 촌락을 간신히 넘어선 정도이다.

보수주의적 정책이 야기한 공평화를 설명·입증하는 마지막 예로서 독일 국가사회주의와의, 그리고 보다 적은 정도로 이탈리아의 파

28) Badie and Birnbaum, *The Sociology of the State*, Chicago, 1983 참조.

쇼주의와의 경험이 언급되어야 한다. 양자는 모두 보수주의적 사회주의운동이었다는 것이 흔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²⁹⁾ 그것 자체는, 즉 자유경제의 동학적 원동력이 가져온 변화와 사회적 교란에 대항하는 운동으로서 그것들은(마르크스사회주의 운동 이외의) 기성의 경영자들, 가계소유자들, 농민들 및 기업가들 계층 사이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통상 말하듯이, 그것은 친자본주의운동, 심지어 자본주의의 마지막 종언 직전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의 최고단계였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사실 파쇼주의와 나치주의의 가장 열렬한 적은 사회주의 그 자체가 아니라 자유주의였다. 물론 양자는 모두 마르크스 및 볼셰비키 사회주의를 경멸하였는데, 이는 파쇼주의와 나치주의가 전쟁과 정복에 전념한 민족주의적 운동이었다는 것에 반해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그들(마르크스 및 볼셰비키 사회주의)이 국제주의적이며 평화주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즉 내부로부터 자본주의의 파괴에로 인도하는 역사의 원동력에 의존하는, 그리고 그에 대한 일반의 지지와 관련하여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파쇼주의와 나치주의가 주어진 기존질서를 보존할 것을 약속한 데 반해 마르크스주의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 의하여 몰수되고, 따라서 사회질서가 거꾸로 뒤집어진다는 것을 함축하였기 때문이다.³⁰⁾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자본주의적이라기보다 사회주의적 운동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결정적인데, 이와 같은 목표를 추구함은 곧 위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정책이 행한 것만큼

29) L. v. Mises, *Omnipotent Government*, New Haven, 1944; F. A. Hayek, *The Road to Serfdom*, Chicago, 1956; W. Hock, *Deutscher Antikapitalismus*, Frankfurt/M., 1960 참조.

30) 독일 '역사학파'의 주요 대표자인, W. Sombart, *Deutscher Sozialismus*, Berlin, 1934 참조.

이나 사물들의 사용자-소유자가 최상으로 보이는 것을 사물들과 더불어 행할(타인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손상하지 않거나, 비계약적 교환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개개인의 부정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에 의한(즉 문제의 사물들을 생산하지도 계약적으로 취득한 적도 없는 사람들에 의한) 자연적 소유자들에 대한 몰수를 의미한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파시즘과 나치즘 양자는 보수주의적 사회주의로서의 그들의 분류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기할 수 있게 인도하는 바를 정확히 행하였다. 즉 그들은 개인소유권이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소유된 사물들의 사용을 결정할 권리가 거의 전적으로 정치적 체도에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고도로 통제되고 규제된 경제를 수립하였다.

특히 나치는 거의 완전한 가격통제(임금통제를 포함하여) 체도를 부과하였으며, 4개년 계획체도를 창안하였다(계획이 5개년에 걸치는 소련에 서처럼 거의 같게). 그리고 생산구조에 있어서의 모든 중요한 변경을 승인해야 하는 경제계획 및 감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소유자'는 더이상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를, 누구로부터 구매하거나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어떤 값을 지불하거나 매길 것인가를, 어떤 변경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틀림없이 보안의식(a feeling of security)을 조성하였다. 누구에게나 고정된 지위가 부여되고, 자본소유자들뿐만 아니라 임금소득자들도 보장된, 명목상 안정된, 심지어 성장하는 소득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거대한 강제노동계획, 징병제도의 재도입, 그리고 마침내 전쟁경제의 수행은 경제적 확장과 번영의 환상을 강화시켰다.³¹⁾

31) W. Fischer, *Die Wirtschaftspolitik Deutschlands 1918~45*, Hannover, 1961; W. Treue, *Wirtschaftsgeschichte der Neuzeit*, vol. 2, Stuttgart, 1973; R. A. Brady, "Modernized Cameralism in the Third Reich: The Case of the National Industry Group", M. I. Goldman(ed.), *Comparative*

그러나 수요에 조정할, 그리고 그에 조정하지 않는 것을 회피할 생산자의 인센티브를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요를 생산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경제제도로부터 의당 예기되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변영의 느낌은 환상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실제로 있어서 사람들이 그들의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들의 관점에서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절대적 측정으로도 하락하였다.³²⁾ 그리고 전쟁으로 야기된 모든 파괴를 여기에서 무시한다 하여도 독일과, 그리고 보다 적은 정도에서 이탈리아는 나치즘과 파시즘의 패전 후 심각하게 궁핍해졌다.

Economic Systems, New York, 1971 참조.

32) 1938년 독일 피고용자들의 평균 총소득은 (가용한 마지막 숫자로) 1927년보다 여전히 낮았다(절대적 숫자로, 즉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자 히틀러는 전쟁을 시작했으며, 자원들이 점점 민간으로부터 비민간 사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생활수준은 1939년 이후 극단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Statistisches Jahrbuch fuer die BRD, 1960, p.542; V. Trivanovitch, *Economic Development of Germany Under National Socialism*, New York, 1937, p.44 참조.

제6장

사회공학의 사회주의 및 경제분석의 기초

The Socialism of Social Engineering and the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앞장들에서 제시된 이론적 논거들에서 볼 때, 사회주의는 경제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사람들에게 더 풍부한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인기의 대부분이 이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논거들은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사회화로 특성화되고 있는 러시아형 사회주의는 생산요소들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생산수단들의 매매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원가 회계(원가회계는 회소자원들을 여러 선택적 용도 중에서 가장 가치생산적 생산라인으로 투입하도록 인도하는 수단이다)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경제적 낭비를 수반한다는 것이 제시된 바 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보수주의적 사회주의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양자는 생산비용의 상승과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그의 대체, 즉 비생산, 또는 암시장 생산의 비용감소를 수반한다. 이 두 유형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체제와 비교하여) 재화들, 제품들 및 용역들의 생산자들 및 계약자들보다 비생산자들 및 비계약자들을 상대적으로 이롭게 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 생산의 상대적 감소로 인도한다는 것이 예시·설명되었다.

경험 또한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대체로 동구국가들의 생활수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생산수단의 사회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서구에서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또한 소득재분배 조치들을 확장하고, 생산된 부 가운데서 재분배된 부분이 증가하는 어디에서나, 예로서 1970년대 사회민주주의 진보정부연합하의 서독에서처럼, 부의 사회생산의 지연과 심지어 일관적 생활수준의 절대적 감소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가격통제, 규제 및 행위적 통제의 수단에 의하여 기존의

소득 및 부의 분배에 있어서 현상유지를 보존하고자 원하는 사회 어디에서나(예로서 히틀러의 독일이나 오늘날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처럼) 생활수준은 보다 진보적(자본주의적) 사회들에 비하여 한층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는 살아 있고 대단히 건강하다. 심지어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주의와 보수주의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남아 있는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중요한 요소는 이의 주창자들이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원래의 생각을 포기하고 대신 완전히 다른 논거에 의존하였다. 즉 사회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우수하지 않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보다 낫다. 이 주장은 제7장에서 고찰될 것이다.

한편 이는 분명히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경제학분야에서 다시금 힘을 얻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경험주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그의 힘을 결집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경험주의는 전통적으로 앵글로색슨세계에서 강력해왔으며, 특히 실증주의적 철학자들의 비엔나학파의 영향을 통하여 자연과학분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및 경제학에 있어서도 20세기를 지배하는 철학(인식론)방법론이 되었다. 이는 이들 과학의 철학자들과 방법론자들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그런데 이들은 이후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의 매력으로부터 벗어났다) 실행자들(그들은 여전히 이의 깊은 영향하에 있다)에게 한층 더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포퍼K. R. Popper와 그의 동조자들의 소위 비판적 합리주의를 포함하는 경험주의, 또는 실증주의와 더불어 힘을 결합하여 사회주의를 본 연구에서 이후 ‘사회공학의 사회주의(socialism of social engineering)’로 지칭할 사상으로 발전시켰다.¹⁾ 이는 사유스타일

에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이며 연역적인 전통적 마르크스주의(마르크스가 자신의 경제적 저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던 고전경제학자 리카도D. Ricardo로부터 채택했던 것)와 대단히 다른 사회주의의 한 형태이다.

한편 사회공학의 사회주의가 사회민주적 및 보수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의 전통적인 진영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사유스타일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예로서 서독에 있어서 포퍼 자신이 그의 사회철학²⁾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단편적 사회공학piecemeal social engineering’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모든 정치정당들에 있어서 ‘온건파들’의 공동의 입장과 같은 것이 되었으며, 단지 어느 쪽도 교조주의자들만이 이를 찬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서독 사회민주당의 전 당수였던 슈미트Helmut Schmidt는 자신의 철학을 공적으로 포퍼주의로 천명하기까지 하였다.³⁾ 한편 이 철학이 보다 깊게 뿌리내린 곳은 미국인데, 그것은 실제적 문제들과 실용주의적 방법 및 해결에 있어서 미국적 사고방식에 알맞게끔 거의 단골 주문화되었다.

경험주의-실증주의가 어떻게 사회주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도로 순수이론적인 수준에서 그 대답은 분명하다. 경험주의-실증주의는 왜 지금까지 주어진 모든 논의가 결정적인 것

1) 고전적 실증주의의 주장에 관하여, K. R. Popper,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London, 1959; *Conjectures and Refutations*, London, 1969; *Objective Knowledge*, Oxford, 1973; M. Blaug, *The Methodology of Economics*, Cambridge, 1980; T. W. Hutchinson, *The Significance and Basic Postulates of Economic Theory*, London, 1938; *Positive Economics and Policy Objectives*, London, 1964; *Politics and Philosophy of Economics*, New York, 1981; M. Friedman,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M. Friedman,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1953; H. Albert, *Marktsoziologie und Entscheidungslogik*, Neuwied, 1967 참조.

2) K. R. Popper, *The Poverty of Historicism*, London, 1957 참조.

3) G. Luehrs(ed.), *Kritischer Rationalismus und Sozialdemokratie*, 2 vols., Bonn, 1975~76 참조.

이 되는 데 실패하였는가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본인이 도출한 바 있는 결론들의 도출을 회피하면서도 여전히 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과학적 탐구법칙들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철학은 두 개의 표면상 그럴듯한 논거들을 제공한다. 첫째의, 그리고 정말 가장 핵심적이 되는 주의주장은 이것이다.⁴⁾ 즉 경험적 지식이라고 불리어지는 실제에 관한 지식은 경험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적어도 반증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경험은 항상 원칙에서 실제에 있었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서, 만약 결과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는 것일 경우,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는, 즉 실제에 몇몇 구체적인 경험을 가져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형태의 것이다.

만약(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지식이 경험에 의하여 입증될 수 없거나 반증될 수 없다면, 그것은 실제에 관한 경험적 지식이 아니며, 단지 말에 관한, 용어의 사용에 관한,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부호와 변환법칙들에 관한 분석적 지식이 될 것이다. 여기서 분석적 지식이 ‘지식’으로 동등시되어야 할지는 대단히 의문시된다.

누군가 본인이 잠시 취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주장을 취한다면, 위의 논거가 어떻게 엄격히 기각될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민주적 보수주의적 조치들의 경제계산의 불가능성과 이들의 비용상승적 성격이 필히 재화와 용역생산의 하락으로, 이에 따라서 생활수준의 감소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분명히 선행적으로 a priori 정당하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즉 그

4) M. Hollis and E. Nell, *Rational Economic Man*, Cambridge, 1975, pp.3ff 참조.

것은 어떠한 종류의 경험에 의해서도 반증될 수 없고, 반면에 어떠한 이후의 경험들에 앞서 진실된 것임이 인식되었다.

이제 만약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경험주의-실증주의의 핵심이 되는 주의주장에 따라 이 논의는 실제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내포할 수 없으며, 쓸데없는 말장난(즉 실제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는, ‘비용’ ‘생산’ ‘생산의 산출’, 그리고 ‘소비’와 같은 말들의 동의어 반복의 변환연습)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험주의는 실제적 사회주의의 실제적 결과들에 관한 한 지금까지 제시된 논의들은 아무런 설득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대신 사회주의에 관하여 수궁할 만한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는 경험만이 고려되어야 할 결정적 사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본인이 여전히 가정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곧 본인이 카테고리적 성격의 것으로 제시한 바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반대하는) 모든 경제적 논의의 결말을 짓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에 관하여는 카테고리적 성격의 것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경험주의-실증주의는 여전히 실제적 사회주의와의 실제적 경험들에 직면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의 결과는 바로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겠는가?

앞장들에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보다 더 경제적 번영을 기약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사회주의의 주장들에 대응하는 논리적 원칙론적 카테고리적 이유들(여기에서 모두 동의적으로 사용됨)에 훨씬 더한 강조가 주어졌으며, 따라서 경험은 어떤 이론(즉 그의 타당성이 궁극적으로 설명적 경험과 독립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을 설명하기 위하여 단지 막연하게 인용되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비체계적으로 인용된 경험일지라도 사회주의에 대응하는 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이들 문제에 대한 대답은 단호히 ‘아니오’이다. 경험주의-실증주의의 두번째 주의주장은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것은 인과관계 및 인과관계의 설명, 또는 예측의 문제에 대한 첫번째 주의주장의 적용 범위와 이의 적용을 명료하게 설명한다. 실제의 현상을 인과관계로 설명하거나 예측한다는 것은 ‘만약 A이면 B가 결과한다’는 형태의, 또는 변수들이 계량적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만약 A가 증가하면(또는 감소하면), B의 증가(또는 감소)가 결과할 것이다’라는 형태의 설명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에 관한 설명으로써 (A와 B가 실제의 현상일 경우) 그의 타당성이 결코 확실성을 가지고 수립될 수 없다. 즉 해당되는 전제만의, 또는 기타 다른 전제의(그로부터 문제의 전제가 차례로 논리적으로 연역될 수 있는) 검토에 의하여 미리 알려질 수 없는 미래의 경험들의 결과에 좌우되면서 항상 가설적인 것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경험이 어떤 가설적 인과관계의 설명을 확인하는 경우, 즉 예기한 대로 B가 진정으로 A에 따라 발생한 사례를 관찰하는 경우, A와 B는 무한정한 수의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는(또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존재할지도 모르는) 사건들, 또는 진행과정들을 언급하는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사항들(‘고유명사들’에 대하여 ‘전칭명사들’)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가설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며, 추후의 경험들이 여전히 그것을 반증할 수도 있다.

만약 어떤 경험이 어떤 가설을 반증하였다고 한다면, 즉 만약 B에 따라 일어나지 않은 A의 사례를 관찰하였다면, 이 또한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데, 이는 그 가설적으로 연관지은 현상들이 진실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나, 이전에 무시되었고 제어되지 않은 환경(‘변수’)이 단지 그 가설적으로 설정된 관계가 실제적으로 관

잘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 여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증은 단지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의 가설이 그 자체로 완전히 정확하지 않고 차라리 어떤 정묘함(즉 A와 B간의 가설적으로 설정된 관계를 관찰할 수 있기 위하여 주시해야 하고 제어해야 할 추가적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분명히 어떤 반증이 어떤 주어진 현상들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론히 입증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의 설명에 대한 경험주의적-실증주의적 관점이 옳은 것이라고 할 때, 사회주의가 어떻게 실증적으로(경험적으로) 정당화되는 비판으로부터 구출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물론 사회주의적 경험주의자는 그 사실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정말 서구에서보다 동구에서 생활수준이 낮으며, 과세의 증가나 규제와 통제의 보수주의적 정책이 진정으로 경제적 부의 생산에 있어서의 지연, 또는 위축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는 것을 논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방법론의 범위내에서 그와 같은 경험들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및 사회주의가 보다 번영을 약속하는 길을 제공한다는 사회주의의 주장에 반대하는 어떤 주의주장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훌륭하게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표면상) 반증적인 경험들과 기타 단지 우발적인 것으로 인용될지도 모르는 것들(경험들)을 경시할 수도 있겠는데, 즉 그것들은 불행하게도 무시되었거나 제어되지 않은 환경들(곧 사라지고 진정 그의 바로 반대로 나타나게 될)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험들로서, 이와 같은 환경들이 제어되기만 하면 사회주의와 사회적 부의 생산의 증가간에 존재하는 진정한 관계를 드러낼 것이다.

동구와 서구간의 생활수준의 그 현격한 차이조차도(본인이 그것이 제어진 사회실험의 예를 꼭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막중하게 강조한 바 있는 실험) 다음과 같이 적당히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서 서구의 보다 높은 생활수준은 그의 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독이 소련에 대하여 전생배상을 지불해야 했던 반면에 서독에는 마샬원조가 쏟아져 들어갔다는 사실에 의해서, 또는 애초부터 동독이 독일의 저개발 전원 농업지역들을 포용하고 있고, 따라서 결코 똑같은 출발점은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또는 동부지역에 있어서 농노의 전통이 서부지역에서보다 훨씬 늦게 탈피되어 이에 따라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실제 두 동서독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 등의 사실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사실상 사회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해도 경험주의적-실증주의적 철학을 채택하는 순간, 즉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주의주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위, 혹은 악의로 포기되고 대신 어떤 사회주의적 정책계획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물론 오류를 범할 수 있으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항상 자신의 정책의 어떤 사항들을 수정할 만큼 충분히 신축적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회주의는 어떠한 결정적 비판에도 면책되어진다. 이는 어떠한 실패도 항상 아직 제어되지 않은 변수의 개입 탓으로 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급되어야 할 것은 가장 완벽하게 시행된 제어된 실험조차도 이와 같은 상황을 조금도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설명되어야 할 변수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모든 변수들을 제어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는 문

자 그대로 전체영역을 제어할 것을 포함한다는 실제적 이유에서, 아무도 어느 시점에서 이 전체영역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론적 이유에서 그러하다. 이것은 그 대답이 새로이 발견되고 분간되는 경험들에 영구히 좌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위에서 특성화된 면책전략은 예외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효과를 가질 것이다. 또한 경험주의자들의 저술에서 보이듯이, 특히 흄D. Hume에서 보면 어떤 변수들을 눈에 띄게 원인과 결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것으로 관찰할 수 있는 ‘띠帶’가 존재하지 않으므로⁵⁾ 어떤 변수들을 실제로 시도해보고 제어해봄 없이 시작에서부터 교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배제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연관이 없고 우습게 보이는 변수들조차도, 예로서 기후의 차이나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나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스쳐 지나가는 파리와 같은 예도 사전에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금 행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경험이 된다(‘스쳐 지나가는, 또는 지나가지 않는 파리들은 실험의 결과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경험주의적 교리 그 자체에 의하면 이 경험은(사실 그대로 단지 과거의 사례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다시금 그 문제를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언급은 단지 입증하고자 하는 그 자체를 결론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공격이 제시된다 하여도 그것들이 실증적 증거에 근거하고 있는 한 경험주의적 사회주의자는

5)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and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Selby-Bigge(ed.), *Hume's Enquiries*, Oxford, 1970; H. H. Hoppe, *Handeln und Erkennen*, Bern, 1976 참조.

어떤 정책계획의 결과들이 무엇이 될 것인지는 이를 실제로 수행해 보고 경험을 입증하기 전에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관찰 가능한 결과들이 무엇이든 원래의 사회주의 생각(즉 신포퍼주의 철학자 라카토스Lakatos가 사람들의 ‘연구계획’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불렀을 법한⁶⁾은 이전에 무시되었으나 수궁이 가는 변수(그 변수의 비제어가 부정적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가설설정이 된, 한편 새로이 수정된 가설은 다시 무한히 무작정 시도되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하는)를 가리키는 것에 의하여 항상 쉽게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⁷⁾

경험은 단지 어떤 특정의 사회주의 정책계획이 보다 큰 부를 생산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결코 어떤 약간 다른 계획이 어떤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또는 도대체 어떠한 사회주의정책으로 부의 생산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

이제 필자의 논의에 있어서 이들 두 경험주의적-실증주의의 핵심이 되는 신조의 타당성에 도전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 이들 신조에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왜 경험주의조차도 사회주의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그 대답이 다음의 세 단계로 주어질 것이다.

첫째, 필자는 경험주의적 주장은 그 자체가 적어도 실제에 관한

6) I. Lakatos,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Lakatos and Musgrave(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1970 참조.

7) 이 모든 것들이 주로 T. S. Kuhn에 의하여 포퍼주의에 깊이 도입되었다(T.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1964 참조). 가장 급진적인 결론을 도출한 사람은 P. Feyerabend로서 합리성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을 아예 던져버리고 ‘모든 것이 가는 대로’의 기치 아래 허무주의를 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P. Feyerabend, *Against Method*, London, 1978 및 *Science in a Free Society*, London, 1978 참조).

지식으로서 비실증적 지식의 존재를 함축적으로 가정하고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분석해보면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좌절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됨을 논증할 것이다. 둘째, 이는 주로 파괴적인(반론적인) 과제이므로 실제에 관하여 알려주는 지식을 가지거나 생각해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착수해야 하는데, 그 지식은 그 자체가 경험에 의한 확인이나 반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필자는 그와 같은 지식은 생각되어질 수 있고, 전제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경제적 논거가 그 위에 기초하여 구축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지금까지 구축되어 온 바 있는 확고한 인식론적 기초로서 기여하게 될지의 실증적 사례들이 존재함을 제시할 것이다.

경험주의의 핵심적 생각들이 분명히 그럴듯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시작에서부터 언급될 사항은 직관적 수준으로도 사물들이 정확하게 경험주의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논리학, 수학, 기하학, 수요공급의 법칙, 또는 화폐수량이론과 같은 순수 경제학의 어떤 석명들도 그것들이 경험에 의한 어떠한 반증을 허용하지 않거나, 차라리 그들의 타당성이 경험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주지 않으며 단지 언어적 말장난이 아닌가 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다.

그 반대가 훨씬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들 학문분야에 의하여 제시된 명제들(예로써 '만약 한 직선 S와 한 원 C가 한 점 이상에서 만나면 S는 정확하게 C와 만나는 두 점을 가진다', 또는 본인이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동분과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예로서 '먹은 케이크는 남지 않는다'와 같은 석명)은 사실상 확실히 실제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애써 반박해야 실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다.⁸⁾ 내가 만약 케이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먹어버렸다면 나는 더이상 그 케이크를 갖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데, 이는 분명히 경험에 의한 반증가능성을 배제하고 실제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결론인 것이다.

물론 직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재귀적 분석으로서 이는 경험주의자의 주장을 단지 자기좌절의 것으로 입증시킬 것이다. 만약 경험적 지식이 경험에 의하여 반증되어야 하고, 그렇게 반증이 가능하지 않은 분석적 지식이 이에 따라 어떠한 경험적 지식을 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경험주의의 근본적 석명은 그 자체가 무슨 종류의 석명인가? 거듭 그것은 분석적이거나 경험적이어야 한다. 만약 분석적이라면 그 자체의 원칙에 따라 이 명제는 전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을 결여한 종이 위의 낙서에 불과할 것이다.

단지 석명 속에서 사용된 '지식' '경험' '반증가능성' 등과 같은 용어들이 이미 어떤 의미있는 해석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처음부터 간과될 수도 있다. 한편 분석적 석명의 무의미성은 결정적으로 경험주의적-실증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연유한다. 물론 이는 첫번째의 자기좌절적 함정이 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험주의는 그것이 말하고 의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거나 의미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들의 바삭거리는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무엇인가 의미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용어에 어떤 해석이 부여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용어의 해석은 틀림없이 항상한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한 실제적 사안이다. 즉 그 사안 속에서 어

8) 이에 관하여, A. Pap, *Semantics and Necessary Truth*, New Haven, 1958; M. Hollis and E. Nell, *Rational Economic Man*, Cambridge, 1975; B. Blanshard, *Reason and Analysis*, La Salle, 1964 참조.

편 용어의 사용이 시행되고, 그 용어에 의하여 지정된 개념의 실제적 사례들과 더불어 학습되며, 그 개념에 의거하여 용어가 그와 같이 실제와 결부된다.⁹⁾ 그러나 어떤 임의적 해석이 의미할 수 없는 것으로, 예로서 ‘반증가능성’은 우리가 ‘빨강’, 또는 ‘초록’으로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험주의-실증주의가 그의 기본적 신념을 형성할 때, 분명히 말하고자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들은 경험주의자가 그의 방법론의 적절함을 수긍시키고자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경험주의자 자신을 위해서도 그 용어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만약 석명이 우리가 그것이 계속 의미해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의미한다면, 분명히 실제에 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의 일로서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의 근본적 구조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즉 그 속에는 미래의 확인적 반증적 경험들에 앞서 진실 여부가 미리 알려질 수 있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제 이 명제가 분석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진다면, 즉 잠시 가정된 대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단지 사용된 용어들의 의미의 분석에 의해서만 그의 진실성이 확립될 수 있는 그런 석명으로서 간주되어진다면, 우리는 명백한 모순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며, 경험주의는 다시 한 번 자기좌절적이라는 것이, 즉 자신의 목적을 스스로 좌절시키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다.¹⁰⁾

9) W. Kamlah and P. Lorenzen, *Logische Propaedeutik*, Mannheim, 1967 참조.

10) L. v. Mises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L. v. Mises,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Kansas City, 1978, p.5).

“논리적 실증주의의 요체는 모든 선형적 명제들은 단순히 분석적임을 지적하는 것에 의하여 선형적 지식의 인지상(경험적 지식에 입각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지 구두의, 또는 동의어의 반복 사용이며, 오로지 경험만이

따라서 경험주의-실증주의는 다른 가능한 선택을 택해야 하고, 그의 핵심적 신념 그 자체를 경험적 석명이라고 선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분명히 경험주의자의 주장은 더이상 아무런 중요성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정확한 과학적 탐구의 모든 종류의 법칙들이 그(기초)로부터 도출되고 있는 기초가 되고 있는 경험주의의 근본적 명제는 틀린 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도 그의 진위를 자신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똑같이 아주 정반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경험주의의 범위 안에서 어떤 주장이 옳고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의 핵심적 신조가 경험적 명제로 선언된다면 경험주의는 방법론으로서, 즉 과학의 논리학으로서 종식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어떤 석명들을 다루는 어떤 임의적 방법들을 어떤 임의적 이름으로 부르기 위한 어떤 완전히 임의의 구두상의 약속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왜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선택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어떠한 정당성도 결여한 주장이 될 것이다.¹¹⁾

그러나 이것은 설사 그 두번째 가능한 대안이 선택된다 할지라도 경험주의에 반대하여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니다. 보다 먼

합성적 명제들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존재하는데, 즉 이 명제 자체는 (필자는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합성적 선형적 명제synthetic a priori proposition라는 것이다. 그것은 명백하게 경험에 의하여 수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11) M. Hollis와 E. Nell은 언급하였다.

“모든 중요한 석명은 실증주의자에게 있어서 분석적이거나 합성적이다. 어느 것도 양자 모두일 수 없으므로 우리는 구분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문제의 종류의) 석명들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바 있는 실증주의자를 알지 못한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사실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하는지를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도 없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묻게끔 촉구하게 할 것이다.”(M. Hollis and E. Nell, *Rational Economic Man*, Cambridge, 1975, p.110)

밀히 관찰해보면 이 탈출루트는 또다른 자기좌절의 함정으로 인도한다. 설사 이 루트가 택해져도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의 주장은 무언 중 ‘실제적’ 지식으로서 비경험적 지식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인식하기 위하여 둘, 혹은 그 이상의 사건과 연관되는 어떤 인과관계의 설명이 그와 같은 사건들에 관한 경험들 중 한 특정의 사례에 적합한 것으로 발견되었음이 가정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다음 둘째 사례에 적용되어 좀더 경험적 검증을 가진다고 하자.

이제 스스로 반문해보아야 할 점은 경험의 두번째 사례가 첫번째 것과의 관계를 확인, 또는 반증하는 것으로 연관짓기 위하여 설정되지 않으면 안될 전제적 가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경험의 두번째 사례에서도 첫번째 것과 같은 관찰들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이는 확인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증될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분명히 경험주의적 방법론 또한 이를 명백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따라서 더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¹²⁾ 여기에서 언급되어야 할 것은 경험은 단지 둘, 혹은 그 이상의 유형의 사건들의 시간적 연속성에 관한 둘, 혹은 그 이상의 관찰들이 ‘반복’, 또는 ‘불반복’으로 ‘중립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줄 뿐이다.

경험에 의하여 실제로 발견될 수 있는 것과 상관없이 만약 시간 불변의 방식으로 작용하는 영구적 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정된다면, 중립적 반복은 오로지 ‘긍정적’ 확인이 되고 불반복은 ‘부정적’ 반증이 된다. 만약 이에 반하여 원인들이 시간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작용한다고 가정되면 이들 반복적, 또는 불반복적 출현현상들은 단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중립적으로 기록되는 경험들이며, 또한 그렇게 남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로 확인, 또는 반증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 한 경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다른 것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같거나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에 존재하는 모두이며 그 밖에 아무것도 그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반증하다’, 또는 ‘확인하다’를 말할 수 있는 선결조건은 항상성원칙constancy principle이다. 즉 관찰 가능한 현상들이 원칙적으로 그것들의 작용방식에 있어서 항상 일정한 시간불변의 원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과 원칙적으로 우연성이 원인들이 작용하는 방식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오로지 항상성원칙이 유효한 것으로 가정될 때만 원래의 가설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재현하는 것이 실패하면 발생된다.

따라서 오로지 성공적인 재현만이 진정 확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건들이 진실로 원인과 결과이고, 원인들이 시간불변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만 인과적으로 연관된 변수들간에 관찰될 함수적 관계는 모든 실제의 사례들에 있어서 동일할 것임에 틀림없으며,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경우 원인들에 대한 특정의 설명에 잘못이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 결론지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 항상성원칙은 그 자체가 경험에 근거하거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사건들을 결부시킬 관찰 가능한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설사 그와 같은 연결이 존재한다 하여도 경험은 그것이 시간불변인지 여부를 밝혀줄

12) H. H. Hoppe, *Kritik der kausalwissenschaftlichen Sozialforschung*, Opladen, 1983; "Is Research Based on Causal Scientific Principles Possible in the Social Sciences", *Ratio*, XXV, 1, 1983 참조.

수 없을 것이다. 그 원칙은 또한 경험에 의하여 진위가 가려질 수 없는데, 어떤 경험들의(재현실패와 같은) 그 원칙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사건도 마치 경험이 단지 하나의 특정한 유형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입증해준 것처럼(그렇지 않다면 경험은 성공적으로 재현되었을 것이다) 애초부터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사건들)의 작용방식에 있어서 시간불변으로 나타날 또다른 사건들의 조합이 실제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이 배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항상성원칙의 타당성은 반증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지도 않았거나, 그(경험)에 의하여 반증 가능하지 않다 할지라도 항상성원칙은 서로 확인, 또는 반증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험들이 존재하기 위한 이론적으로 필요한 전제적 가정임에 틀림없다(이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경험들과 대조적으로). 따라서 경험주의-실증주의는 그와 같이 이론적으로 상호연관된 경험들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함축적으로 실제에 관한 비경험적 지식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짓지 않으면 안된다.

진정으로 시간불변으로 작용하는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이 틀림없으며, 설사 경험이 결코 이를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그 경우임을 가정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경험주의는 비일관적인 모순이 되는 철학임이 판명된다. 이제 선형적 지식이 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는 적어도 경험주의-실증주의(그의 존재가능성에 대하여 가장 회의적인 철학인)는 실제로 그와 같은 선형적 지식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은 충분히 명백해진다.

설사 그렇다 해도 그(지식)의 타당성이 경험과 독립적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실제적 사물들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지식이라는 바로 그 생각은 이해하기에 어려운 것이다. 과학계에 있어서의, 그리고 ‘지식인 일반’의 견해 속에서의 경험주의-실증주의철학의 압도하는 성공을 달리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경제적 논거가 그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구체적 선형적 기초를 밝히는 보다 실제적인 과업으로 진행해가기 전에 선형적 지식과 같은 것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다 타당한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몇몇 아주 일반적인 논평을 가한다는 것은 적절하게 보인다.

선형적 지식이란 발견, 또는 학습될 필요가 없는 ‘생득관념’이나 ‘직관적’ 지식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떨쳐버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득 여부, 직관 여부 등은 지식의 심리학과 관련되는 문제들이다. 비교하여 인식론은 전적으로 지식의 타당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는데, 틀림없이 선형적 지식의 문제는 전적으로 인식론적인 것이다. 선형적 지식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선형적 지식과 대단히 유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하데, 이는 두 유형의 지식이 습득, 발견, 학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선형적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은 경험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선형적 지식)은 우리들이 그에 관하여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흔히 그 자체를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험적 지식의 획득은 이전에 어떤 종류의 경험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하는 유전적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반복해서 말하여,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

식의 정당성의 입증에 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선험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범주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정확히, 전적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이다.¹³⁾

실증적 측면에서 선험적 지식의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본인이 제시하건대, 경험을 통하여 학습해야 하는 자연이 준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 재료가 존재하고, 그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만든 인위적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인데, 인간이 만든 사물들은 구조물이라는 바로 그 관점에서 그것들의 구조와 의미가 충분히 터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구성방법이 아마도 변경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¹⁴⁾

세 개의 주요 구성개념의 분야가 존재하는데, 언어와 사유, 행동, 그리고 구조물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여기에서 구조물에 관해서는 취급하지 않을 것이나, 지나가는 말로 언급하자면, 유클리드 기하학은 우리가 공간의 실증적 측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계측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적 노르마로서 생각되어질 수 있다(그 점에 있어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상대성이론에 의하여 반증되었다고 말해질 수 없으며, 대신 이 이론은 측정도구의 사용을 통하여 이의 정당성을 미리 전제로 하고 있다).¹⁵⁾

13)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in Kant, *Werke*(ed. Weischedel), Wiesbaden, 1956, vol. II, p.45 참조.

14) 이것은 물론 ‘이성만이 이성 그 자체가 그 고유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낸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칸트의 언명 속에 표현된 칸트적 사고이다(*Kritik der reinen Vernunft*, Kant, *Werke*(ed. Weischedel), Wiesbaden, 1956, vol. II, p.23).

15) 이에 관하여, P. Lorenzen, “Wie ist Objektivitaet in der Physik moeglich”; “Das Begruendungsproblem der Geometrie als Wissenschaft der raemlichen Ordnung”, *Methodisches Denken*, Frankfurt/M., 1968; *Normative Logic and Ethics*, Mannheim, 1969; F. Kambartel, *Erfahrung und Struktur*, Frankfurt/M., 1968, Kap. 3; H. Dingler, *Die Ergreifung des Wirklichen*,

행동분야는 우리의 주된 관심영역으로서 경제학의 선험적 기초가 논의될 때 분석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변경될 수 없는 구성법칙들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선험적 지식에 관한 첫번째 설명이 언어와 사유의 예를 사용하여 주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행함에 있어서, 즉 의사전달하고 토의하고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언어와 생각(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출발점으로 선택되었다.

경험주의자들이 보는 바와 같이 언어는 부호들 및 부호-조합들의 관계적으로 수락된 제도이며, 그것들(부호들 및 부호-조합들)에 다시금 관계에 의하여, 궁극적으로는 명시적 정의의 수단에 의하여 어떤 의미가 부여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언어는 인공적인 인간이 만든 산물이나, 그에 관하여 아무것도 선험적으로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러 다른 모두가 상이한 기호를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 이 존재하며, 사용된 용어들의 의미가 임의적으로 부여되고 변경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언어에 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경험으로부터 학습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는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견해는 부정확한 것이거나 기껏해야 진실의 절반일 뿐이다. 사실 모든 언어는 기호의 관습체계인데, 그렇다면 관습이란 무엇인가? 분명히 ‘관습’은 그 다음으로 관습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는 단지 문제의 회피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관습이라 불리어질 수 있겠는데(그런 점에서 언어가), 관습이라 불리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관습적 함의는 아니다. ‘관습이 이런저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되는 것은, 이 석명은 이미 의사전달수단으로 언어를 이용해야 하므로, 우리가 이미 관습이 무

Muenchen 1955; P. Janich, *Protophysik der Zeit*, Mannheim, 1969 참조.

엇인지를 알고 있음을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관습적 기호 체계이며 언어에 관한 지식 그 자체는 실증적 지식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체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이미 관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한 그는 이를 단지 그가 ‘개’는 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가 아니라 관습의 실제적 진정한 의미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가정되어야 한다. 언어에 관한 그의 지식 자체는 선형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통찰력은 보다 구체적 단계에서 반복되어질 수 있다.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석명이 존재하는데, 틀림없이 경험이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명제를 제의한다는 것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기껏코 경험으로부터 학습될 수 없으며, 차라리 어떤 언어를 말하는 사람에 의하여 미리 가정되었음이 분명하다. 명제가 무엇인가는 그저 또다른 석명으로 그가 이미 이를 명제로 해석할 방법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어떤 말하는 사람에게 설명될 수 없다. 정의들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이다. ‘정의’를 바로 어떤 정의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에 의하여 표면상으로 정의하는 것은 유효한 것이 아니다. 마치 ‘개’라는 낱말이 개를 가리키는 것에 의하여 정의되는 경우처럼, ‘개’라는 발음을 수반하여 개를 가리키는 것이 ‘개’는 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때, 표면상의 정의들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이미 사전에 가정되었음이 분명하며, 또한 ‘정의’의 경우도 그러하다.

발성된 특정의 소리가 무엇인가를(가리키는 것에 의하여 그것의 확인이 보존되어야 하는) 가리키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 다음 특정한 물체들을 같은 일반적 추상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로 확인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는 한, 표면상으로 정의를 정의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요약하면 관습에 의하여 어떤 용어를 정의하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은 ‘정의’의 진정한 의미(즉 진정한 정의)에 관한 선형적 지식을 갖고 있음이 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¹⁶⁾

그렇다면 선형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는 언어에 관한 지식은, 그것이 어떤 언어를 말하는 사람에 의하여 미리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있어서, 실제의 관습을 만들고 어떤 석명을 만드는 것에 의하여 명제를 만들고(즉 무엇을 말하는 것에 의하여 무엇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진정한 정의를 만들어 같은 일반적 속성들을 가지는 특정한 물체들을 확인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의 어떠한 거부도 그것이 명제들을 만들고 정의들을 사용하여 어떤 언어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기반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험도 개념적 경험이므로, 즉 어떤 언어로 표현된 경험(이것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뜻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 또한 언어로 나타내야 하므로 단지 그 점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이므로 선형적으로 언어로써 이것이 진실임을 아는 것에 의하여 우리는 실제에 관한 한 선형적 진실을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즉 추상적 속성들(동일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례들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한)을 가진 특정의 물체들로 만들어졌다는 것, 어떤 한 물체는 어떤 확정적 속성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진실이든 틀렸든간에 그 경우라고 말해질 수 있는 사실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로 사실들(같은 특정한 추상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임에 틀림없다는 것 외에 모든 사실들이 무엇인가는 선형적으로 알려질 수 없는 것 등, 그리고 다시금 경험이란 단지 방금

16) 실제적 대 관습적, 또는 약정적 정의들의 문제에 관하여, M. Hollis and E. Nell, *Rational Economic Man*, Cambridge, 1975, pp.177ff.; B. Blanshard, *Reason and Analysis*, La Salle, 1964, pp.268f. 참조.

설명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뿐이므로 이 모든 것을 경험으로부터 알 수는 없는 것이다.¹⁷⁾

이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다음 구체적 관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행동분야로 논의를 옮겨갈 수 있다. 즉 행동들 또한 그 구성이 법칙들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인간이 만든 구성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들과 행동들의 결과들에 관한 실증적 선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험주의-실증주의는 (모순의 고통에도)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경제적 논거를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없다는 것 등, 경험주의적 철학이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는 데 반하여 상기의 논거는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기초에 입각하고 있다.

첫 논쟁적 단계에서 필자는 경험주의적 방법론이 그 자체의 주장에 반하여 아마도 행동들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에 의거하여 행동들에 관한 선험적 지식의 최초의, 설사 부정적일지라도, 한 사례를 밝혀내주고 있다는 것을 설명·입증할 것이다. 경험주의는 행동들은 다른 현상과 같이 경험에 의하여 확인, 또는 기각될 수 있는 인과관계의 가설들의 수단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고,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그렇다면 경험주의는 행동들과 관련하여 시간불변으로 작용하는 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해야만 할 것이다(실제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선험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자신의 원칙에 반하여).

우리는 어떤 특정의 사건이 어떤 특정한 행동의 원인인지를 미리 알지 못하며(경험은 이를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경험주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진행해가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가기 위해서는), 즉 여러 다른 경험들을

사건들의 순서적 연속성과 관련하여 서로 확인, 또는 반증하는 것으로 연관짓기 위하여, 반증의 경우에는 원래의 인과관계의 가설의 재구축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원인들의 작용에 있어서 시간을 통하여 일정성이 미리 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이것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행동들이 진정 시간불변으로 작용하는 원인들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설명자들(즉 가설을 창조하고 입증하고 반증하는 바로 그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험주의자들이 우리들에게 명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우리들 모두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즉 경험들을 확인·반증하는 일을 잘 소화시키기 위하여, 구가설들을 새로운 것들로 대체시키기 위하여 배울 수 있음이 가정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경험주의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시인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미래에 알게 될 것을, 그리고 이 지식에 기초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알 수 없다.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단지 설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건 연후에 우리의 행동들의 원인을 재구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식과 행동분야에 적용되는 경험주의적 방법론(그의 필요요소로서 지식을 내포하고 있는)은 단지 모순적(이론적 불합리)¹⁸⁾이다.

항상성원칙은 자연적 물체의 영역내에서는 올바르게 가정될 수 있을 것이며, 경험주의의 방법론 그 자체는 그에 적용 가능할 것이나, 행동들에 관하여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확정적으로 실제적

17) A. v. Melsen, *Philosophy of Nature*, Pittsburgh, 1953, 특히 Chapters 1·4 참조.

18) H. H. Hoppe, *Kritik der kausalwissenschaftlichen Sozialforschung*, Opladen, 1983; "Is Research Based on Causal Scientific Principles Possible in the Social Sciences?", *Ratio* XXV, 1, 1983 참조.

그 무엇에 관한 지식인 이것은 확실성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떠한 특성의 행동에 관하여 아무것도 선험적으로 알 수 없지만, 행동들에 관하여 그것들이 행동들인 이상 선험적 지식은 존재한다. 어떠한 행동도 항상 작용하는 원인들에 기초하여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행동에 관한 두번째 통찰력은 같은 유형의 것이다. 필자는 행동들 그 자체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반면 어떤 행동도 행동이 수행되고 있는 물리적 세계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존재를 사전에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인과관계(경험주의적 실증주의철학이 그 자신의 방법론적 절차들을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하는, 설사 그의 가정이 확정적으로 경험으로부터 도출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는 행동의 한 범주로서, 즉 어떤 절차법칙에 따라 우리들에 의하여 만들어졌거나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칙은 드러나는 바와 같이 행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입증된다. 말을 바꾸어 이 법칙은 반증될 수 있음이 생각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를 반증코자 하는 시도조차도 이를 미리 전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과관계에 대하여 논의한 이후에는 그것이 실제에 관한 주어진(가정된) 특성이라기보다 만들어진 특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원인들에 근거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거나 알지 못한다. 대신 우리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조사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어떠한 예외도(예로서 비밀정성의 사례들과 같은) 허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의하여,

그리고 그와 같은 명백한 비밀정성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인과관계의 가설을 만들어내어 그것들을 취급할 태세를 갖추는 것에 의하여 현상들이 그와 같은 원인들을 가지고 있음을 정립한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이와 같이 행위하는 것이 의도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한 일정불변으로 작용하는 원인들을 미리 전제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행위자가 그의 환경에 관여하여 어떤 사물들을 변경시키거나 변화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그렇게 하여 사건들의 선호된 결과나 상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건들의 자연적 과정을 이탈시킨다는 사실에 의하여, 혹은 어떤 활성화적 관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그는 추후의 결과를 알려줄 바로 직전의 사건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가 시간예측을 하는 것외에는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어떤 결과를 그 스스로가 대비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의도적 행동들은 특성화된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그렇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또는 어떤 피할 수 없는 결과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하여(그렇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깜짝 놀랄 일이 되었을 법한) 행위자는 항상 불변으로 작용하는 원인들을 미리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만약 이것이 소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았더라면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그의 대비를 시작하는 데 기초로 삼은 사건들이 진정으로 문제의 결과를 만들어낼 그 일정불변으로 작용하는 인과적 영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아무 대비 및 적응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취해진 대비가 진정으로 소망된 목표로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럴

것이다. 물론 행위자는 원인과 결과관계에 있어서 그의 특정한 가정이 잘못될 수 있을 것이며, 관여에도 불구하고 소망된 결과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대비가 만들어진 예상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간에, 결과들이 예상에 일치하든 안하든, 어떤 가정된 결과나 사건과 관련되는 행동들이 미래에 대해서도 지지되건 안되건, 어떤 행동도 변경되었건 안되었건간에 설사 어떤 특정한 사건의 특정한 원인이 어느 시점에서든 행위자 누구에게도 미리 알려질 수 없다 하더라도, 일정불변으로 작용하는 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

사실 어떤 자연적 현상도 시간불변으로 작용하는 원인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정된 현상이 선행의 변수들에 기초하여 예상될 수도, 만들어질 수도 없음을 제시할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를 입증하고자 함은 다시금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의 출현, 또는 비출현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따라서 그 현상이 일정불변으로 작용하는 원인들의 어떤 망상조직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이 가정된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성원칙의 타당성은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든, 어떤 행동도 이를 사전적으로 전제해야 하므로, 반증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지어야 한다¹⁹⁾(‘경험’이 항상성원칙을 ‘반증’할 수도 있다고 언급될 수 있는 오로지 하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물리적 세계가 진정 그토록 혼돈되어 아무

19) M. Singer, *Generalization in Ethics*, London, 1863; P. Lorenzen, *Normative Logic and Ethics*, Mannheim, 1969; S. Toulmin, *The Place of Reason in Ethics*, Cambridge, 1970; F. Kambartel(ed.), *Praktische Philosophie und konstruktive Wissenschaftstheorie*, Frankfurt/M., 1974; A. Gewirth, *Reason and Morality*, Chicago, 1978 참조.

도 전혀 행동할 수 없다면, 물론 일정불변으로 작용하는 원인들과 더불어 어떤 세계를 말한다든 것은 별로 의미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근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또한 이 비밀정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생존하는 한, 요컨대 이것이 논의되고 있는 바인데, 항상 성원칙은 어떠한 행동도 이를 미리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누구도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경험이 아마도 이를 반증할 수 없는 이상 선행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²⁰⁾

인과관계의 범주 속에 함축되고 있는 것은 시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대비하고, 그에 대하여 사건들을 원인과 결과로 분류할 때마다 이전과 이후의 사건들을 구분짓는다. 틀림없이 이 분류는 경험, 즉 단순한 사물들과 사건들의 관찰로부터 도출된 것은 아니다. 어느 누구의 관찰시제상의 순서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들의 서순은 실제시간 속의 실제사건들의 서순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사실 우리는 사물들이 서로간에 존재하는 실제시제상의 순서와 정반대되는 순서로 그것들을 관찰할 수도 있다. 실제에서 벗어나 관찰 속의 시제순서상으로는 정확한 방식으로 관찰을 해석할 방법을 안다는 것은, 심지어 객관적 시간 속에서 사건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 관찰자는 행위자여야 하고, 또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대비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 것을 필요로 한다.²¹⁾

그는 행위자이고, 경험들은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사건들은 이전 및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20) 그렇다면 인과관계는 물리적 실제의 우발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차라리 행동의 범주이다. 따라서 그 자체는 물리적 세계의 논리적 필수적 특성이다. 이에 관하여 주 7, J. Habermas,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Boston, 1971, 특히 제6장 및 H. H. Hoppe, *Kritik der kausawissenschaftlichen Sozialforschung*, Opladen, 1983, 특히 제2장 참조.

21) H. H. Hoppe, *Handeln und Erkennen*, Bern, 1976, pp.62f 참조.

는 경험들이 행동과 관련지어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알 수는 없다. 어떠한 행동의 수행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된 경험들의 소유를 이미 사전에 가정하고 있는 이상, 행동한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어느 누구도 실제의 시간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건들을 결코 경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간의 의미가 어떤 행위자에게도 그가 행위자라는 사실 때문에, 선형적으로 알려짐이 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더하여 행동은 인과관계 및 어떤 객관적 시순時順을 사전에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필요로 한다. 가치 또한 경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이다. 우리는 행동과정 속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가 사물들 위에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들을 경험한다. 말하자면 행위자에 의해서만 사물들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으며, 한층 더 일반적으로 말하여, 그것들(경험들)이 행동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가치있는 것이 될지도 모를 사물들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음에 따라 사람은 단지 행위자이기 때문에 의식적 경험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모든 행동과 더불어 행위자는 어떤 목표를 추구한다.²²⁾ 그는 어떤 확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것을, 또는 그가 발생을 방지할 수 없는 어떤 결과에 대비할 것을 원한다. 그의 행동의 목표가 무엇이든간에(물론 사람은 단지 경험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을 뿐인데) 그것이 행위자에 의하여 추구된다는 사실은 그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사실 그것은 그의 행동의 시작에서부터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여

타의 다른 행동목표에 비교적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달리 행동했을 것이다. 게다가 그의 가장 높은 가치가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자도 초기 시점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는 후에 일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떤 초기의 사건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상 모든 행동은 소기의 목적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수단들(적어도 행위자 자신의 신체수단과 관여, 또는 대비에 들어간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들 수단들이 그 가치가 부여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인과적으로 필요되는 것으로 가정되었으므로, 그렇지 않다면 행위자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가치가 그것들(수단들) 위에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목표들이 행위자를 위하여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단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는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소기의 목적의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가치를, 이에 더하여 행동은 단지 행위자에 의하여 순서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모든 행동은 선택결정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행동하는 시점에서 행위자에게 가장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 결과를 약속하는 행동과정을 채택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에 의하여 선호되며, 동시에 그것은 덜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가져다줄 기타의 가능한 행동을 배제할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선택해야 하는 결과로, 즉 모든 가치있는 목표들을 동시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결과로, 각기 모든 행동의 수행은 비용의 발생을 수반한다. 행동비용은 한 행동과정을 다른 것보다 선호하는 데 지불되어야 하는 대가이며, 따라서 그것은 실현될 수 없거나 그의 실현이 현재로서 뒤로 미루어지지 않

22) L. v. Mises, *Human Action*, Chicago, 1966; *Epistemological Problems of Economics*, New York, 1981;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 Kansas City, 1978 참조.

으면 안될 가장 높은 가치의 목표에 부여되는 가치와 같아진다. 이는 이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수단들은 다른 훨씬 보다 높은 가치의 목적을 가진 생산에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의 모든 행동은 이의 출발점에서 그의 비용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되며, 행위자에게 이익을 확보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즉 비용보다 높게 매겨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결과를 의미한다. 반면에 손실가능성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와 같은 손실은 행위자가 만약 뒤돌아보아 그 자신의 이전의 예상과는 달리 실제결과가 포기된 대안의 그것보다 낮은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발생한다. 마치 모든 행동이 필연적으로 이익에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손실의 가능성 또한 어떠한 행동에도 따르게 되는 필연적 수반인 것이다. 행위자는 항상 그의 인과적 기술적 지식과 관련하여 틀릴 수 있으며, 목표된 결과들이 성공적으로 생산될 수 없거나, 그것들(목표된 결과들)이 그에 대한 대비로 생산되어진 그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모든 행동은 완성에 시간이 걸리고 여러 다른 목표에 부여된 가치는 그 사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인하여, 즉 이전에는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였던 사물들을 지금은 가치가 낮은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 인하여, 그는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범주의 가치, 목표, 수단, 선택, 선호, 비용, 이익 및 손실 등은 행동의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다. 차라리 상기 범주들 속에서 경험들을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필요로 한다. 행위자가 아닌 어느 누구도 이것들이 경험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은 그것이 행동하는 데 필요한 법칙들에 따라 행위자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 개념으로 구조된다.

그리고 틀림없이 행동들은 실제적 사항들이며,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그 자체가 목표를 겨냥하는 행동이 되므로, 즉 수단을 필요로 하며, 여타 행동과정을 배제하며, 비용을 수반하며, 행위자로 하여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따라서 손실가능성에 구애받게 하며,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지식은 그 자체가 실제에 관한 선택적인 지식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의 소유는, 이는 이미 그의 존재를 미리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물릴 수도 반증될 수도 없는 것이다. 사실상 행동의 이들 범주들이 실제적 존재를 종식하게 되는 상황은 그 자체가 결코 관찰될 수 없는데, 관찰한다는 것 그 자체도 행동이므로 그러하다.²³⁾

경제분석, 특히 사회주의의 경제분석은 그의 기초로서 논리적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행동의 의미에 관한 이와 같은 선택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경제분석은, (1) 행동범주들에 대한 이해 및 가치, 비용, 기술적 지식 등에 있어서의 변화의 의미에 대한 이해, (2) 이들 범주들이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어떤 상황의 설명, 즉

23) 행동개념의 선험적 성격은, 즉 인간은 행동하며, 행동한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된 개념들을 내포한다는 명제의 반증의 불가능성(이를 반증하고자 하는 시도조차도 그 자체가 행동이기 때문에)은 인식론 분야에 있어서, 모순의 법칙과 이의 부정의 불가사의함 속에서 보안을 가진다. 이 법칙과 관련하여, B. Blanshard, *Reason and Analysis*, La Salle, 1964, p.276 참조.

사실상 L. v. Mises는 모순의 법칙the law of contradiction은 인식론상으로 보다 근본적인 ‘행동의 공준들’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L. v. Mises, *The Ultimate Foundation of Economic Sciences*, Kansas City, 1978, p. 35).

정해진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의 의미로서 명기된 정해진 대상을 가진, 그리고 가치로 확인된 정해진 목표들과 비용으로 명기된 정해진 사물들을 가진 행위자들로 확인되는 상황, 그리고 (3)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명기된 행동의 수행으로부터 결과하는 결과물의 도출, 또는 만약 이 상황이 어떤 명기된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행위자에게 가져오는 결과들의 도출, 이상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도출은 그 도출과정에 결함이 없고, 상황과 그 속에 도입된 변화가 주어졌다면 선형적으로 타당한 결론들을 산출해낼 것이다. 또한 설명된 상황 및 상황변화 그 자체가 실제적인 것으로 확인될 수 있으면 실제에 관한 선형적으로 타당한 결론들을 산출해낼 것이다. 이는 그것들의 타당성이 궁극적으로 행동범주들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타당성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토의에서 결론이 도출되었음은 바로 이 방법론적 경로를 좇아서인데, 만약 행위자에 의해 쓰여진 노동이 그 자체가 그의 행동의 목표가 아니고 단지 소득을 생산할 목표에 도달하는 그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음에 이 소득이 그의 동의에 반하여(즉 과세에 의하여) 줄어든다면, 그의 노동사용 비용은 증가되며(그의 신체와 시간을 수단으로 하여 추구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 목표들의 가치는 상대적 평가로 상승하는 것이 되므로), 따라서 일할 인센티브의 감소가 반드시 결과할 것이다.

이 경로에 좇아서도 결론(즉 어떤 선형적 결론으로서)이 도달되는데, 생산수단의 실제사용자들이 경매의 최고호가자에게 그 수단들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도 그 수단들과 더불어 실제로 생산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 수반되는 화폐적 비용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즉 그 수단들을 달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포기된 기회들의 화폐

적 가치). 또한 아무도 더이상 이들 수단들이 행위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생산적 노력의 시작에서부터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사려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재화의 생산에 진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구매력 관점에서의 생산의 감소가 초래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아주 장황한 인식론분야에의 일탈에서 이제 사회공학의 사회주의에 대한 토의로 돌아가자. 이 일탈은 경험주의-실증주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한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회주의를 구했었을 것이다. 즉 범주적인 그 무엇도 어떠한 정책계획에 대하여 말할 수 없으며, 오로지 경험만이 어떠한 정책들의 실제적 결과들을 밝혀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경험주의는 분명히 통찰력과 상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통찰력에 근거할 때 논리는 경험보다 근본적인 것이며, 그 또한 실제적 사물들에 관한 지식인 것이다. 게다가 경험주의-실증주의는 그 자체가 실제적 지식으로서의 선형적 지식의 존재를 사전에 전제해야 하므로 자기모순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사실 실증적 선형적 지식의 한 은축이 존재하는데, 모든 경험하고 행동하는 사람에 의하여(그가 행동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가정되었음이 틀림없는 그것(지식)은 경험에 의하여 반박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도 논란되고 있는 것의 타당성을 미리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 한 결론으로 우리들을 인도한다. 즉 ‘경험은 논리를 물리치지 않으며, 차라리 그 반대가 진실이다.’ 논리는 경험을 개선하고 교정하며, 우리가 무슨 종류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며, 어떤 것들은 차라리 마음의 혼란에 기

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관한 경험으로서라기보다 ‘꿈’이나 ‘환상’으로 이름붙여지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경제적 논거가 그 위에 구축된 기초의 견고함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재확신을 가지고 사회공학의 사회주의에 대한 단도직입적 비판이 가능해지는데, 그 비판은 다시 논리적인 것으로 선험적 지식에 의지하여 사회공학의 사회주의에 의하여 추구된 목표들은 결코 그의 제시된 수단으로 도달될 수 없다는 것을(이것은 그와 같은 지식과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밝혀줄 것이다. 사회공학의 이데올로기는, 그의 결합이 입증된 바 있는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떠나서, 정말로 여타의 사회주의의 유형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음의 비평은 이제 간략해질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적, 사회민주적 및 보수주의적 사회주의에 관하여 앞의 장들에서 제시된 바 있는 분석들은 여기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일단 사회공학의 사회주의의 재산법칙들이 설명되면 분명해진다. 첫째, 희소자원들의 사용자-소유자들은 그것들과 더불어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둘째로, 이 과정의 성과가 사회기술자들의 공동체(즉 문제의 사물들의 사용자-소유자들이 아니며, 그것들을 계약적으로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그 공동체는 실제의 사용자-소유자들의 실행에 간섭하고, 이들 수단의 사용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들의 재산권리를 제약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기술자들의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선호되는 성과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선호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까지 자연적 소유자들의 재산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산법칙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곧 인식하게 되는데, 설사 사회공학의 사회주의가 자연적 소유자들의 재산권리에 대한 단지 온건한 정도의 간섭과 더불어 그의 목표들의 점진적 수행을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는 정도는 사회(사회기술자들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어 있으므로 사적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사람들의 생산적 기업활동은 개인소유자에 대한 항상 증대하는, 또는 전체적인 몰수의 위협 아래서 이루어진다. 이들 관점에서 사회민주적 및 보수적 사회주의 및 사회주의의 사회공학적 유형간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 차이는 다시금 단지 사회심리학적 것이 된다.

마르크스주의적, 재분배주의적 및 보수주의적 사회주의는 미리 정해진 어떤 일반적 목표, 즉 평등이라는, 또는 기존질서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반면 사회공학의 사회주의는 어떠한 설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사상은 간헐적인 부도덕한 간섭의 일종으로, 신축적이며 단편적인 기술공학이다. 기술공학적 사회주의자는 따라서 비판, 반응의 변화 및 새로운 사상에 훨씬 더 개방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이와 같은 태도는 분명히 여타 사회주의 유형의 그 어느 것에도 기꺼이 찬동하려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주는 것이다.

반면에 이 점 또한 유의해야 하는데, 심지어 가장 우스꽝스러운 일을 포함하여 일부 사회기술공학자들은 그들이 마치 장기판의 줄을 움직이듯 적절한 자극을 주어 기술적으로 조작할 변수들의 묶음처럼 간주하는 그들의 동포들에 대하여 시도해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사회공학의 사회주의는 원칙에 있어서 여타 사회주의유형의 그

어는 것보다 차이가 없으므로 그것이 희소한 자원의 사용자들 및 계약자로부터 유리시켜 비사용자 및 비계약자들에게로의 재산 권리의 재분배를 반드시 수반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또한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며 부의 생산감소로 인도한다. 따라서 이는 반드시 그러하며, 아무도 이 결론에 도달하는 데 애써 제일 먼저 시도할 필요가 없다. 이 일반적 결론은 사회기술공학이 취할지도 모를 특정의 과정에 불문하고 사실인 것이다.

사회기술공학자들의 공동체가 일부 사람들이 낮은 소득을 가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서 현 시장수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고정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자.²⁴⁾ 이것은 피고용자들에게 더이상 어떤 종류의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조정을 위한 파업을 허용하지 않음은 물론 고용주들의 재산권리에 대한 제약을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결과는 실업임에 틀림없다. 낮은 시장임금으로라도 보수를 받는 대신 일부 사람들은 이제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일부 고용주들은 추가적 비용을 지불할 수 없게 되거나, 혹은 낮은 비용으로 그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그들이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만을 고용할 수 있음으로 해서 손해를 볼 것이며, 따라서 생산의 산출액은 상대적 평가로 낮아질 것이다. 또한 피고용자들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얼마간의 소득 대신에 이제 아무 소득도 벌 수 없음으로 해서 손해볼 것이다. 이로부터 피고용주와 고용주간에 누가 가장 고통을 받을지는 선형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전자 가운데서 그들의 특정 노동서비스가

24) 최저임금의 효과에 관하여, Y. Brozen and M. Friedman, *The Minimum Wage: Who Pays?*, Washington, 1966 참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일 것이며, 후자 가운데서 특정하게 정확히 이런 유형의 노동을 채용하는 사람들이 될 것임을 제외하고는 설명될 수 없다.

그렇지만 낮은 수준의 기술노동 서비스가 특히 젊은층, 흑인, 여성 및 오랜 기간의 가사일 등을 돌보다 노동력으로 재진입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에 특히 자주 있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알고 있으므로, 이들이 실업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그룹이 될 것임은 확실성을 가지고 예측될 수 있다. 그리고 틀림없이 간섭이 원래 치유할 것으로 여겨졌던 그 문제(일부 사람들의 낮은 소득)가 이제 이전보다 한층 더 악화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은 어떠한 경험과 상관없이 선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잘못된 경험주의적 방법론에 오도된 나머지 이 모든 것이 우선 시도되어 보아야 하고 그것이 달리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 속임수일 뿐만 아니라, 잘못 생각된 지적 기초에 근거한 모든 행동이 그러하듯 그것은 지극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외에 또다른 예를 보면, 사회기술공학자들의 공동체가 주택이나 아파트의 임대료가 현실 그대로 높고,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의당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안락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아파트에 대하여 최고임대료를 수렴하는 임대료규제 입법조치가 통과된다.²⁵⁾ 이것이 뉴욕시의, 또는 훨씬 거대한 규모인 이탈리아 전지역에서의 상황이다. 다시금 그의 결과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야 할 필요없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

25) 임대료규제의 효과에 관하여, C. Baird, *Rent Control: The Perennial Folly*, San Francisco, 1980; F. A. Hayek et al., *Rent Control: A Popular Paradox*, Vancouver, 1975 참조.

투자의 보수가 낮아짐에 따라 신규 아파트건설이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이 낮아 수요가 상승할 것이므로 당장의 부족이 나타날 것이다. 일부 낡은 아파트는, 만약 고정된 임대료가 그토록 낮아 임대료가 그 아파트를 그저 쓰고 사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퇴락화의 비용조차도 보상할 수 없다면 더이상 임대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천의 빈 아파트 사태 다음에 엄청난 주택부족이 발생할 것이다(뉴욕시와 이탈리아는 이의 완벽한 예시들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여전히 신규 아파트건축을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이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행운으로 어찌해서 값싼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로서 가족규모가 통상 라이프사이클을 통해 변화하고, 따라서 주택에 대한 각종의 필요가 등장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용기회들이 다른 장소들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다시 이사하려고 하지 않음에 따라 부족의 증대는 대단히 희생이 큰 비신축성으로 결과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살 때에는 아주 알맞은 규모였으나 지금은 지나치게 넓어진 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노년층은 빈 것이 없어서 여전히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리고 보다 큰 평수를 필요로 하는 젊은 가구들은 그들에게 맞는 큰 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주거용 임대공간의 낭비가 발생한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의 특정 노동서비스에 대한 가장 큰 수요가 존재하는 곳으로 주거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혹은 단지 직장이 있는 곳에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현재의 고정된 낮은 임대료보다 훨씬 높은 값을 주고 단지 숙소만을 찾음으로 인하여 낭비가 발생한다. 분명히 사회공학자들이 임대료규제 입법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그 문제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따라서 일반적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다시금 이 모든 것은 선형적으로 알게 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회공학자에게는 실제로 시도해보지 않는 한 결과를 알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의 방법론에 의하여 오도되어 이 경험도 아마 다음 간섭을 위한 준비단계를 제공해줄 뿐일 것이다. 사람들이 일부 기타 중요한 변수를 제어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그 결과는 정확하게 예기한 것과 같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진행해가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장이 밝혀주었듯이 최초의, 또는 어떤 후속의 간섭행위들도 그것들 모두가 비사용자들 및 비계약자들에 의한 사물의 자연적 소유자들의 권리에 대한 간섭을 (반드시) 수반하므로 그들의 목표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낼 방법이 존재한다.²⁶⁾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적 사고로 돌아가는 것만이 필요해지는데, 즉 어떤 기초(그 기초의 부정조차도 그의 타당성을 사전에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초)에 근거하는 인간행동에 관한 한 선형적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독특한 인식론적 성격을 깨닫는 것, 그리고 경험주의적-실증주의적 방법론에 근거하는 행동의 과학은 마치 ‘먹어버린 케이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석명만큼이나 기초가 잘못 세워진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26) L. v. Mises, *A Critique of Interventionism*, New Rochelle, 1977 참조.

제7장

자본주의의 논리적 정당성 및
사회주의가 도덕적으로 방어될 수 없는 이유

The Ethical Justification of Capitalism and Why Socialism is Morally Indefensible

앞의 네 개의 장들은 자본주의의 성격을 특성화하는 ‘재산의 자연적 이론’(즉 최초의 사용-최초의 소유법칙)에 철저히 기초하지 않는 사회제도로서의 사회주의는 부의 생산과 평균적 생활수준에 관한 한 필연적으로 열등한 제도임이 분명하고, 또한 사실이 그러하다는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리와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경제적 부와 생활수준을 한 사회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족시킬 것이며(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생활수준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상기 경제적 논리에 관한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경제적 부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기타 가치들을 훨씬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회주의를 위하여 인류에게 보다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사회주의의 원래의 주장을 조용히 잊어버릴 수 있고, 대신 사회주의가 번영에의 관건이 되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곧 정의, 공정함 및 도덕성(이들 용어들이 여기에서는 동의어로 사용됨)을 의미한다는 전적으로 다른, 그러나 한층 더 고무적인 주장에 호소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사회주의는, 정의와 공정성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부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과 정의간의 선택적 관계(trade-off, 즉 ‘보다 큰 정의’를 위한 ‘보다 적은 부’의 교환은 정당화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주장이 본장에서 어느 정도 상세히 검토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두 독립된, 그러나 상호연관된 주장들이 분석될 것이다. (1) 특히 마르크스사회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 진영에 의하여, 또한 덜한 정도로나마 보수주의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주장, 즉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어떤 주의주장이 그의 원칙들의 도덕적 가치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자본주의는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는 주장, (2) 규범적 석명들(그렇게 해야 한다는 ‘should’, 또는 ‘ought’의 석명들)은 오로지 사실들에 관한 것도, 단순히 구두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므로, 경험적 분석적 석명들 어느 것도 아니다. 이는 진정으로 전혀 석명들이 아니며, 아무리 광의로 해석해도 적어도 ‘인식적’인 것으로 부를 수 있는 석명들이 아니며, 대신 감정을 표현하거나 일으키기 위하여(예로서 ‘와’, 또는 ‘음’과 같은) 사용된 단순한 ‘구두표현들’이라는 경험주의적 사회주의의 주장이다.¹⁾

둘째, 경험주의적, 또는 도덕분야에 적용된 그의 주장으로서 ‘윤리적 권고주의(emotivism)’의 요구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 다루어질 것이다.²⁾ 윤리적 권고주의의 주장은 실증적 및 분석적 석명간의 이분법적 구분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격의 것이라는 핵심적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의 주장을 수락함에 의하여 도출된다. 즉 어떠한 석명도 실증적이거나 분석적이어서야 하며 결코 양자 모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마치 경험주의가 일반적으로 자기좌절적으로 판명된 것과 같이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면 자기좌절적으로 판명된다는 것이 제시될 것이다.³⁾ 만약 윤리적 권고주의가 타당한 주장이라면 규범적 석명들에 관한 그의 기본적 명제는 그 자체가 분석적이거나 실증적이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감정의 표현임에 틀림없다. 만약 그것이 분석적인 것으로 취급된다면 단지 구어적 퀘변으로

1) 그와 같은 주장을 위하여, A. J. Ayer, *Language, Truth and Logic*, New York, 1950; C. L. Stevenson, *Facts and Values*, New Haven, 1963; *Ethics and Language*, London, 1945; G. Harman, *The Nature of Morality*, New York, 1977; D. Hume, *Treatise on Human Nature*(ed. Selby-Bigge), Oxford, 1970 참조.

2) 제6장 참조.

3) 제6장 참조.

서 실제적인 그 무엇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은 단지 한 소리를 또다른 소리로 정의내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윤리적 권고주의는 텅빈 원칙이 될 것이다.

대신 만약 그것이 실증적이라면, 그 원칙은 그의 핵심적 명제가 아주 틀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중요성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맞건 틀리건간에 그것은 단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한 명제일 뿐인데, 즉 어떤 표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표현들은 그 자체 속에 이것이 왜 미래에도 해당되어야 하며, 따라서 왜 우리는 감정의 표현 이상인 규범적 석명들을 추구해야 하며, 또는 차라리 추구해서 안되는가 하는 (그 석명들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의도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도 대체 제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윤리적 권고주의원칙은 만약 그것이 세번째 대안을 채택하고, 그의 핵심적 신조 자체도 일종의 ‘와’ 석명으로 선언한다면, 그의 모든 중요성 또한 상실할 것이다. 만약 이 경우라면 그것은 우리가 왜 어떤 석명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아무 이유도 함유하지 못하며, 따라서 어느 사람의 고유의 직관, 또는 느낌이 다른 사람의 ‘와 하는 것’과 일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자기의 고유의 느낌에 따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규범적 석명이 개짓는 소리 이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윤리적 권고주의의 주장은 짓어대는 것에 대한 코멘트 이상이 아니다.

반면에 만약 경험주의-윤리적 권고주의의 핵심적 석명(즉 규범적 석명은 인식론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단지 느낌의 표현이라는)이 분석적이거나 실증적이 아닌 모든 석명들을 단순한 표현적 기호들로 생각해야 한

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어떤 의미있는 석명으로 그 자체가 간주된다면, 윤리적 권고주의의 주장은 아예 모순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적어도 함축적으로 어떤 통찰력(즉 규범적 석명들에 관한 것들)은 단순히 이해되고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없지만, 특정의 의미들을 가지는 석명들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윤리적 권고주의는 흔들린다는 것을 결론짓지 않으면 안되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말하고 의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그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토의되고 평가될 수 있는 주장으로서 그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토의될 수 있는 의미있는 주장이라면, 이 사실은 바로 자체의 기본적 전제가 거짓임을 드러내게 된다. 게다가 또한 언급되어야 할 것은, 사람은 의사전달을 할 수 없고 논쟁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할 수 없고 논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그와 같은 의미있는 주장이라는 사실은 알가알부될 수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대신 단지 그것이 언어로 제시되고 의사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의미있는 것이며, 그의 인식적 가치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지적 주장에 의해서도 사전적으로 제시되었음이 분명하다.

달리 논의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의 타당성을 함축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험주의적 인식론 대신에 이성론적 인식론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 똑같은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윤리관에 대하여 이성론적 접근을 수락한다.⁴⁾ 그럼에

4) 윤리관에 대한 각종의 ‘인지주의적’ 접근들을 위하여, K. Baier, *The Moral Point of View*, Ithaca, 1958; M. Singer, *Generalization in Ethics*, London, 1863; P. Lorenzen, *Normative Logic and Ethics*, Mannheim, 1969; S. Toulmin, *The Place of Reason in Ethics*, Cambridge, 1970;

도 그렇게 거부당한 윤리적 권고주의와 더불어 필자는 마르크스주의적 및 보수주의적 사회주의자들과 같이 분담하고 있는, 즉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주의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나의 확정된 목표로부터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지금까지 도달한 것은 규범적 석명들이 경험적 지식에 입각한 것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 그 자체는 경험적 지식에 입각한 문제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실제적 노르마제들이 진정으로 타당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증명까지는 여전히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생각은 틀린 것이며, 여기에서 이미 훨씬 많은 것이 의심되기보다는 터득되었다. 상기 논의는 어떠한 진실성 주장, 그것이 진실이거나 객관적이거나 타당한 것이라는(모든 용어들이 여기에서 동의어로 사용됨) 어떠한 명제와도 결부된 주장은 논증의 과정 속에서 제기되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그렇다는 것이 왈가왈부될 수 없기 때문에(사람이 의사전달하고 논의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의사전달하고 논의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 가정되고 있음이 틀림없기 때문에(사람은 이의 부정이 진실이라고 주장하지 않고는 이 석명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적절하게 ‘의사전달과 논증의 선행성’이라고 일컬어졌다.⁵⁾

F. Kambartel(ed.), *Praktische Philosophie und konstruktive Wissenschaftstheorie*, Frankfurt/M., 1974; A. Gewirth, *Reason and Morality*, Chicago, 1978; J. Wild, *Plato's Modern Enemies and the Theory of Natural Law*, Chicago, 1953; H. Veatch, *Rational Man. A Modern Interpretation of Aristotelian Ethics*, Bloomington, 1962; *For An Ontology of Morals. A Critique of Contemporary Ethical Theory*, Evanston, 1968; *Human Rights. Fact or Fancy?*, Baton Rouge, 1985; L. Strauss,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1970 참조.

이제 논의한다는 것은 결코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자유로이 변동하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차라리 논증은 항상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실성 주장이 논증 속에서 제기되고, 결정되고, 논증이 실제적인 일이라고 가정한다면(그 과정 속에서 언급된 것은 무엇이든 별도로 하고), 상호주관적으로 의미있는 노르마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된다.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논증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들(노르마들)은 그것들이 객관성과 진리의 실제적 사전조건들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한 인식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노르마는 타당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되었음이 틀림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달리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한데,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논증의 기초가 되고 있는 그와 같은 노르마들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 정당화될 수 있고없고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논증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하게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윤리성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특이한 이성의 역할에 정확한 설명이 주어진다.

경험적 자연법칙들을 확립함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과 대조적으로

5) K. O. Apel, *Transformation der Philosophie*, Vol. 2, Frankfurt /M., 1973, “Das Apriori der Kommunikationsgemeinschaft und die Grundlagen der Ethik”; J. Habermas, “Wahrheitstheorien”, H. Fahrenbach(ed.), *Wirklichkeit und Reflexion*, Pfullingen, 1974;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Vol. 1, Frankfurt/M., 1981, pp.44ff; *Moralbewusstsein und kommunikatives Handeln*, Frankfurt/M., 1983 참조.

‘도론의 선행성’의 ‘행동의 선행성’과의 구조적 유사성, 즉 제6장에서 설명된 바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위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석명을 반증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석명을 반증하고자 하는 시도는 어떤 행동을 수행할 방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을 유의할 것.

6) 방법론적으로 우리의 접근은 A. Gewirth가 ‘변증법적으로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기술한 것, 즉 칸트의 선행적 연역법에 따라 모형화된 선행적 사유의 방법과 밀접한 유사성을 나타낸다.

이성은 선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도덕법칙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과를 산출해낸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논증의 개념 그 자체 속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을 명시적인 것으로 만들 뿐이며, 따라서 어떠한 실제적 노르마제의를 분석함에 있어서 논증의 임무는 그것이 바로 그 윤리성(그 윤리성의 지지자는, 그의 제의를 만들 수 있는 한 타당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안되는)과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⁷⁾

그의 타당성이 왈가왈부될 수 없는(그것을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함축적으로 그것을 미리 전제해야 하므로) 논증 속에 함축되어 있는 윤리성은 무엇인가? 논증은 명제가 보편적 수용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는 그것이 노르마제의인 경우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관찰된 바 있다. 윤리성의 황금률the Golden Rule 속에, 또는 칸트Kant의 정언적 명령 속에 구성되고 있는 바와 같은 노르마제의에 적용할 때, 이것은 예외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반적 원칙들로서 구성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노르마들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⁸⁾

사실 논증은 논의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단 순히 그의 논쟁적 의미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 윤리성의 보편성원칙은 이제 보다 광의의 ‘의사전달과 논증의 선형성’ 속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보편성원칙은 단지 도덕성의 순수하게

7) 우리의 접근과 ‘자연적 권리’ 접근간의 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철학적 사유에 관한 자연법, 또는 자연권리의 전통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노르마들은 바로 인간의 본성에 기초를 둔 사유수단에 의하여 분간될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한다.

8) 보편성원칙은 윤리관에 대한 모든 인지주의적 접근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의 고전적 해설을 위하여,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Kant, *Werke*(ed. Weischedel), vol. IV, Wiesbaden, 1956 참조.

정식적인 기준을 제공해줄 뿐이다. 틀림없이 이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검토할 때 여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법칙들을 명기하는 타당한 노르마가 되기 위한 모든 제의들은, 여러 다른 계층 사람들간의 구분이 차별을 의미하지 않고, 다시금 모든 사람에 의하여 사물들의 성질에 근거하는 것으로 수락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정한 노르마로서 보편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적법한 주장을 갖고 있지 않음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노르마들은 보편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데 반하여, 그들의 구성을 충분히 주목해보면, 가장 얼토당토않은 노르마들, 그리고 물론 훨씬 보다 적절한 것, 심지어 공공연히 양립할 수 없는 노르마들도 쉽게 그 테스트를 똑같이 통과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일요일에 술 취하지 않으면 안되며, 어길 경우 벌금을 물 것이다’, 또는 ‘알코올을 마시면 누구든지 처벌받을 것이다’는 양자 모두 사람들의 그룹들간에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법칙들이며, 따라서 양자 모두 보편성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보편성원칙만으로는 우리에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는 어떠한 실증적 노르마세트도 제공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성원칙은 제외하고라도 논증 속에 함축되어 있는 다른 실증적 노르마들이 있다. 그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세 가지 서로 연관된 사실들을 주목하기만 하면 된다.

첫째, 논증은 인식적(경험적 지식에 입각하는)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일이라는 것, 둘째, 논증은 행동의 형태로서 자신의 신체라는 희소 자원의 사용을 수반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논증은 상호작용의 충돌방지 방법이라는 것이다. 언급된 사항들에 항상 합의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논증이 진행되고 있는 한 적어도 언급되어진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적어도 동의한다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자신의 신체에 대한 각 개인의 독점적 지배를 상호 인정한다는 것이 논증이 존재하는 한 사전에 전제되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이것을 부정하고 이의 진실을 함축적으로 시인해야 함이 없이 이 부정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유의할 것).

따라서 우리는 논증 속에 함축되어 있는 노르마는 모든 사람이 그의 행동과 인식작용의 수단으로서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단지 적어도 자기자신의 신체에 대한 각 개인의 재산권의 함축적 인정이 존재하기만 하면 논증은 발생할 수 있다.⁹⁾ 오로지 이 권리가 인정되는 한 누가 논의 속에서 말해진 것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말해진 것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으며, 또는 ‘노’를 말하고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 어떠한 노르마도 정당화하고자 하는 어느 누구도 단지 ‘이것이 내가 사실이라고, 그리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9) 희소성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도덕법칙들을 구축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재화들이 초풍요하면(‘공짜’ 재화들) 재화들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을 수 없으며, 행동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윤리관도 율게 생각되어졌다면 재산이론으로, 즉 희소수단들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부여하는 이론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달리는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분규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도덕철학자들은 널리 인식되어 온 경제학적 무지 때문에 이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H. Veatch(*Human Rights*, Baton Rouge, 1985, p.170)처럼, 그들은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엄밀한 정의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필시 모호함과 임기응변의 정책결정으로 끝나버린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으로서의 인권에 관해, M. N. Rothbard, *The Ethics of Liberty*, Atlantic Highlands, 1982, Chapter 15 참조.

말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재산권리가 정당한 노르마라는 것을 사전에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자기자신의 신체에 대한 재산권리를 왈가왈부하고자 하는 어느 사람도 모순에 사로잡힐 것이며, 이런 식으로 논의하고, 그의 논의가 진실임을 주장할 때에는 이미 함축적으로 이 노르마를 정당한 것으로 수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어떤 석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때는 적어도 함축적으로 다음의 노르마가 정당화됨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아무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청으로 침해하고, 따라서 자기자신의 신체에 대한 어느 누구의 지배도 이를 한정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법칙은 논쟁적 정당성으로서의 정당성의 개념 속에 함축되어 있다. 정당화한다는 것은 강제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누가 이 법칙의 반대논리를 구축한다면, 즉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청으로 침해할 권리를 갖는다(그런데 이 법칙은 보편성원칙의 정식적 테스트를 통과하는 법칙이다). 따라서 이 법칙은 논증 속에서 지지되지 않으며, 또 될 수도 없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앞에서 언급한 비침해원칙의 바로 반대의 타당성을 사전에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신체에 관한 재산노르마의 이와 같은 정당화로 별로 많은 것이 얻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체에 관한 분쟁(이와 같은 분쟁의 가능한 회피를 위하여 비침해원칙은 보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해를 정식화해준다)은 모든 있을 수 있는 분쟁들의 단지 작은 부분을 구성할 것이지만 이 생각은 정확하지 않다. 틀림없이 사람은 공기와 애정만으로 살지 않는다. 사람은 단지 생존하기 위하여 많고적은 수의 기타 사물들을 또한 필요로 한다.

물론 생존하는 사람만이 논증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이, 이들 기타의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이들의 사용에 관한 상충하는 평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노르마 또한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다른 노르마도 그 자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비침해원칙과 양립될 수 있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이 원칙과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되는 모든 노르마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것들(이것들과 관련하여 노르마들이 정식화되어야 하는)은 희소재들이므로(마치 사람의 신체가 희소재인 것처럼), 그리고 재화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특정한 종류의 희소재화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르마들을 정식화한다는 것은 단지 필요한 것이므로, 특정한 종류의 재화에 관한 한 특별한 재산노르마로 생각되는 비침해원칙의 명기는 실은 이미 재산의 일반이론에 관한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우선 균일화원칙들의 수단에 의하여 모든 가능한 상충들을 회피하는 데 도울 목적으로 모든 재화들에 적용 가능한 법칙들의 구성으로서 이와 같은 재산의 일반이론을 표명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일반이론이 비침해원칙 속에 어떻게 함축되고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비침해원칙에 따라 사람은, 그가 그것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의 신체로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자신의 신체를 활용하듯 다른 희소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이들 기타 사물들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이미 전용된 바 없고 아직 자연적 비소유상태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하다.

희소자원들이 가시적으로 전용되는 순간, 로크 J. Locke가 표현한¹⁰⁾ 즉 누가 그것들과 ‘자신의 노동을 혼합하는’ 순간, 그리고 이의 객관적 흔적이 존재하게 되는 순간, 이에 따라 재산의 독점적 지배권은 오로지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이후의 소유자에게로의 재산권리의 계약적 이전에 의거하여 취득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전의 소유자들의 이와 같은 독점적 지배를 일방적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나 문제의 희소수단들의 물리적 특성을 임의로(요청받지 않았는데도) 변경시키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체에 대한 침해의 경우와 정확한 유사성을 가지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다.¹¹⁾

이 원칙의 비침해원칙과의 양립성은 상반토론법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다. 첫째, 만약 아무도 자신의 신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취득하고 지배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정식의 보편성 테스트를 통과하는 한 법칙), 우리는 모두 존재를 멈추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규범적 석명들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혹은 그것에 관한 이 논문의 관심이 되는 어떠한 다른 문제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오로지 우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우리들은 자신의 물리적 신체에 대한 것에 더하여, 그 다음으로 기타 희소재화들에 대한 재산권을 불법화하는 어떤 노르마도 수락하지 않는다는, 실은 수락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재화들을 취득할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자기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자연이 준 사물들에 대한 그와 같은 독점적 지배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면(즉 그의 아무도 이

10) J. Locke, *Two Treatises on Government*(ed. P. Laslett), Cambridge, 1970, 특히 2·5 참조.

11) 비침해원칙과 원전용원칙에 관하여, M. N. Rothbard, *For A New Liberty*, New York, 1978, Chapter 2; *The Ethics of Liberty*, Atlantic Highlands, 1982, Chapters 6~8 참조.

전에 그것과 더불어 아무것도 한 바 없는 사물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행하여),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그것들(사물들)에 대하여 작업한 바 없거나, 어떤 특정의 용도에 사용한 바 없는 그와 같은 사물들에 대한 특정인의 소유권 주장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졌다면, 사람이 노동을 통하지 않고(즉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희소자원간에 어떤 객관적이며 상호주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연결을 수립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구두의 선언에 의하여, 즉 포고에 의하여 재산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능해질 것이다.¹²⁾

그러나 선언을 통하여 재산권리를 취득함은 위에서 정당화된 바 있는 신체에 관한 비침해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가지, 만약 우리가 정말 포고령에 의하여 재산을 전용할 수 있다면, 이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자신의 소유로 단지 선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신체와 다른 사람의 신체간에 명확한 구분을 만드는 비침해원칙의 결정과 상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분은 기타 다른 것과 비교하여 신체들에 대하여는 ‘나의 것’과 ‘너의 것’간의 분리가 구두의 선언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

12) 이는 J. J. Rousseau의 주장인데, 그는 자연이 준 자원들을 울타리를 둘러침으로써 개인소유화하여 사적으로 전용하는 시도에 저항할 것을 요구하였다. J. J. Rousseau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사기꾼에게 귀기울이는 것을 조심하여라. 만약 땅의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고, 땅 자체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망각한다면 그대는 망한 것이다.”[“Discourse upon the Origin and Foundation of Inequality among Mankind”, J. J.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ed. G. Cole), New York, 1950, p.235].

그러나 재산주장이 포고령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정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논할 수 있다. 재산권주장이 단순한 포고령에 의거하지 않는 한 그 밖에 어떻게 ‘모든 사람’(문제의 자원들에 결코 아무것도 한 바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여)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그것을 실제로 활용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무엇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다.

에 것처럼 명료하고 모호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그런데 서로 경합되는 선언적 주장들간의 결정은 선언외의 어떤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한 만들어질 수 없다).

그 분리는 어떤 특정의 희소자원이 사실상(이를 위한 객관적 지표들이 존재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의도나,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의도의 표시가 구체화로 만들어졌다는 관찰에 근거한다. 게다가 보다 중요하게 재산이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선언을 통해서 취득된다고 말하는 것은 공공연한 실천적 모순을 내포하는데, 실제로 말해진 것에 불구하고 무엇이든 말하기 위한 그 자신의 수단으로서의 자기신체에 대한 그의 독점적 지배권이 사실상 미리 전제되어 있지 않는 한 아무도 그렇게 말하고 선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동들을 통한 원전용권은, 논증의 논리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비침해원칙과 양립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원칙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 간접적으로 물론 사회주의의 재산이론과 같은 여러 다른 권리를 명기하고 있는 어떠한 법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밝혀졌다. 한편 왜 어떠한 사회주의의 윤리관도 방어할 수 없는가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재산의 ‘자연적’ 자본주의적 이론의 몇몇 규정들의 중요성을 좀더 명백히 해주는 한 토의) 이들 후자의 노르마들을 정당화된 것으로 분류함에 의하여 함축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관한 몇몇 언급은 적절한 것 같다.

이 주장을 만들기 위하여 ‘이다’로부터 ‘해야 한다’를 도출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사실 우리는 ‘해야 한다’와 ‘이다’간의 그 큰 간격이 논리적으로 교량을 연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의 일반적인

로 수락된 견해에 선뜻 찬동할 수 있다.¹³⁾ 차라리 재산의 자연이론의 결정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식상의 (경험적 지식에 입각한) 문제이다.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그 원칙을 ‘공정한’, 또는 ‘정의로운’ 것으로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은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마치 타당성이나 진실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이 항상 그것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원칙이 공정하다고 말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법칙들을 제외하거나 심지어 집행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노르마들과 관련하여 상황은 과학적 연구의 다른 학문분야들에 있어서의 그것과 대단히 흡사하다. 예로서 어떤 경험적 석명들은 정당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오로지 객관적이며 타당한 석명들만을 옹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차라리 사람들은 심지어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과 주관적간의, 그리고 진위간의 구분은 이것 때문에 조금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는다. 대신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노르마들과 관련한 경우는 흡사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위에서 제시한 바 있는 정당성의 의미에 입각하여 타당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노르마들을 보급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화할 수 있는 노르마와 할 수 없는 것간의 구분이 이것 때문에 용해되어 버리지는 않는다. 마치 객관적 및 주관적 석명들간의 그것이 무식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

13) ‘이디스’ 석명으로부터 ‘해야 한다ought’의 도출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W. D. Hudson (ed.), *The Is-Ought Question?*, London, 1969 참조. 사실과 가치를 양분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상기 주 4에서 인용된 자연권에 관한 문헌 참조.

과 같다. 대신 이에 따라 그와 같은 다른 타당치 않은 노르마들을 보급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대체적 노르마제이나 시행이 논증 속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분명히 한 다음, 다시금 무식하거나 부정직한 것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비침해원칙의 타당성과 행동을 통한 원전용원칙의 그것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결과로서 어떠한 종류의 타당하거나 진실된 석명들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 주장에서보다 도덕적 주장에서 한층 더 정당성이 존재한다. 타당하거나 진실된 것은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아마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방금 제시된 바와 같이 적어도 이들 법칙의 함축적 수락은 아무튼 생존해서 토의할 수 있는 필요한 사전조건이다.¹⁴⁾

그렇다면 엄밀하게 어떠한 종류의 사회주의 재산이론도 타당한 것으로 정당화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모든 현실적으로 실천된 형태의 사회주의와 그의 이론적으로 제의된 대부분의 모델들은 그 첫째의 정식적 보편성 테스트를 통과조차 못한다는 것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이들 형태(사회주의)는 모두 그들의 법적 규칙체계 속에 ‘어떤 사람은 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의 형태를 가지는 노르마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 여러 다른 권리나 의무를 명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법칙들은 형식상의 이유만으로도 토론(논증) 속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가능한 참가자에 의하여

14) M. N. Rothbard, *The Ethics of Liberty*, Atlantic Highlands, 1982, p.32; D. Osterfeld, “The Natural Rights Debat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VII, 1, 1983, pp.106f 참조.

공정한 것으로 수락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여러 다른 계층의 사람들간에 만들어진 차별이 양쪽 모두에 그것이 사물들의 성질에 근거하는 것으로 수락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그와 같은 법칙들은 그것들이 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대한 상응하는 차별을 희생의 대가로 하여 법적 특권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수락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 즉 무엇을 하도록 허용받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들이 공정한 법칙들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¹⁵⁾

대부분의 사회주의는 실천된 것이든 설교된 것이든 다음과 같은 법칙들의 집행에 의존해야 한다. 즉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쓸 권리를 가진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좋은 처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설사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으로 하여금 이들 축복(처방)을 취하도록 돕는 것이 허용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따라서 그들을 돕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너무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은 이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또는 한층 더 분명하게 ‘컴퓨터산업은 농민들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업자를 위하여 피고용자가’, ‘어린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이 없는 사람들이’ 등등, 또는 그 역, 이들 모두는 재산노르마로서 타당한 노르마이론의 구성부분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심각한 상충이 됨으로써 쉽사리 기각될 수 있는데, 이들 모두는 그들의 구성에 있어서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15) M. N. Rothbard, *The Ethics of Liberty*, Atlantic Highlands, 1982, p.45 참조.

그러나 만약 이 점이 보완되고 ‘아무도 ……할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형태의 전적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노르마들을 담고 있는 이론이 정말로 구축된다면, 사회주의의 재산이론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렇다 하더라도(이것은 보다 야심적으로 위에서 간접적으로 밝혀진 바 있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직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사회주의는 그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무망한데, 더이상 형식적 이유가 아니라 그의 구성상의 세부적 내용 때문이다.

사실 도덕적 타당성에 대한 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단순히 형식상의 근거에서 쉽사리 기각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사회주의는 적어도 실천될 수 있는 반면에, 보편성 테스트를 통과하는 보다 정교한 형태의 것(사회주의)의 적용은 구성상의 이유에서 치명적이 된다는 것이 입증된다. 즉 설사 우리가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단지 결코 실행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재산의 자연이론의 노르마들 가운데 두 개의 서로 연관된 구성항목들이 존재하는데, 사회주의의 재산이론은 그 중 적어도 하나와 상충하게 된다. 그 첫째의 항목은 자본주의의 윤리관에 따라 침해는 타인의 재산의 물리적 존엄성에 대한 침략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이다.¹⁶⁾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침해를 타인의 재산가치, 또는 심리적 존엄성에 대한 침략으로 정의한다.

보수주의적 사회주의는 기존의 부와 가치의 분배를 보존함에 목표를 두고 가격통제, 규제 및 행위적 통제의 수단에 의하여 현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에 두고자 시도하였다는 것이

16) 물리적 침해로서의 침해의 정의의 중요성에 관하여, M. N. Rothbard, *The Ethics of Liberty*, Atlantic Highlands, 1982, Chapters 8~9; “Law, Property Rights and Pollution”, *Cato Journal*, Spring 1982, 특히 pp.60~63 참조.

상기되어야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들의 가치에 대한 재산권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가치에 대한 침략은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해로 분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보수주의만이 재산과 침해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민주적 사회주의 또한 사용하고 있다. 사회민주적 사회주의가, 예로서 나로 하여금 나의 가능성, 또는 기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가치에 대한 재산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심리적, 또는 ‘구조적 폭력(좌익 정치과학 문헌 속에서 특히 총애를 받는 용어)’을 범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허용될 때도 같다.¹⁷⁾ 그와 같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기회, 나의 심리적 존엄성, 내가 받을 것에 대한 나의 감정을 해치면서 가해진 것은 침해적 행동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왜 재산가치의 보호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가? 첫째, 모든 사람이 적어도 원칙에 있어서 그의 행동들이 사물의 물리적 특성에 변화를 야기시키는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완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반면에 자신의 행동들이 어느 다른 사람의 재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동하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

17) 물리적 폭력과 구분하여 구조적 폭력의 생각에 관하여,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1971, pp.60~83; pp.75ff, R.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1974, pp.55f; M. N. Rothbard, *The Ethics of Liberty*, Atlantic Highlands, 1982, chapter 29; Rawls and Nozick, "Toward a Reconstruction of Utility and Welfare Economics", *Center for Libertarian Studies, Occasional Paper* No. 3, New York, 1977 참조.

아니라, 차라리 다른 사람들 및 그들의 주관적 평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아무도 사전적으로 그의 행동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군가의 계획된 행동들이 타인의 자기재산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선 전체인구를 심문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도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행동하기로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보편적 합의가 도달될 때까지는 아무도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모든 관련되는 실제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히 무반응이 될 것이며, 아무도 이것이 언젠가 성취되기 전에 더이상 무엇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¹⁸⁾

그러나 좀더 결정적인 것은 재산과 침해에 대한 사회주의의 주장은 효과적으로 논의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주의의 것이든 아니든 어떠한 노르마를 찬성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일부 희소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상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저 토의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충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제적 합의나 불합의에 앞서 행동들이 수행되도록 허용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미리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허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논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를 할 수 있다면(그것이 논의된 지식층의 주장으로서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명인의 가치와 평가의 체계와 관련하여 우선 다른 누구와 합의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재산의 객관적 경계(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가능하다.

18) M. N. Rothbard, *The Ethics of Liberty*, Atlantic Highlands, 1982, p.46 참조.

그렇다면 사회주의 또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도덕적 제의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생존 가능한 사회주의자를 오로지 가지기 위해서라면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경계보다는 객관적 재산경계의 존재를 사실상 사전에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리적 존엄성 대신에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사상은 두번째와 연관된 이유로 실패하게 된다. 분명히 노동, 또는 결혼시장에서의 어떤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물리적 존엄성, 또는 물리적 존엄성의 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상 받고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재산가치가 보호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대한 물리적 침해는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경계, 즉 다른 사람의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그가 침해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한) 그의 독립적 지배영역으로서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재산의 경계가 모든 사람이 무엇이든 독자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물론 합의는 독립된 의사결정 단위들의 합의를 의미한다) 신체적 경계(상호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지 주관적으로 상상된 경계가 아닌)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로지 보호된 재산의 경계가 객관적이기 때문에(즉 고정된 협약상의 합의에 앞서 고정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의사결정 단위들간에 토론과 가능한 합의가 존재할 수 있다. 누가 무엇을 논의하는 것은 한 독립된 물리적 단위로서의 그의 존재가 우선 인정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다. 아무도 주관적 평가방법으로(사회주의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재산의 경계를 규정하는 어떤 재산제도를 찬성하는 논의를 할 수 없는데, 그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과는 달리 사람은 사실상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한 (하나의) 물리적으로 독립된 단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사전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산의 자연이론 결정들의 두번째 근본적 사항에 눈을 돌릴 때, 상황은 사회주의에 대하여 적지 않게 끄적해진다. 자본주의의 기본적 노르마들은 단지 재산과 침해가 물리적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특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더하여 재산이 개인소유화된 사적 재산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과, 분명히 이전과 이후간에 구분을 짓고 있음을 의미하는 원전용의 의미가 명기되어 있다는 것은 적잖이 중요한 것이다.

사회주의가 상충하는 것은 또한 이 추가적 사항과 더불어이다. 상충하는 재산권 주장들간에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이전-이후 구분의 불가결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대신 사회주의는 사실상 그와 같은 결정을 만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후참자들도 선참자들만큼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노르마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사회민주적 사회주의가 부의 자연적 소유자들 및 그들의 상속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지불하게 하여 운이 나쁜 후참자들이 그것의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데에는 이와 같은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어떤 자연자원 소유자가 후손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의 현재의 개발을 감소(또는 증가)하도록 요구받을 때에도 이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양자의 경우 모두 최초로 부를 축적하는, 또는 최초로 자연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은 불특정 후참자들에 대하여 침해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을 범한 것이 없다면, 후참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¹⁹⁾

이전-이후의 구분을 도덕적으로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고 제거하는 이와 같은 사상의 오류는 무엇인가? 첫째, 만약 후참자들(즉 어떤 희소재화들을 가지고 사실상 아무것도 한 바 없는 사람들)이 선참자들(즉 희소재화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한 바 있는 사람들)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행함에 앞서 모든 후참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문자 그대로 아무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후손은 사람의 어린아이들의 어린아이들(말하자면 그렇게 늦게 참가하여 아마도 결코 그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므로 재산이론의 기초가 되는 구성부분으로서 이전-이후 구분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법적 제도를 주창하는 것은, 마치 무엇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사전전제로 해야 하면서 죽음을 주창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당치 않은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법칙을 따르기로 되어 있다면 우리들, 우리 조상들, 또는 우리 자손들은 생존은 물론 무엇을 말하거나 논의할 수도, 하고 있지도 하지도 않을 것이다. 누구든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 살아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결정의 후참자들 계층의 모두가 등장하여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에 동의하게 될 때까지 아무도 기다릴 수 없으며, 또한 행동하는 것을 정지할 수 없다. 대신 인간은 그 자신이 홀로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영영 태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사람들과 어떠한 합의에 앞서서 즉각 행동하고 재화를 사용하고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신이 다른

19) 후참자의 가치관을 정당화하는 무리한 철학적 시도로,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1971, pp.284ff; J. Sterba, *The Demands of Justice*, Notre Dame, 1980, 특히 pp.58ff, pp.137ff; M.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1972, p.427 참조.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주어진 희소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상충이 존재하는 이상, 명기되지 않은 수의 사람들을 명기되지 않은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대신 특정한 수의 사람들과 더불어 특정한 시점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도(생존은 무엇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사전적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재산권은 관계되는 사람의 수와 관련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불특정한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는 없다. 대신 그것들(재산권들)은 필히 특정한 행동하는 개인들을 위하여 특정한 시점에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안된다.²⁰⁾

게다가 이전-이후 구분을 포기하는 사상(사회주의가 그에 그토록 매료되고 있는)은 다시금 토론의 실천적 기초로서의 비침해원칙과 단순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누구와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은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한 독점적 지배에 관한 서로의 이전부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먼저 무엇을 말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또는 그 역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첫번째, 또는 두번째 화자도 어느 때나 더이상 독립된 물리적 의사결정 단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시도하는 것처럼 이전-이후 구분을 제거하

20) 여기에서 오로지 재산권리가 시간에 기원하여 발생하는 사적 재산권리로서 개념화되는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언급되어야 한다. 계약은 협약 이전에 취득된 사물들에 대한 계약자의 사적 소유권 주장을 상호 인정하는 기초 위에 입각한 무수히 많은 신체적으로 독립된 단위들간의 합의이다. 또한 특정사물들에 대한 재산권리의 이전에 관한 합의이다. 계약 같은 것은 후참자의 가치관체계 속에서는 그 존재가 생각되어질 수 없다.

는 것은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자기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전부터의 지배가 인정되고 또한 (그 지배가) 공정한 것으로 수락됨 없이는 토론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이견을 말할 수 없으므로, 이 구분을 짓기 원하지 않는 후참자의 가치관은 누구에 의해서도 결코 동의될 수 없는 것이다. 동의될 수 있다고(상기) 말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 특정한 시점에 한 독립된 의사결정 단위로써 자신의 존재를 미리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모순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주의 가치관은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결론지어야 한다. 그의 모든 실천적 유형에 있어서 사회주의 가치관은 마치 ‘나는 너를 때릴 수 있어도 너는 나를 때릴 수 없다’와 같은 법칙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그것은 보편성 테스트조차 통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보편화할 수 있는 법칙들을 채택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 밖의 모든 사람을 때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진다. 그와 같은 결정은 그의 바로 구성상의 세부내용의 모순으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것으로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거리낌없이 그렇게 말하고 논란함은 인간의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재산권을 미리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첫 참가자가 첫 소유자가 되는’ 가치관만이 논증 속에 함축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유효하게 방어될 수 있다. 그리고 논증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바로 재산의 자연이론의 이와 같은 가치관의 타당성을 사전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어떤 가치관도 그렇게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제8장

사회주의의 사회심리적 기초, 또는 국가의 이론

The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Socialism or the Theory of the State

앞장들에서 사용자-소유자들-계약자들로부터 비사용자-소유자들-비계약자들에게로의 재산권리의 재분배를 수반하는 한 사회제도로서의 사회주의는, 자원들의 사용과 계약이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들이고 그 활동들의 수행이 행위자들에게 가용한 다른 대안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부의 생산에서의 감소를 수반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둘째로, 그와 같은 제도는 도덕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로 옹호될 수 없는데, 무엇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여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 도덕적 비도덕적 실증적, 또는 논리적 분석적 주장이든간에, 반드시 재산의 자연이론과 자본주의의 최초 사용, 최초 소유법칙의 타당성을 사전전제로 하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고 달리는 아무도 생존할 수 없고, 독립된 물리적 단위로서 무엇을 말하거나 가능하다면 합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적이든 도덕적이든 사회주의를 위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 없다면, 사회주의는 단순한 사회심리적 의미를 가지는 사건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가 안주할 사회심리적 기초는 무엇인가? 또는 사회주의는 사용자-소유자들-계약자들로부터 재산권리를 유리시키는 한 제도화된 재분배정책으로 정의되었으므로 자연적 소유자들에 대하여 전면적 몰수를 시행하는 사회제도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만약 원전용이나 계약을 통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재산권리를 수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제도가 존재한다면, 이는 자신들을 사물들의 자연적 소유자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가정하여) 분명하다. 자신의 화폐적 비화폐적 소득을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증가시킴에 의하여, 이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는 사람들간에 계약적 관계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아무도 타인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 이득을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볼 때(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교환도 단지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존재하는 상황과는 그 범주에서 다른 것이다.

이 경우 그와 같은 정책의 집행에 저항을 예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항성향은 크든작든 격렬해질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해감에 따라 변화하여 크든작든 결연한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재분배정책을 수행하는 사회제도에 크거나 작은 위협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한편 그와 같은 저항이 적어도 존재하는 한, 사회제도는 이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이 사회제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이라고 가정할 때, 사회제도는 그와 같은 저항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사회제도의 대표자들 역할에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확보할 수 있는 그들의 현재의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데, 그들이 설사 이것이 필연적으로 희생자들을 만들어낼지라도(그리고 시간을 통하여 희생자들의 수가 증가하거나 희생자들이 점점 더 피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비계약적 교환으로부터 그들의 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가능하다면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 대답은 세 부분으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이하 차례로 토의될 것이다. (1) 침해적 폭력에 의하여 (2) 일반대중을 타락시킴에 의하여, 즉 그들, 또는 차라리 그들의 일부로 하여금 사물들의 자연적 소유자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짜낸 수입의 향유의 몫을 나누게 함으로써 (3) 일반대중을 타락시킴으로써, 즉 그들, 또는 그들의 일부를 특정한 수용정책이 제정되는 데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재산이론을 집행하는 어떠한 사회제도도 그의 존립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폭력의 위협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사회제도도 자신들의 자연적 재산에 대한 그의 비계약적 전용을 수락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물리적 폭행, 투옥, 노예화, 심지어 살해로써 협박하고, 필요하다면 그것과 같은 종류의 사회제도가 ‘실행될 수 있게’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협박들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한 사회제도(즉 상례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들을 수행하고 있는 한 사회조직)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회제도는 그의 고유한 일처리 관행을 ‘침해’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며, 중립적이거나 가능하다면 심지어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다른 이름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자명하다. 사실 이 제도의 대표자들은 그들이 이 조직의 이름으로 행동할 때 그들 자신이 침해자라는 것을 생각조차 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건 어디서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름이나 용어가 아니라 그것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¹⁾ 그의 행동들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폭력은 사회주의의 한 사회제도로서의 존립의 시금석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사회주의가 의지하고 있는 그 폭력은 사물들의 자연적 소유자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적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사용하게 되는, 또는 사용할 것을 위협하는 그런 종류의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실제 누구를 살해한다면 그를 극형에 처하게 하는 것과 같은 잠재적 살인자에 대한 방어적 위협이 아니다. 차라리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침해적 폭력인 것이다.

1) 사회주의의 구현체로서 그 국가에 의하여 범해지는 제도적 침해와 통상의 범법행위 간의 차이에 관하여, L. Spooner, *No Treason*, Colorado Springs, 1973, pp.19~20 참조.

사회주의를 수행하는 사회제도는 문자 그대로 무고한 사람들(즉 아무에게도 전혀 어떠한 물리적 피해도 가한 바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잠재적 살인자가 야기하는(즉 그들이 만약 그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또는 심지어 그저 살해하는 ‘재미’로 그들을 살해할 것이라는) 위협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진실을 인식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사회주의의 대표자들과의 어떠한 교환관계의 보이코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교환은 무슨 이유에서든 결코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의 자연이론에 근거하는 사회제도(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누구든 그가 진정으로 타인에 앞서 그것들(현안의 사물들)을 사용함에 의하여, 또는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그것들을 계약적으로 취득함에 의하여 현안의 사물들을 전용한 사람인 한에 있어서 그는 어느 때건 보이코트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분명하다. 어느 정도건간에 개인이나 사회제도는 그와 같은 보이코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것이나, 참고 조용히 감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이코트하는 사람에게 보다 유리한 제의를 하여 그의 주장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에 관한 사회주의사상을 실행하는 사회제도는 그렇지 못하다. 예로서 세금의 납부를 중지하거나, 당신 거래의 세금납부를 그 사회제도가 그 세금의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의 어떤 변화나 개선을 조건으로 하려고 해보라. 그러면 당신에게 벌금을 물리고 폭행할 것이며, 아마도 당신에게 보다 고약한 일들을 가할 것이다. 다른 예를 사용한다면 당신의 재산에 가해진 이 사회제도의 규제들이나 통제들을 무시하려고 하여라.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주장하라. 즉 당신의 재산의 사용에 관한 이들 제한들을 동의하지 않

는다는 것을, 그와 같은 부과사항들을 무시함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의 물리적 존엄성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제도의 사법권의 관할로부터 탈퇴할, 즉 ‘당신의 멤버십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동등한 관계 위에서 한 특권을 가진 제도로부터 다른 제도로 대하려고 하라. 다시금 가정하여 당신의 탈퇴로 아무도 침해받지 않았는데도 이 사회제도는 당신과 당신의 재산을 범하게 될 것이며, 당신의 독립성을 끝장내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제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의 존재는 끝났을 것이다. 그 사회제도는 물러날 것이며, 통상적인 사유재산 소유자가 되거나, 그와 같은 소유자들의 계약적 연합체가 될 것이다. 오로지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적어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이 장의 제목이 사회주의의 사회심리적 기초에 관한 의문은 국가의 기초에 대한 의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인데, 국가는 과세와 개인들이 그들의 자연적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한 요청받지 않은 비계약적 간섭 위에 세워진 사회제도에 아무것도 아니므로, 만약 사회주의적 재산의 사상을 강요하는 사회제도가 없다면 국가가 존립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국가 없이 사회주의는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가 있는 한 사회주의가 있다. 그렇다면 그 국가는 사회주의를 실행하는 바로 그 사회제도이며, 사회주의는 무고한 희생자들을 겨냥한 침해적 폭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침해적 폭력은 국가의 특성이 된다.²⁾

2) 국가의 이론에 관하여, M. N. Rothbard, “The Anatomy of the State”, *Egalitarianism As A Revolt Against Nature*, Washington, 1974; *For A New Liberty*, New York, 1978; *The Ethics of Liberty*, Atlantic Highlands, 1982; H. H. Hoppe, *Eigentum, Anarchie und Staat*, Opladen, 1987; A. Herbert, *The Right and Wrong of Compulsion by the State*(ed., E. Mack), Indianapolis, 1978;

그러나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사상의 구현체로서의 국가는 전적으로 침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국가의 대표자들은 그들의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전적으로 침해적 행위에 전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설사 그것 없이는 어떠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국가와 사유재산 소유자들은 기생적 관계를 이루며, 국가대표자들의 활동들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에 대한 요청받지 않은 간섭들(즉 후자의 소득의 상응하는 감소를 대가로 하여 전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도록 고안된 간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사회주의의 대행자들은 그들의 소득을 가지고 그들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소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상, 그 국가의 성장과 사회주의의 확산가능성은 적어도 대단히 제한되고 좁은 것이다.

충분한 침해적 에너지를 가진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한 그룹은, 무슨 이유에서든 그와 같은 특성을 결여한 한 사람 및 아마도 몇몇 다른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또다른 보다 많은 그룹에 충분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정된 착취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그리고 어느 사회주의 사회제도에도 특징적이라 할, 즉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그룹은 그들 자신들이 복종 속에 억압받고 있는 것보다 열배, 백배, 심지어 천배나 더 여러 모로 사람들을 복종 속에 억압할 수 있다. 또한 그들로부터 단지 그들에게 공포를 주입시키는 것에 의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액

H. Spencer, *Social Statics*, London, 1851; F. Oppenheimer, *The State*, New York, 1926; A. J. Nock, *Our Enemy, the State*, Delevan, 1983 참조.

경제학자들간에도, 특히 슈페터의 지금은 일반화된 견해를 겨냥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세금을 협회회비나 의료서비스의 구매에 비유하여 해석하는 그 이론은 단지 이 부분의 사회과학이 얼마나 사람의 과학적 습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입증해주고 있다.”(J.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1942, p.198)

수의 소득을 짜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착취 정도의 증가가 소득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장들의 경제적 논거에서 우리는 자연적 소유주들에 대한 보다 높은 정도의 착취는 반드시 그들의 일하고 생산할 인센티브를 줄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의(그들의) 일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생활양태를 영위해야 하는 한 사람(또는 사람들의 그룹)이 다른 사람(또는 대체로 동등한 규모의 사람들의 그룹)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짜낸 소득으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에는 좁은 한계가 있다. 결국 사회주의의 대항자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번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착취 예측자들의 수가 상당히 커야 하며, 그 국가의 대표자들 수에 대비하여 과대한 비율로 성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가의 의문에 되돌아온다.

국가가 단순히 그의 무기체계를 향상시키는 것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도(즉 총과 대포 대신 원자폭탄으로 위협하여, 말하자면 이에 의거하여 그의 예측자 수를 증가시켜) 당장 수궁시킬 만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향상된 무기체계의 기술적 노하우는, 특히 그것이 실제 응용될 경우 거의 비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포를 주입시키기 위한 국가의 향상된 수단과 더불어,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희생자들의 저항수단과 방법 또한 향상되며, 따라서 그와 같은 향상들이 설명되어야 할 것을 설명해주는 것으로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³⁾ 우리는 어떻게

3) 이에 더하여, 자신의 피통치자들에 대한 적어도 원자폭탄과 같은 일부 무기류의 사용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정말 현실적인 것이며, 사회주의의 구현체로서의 그 국가는 침해에 더하여 일반대중간에 어떤 종류의 활성화적 지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결론짓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이와 같은 통찰력의 고전적 설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정부의 첫째 원칙들’에 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사를 철학적 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수가 소수에 의하여 쉽게 지배되는 것과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감성과 열정을 그들의 통치자들의 그것에 암묵적 복종으로 따르게 하는 것만큼 놀랄 일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무슨 수단으로 이 놀라운 일이 달성되는지를 구명할 때, 집단적 힘은 항상 피지배자의 편에 있으므로 지배자들은 판단^{topinion}의 위에는 그들을 떠받쳐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가 세워지는 것은 오로지 판단 위에서일 뿐이며, 따라서 이 금언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인기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가장 전체적이며 가장 군사적인 정부에도 부연된다. 이집트의 군주나 로마의 황제는 그의 천진한 피통치자들을 그들의 감성과 취향에 반하여 짐승처럼 몰고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그의 맘루크mamalukes 노예용병들이나 짐정관 무리들을 인간과 같이 그들의 의견에 따라 이끌고 갔음이 분명하다.”⁴⁾

이와 같은 지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를 발생시키는 과정 속

은, 통치자들이 그들 자신도 이에 의하여 피해를 보거나 피살되는 것을 거의 방지할 수 없을 것이므로 금지될 것이다.

4) D. Hume,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Oxford, 1971, p.19; E. de La Boetie, *The Politics of Obedience: The Discourse of Voluntary Servitude*, New York, 1975 참조.

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중요한 구성요소는 이데올로기이다. 국가 그것은 진정으로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행위들이 가져올 결과들은 부정적이기보다 차라리 긍정적이라는 것을 일반대중에 설득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한다. 국가의 존립을 안정화시키고 그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보급된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들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공정한 우수한 경제제도나 사회질서를 제공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국가가 개입하여 단지 어떤 노력마들을 공정한 것으로 선언하기 이전에는 정의와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⁵⁾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들은 역시 (현재는 덜 매력적이나 한때는 지극히 강력한 것이었던) 종교에 의하여 신성시된 국가의 그것이거나, 보통사람이 아닌 대신 타고난 탁월성 때문에 그에게 복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신과 같은 초인간인 그 통치자의 이데올로기이다. 필자는 이전의 장들에서 그와 같은 사상은 거짓이며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장황하게 전개해왔으며, 이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 또 하나의 유행하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가면을 벗기는 임무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이데올로기들의 허위성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연적 소유자

5) '자연의 국가state of nature'에 있어서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간의 구분이 만들어질 수 없고, 오로지 국가만이 정의를 창조한다는 사상의 고전적 설명을 T. Hobbes(*Leviatan*, Oxford, 194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의 '실증주의적' 이론이 지지될 수 없다는 것이 제7장에서 함축적으로 예시·설명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그와 같은 이론은 심지어 그 이론이 설명하기로 되어 있는 것, 즉 국가를 정당화하는 것조차도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점이 언급되어야 한다. 임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자연의 국가로부터 국가통제주의적 제도로의 전환은, 물론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의 실증주의에 관하여, G. Jellinek, *Allgemeine Staatslehre*, Bad Homburg, 1966; H. Kelsen, *Reine Rechtslehre*, Wien, 1976; F.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3 vols., Chicago, 1973~79 참조.

들의 재산권리에 대한 침해적 침범정책에 사람들을 순종케 하는 데 틀림없이 기여하였다는 것(일부 이데올로기는 다른 것들보다 한층 더 그러한을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일반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기여하는 또다른 보다 중요한 구성요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구어적 선전이 아니라 분명한 구체적 영향을 가지는 행동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재화들의 단순한 기생적 소비자가 되는 대신에 국가는 그 자신을 안정화시키고 그의 소득을 가능한 한 크게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 자신의 인력집단 밖에 있는 일부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고안된 그의 정책에 일부 긍정적 요소들을 추가한다.

국가는, 말하자면 그가 이전에 A의 동의 없이 A로부터 떼어낸 화폐적 비화폐적 소득을 B에게 넘겨주는 조직으로서 소득 이전의 대행자의 일을 하거나(물론 그와 같은 이전에 결코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 아닌 행위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뺀 연후), 또는 이전에 자연적 소유자들로부터 수용한 (생산)수단들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종사한다. 따라서 이들 재화의 사용자들-구매자들-소비자들에게 가치의 얼마간을 기여한다.

어떤 방법으로도 국가는 그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창출한다. 국가가 생산한 재화들과 용역들의 사용자들-소비자들은 물론 이전된 소득의 수혜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들의 현재의 소득을 유지시켜 주는 기존의 국가정책에 의존하게 되며, 따라서 국가통치로 구체화된 사회주의에 저항하는 그들의 성향은 그에 따라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묘사의 절반일 뿐이다. 국가의 긍정적 성취들은 단순히 예로써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처럼 일부 사람들을

위하여 맛있는 무엇을 해주기 위하여 착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들은 통상의 이윤지향적 기업이 상거래에 종사할 때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을 위하여 교환으로부터 가능한 한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대신 그것들은 침해적 폭력 위에 구축되고 있는 한 사회제도의 존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착수된다. 그 자체, 국가로부터 발산하는 긍정적 기여는 어떤 전략적 목적에 봉사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것들은 침해자로서의 침해자의 계속되는 존립에 대한 저항을 깨뜨려버리기 위하여, 또는 그와 같은 존립에 지지를 보내기 위하여 고안된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국가는 어느 통상의 기업이 그러할 수 있듯이 이 과업에서 잘못을 범할 수 있는데, 어떤 조치들이 그의 전략적 목적에 가장 훌륭하게 봉사할 것인가에 관한 그의 결정은 어떤 예상되는 결과들의 예기 속에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국가가 그의 정책결정에 뒤따르는 반응과 관련하여 잘못 판단한다면, 마치 이윤지향적 기업이 만약 일반이 구매가 예상되었던 만큼 의도적으로 구매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고 심지어 파산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소득이 증가 대신 하락할 수 있어 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한편 민간이전, 또는 민간생산과 비교하여 국가이전 및 국가생산의 특이한 전략적 목적을 이해하는 경우에만 국가의 행위들의 전형적인 반복적 구조적 패턴들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왜 모든 국가는 일반적 일률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어떤 유형의 행동들을 선호하여 취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모든 개인을 똑같은 정도로 착취한

다는 것은 의미가 되지 않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국가를 적대시하게 만들고 희생자들간에 단합을 강화시킬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지지자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똑같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도 의미가 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줄어들더라도 희생자들은 여전히 희생자들일 것이다. 그럴 경우 국가행위로부터 진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지의 증가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지지의 결여를 벌충해줄 것이다)에게 분배되기 위하여 남는 소득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국가정책은 ‘분할통치divide et impera’의 모토에 의하여 지도되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지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사람들을 차별대우하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가능한 한 작은 그룹을 착취하고, 그의 희생의 대가로 다른 가능한 한 큰 그룹에 혜택을 주고, 따라서 그렇게 하여 일부의 원한이나 저항의 증가를 타의 지지의 증가로 벌충·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국가의 정치학으로서의 정치는 정치가들이 그들의 하는 일을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가능한 것을 행하는 기술’은 아니다. 그것은 위협의 균형 위에 구축된, 대중적 차별과 분배상의 혜택에 있어서의 대중적 차별적 계획의 수단으로 국가소득을 가능한 한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돕는 기술인 것이다. 틀림없이 이윤지향적 기업 또한 차별적 경영정책을 구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고, 어떤 차별적 고용정책을 추구하거나 어떤 서비스나 제품의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회피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에 국가의 경우에 있

어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회피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차별적 관행을 행할 모든 인센티브가 있기 마련이다.⁶⁾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선호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관하여 분명히 국가는 모든 것을 적어도 똑같은 정도로 생산할 수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국가의 소득은 실제로 떨어질 것이다. 국가는 단지 이전의 자연적 소유자들에 의하여 실제로 생산된 것을 전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리고 무엇을 미래에 생산하고자 할 인센티브는 전반적 사회화제도에 있어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어떠한 실제의 봉기, 반란, 혁명을 방지하거나 평정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와 같은 재화들과 용역들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전념하고 집중한다는 것은, ‘그리고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그와 같은 유형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사적 경쟁자들을 경쟁으로부터 몰아내고 그것들의 공급을 독점화한다는 것은’ 사회주의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⁷⁾

따라서 모든 국가는(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광범하게, 그러나 어느 국가도 상당한 정도로) 일례로 교육제도를 그 자신의 손안에 갖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국가는 교육기관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것들의 사적 운영을 국가 인허가의 부여에 의존하게끔 하여 국가에 의하여 제공된 사전 규정지침의 테두리내에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관들을 통괄한다. 점진적으로 연장된 의무 교육 기간과 더불어 이는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기 위한 여러 다

6) 이러한 정치적 견해의 고전적 해설을 위하여, N. Machiavelli, *The Prince*, Harmondsworth, 1961; Q.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Cambridge, 1978 참조.

7) 이것과 다음에 관하여, M. N. Rothbard, *Power and Market*, Kansas City, 1977, pp.182f 참조.

른 이데올로기들간의 경합에 있어서 국가에 엄청난 우위를 주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의 구현체로서의 그 국가가 어떠한 종류의 체계적 교수활동에 국가자격면허를 필수조건으로 만들으로써 지식인들의 일자리 시장을 독점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국가통치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시킬지도 모르는 이념적 경합은 이에 따라 제거될 수 있을 것이며, 이의 영향이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⁸⁾

교통과 통신의 직접·간접의 관장은 국가의 유사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 사실상 모든 국가는 하천, 해안과 수로, 도로와 철도, 특히 우편, 라디오, TV 및 원격통신체계를 장악하는 데 대단히 애써왔다.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국가의 손안에, 또는 그의 감독하에 있게 되면 어느 잠재적 불만자도 이동하고 개인들의 활동을 조정할 그의 수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 군사적 기록으로부터 잘 알려진 바 있는, 교통통신체계는 타국을 공격하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도 점령되어야 할 바로 첫번째 지휘소라는 사실은 사회에 대하여 국가통치를 가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국가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세번째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화폐의 지배와 그의 가능한 독점화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해당되는 경우로서, 만약 국가가 이 과업에 성공하여 자유금융과 금속화폐에 근거하는 통화제도(가장 일반적으로 금본위제도)를 국가운영의 중앙은행과 종이 및 잉크외에는 아무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지폐통화로 특성화된 금융제도로 대체한다면, 사실상 크나큰 승리를

8) 사회주의와 국가통제주의의 주창자들로서의 지식인들과 교사들의 역할에 관하여, B. de Jouvenel, "The Treatment of Capitalism by Continental Intellectuals", F. A. Hayek, *Capitalism and the Historians*, Chicago, 1954; L. v. Mises, *The Anti-Capitalist Mentality*, South Holland, 1972 참조.

얻은 것이다.

국가는 보다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한 그의 영속적 투쟁에 있어서 더이상 과세의 증가나, 어느 때건 곧 사기로 탄로날 통화평가절하(동전 깎아내기)와 같은 양자 똑같이 인기없는 수단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국가는 이제 거의 마음대로 보다 많은 돈을 찍어냄으로써 그 자신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 자신의 부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의 인플레이적 결과가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시장에 의하여 예기되지 않고 그 추가적 돈이 유통되기만 한다면 가능하다.⁹⁾

그리고 보안, 경찰, 국방 및 사법기관의 생산분야가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또는 지배하는 모든 재화들과 용역들 가운데 이것은 분명히 가장 큰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분야이다. 사실상 어떤 국가도 이와 같은 것들의 지배를 확보하고, 경합자들을 불법화하고, 이들 활동들을 독점화하는 것은 것처럼 큰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국가’와 ‘법과 질서의 생산자’는 흔히 동의어로 간주되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국가는 무고한 자연적 소유자들에 대한 침해행위를 계속하기 위하여 단지 통상적 생산자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조직화된 침해의 제도기관으로서 올바르게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혼동이 존재하고, 또 널리 공감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모든 국가는 그의 핵심적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보안의 생산을 독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과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들이 의도하는 의미에 있어서 엄연히 다른데도 이들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일한 외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9) 자유시장 금융제도에 관하여,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정부관여의 효과에 관하여, R. Paul and L. Lehrman, *The Case For Gold*, San Francisco, 1983, Chapters 2·3; M. N. Rothbard, *What Has Government Done to Our Money?*, Novato, 1973 참조.

왜 국가가 그의 존립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보안의 생산을 사유재산 소유자들의 시장의 손에 맡길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¹⁰⁾ 국가는 궁극적으로 강제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군사력을 필요로 한다. 불행하게도(즉 어떤 예의 국가에 있어서도) 다른 무장된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국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의 통치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에 의하여 착취를 통해 전용된 그의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견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합하는 국가들이 존재하는 그와 같은 체계는 또한 각 국가가 그 자신의 신민들을 착취할 수 있는 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주어진 예의 국가에게는 역시 불행한 일이기도 하다. 만약 그 국가의 통치가 경합하는 국가들의 그것보다 탄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면 이들 신민의 지지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경우 그 국가의 신민들이 그들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경합자에게 협조할 가능성, 또는 자신들의 발로 선택을 결정할 가능성(즉 자기자신의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려는)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¹¹⁾

한편 개개 국가가 적어도 그가 지배하게 된 영토내에서 다른 잠재적 위협성을 가진 무장된 조직들과 그와 같은 불쾌한 경합을 회피하는 것은 한층 더 중요하다.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무기사용에 훈련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장해야 하는 그와 같은 민간보호 대행기관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이는 민간인들의 재산권을 침범하는 국가의 현행정책에 잠재적

10) 법과 질서의 자유시장 생산의 문제에 관하여, 제10장 참조.

11) 이에 관하여, 제5장 주 4 참조.

위협을 조성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침해자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욕망이 진지함에 따라 시장에서 생겨나는 그와 같은 조직들은 열심히 불법화되고, 국가는 이 일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 독점적으로 관장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어느 곳에서나 국가들은 무장된 사람은 무장되지 않은 사람보다 어떤 침해자에게도 분명히 보다 위협이 되므로, 개인시민에 의한 단순한 무기소지조차도 불법화하거나, 적어도 통제하는 데 대단히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일을 정말 잘 수행해왔다. 만약 세리가 총을 맞을 수 있는 그 총들이 세리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손이 닿는 범위 밖에 있다면, 국가가 그 자신의 침해를 계속하면서 일처리를 평화롭게 유지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을 훨씬 줄이는 것이다.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상황들은 아주 흡사하다. 만약 국가가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독점하지 않는다면, 조만간(그리고 틀림없이 곧) 국가는 불공정한 제도기관으로 (실제 그러한데) 간주될 것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떤 불공정한 조직도 그렇게 인정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 국가가 그 국가 자신에 의하여 임명되고 고용된 법관들만이 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데 정신을 쓰지 않았다면, 공법(국가와 사적 개인들, 또는 그와 같은 개인들의 단체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노르마들)은 일반에 의하여 수락될 가망이 없었을 것이며, 대신 거의 모든 사람의 정의감의 유린 속에 존재하는 적법화된 침해제도로서 당장 배일이 벗겨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둘째로, 만약 국가가 사법(사적 시민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노르마들)의 집행을 독점하지 않고 이 임무를 일반의 계획적인 재정지수에 의존하는 경합하는 법원들과 법관들에게 맡겼다면, 여러 다른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계층간에 권리나 의무의 불균형적 분배를 내포하는 노르마들은 유효한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한 가닥의 가능성조차 가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와 같은 법칙들을 제정한 법원들이나 법관들은 계속적 재정지수의 결여로 당장 파산하게 될 것이다.¹²⁾ 그러나 국가는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할통치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경합적 사법법원제도의 출현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

의심할 바 없이 이들 국가제공의 모든 서비스는(즉 교육, 교통 및 통신, 화폐, 금융,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안 및 사법행정 등) 어떠한 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들 모두는 만약 국가가 이것들을 그의 손안에 장악하지 않았다더라면 시장에 의하여 제공되었어야 하며, 실제로 시장에 의하여 생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가 단지 시장의 대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는 어느 개인기업이 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른 이유에서 이들 활동에 종사한다. 즉 단순히 이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활동분야는 침해적 폭력 위에 구축된 특권적 기구로서의 국가의 계속된 존립을 보장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또다른 전략적 의도는 특이한 성질의 제품을 만들어내게 된다. 교육자들, 교통·통신체계의 피고용자들, 중앙은행의 종사자들, 경찰과 법관들은 모두 세금에 의하여 지불되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종류는 분명히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떤 긍정적 가치를 가질 것이나 결코 모든 사람이 그것들에 대하여 자신의 돈을 꼼꼼하게 계산하여 지출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대신 이들 서비스는 모두 국가가 일부 사람들에게 해

12) 이 점에 관하여, 제10장 참조.

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그 자신의 강압적으로 짜낸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¹³⁾

자연적 소유자들에 대한 계속적 침해의 제도기관으로서의 국가의 사회심리적 기초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재화들과 용역들의 인기있는 재분배 이상의 무엇이 존재한다. 국가의 안정과 성장에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스스로를 위하여 채택하는 의사결정구조인데, 즉 그의 헌법이다. 통상의 이윤지향적 경영은 기업가적 기획(즉 생산 비용에서의 차이와 예상되는 제품수요)의 포착과 기업화 착수를 통하여 그의 소득극대화의 목표에 가장 알맞는 의사결정구조를 채택하고자 할 것이다. 이와 대비하여 국가는 그로 하여금 그의 강압적으로 전용된 소득을 극대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채택하는 전적으로 다른 과업에 직면해 있다(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에 의하여 증되하여 이를 지지토록 하는 권한이 부여된).

필자는 이를 행하기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구조로서 민주적 헌법, 즉 다수결원칙의 채택을 제의한다. 이 이론의 정당성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다음의 가정이 만들어질 것이 필요할 뿐이다. 즉 실제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연적 소유자들, 생산자들 및 계약자들의 상응하는 소득의 감소를 대가로 하여 그들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욕망(그들은 항상 이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허용되었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권력에 대한 갈망과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간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이와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

13) F. Oppenheimer, *System der Soziologie, Vol. II, Der Staat*, Stuttgart, 1964 참조. Oppenheimer는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들의, 특히 법과 질서생산의 특이한 차별적 성격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겠지만, 사실 어떤 사람은 결코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둬드는 여러 경우 아주 정상적으로 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또한 경험은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분석적으로 다른 두 가지 원천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국가정책이 만들어내는 희생자들에 의한 저항이 그 하나이다. 국가는 지지우군을 만듦으로써 이를 깨뜨려버릴 수 있는데, 사실 이는 사람들이 수뢰를 통하여 부패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권력에 대한 갈망이 희생자들 및 특정한 국가정책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간에 존재한다면 거기에도 틀림없이 몰수와 차별적 분배의 어떠한 정책도 자동적으로 다른 흡사한 정책이 국가가 통치하는 인구 속에서 지지자를 가질 수 없게 막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발생하는 저항, 또는 적어도 불만이 존재할 것이며, 따라서 권력사용 방법에 관한 그들의 특정한 계획을 좌절시키게 될 것이 틀림없다.

정의상 국가의 몰수-재분배정책에 있어서의 변경이 이와 같은 종류의 불만을 제거할 수는 없다. 어떠한 변경도 다른 정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국가가 특정한 정책이 반드시 수반할 수 있는 저항(사람의 권력에 대한 갈망의 좌절에서 발생하는)을 줄이기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면, 잠재적 권력행사자들의 실망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채택하는 것에 의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사결정에 있어서 대중적 참여의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자신의 특정한 권력방책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이 미래에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능이다. 이는 다수결에 대한 존중에 근

거하고 있으므로 정의상 의사결정을 위한 대중적 헌법이다. 그리고 이는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규칙적인 시간간격을 두고 그 자신의 권력행사의 구체적 계획을 위하여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되므로, 보다 나은 미래의 전망을 통하여 권력에 대한 현재의 좌절된 욕망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대중적 신화와는 달리 민주주의적 헌법의 채택은 자유나 정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¹⁴⁾ 틀림없이 국가는 어떤 실제적으로 가치있는 재화들과 용역들을 공급하는 일을 할 때는 그의 침해적 폭력의 사용을 자제하므로, 따라서 헌법 통치자들이 피통치자들의 절대다수 지배하에 놓이면 국가는 추가적 제약을 수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약이 권력에 대한 좌절된 갈망의 강도를 줄임으로써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욕망들을 만족시키는 적극적 기능을 충족시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코 합법화된 침해의 제도기관으로서의 국가의 특권적 지위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차라리 국가를 민주화하는 것은 권력의 집행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을 위하여 취해진 조직상의 조치이며, 이에 의하여 자연적 소유자들로부터 침해적으로 전용하는 소득액을 증대시킨다.

권력의 형태는 변경되었어도 다수결원칙 또한 침해이다. 재산의 자연이론에 근거하는 제도에 있어서(자본주의하에서) 다수결원칙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도 수행할 수도 없다(물론 스포츠클럽이나 동물애호가협회와 같은 협회의 관할권은 회원들에 의하여 회원자격 기간 동안 구속하는 것

14) 민주주의가 현대정치에 있어서 성우(즉 비판해서 안되는 것)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수결원칙이 내부적 모순들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거의 일반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을런지 모른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인데,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를 의당 정당화된 것으로 수락하면, 또한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적 폐지와 민주주의 대신 전제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체를 수락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그 자체는 도덕적 가치로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으로 신중히 수락된다. 다수결원칙을 채택하는 협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나서).

그와 같은 제도에서는 오로지 사용, 또는 이전의 소유자로부터의 계약적 취득을 통한 재화들의 원전용의 법칙들만이 효력을 가진다. 전제군주나 소수에 의하여 다수에 반하여 수행되었건, 다수에 의하여 소수에 반하여 수행되었건 상관없이 법령에 의한, 또는 이전의 사용자-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전용은 예외없이 침해적 폭력행위이다. 민주주의를 전제주의, 군주제도, 또는 과두정치체도로부터 구분짓는 것은 전자가 자유를 의미하고 반면에 다른 것들이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간의 차이는 전적으로 권력에 대한 좌절된 갈망에 의하여 조성된 대중적 저항을 관리하고 전화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방법에 달려 있다.

전제군주는 설사 그 또한 존립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여론에 면밀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지라도, 전체인구가 어떤 규칙적이며 정식화된 방법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제주의는 잠재적 권력행사자들을 위한 제도화된 배출구의 결여로 특징지어진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바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떤 정식화된 법칙들에 의거하여 형성되어 규칙적으로 정책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결을 허용한다. 따라서 만약 권력에 대한 실망된 욕망이 그에 대한 어떤 규칙적 배출구가 존재할 때보다 수용 가능하게 된다면 전제주의적 권력보다는 민주주의적 통치에 훨씬 적은 저항이 생길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전제주의적 및 민주주의적 통치제도간의 중요한 사회심리적 차이는 즈브넬B. de Jouvenel에 의하여 정통하게 기술되었다.

12세기에서부터 18세기까지 정부의 권위는 계속 강화되었다. 그 과정이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해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끊임없는 항의와 과격한 반응으로 흔들어놓았다. 후대에는 이의 성장이 가속화된 속도로 계속되었으며, 이의 신장은 이에 상응하는 전쟁의 신장을 가져왔다. 이제 우리는 더이상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더이상 항의하지도 반응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들 시대의 정지상태는 새로운 일로서, 이 때문에 정치 권력은 자신을 그 속에 감싼 연막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그것을 스스로 주인임을 포기하지 않았던 왕이라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인간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명백히 볼 수 있었다. 이제 익명 속에 가면을 쓰고 그것은 그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지 일반의 의지의 비인격적 및 감성이 없는 수단일 뿐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가공이다…… 오늘날 항상 그랬던 대로 권력은 권부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손안에 있다…….

변한 것의 전부는 이제 피지배자들이 권력의 주도적 행사자들의 인적 구성을 변경시키는 것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한 각도에서 보건대, 사회의 생활을 지배하는 의지가 사회의 마음대로 그것(사회)이 보다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의지에 의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나 모든 야망있는 인재들에게 권력의 전망을 열어놓음으로써 이와 같은 조정은 권력의 신장을 훨씬 용이하게 한다. ‘구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알다시피 권력의 한 뿔을 나눌 가망이 없었던 사회의 생동하는 인물들은 그(권력)의 아무리 적은 침식도 성급히 규탄하였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으므로, 그가 언젠가는 그 자신이 열망하는 직위의 권한을 자르거나, 그의 차례가 왔을 때, 그 자신이 사용하게 됨을 의미하는 기계에 모래를 뿌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정계에서 권력의 신장에는 광범위한 연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⁵⁾

동일한 인구와 재화들 및 용역들의 차별적 공급에 관한 동일한 국가정책을 놓고 볼 때, 민주주의적 국가가 그의 침해적으로 전용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다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전제주의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정치사상의 고전 속에서 보건대 전제주의는 보다 현명하게, 즉 적게 통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제도는 전제군주와 아마도 그의 측근의 고문관들의 그것외 다른 어떤 의지도 정규적 기초에 입각하여 집권하게 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으므로 그(제도)의 권력의 행사는 피통치자들에게 덜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 제도의 안정성은 그 국가에 의하여 수행된 착취의 전반적 정도가 비교적 감소될 경우에만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두 세기에 걸친 상황은 이 이론의 타당성을 생생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는 비교적 전제주의적-군주주의적 제도 대신에 비교적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의 거의 세계적 대체를 경험한 바 있다(심지어 소비에트 러시아조차도 이전의 차르 체정러시아보다는 현저하게 민주주의적이다).¹⁶⁾ 이 변화와 나란히 그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 이전에 결코 경험한 바 없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즉 영구적이며

15) B. de Jouvenel, *On Power*, New York, 1949, pp.9~10; *On Sovereignty*, Cambridge, 1957; G. Mosca, *The Ruling Class*, New York, 1939; H. A. Mencken, *Notes on Democracy*, New York, 1926; R. Michels, *Zur Soziologie des Parteiwesens in der modernen Demokratie*, Stuttgart, 1957 참조.

16) 이 과정에 관하여, R. Bendix, *Kings or People*, Berkeley, 1978 참조.

표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의 성장이다. 여러 나라들의 착취 가능한 인구확보를 위한 경쟁에 있어서, 그리고 이들 나라들의 내부적 저항을 휘어잡기 위한 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국가는 우수한 권력형태로서 전제주의적 국가를 압도하여 철저히 승리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보다 높은 소득을 차지하고,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는 것은 민주주의적 국가인 것이다. 그 속에 민주주의적 사회주의가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내부적 저항의 관리에 보다 낮게 성공하는 것도 이 국가인데, 제도를 민주화시키는 것에 의하는 것이 그 반대를 행하고 그의 의사결정의 구조를 전제주의화하는 것에 의하는 것보다 국가의 힘을 축적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며, 이는 역사적으로 거듭 입증된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사회주의를 수행하는 바로 제도기관으로서의 그 국가의 사회심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도 그가 특혜받은 사람들의 그룹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재화들과 용역들의 독점화, 또는 독점적 지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자연적 소유자들에 대한 침해정책에 대한 저항을 분쇄한다. 게다가 그 국가는 착취정책의 미래의 변경에 일반이 참여도록 하기 위한 배출구들을 만들어줌으로써 권력에 대한 좌절된 욕망을 감소시키는 정책에 의존한다.

물론 국가와 그의 특정 사회주의적 정책 및 정책변경에 관한 모든 역사적 기술은 무엇이 사회주의가 수립되게 하고, 또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은 기술이 완전하고 이념적 속임수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그 국가에 의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들은 폭력, 분할통치 및 민주화라고 하는 바로 이 제도적 골격 속에 심어져 있는 것으로 기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어떤 주어진 예의 국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사회에 대한 기여의 명목으로 무엇을 행하든간에, 그리고 그와 같은 기여의 범위가 얼마나 크든작든간에, 그 국가가 어린아이들이 달린 근로여성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의료보호를 해주거나, 도로나 공항건설에 종사하는 간에, 농부들이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교육서비스, 사회의 하부구조, 화폐, 철강, 혹은 평화의 생산에 전념하든간에, 혹은 설령 이들 모두와 그 이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모두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그것으로 덮어두는 것은 완전히 그릇된 일이 될 것이다.

덧붙여 언급되어야 할 것은 그 국가는 자연적 소유자들에 대한 이전의 비계약적 몰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그의 기여도, 설사 그것들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국가가 최초로 정당하게 소유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건네주어진 것이므로 결코 통상적인 선물이 아니다. 그 국가가 서비스를 원가로, 또는 설령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더라도 그것들을 제공하는 데 고용된 생산수단은 여전히 강제로 전용된 것일 수밖에 없다. 만약 그것들을 보조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현재수준의 생산을 지탱하기 위하여 침해는 계속되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의 의사결정구조와 관련하여 상황은 흡사하다. 어떤 국가가 전제적 민주적으로 조직되었는지, 중앙집권적 분권적 의사결정구조를 단일의, 또는 다단계 대의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다당제도로써, 혹은 법인형 국가로서 조직되고 있는지 등등 국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기만적인 일이다. 남김없이

언급하기 위하여 첨가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한 국가의 헌법은 침해의 제도기관으로서의 이의 존립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상의 장치라는 것이다.

이의 안정성이 정책변경의 착수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달려 있는 이상 그 국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생활 속에서는 범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따라서 극구 억제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적 에너지에 대한 제도화된 호소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통상의 기업경영은 기업으로 하여금 꼼꼼하게 가계를 유지해가는 고객들에 대한 판매로부터 가능한 한 높은 이윤을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헌법은 이것과 아무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피상적인 사회학적 '조직연구'만이 양자간의 구조적 유사성, 또는 차이에 대한 조사에 관여하고 있을 뿐이다.¹⁷⁾

이런 점이 철저히 이해되는 경우에만 그 국가와 사회주의에 대한 성격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연후에만 똑같은 문제의 다른 측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마치 개인기업에 대하듯 단순히 보이코트하는 것에 의하여 국가에 맞서 싸울 수는 없는데, 침해자는 보이코트에 의하여 드러나는 부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방어적 폭력으로 국가의 침해에 대항하여 맞서 싸울 수는 없는데, 국가의 침해는 여론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17) 사기업조직과 국가간의 근본적 차이에 관하여, L. v. Mises, *Bureaucracy*, New Haven, 1944 참조.

18) Spooner는 국가의 지지자들을 악한Knaves과 봉Dupes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L. Spooner, *No Treason. The Constitution of No Authority*, Colorado Springs, 1973, p.18).

따라서 모든 것은 여론의 변화에 달려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음의 두 가정들과 그것들의 상태가 현실적인가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에 달려 있다. 그와 같은 가정은 위에서 그 국가가 특혜받는 그룹의 사람들에게 어떤 재화들과 용역들을 제공하는 그의 역할에 대하여 지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논의되었을 때 함축되었다. 거기에 분명히 내포된 가정은 사람들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혜택의 한 몫을 받으면 침해자를 지지하는 쪽으로 매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는 어디에서나 존재하므로 이 가정은, 그 국가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 되겠는데, 정말 오늘날 어디에서나 현실적인 것이라고 언급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히 그러할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국가가 그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려면 일반여론의 변화만은, 그리고 꼭 변화만큼은 일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그와 같은 국가지원 행위는 그것이 제도화된 범죄조직에 주어지는 지원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낙인찍히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들이 오로지 그 국가의 증뢰에 의하여 자신들이 매수되는 것을 중단하기만 한다면, 그러나 만약 제공되면 그 국가의 증뢰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의 그들 몫을 취하고, 한편 그 국가를 어느 때 곧, 그리고 어디에서나 저항, 무시, 그리고 조소를 받아야 하는 침해자로서 계속 간주하고 취급하기만 한다면, 사회주의는 그의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함축된 두번째 가정은 사람들은 정말이지 권력을 갈망하고, 따라서 이 갈망을 충족시킬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지원의 행위로 매수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들을 보건대 오늘날 이 가정 또한 현실

적이라는 것에 아무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적어도 원칙에 있어서 자연법칙 때문에 현실적인 것은 아니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¹⁹⁾

국가권위주의와 사회주의를 종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론에서의 변화만은, 그리고 변화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와 같은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욕망의 충족을 위한 정책참여를 위하여 만들어놓은 그 제도적 배출구의 사용을 기피하게끔 인도할 것이다. 대신 어떠한 그와 같은 욕망을 억누르게 하고, 그 국가의 바로 이 조직상의 무기를 그(국가)에 향하도록 만들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느 곳, 어느 때에나 자연적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와 규제에 종식을 요구하는 운동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게 할 것이다.²⁰⁾

19) E. de la Boetie(*The Politics of Obedience: The Discourse of Voluntary Servitude*, New York, 1975, pp.52~53).

20) 자유의 전략에 관하여, 특히 이들 목표들의 달성을 위한 자유주의운동의 중요성에 관하여, M. N. Rothbard, *For A New Liberty*, New York, 1978, Chapter 15; *The Ethics of Liberty*, Atlantic Highlands, 1982, part 5 참조.

제9장

자본주의생산과 독점의 문제

Capitalist Production and the Problem of Monopoly

앞장들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경제적 도덕적 주장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도덕적으로 자본주의보다 열등하다. 전장에서는 왜 사회주의는 실행 가능한 사회제도인가를 검토하였으며, 그 국가(사회주의를 구현하는 제도기관)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의 존립, 안정 및 성장은 침해에 의존하며, 그 국가가 달성해내는 이와 같은 침해에 대한 일반의 지지에 의존한다. 한 예로 대중적 차별정책을 통하여 실행한다. 즉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뇌물을 주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계속적 착취를 참고 지지하도록 만드는 정책, 또한 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하여, 즉 일반대중을 매수하고, 미래의 유망한 권력행사 후보자들에게 추후의 정책변경의 한 기회에 그들의 특정의 착취적 계획을 수행하는 무마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일반적으로 하여금 침해의 계임을 같이 행하도록 권유하는 것에 의하여 실행한다.

우리는 이제 경제학으로 돌아와 사회주의의 대안으로서 자본주의의 생산체계(시장경제)의 운용을 분석하고, 이에 의거하여 건설적으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나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소위 ‘공공재’의 생산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전념할 것인데, 본장은 자본주의생산의 정상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이를 국가, 또는 사회생산제도의 통상적 운용과 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 순수자본주의 생산제도에 있어서 특이한 경제적 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주장되는 특별한 문제로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소위 독점적 생산의 문제에 눈을 돌릴 것이다.

잠시 독점적 및 공공재생산의 특별한 문제들을 무시하고, 왜 자본주의가 그의 대안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우수한가를 다음 세 가지의 구조적 이유에서 밝히고자 한다. 첫째, 오로지 자본주의만이 합리적으로rationally, 즉 소비자평가의 관점에 입각하여 생산수단을 배치(또는 분배)할 수 있으며, 둘째, 오로지 자본주의만이 주어진 사람의 자질과 자원의 배분을 가지고 생산된 제품의 질이, 다시금 소비자평가의 관점에 입각하여 판단된 그의 최적수준에 도달함을 보장할 수 있으며, 셋째, 주어진 생산요소들의 배분과 생산품의 질을 가정하고, 또한 소비자평가의 관점에 입각하여 판단하건대 오로지 시장제도만이 생산요소의 가치가 시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보존됨을 보증할 수 있다.1)

시장을 위하여 생산하는 한(즉 다른 사람, 또는 기업들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그리고 실제 그러한 바와 같이 자연적 소유자들의 재산에 대한 비침해의 법칙하에서 모든 통상의 기업들은 이들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비용을 가능한 한 능가하는 판매보수를 약속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와 같은 재화들의 생산에, 그리고 이들 재화들의 그와 같은 양의 생산에 그의 자원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업은 그의 자원들을 그와 같은 재화들의 다른 양의 생산에, 그렇지 않으면 아주 다른 재화들의 생산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모든 그와 같은 기업은 생산수단들의 어떤 주어진 배치, 또는 사용이 지속되고 재생산되어야 할 것인가를 반복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요의 변화, 또는 그와 같은 변화의 예상에 기인하여 다른 사용들을 위한 재배치가 실시될 것이다. 자원들이

1) 이에 관하여, 제3장 및 제10장 참조.

가장 가치생산적(가장 이익이 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는지 여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어진 재배치가 가장 경제적인가의 문제는 물론 어떠한 생각할 수 있는 경제·사회제도하에서도 멀든가깝든간에 미래에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내기까지는 항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백한 사실인데, 모든 기업에 있어서 그의 이전의 배분상의 결정들이 옳고 그르고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제품생산에 사용된 생산요소들에 대하여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한, 어떤 주어진 생산요소들의 배치가 전체기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소단위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것이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이었는가에 관하여는 부기가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어느 누구도 이 정보를 점검하고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윤-손실 기준은 사후적 기준이며, 어떠한 생산체제하에서도 반드시 그러한데, 생산에 수반되는 시간요소 때문에 미래의 사전적 배치에 관하여 결정할 때에는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관점으로부터 자원의 배치 및 재배치의 과정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다. 모든 배치상의 결정은 이윤-손실 기준에 입각하여 계속 심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의 충족에 실패하는 모든 기업은 단기든 장기든 규모에서 축소되거나 시장에서 완전히 쫓겨날 운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윤-손실 기준을 성공적으로 충족시켜 가는 기업들만이 계속 운전되어 갈 수 있거나,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이 기준의 제도화가 모든 개개기업의 결정들이 소비자평가의 관점에서 항상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나리라는 것을 보

증하지 않는다(다른 어떤 기준도 결코 보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량한 예측자들을 제거하고 꾸준히 성공해가는 기업인들의 지위를 강화시켜 줌으로써, 시간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생산제도의 구조적 변화들이 자원의 보다 합리적 사용으로 가는 계속적 움직임으로써, 그리고 소비자에 의하여 적은 가치-생산적 생산라인으로부터 보다 높게 가치가 매겨지는 생산라인으로 생산요소들을 인도하고, 재인도하는 끊임없는 과정으로써 설명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증해준다.²⁾

국가가 모델에 들어오는 순간 상황은 전적으로 달라지며 소비자(생산이 그를 위하여 착수된다는 점이 상기되어야 한다)의 관점에서 임의성이 합리성을 대체한다. 비계약적 수단으로 소득을 획득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국가)는 통상의 기업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가는 만약 계속 경영할 것을 원하면 다른 모든 생산자들이 요구받는 것처럼 손실을 피하도록 요구받지도 않는다.

대신 그는 사람들에게 세금 및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국가는 그 자신의 생산운동을 보조할 것인지의 여부,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보조할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이다. 그는 또한 어떤 유망경쟁자가 국가와 경쟁하도록, 또는 국가보다 우수하게 경쟁하도록 허용될 것인지를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비용-편익 고려에 구애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그가 이 기준에 입각하여 그의 자원의 여러 사용들 가운데 어느 것도 계속적으로 검사받도록 요구받지 않는다면, 즉 그가 생산자로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의 자원

2) 이윤손실 기능에 관하여, L. v. Mises, *Human Action*, Chicago, 1966, Chapter 15; "Profit and Loss", *Planning for Freedom*, South Holland, 1974; M.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1970, Chapter 8 참조.

배분을 소비자수요의 변화에 더이상 성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배분상의 결정들의 일련의 진행은 임의적 비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소비자수요에의 잘못된 조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나타내는 그와 같은 배분상의 '돌연변이'들을 경제운행에서 몰아내는 어떤 선택메커니즘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³⁾ 자원배분의 과정이 이윤-손실 기준의 효과적 기능의 결여 속에서 임의적인 것으로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결정되어야 할 결정사항들이 어떠한 종류의 제약에도 구애받지 않고, 따라서 순전히 종작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그렇지 않으며, 어떠한 결정도 의사결정자에게 부과된 제약조건들에 직면한다. 만약 생산요소들의 배치가 민주적으로 결정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수결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이런 식으로 제약되어 있거나, 전제군주가 보는 여론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결정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보건대 임의적인 것이다.⁴⁾

따라서 자원의 배분은,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든 희소수단의 낭비적 사용을 포함한다. 소비자에 봉사하는 제도기관으로서 살아남기 위하여 이윤을 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된다면 그 국가는 필시 합리성 대신에 배분상의 혼돈을 대체하는 것이다. 로드바드 M. Rothbard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3) 정부의 경제학에 관하여, M. N. Rothbard, *Power and Market*, Kansas City, 1977, 제5장 참조.

4) 민주적으로 통제된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의 결함들이 아주 분명해진 바 있다. J. Buchanan and R. Wagner, *The Consequences of Mr. Keynes*, London, 1978, p.19; L. v. Mises, *Socialism*, Indianapolis, 1981, 제31장 및 제8장 참조.

멋지게 정리하고 있다.

그(정부, 국가)가 도로 A, 또는 도로 B를 건설해야 할지, 혹은 학교에 투자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사실상 그의 모든 활동들을 위하여 얼마를 써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가 자금을 할당할 수 있는, 심지어 얼마를 가져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사나 교실, 경찰이나 가로가 부족할 때, 정부와 그의 지지자들은 오로지 하나의 대답을 가지고 있다. 즉 더 많은 돈이다.

왜 이 대답은 자유시장에서는 결코 제외되지 않는가? 돈이 소비, 또는 투자에 들어가는 일부 다른 용도로부터 인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 이 인출은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 정당화는 이윤 및 손실테스트에 의하여 제공된다. 이는 소비자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들이 충족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만약 어떤 사업이나 제품이 그 소유자들에게 높은 이익을 벌여주고 있다면, 그리고 이들 이윤이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면 더 많은 돈이 염출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면 돈은 그 사업으로부터 고갈될 것이다.

이윤 및 손실테스트는 생산적 서비스의 흐름을 인도하는 중요한 지침 구실을 한다. 그와 같은 지침이 정부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이 총액에 있어서나 구체적 항목에 있어서 쓰여져야 할 것인지 결정할 합리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 많은 돈을 쓰면 쓸수록 그는 더 많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⁵⁾

국가에 비계약적 방법으로 세입을 전용할 특권을 수여하는 결정

5) M. N. Rothbard, *Power and Market*, Kansas City, 1977, p.176 참조.

으로부터 결과하는 생산요소들의 잘못된 배분은 차치하고라도 국가 생산은 곧 그가 생산하기로 결정하는 무엇이든 생산품의 품질저하를 의미한다. 통상의 이윤지향적 기업은 그의 제품을 적어도 생산에 수반된 비용을 회수해주는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충분한 양을 판매할 수 있다면, 비로소 일정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거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생산된 재화들과 용역들의 수요는 잠재적 구매자들에 의하여 느껴진 그것들의 상대적 품질이나 가격에(이는 품질의 여러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좌우되므로 생산자들은 끊임없이 ‘느껴진 제품의 품질’, 또는 ‘제품의 저렴화’에 신경쓰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은 그의 계속된 존립을 위하여 전적으로 자발적인 소비자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기업에서는 소위 전문가, 또는 전문가들의 위원회에 의하여 정해지는 임의적으로 정의된 품질의 표준(소위 품질의 과학적 기술적 표준을 포함하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에게는 단지 소비자들에 의하여 느껴지고 판단된 품질이 있을 뿐이다. 다시금 이 기준은 생산이 시간을 요하고 제품들이 시장에 나타난 연후에만 판매가 시험되기 때문에 시장에 낮은 품질의, 또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의 제품들이나 용역들이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이는 재화의 어떠한 생산체제하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모든 자본주의기업이 시장에서 제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판매시험을 치러야 하고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소비자들과 그들의 평가에 지상의 지위를 보증해주는 것이다. 오로지 제품의 품질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소비자기호에 조정되어야만 기업은 계속 경영해나갈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다.

재화의 생산이 국가에 의하여 착수되는 순간 이야기는 아주 달라

진다. 미래의 수입이 비용회수의 판매와 상관없는 것이 되면(국가가 재화를 생산할 때 대표적으로 그 경우가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생산자는 판매에 의존하는 기업이 해야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제품의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생산된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소비자평가에 따라 그들의 돈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생산자의 미래의 소득이 확보될 수 있다면, 왜 조금이라도 개선할 특별한 노력을 취하겠는가?

보다 정확하게 설령 세금을 부과하고 그의 잠재적 경쟁자들의 경쟁능력을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생산기업으로서의 그 국가의 피고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이윤에 의존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만큼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도,⁶⁾ 한걸음 더 나아가 양그룹의 피고용자들과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똑같이 그들의 소득의 증가나 감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해도, 소비자수요의 관점으로 측정된, 그리고 실제구매로 시험된 제품의 품질은, 국가 피고용자들의 소득이 제품의 품질에 훨씬 덜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보다 국가경영에서 훨씬 낮아질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그들은 품질제품을 생산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며, 보다 많은 그들의 시간과 노력은 그들이(한편 반드시 소비자가 아닌)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서 경주될 것이다.⁷⁾

만약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그 사람들이 단지 초인간들이거나 천

6) 소위 생산의 공공부문이 애초부터 상이한 유형의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한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비능률적인,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므로 이는 대단히 너그러운 가정이다.

7) L. v. Mises, *Bureaucracy*, New Haven, 1944; Rothbard, *Power and Market*, Kansas City, 1977, pp.172ff; *For A New Liberty* New York, 1978, 제10장; M. and R. Friedman, *The Tyranny of the Status Quo*, New York, 1984, pp.35~51 참조.

사들이라면(그 밖의 사람들은 단지 평범하고 열등한 인간인 데 반하여), 결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똑같은 결과(즉 어떠한 국가생산 재화의 제품품질의 열등함)가 인류가 전체적으로 향상된다 해도, 다시 결과될 것이다. 그들이 국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일이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비효율을 수반하는 한 천사들조차도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의 동료천사들보다 낮은 품질의 생산품을 만들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시장제도만이 희소자원들의 합리적 배분을 보증할 수 있고, 오로지 자본주의기업들만이 최적품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들의 생산을 보증할 수 있다는 사실들에 더하여, 진정 다른 제도가 능가할 수 없는, 자본주의 생산제도의 경제적 우수성, 세번째 구조적 이유가 존재한다. 오로지 시장동인들의 작용을 통하여 어떠한 주어진 배분에 있어서도 시간을 통하여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즉 과소이용뿐만 아니라 과대이용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이미 3장에서 러시아형 사회주의와 관련하여 언급된 바 있다. 특정 생산라인에 사용될 자원들의 이용, 또는 보존의 정도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통상의 이윤지향적 기업에 부과되고 있는 제도상의 제약조건들은 무엇인가? 분명히 그와 같은 기업의 소유자는 (요소들과 더불어) 생산된 제품들은 물론 생산요소들이나 자원들도 소유한다. 따라서 그의 소득(여기에서 그 용어의 광의로 사용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생산된 제품들의 판매에서 각종 운영비용들이 공제된 이후 받게 되는 소득과 소유자가 요소들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현재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는 생산요소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체제(사유재산에 근거하는 사회질서)를 제도화함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들 두 규모의 소득을 (그 제도하에서)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한 인센티브 구조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생산행위는 분명히 언급된 양자의 소득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일면 생산은 판매로부터의 소득보수를 이룩하기 위하여 착수된다. 반면에 생산요소들은 소진될 수 있는 이상, 즉 그것들이 희소한, 그리고 공짜가 아닌 재화들인 이상 모든 생산행위는 생산요소들의 가치의 퇴락을 의미한다.

개인소유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이는 모든 기업이 생산의 한 계비용(즉 자원들의 사용에서 결과하는 그것들의 가치하락)이 한계수입생산보다 크게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게 되고, 회계의 도움과 더불어 이들 노력의 성공, 또는 실패를 점검하기 위한 장치가 존재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 만약 생산자가 이 임무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본가치의 하락이 판매로부터의 소득보수의 증가보다 크다면 소유자의 총소득(그 용어의 광의에서)은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소유권은 기존 자본소득이 과대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만약 그렇지 않고 과대이용되면 이것이 일어나게 한 데 대하여 소득의 손실로 소유자를 벌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것은 생산된 가치가 생산중 파괴된 가치보다 크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도와준다. 특히 개인소유권은 주어진 자본소득을 어떤 특정한 생산라인에서 보존(절약)하거나 소모하는 정도를 예상되는 가격변화에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그 제도 속에) 수립되

8) L. v. Mises, *Human Action*, Chicago, 1966, Chapter 23.6; M.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1970, 제7장, 특히 7.4~6; "Conservation in the Free Market", *Egalitarianism As A Revolt Against Nature*, Washington, 1974; *For A New Liberty*, New York, 1978, 제13장 참조.

는 제도이다. 미래의 석유가격이 현재수준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석유생산에 묶여 있는 자본의 가치는 한계생산을 생산하는데 수반된 한계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즉각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즉각 생산을 감소하고 이에 따라 보존을 증가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인데, 이는 현재 시장에서의 한계수입생산이 여전히 변경되지 않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래의 석유가격이 현재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이는 당해 자본가치의, 그리고 한계비용의 즉각적인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따라서 기업은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므로 즉각 그의 자본스톡을 보다 집중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들 두 반응은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바로 요구되는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 생산제도가 운용되는 방식을 국가가 생산수단들을 취급할 때 항상 제도화(획일화)되는 상황과 비교한다면 현저한 차이가 등장한다. 이는 특히 그 국가가 현대적 의회민주주의인 경우에 사실이다. 이 경우, 기업의 관리자들은 판매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운영비용을 공제한 연후에), 그들은 생산요소의 있을 수 있는 매각으로부터의 수입을 개인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 주어진 자본스톡을 시간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사용할 인센티브는 매우 감소된다. 만약 제품판매로부터의 소득보수를 개인적으로 전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자본의 어떤 주어진 사용 정도로부터 결과하는 자본가치의 증식, 또는 손실을 전용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경우 총소득(즉 소비자평가로 측정된 총사회적 부)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자본가치의 손실을 대가로 한

판매로부터의 소득보수를 극대화시키는 제도화된 인센티브 구조가 존재하게 된다. 생산된 재화들의 가격이 미래에 상승할 것이 예기될 때, 왜 정부관리가 주어진 자본스톡의 이용도를 줄이고 보존정책에 의존해야 하는가? 분명히 그와 같은 보존주의정책의 이득(그로부터 결과하는 보다 높은 자본가치)은 사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그와 같은 정책에 의존함으로써 판매로부터의 소득보수는 감소될 것이며, 이에 반하여 만약 보존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면 그 소득보수는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면, 보존한다는 것은 유리한 점들의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불리한 점들의 모두를 취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관리자들이 초인간들이 아니고 그들 자신들의 유리점들에 관심을 가지는 보통사람들이라면, 주어진 자본스톡이 과대활용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자본주의하에서의 상황과 비교하여 나빠지리라는 것은 어떠한 국가생산에 있어서도 절대로 필연적인 결과임을 결론짓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 설명된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으나 독점적 생산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주목하는 순간 실제적으로 사정이 달라지며, 순수한 시장제도의 결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생기리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 그리고 필요에 의하여 독점적 생산은 자본주의하에서 생겨나야 하는데, 적어도 장기에 있어서 그러하다.

마르크스적 비평가들뿐만 아니라 정통 경제이론가들도 이와 같은 소위 반론을 중시한다.⁹⁾ 이 도전에 대한 대답으로 네 개의 관점들이 차례로 제시될 것이다. 첫째, 가용한 역사적 증거는 이들 비평가들의 이론에 반하여 방해받지 않은 시장제도하에서 독점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에 더

9) L. v. Mises, *Socialism*, Indianapolis, 1981, part 3.2 참조.

하여, 그와 같은 경향이 도대체 자유시장에서 우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인도케 하는 이론적 이유들이 존재한다. 셋째, 설사 그와 같은 증가하는 독점화과정은 무슨 이유에서건 생겨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참여가 진정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이는 해가 없는 것이다. 넷째, 경쟁가격과 구별되고 대조되는 독점가격의 개념은 자본주의경제에 있어서 가상적인 것이다.

역사적 증거와 관련하여 만약 자본주의 비평가들의 지론이 진실이라면 ‘후생’, 또는 ‘사회’ 자본주의의 상대적으로 보다 무겁게 규제된 제도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자유스럽고 방해받지 않고 규제되지 않은 자유방임의 자본주의하에서 독점화에도 보다 현저한 경향을 예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바로 그 반대결과와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1867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역사적 기간을 미국역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다 자본주의적 시기로, 그 이후의 기간을 비교적 보다 많은, 그리고 증가하는 경영 규제와 후생입법의 시기로 평가하는 데 대하여 일반적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의 독점화와 집중화가 둘째 기간보다 첫번째 기간에서 적게 일어나고 있는 경향으로 발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첫째 기간 중에서 거의 모든 재화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가격과 더불어 보다 심한 경쟁에로의 지속적인 추세가 관찰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¹⁰⁾ 경향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시장제도가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점점 더 방해받고 파괴되었을 때 드디어 멈춰지고 역전되었다. 점증하는 독점화는 주도적 기업가들이 정부로 하여금 이 격렬한 경쟁제도에 간섭하게 하고

10) J. W. McGuire, *Business and Society*, New York, 1963, pp.38~39.

규제적 입법을 통과시키도록 설득하여 대기업들 주위에 계속 번창하는 소위 목을 자르는 경쟁으로부터 기존 대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있는’ 경쟁제도를 부과하는 데 보다 성공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¹¹⁾

콜코 G. Kolko, 좌익으로서 믿을 만한 목격자인 그는 적어도 좌익으로부터의 비판을 대변하여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 (첫)기간중에 점증하는 경쟁으로의 지배적 경향이 존재하였다. 경쟁은 많은 주요경영 및 재계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기업합병 움직임은 대체로 그 저항할 수 없는 경향들을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자발적 비성공적 기업작용의 반영이었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번창함에 따라, 경제력이 확장하는 전국민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오로지 국가정부만이 경제를 ‘지배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중요기업들에게 분명해졌다…… 역설적으로 역사가들의 대다수 합의에 반하여 정부로 하여금 경제에 관여하도록 만든 것은 독점의 존재가 아니라 독점의 결여였다.¹²⁾

이에 더하여 그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일반적 지식에 분명히 상치되는 이와 같은 발견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고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¹³⁾ 독점화는 일부 특정의 생산요소가 시장영역으로부터 철

11) G. Kolko, *The Triumph of Conservatism*, Chicago, 1967; *Railroads and Regulation*, Princeton, 1965; J. Weinstein, *The Corporate Ideal in the Liberal State*, Boston, 1968; M. N. Rothbard and R. Radosh(eds.), *A New History of Leviathan*, New York, 1972 참조.

12) G. Kolko, *The Triumph of Conservatism*, Chicago, 1967, pp.4~5; M.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1965 참조.

13) L. v. Mises, *Socialism*, Indianapolis, 1981, part 3.2; *Human Action*, Chicago, 1966,

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요소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거래의 역제에 관여하고 있는 이 요소의 소유자만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독점화된 생산요소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만약 그에 대한 시장가격이 없다면, 그 요소의 소유자는 이를 시장으로부터 철수하고 이를 후에 사용하게 될 때 사용함으로써 초래되는 금전적 비용을 더이상 평가할 수 없어진다.

환언하면, 그는 더이상 그의 이익을 계산할 수도, 단지 사후적일 지라도 그가 정말로 그의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한 이윤을 얻고 있는지를 확실히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 기업가는 가장 높은 가능한 이윤(분명히 그의 비평가들에 의하여 항상 가정되어 있는 것)을 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그것들을 가장 이익이 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할 다른 보다 수지맞는 방법이 없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 독점화된 생산요소들을 계속 시장에 내놔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그 요소를 갖고 있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보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독점자는 시장에서 철수된 생산요소의 소유자로서의 그의 지위를 포기하는 데 항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되며, 대신 시장영역에 이를 투입할 것을 열망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모든 추가적 독점화의 행위와 더불어 독점화된 생산요소들의 소유자의 문제는(즉 경제적 계산의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진정으로 가장 이익이 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결코 확실히 할

Chapters 25~26; M.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1970, pp.544ff; pp.585ff; "Ludwig von Mises and Economic Calculation under Socialism", L. Moss(ed.), *The Economics of Ludwig von Mises*, Kansas City, 1976, pp.75~76 참조.

수 없다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화된다. 독점자는 전지전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판단하는 미래의 경쟁재화들과 서비스에 관한 그의 지식은 독점화의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점점 한정되어 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정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는 특히 그러하다.

생산요소들이 시장에서 철수되고, 이들 요소들과 더불어 생산되는 재화들이 소용되는 소비자들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경제적 계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된 그 독점자는 그의 생산요소들을 사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이익이 나는 용도들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된 정보를 구사하는 위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적어질 것이다. 대신 다른 사람들, 또는 그룹의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하여 이윤을 벌겠다는 욕망을 갖고 있는 이상 그 독점화된 요소들을 고용하는 보다 수지가 맞는 방법들을 감지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와 같은 독점화의 진행과정 속에서 보다 가능해진다.¹⁴⁾

이는 반드시 그들이 보다 나은 기업가들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 각종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독점자가 독점화로 가는 모든 새로운 조치와 더불어 찾아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비용이 드는 기업가적 기회들을 점점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자가 다른 생산자들에게 그의 독점화된 요소들을 매각하도록 설득되어질 가능성은 (요주의! 이에 의하여 그의 이윤을 증가시킬 목적을 위하여) 독점화로 가는 모든 추가적 조치와 더불어 증대된다.¹⁵⁾

14) F. A. Hayek,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1948, 특히 Chapter 9; I. Kirzner,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Chicago, 1973 참조.

15) 대규모 소유와 관련하여, 특히 땅에 대하여 미제스는 그것은 통상 비시장 동인들에 의하여, 즉 강압적 폭력과 토지의 매매를 불법화하거나 방해하는 국가규제의 사법제도에 의

이제 이론이나 역사적 증거가 입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일이 무슨 이유에서든 일어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직선적으로 가장 극단의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즉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유일한 고용자인, 말하자면 단 하나의 기업, 초독점자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물론 가정하여 그 초독점자는 침해를 사용함이 없이 그의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소비자만족과 관련하여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 가지, 그것은 분명히 아무도 이 기업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기업은 진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적법하게 그의 소유이다. 그리고 또다른 점은 그것은 어떠한 가능한 교환을 보이코트할 어느 누구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도 그 독점자를 위하여 일하도록, 또는 그로부터 무엇을 사도록 강요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누구든지 노동서비스로부터 버는 그의 수입으로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는 그 수입을 소비, 또는 저축할 수 있으며, 생산적·비생산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결합하여 어떠한 종류의 공동사업을 위해 그들의 자금을 합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독점의 존재는 다음을 말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즉 독점자는 분명히 그의 생산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기회도 내다볼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요소들의 경매에서 독점자

를 떠돌리는 것에 의하여, 또는 본원적 저축을 통하여, 기존의 비생산적으로 사용된 개인의 부를 생산적 자본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자금을 합하는 것을 통하여 그 자신이 자본주의 생산자가 되는 것에 의하여 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다른 어느 누구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누구도 침해에 의존하지 않고는 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초독점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분명히 어불성설이 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시장경제의 테두리내에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면 이 완전히 동일한 초독점자는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긴요하게 필요되는 재화와 용역을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진정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오로지 입증될 것이다.

그럼에도 독점가격의 문제는 남아 있다.¹⁶⁾ 독점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최적 이하의 재화의 공급을 암시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수한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용에 한 중요한 예외가 여기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은가? 어느 의미에서 이 문제는 시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립하고 있는 초독점자는 소비자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위의 설명에 의하여 이미 답해졌다. 그러나 여하간 독점가격이(주장되기를) 성질상 경쟁적 가격과 다르다는 이론은 좀 다른 기술적 언어로 제시된 바 있으며, 따라서 특별한 취급을 받을 만하다.

이 분석결과는, 지금은 놀랄 일이 아닌데, 이미 발견된 것을 단지

하여 가져와졌고, 떠받쳐졌다고 언급하였다.

L. v. Mises, *Socialism*, Indianapolis, 1981, pp.325~326 참조.

16) M.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1970, Chapter 10, 특히 pp.586ff; W. Block, "Austrian Monopoly Theory. A Critiqu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977 참조.

보강해준다. 즉 독점은 시장경제가 어떠한 사회주의적, 국가통제주의적 제도보다 반드시 효율적이라는 일반적 법칙에 권위있는 수정을 가하도록 요구하는 특별한 문제를 조성하지 않는다. 경제적 정통 이론(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미제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학파를 포함하는)에 쫓아 ‘독점가격’ 및 이에 대조되는 ‘경쟁가격’의 정의는 무엇인가? 다음의 정의는 대표적이다.

독점은 독점가격의 출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나, 유일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추가적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즉 수요곡선의 어떤 형태이다. 독점의 단순한 존재는 이 점에 있어서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책의 출판자는 독점자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낮은 가격을 매겨도 단 한 권도 팔 수 없을지 모른다. 독점자가 독점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가격이 독점가격은 아니다. 독점가격은 독점자가 경쟁시장이 허용되는 한도까지 그의 판매를 확장하는 것보다 판매될 총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지는 유일한 가격이다.¹⁷⁾

이 구별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생산자 자신이나 어떠한 중립적 외부관찰자도 시장에서 실제로 획득된 그 가격이 위 정의에서 제시된 ‘제한된 대 제한되지 않은 공급’기준에 근거하여 독점, 또는 경쟁가격인지를 도대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주어진 재화의 유일한 생산자’의 의미에서 독점적 생산자가 존재한다고 하자. 어떤 재화가 다른 기업들

에 의하여 생산된 다른 재화들과 다른 성질의, 또는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전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그와 같은 재화의 어떤 비교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항상 미래시장에서 사후적 사실에 입각하여 이들 재화가 구매하는 일반으로부터 받는 취급과 평가에 의하여 다르거나 똑같은 재화인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생산자는 그의 생산품이 무엇이든간에 의사결정 지점에서 그 용어의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한 잠재적 독점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와 모든 생산자가 직면하게 되는 결정은 무엇인가? 그는 그의 화폐적 소득(다른 비화폐적 소득에 대한 고려들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문제의 그 재화의 얼마만한 양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할 수 있기 위하여 그는 제품이 시장에 나올 때 당해 제품의 수요곡선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생산될 그 재화의 각 수량을 생산할 각 생산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판매로부터의 수입(즉 판매된 재화의 수량×가격)에서 그 수량을 생산하는 데 수반된 생산비용을 공제한 것이 극대에 도달할 그 지점에서 생산될 수량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독점자가 추구하는 그의 제품가격이 정말 시장에서 팔려나갈 수 있는 가격인지 미래의 수요곡선에 대한 그의 평가를 정확하게 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 시장가격은 독점, 또는 경쟁가격인가? 로드바드가 독점문제에 대한 그의 선구적, 그러나 대단히 무시되어 온 분석에서 인식하였듯이 이를 알 방법이 없다. 생산된 그 재화의 그 수량이 비탄력적 수요의 이점을 취하기 위하여 ‘제한된’ 것인가? 따라서 독점가격이 얻어진 것인가, 또는 도

17) L. v. Mises, *Human Action*, Chicago, 1966, p.359; P. Samuelson, *Economics*, New York, 1976, p.500 참조.

달된 그 가격이 '경쟁시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확장된 재화들의 수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수립된 경쟁가격인가? 그 문제를 결정할 방법이 없다.¹⁸⁾

분명히 모든 생산자는 수요가(그 수준 이상에서) 탄력적이 되는 따라서 지불된 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그에게 보다 낮은 총수입을 산출해주는 수준에서 생산된 그 수량을 항상 결정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총량제한적 관행을 행한다. 동시에 미래의 수요곡선의 형태에 대한 그의 추정에 근거하여 모든 생산자는 항상 생산의 한계비용(MC, 즉 X재화의 추가적 한 단위를 생산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최소한 생산요소들을 사용하여 대체재화의 한 단위를 생산하지 않는 기회비용)이 공급의 각 수준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X재화의 단위당 가격(P)과 상등하는(즉 $MC=P$) 지점까지 어떠한 재화의 생산을 확장하려 할 것이다. 제한과 확장 양자는 이윤극대화와 시장가격형성의 구성부분이며, 이들 두 측면의 어느 것도 독점적·경쟁적 행위간에 어떤 타당한 구분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이제 의사결정의 다음 지점에서 독점자는 이전의 높은 수준에서 새로운 낮은 수준으로 생산된 재화의 산출량이 감소할 것을 결정한다고 하자. 그리고 그는 정말 이전의 시점에서보다 지금 보다 높은 총수입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독점가격의 분명한 예가 아닌가? 다시금 그 대답은 '노'임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재배분상의 '제한'과 수요의 변화를 원인으로 하는 '정상적인' 재배분과의 불가구분성이 될 것이다. 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든 사건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따라서 다시금 양자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그리고 똑같은 것의, 즉 행동 및 선택의 두 측면인 이상 그 문제를 결정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특한 종류의 사과를 생산하는 독점자가 그의 사과에 대한 수요의 증가(수요곡선의 상향변경)와 동시에 오렌지에 대한 보다 높은 수요의 증가(수요곡선의 훨씬 더 큰 상향변경)에 직면한다면, 동일한 결과(즉 보다 높은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로부터의 총수입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히 높은 가격과 결부된 공급의 제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그의 사과에 대한 이전의 시장가격이 그 사이에 경쟁 이하의 가격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사과의 감소된 생산으로부터 보다 큰 수입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증가된 수요에 따라 단순히 사과의 생산을 확장하는 대신 진정으로 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원한다면, 그 사이에 상대가격체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전에 사과의 생산에 사용된 요소들의 일부를 오렌지의 생산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사과생산을 제한하는 독점자가 이제 사용이 가능해진 요소들을 가지고 오렌지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대신 그것들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금 이것이 가리키는 모든 것은 사과에 대한 수요의 증가외에도 그 사이에 그 위에 또다른 재화인 여가(보다 정확하게, 독점자에 의한 여가에 대한 수요, 그 자신이 또한 소비자인)에 대한 훨씬 큰 수요의 증가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제한된 사과공급에 대한 설명은 따라서 다른 재화들에 대비하여 여가(오렌지 대신)의 상대적 가격변화에서 구해진다.

독점자 자신이나 외부관찰자의 관점에서든 제한적 행위는 개념적으로 단지 예상되는 수요의 변화에 따르는 정상적 재배분과 구별될 수 없다. 독점자가 보다 높은 가격을 수반하는 제한적 활동들을 시

18) M.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1970, Chapter 10, 특히 pp.604~14 참조.

행할 때는 항상 정의상 그는 해방된 요소들을 또다른 보다 높게 가치가 부여된 목적에 사용함이 분명하며, 따라서 이는 그가 상대적 수요의 변화에 조정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로드바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우리는 ‘생산의 제한’을 독점가격 대 경쟁가격의 시험으로 사용할 수 없다. 경쟁 이하의 subcompetitive 가격으로부터 경쟁가격에의 이동은 또한 해방된 그 요소들을 사용하는 다른 생산라인의 확장과 물론 결부되어 이 재화의 생산의 제한을 수반한다. 그와 같은 제한과 의당 결과하는 확장을 ‘독점가격’이라고 주장되는 상황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약 그 제한이 시장에서 어떤 다른 재화의 생산의 증가 대신 노동요소의 소유자에게 여가의 증가를 수반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한 소비자재화(여가) 생산의 확장인 것이다.

그 ‘제한’이 ‘독점’, 또는 ‘경쟁’가격으로 결과하였는지, 혹은 어느 정도까지 증가된 여가의 동인이 되었는지를 결정할 방법은 여전히 없다. 따라서 독점가격을 어떤 제품의 보다 적은 수량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의하여 달성된 가격으로 정의하는 것은 의미없다. 이는 동일한 정의가 경쟁 이하의 가격에 대비한 ‘경쟁’가격에 적용되기 때문이다.¹⁹⁾

그렇다면 독점문제에 대한 분석은, 앞에서 주어진 바 있는 순수한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생산의 사회주의적 국가통제주의적 체제를 압도하는 그의 우수성에 관한 설명을 조금이라도 수정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제공해주지 못한

19) M.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1970, p.607 참조.

다.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독점화 과정의 발생은 일어날 법하지 않으며, 설사 발생한다 해도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그것은 해가 없는 것이다.

시장제도의 골격내에서 (수량) 제한적 독점적 가격은 보다 높은 수요와 상대가격의 변동에 연유하는 정상적 가격상승과 구별되어질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제한적 행위는 동시에 확장적이므로 총수입의 증가와 결부된 한 생산라인에서의 생산의 감축은 생산요소들의 잘못된 배분과 소비자들에 대한 착취를 암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년센스이다. 그와 같은 논리에 내포되어 있는 오해는 미제스의 후기 작품들 가운데 하나로부터 인용된 다음의 구절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는 함축적으로 독점가격문제에 관한 그 자신의 상기 인용된 정통적 주장을 반론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00단위의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가가 p의 생산에 50단위를, q의 생산에 50단위를 고용한다고 하자. 만약 두 생산라인 모두에서 이익이 생긴다면 p의 생산에 더 많은, 예로서 75단위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를 비난하는 것은 의외의 일일 것이다. 그는 p의 생산증가를 오로지 그에 상응하는 q의 생산을 감축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q에 관하여 똑같은 잘못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만약 더 많은 p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업가를 비난한다면, 더 많은 q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를 비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생산요소들의 희소성이 존재하고, 지구가 환락향Cockaigne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기업가를 비난하는 것과 같다.²⁰⁾

20) L. v. Mises, "Profit and Loss", *Planning for Freedom*, South Holland, 1974, p.116 참조.

국가행위를 필요로 하는 해결되어야 할 시장의 한 특별한 문제로서의 독점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²¹⁾ 사실 국가가 무대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독점과 독점가격에 관한 진정한 비환상적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국가는 그의 가격들 및 경영관행들이 기타의 모든 가격들 및 관행들과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며, 따라서 그의 가격들과 관행들은 철저하게 객관적 비임의적 방식으로 ‘너무 높은’, 또는 ‘착취적’인 것으로 불리어질 수 있다.

이것들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수락할 의사가 없는 가격들 및 관행들이며, 대신 그것들은 폭력의 위협을 통하여 그들에게 강요된 것이다. 국가는 오로지 그토록 특권을 부여받은 제도기관이기 때문에 점증하는 독점화와 집중화의 한 영구적 진행을 예상하고 발견한다는 것 역시 정상적인 것이다. 자발적으로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지배에 따르는 기타 모든 기업들과 비교하여 ‘국가’라는 그 기업은 사람들에게 과세할 수 있고, 그들이 그 세금을 수락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이용하는 용도에 대하여 사람들의 승낙 없이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직인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기타의 모든 기관들(기업들)과 비교하여 희소자원들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 있어서 국가에 엄청난 유리점을 주는 것이다. 만약 국가의 대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윤동인에 이끌려졌다고 가정하기만 한다면 ‘국가’라는 그 조직은 어떠한 다른

조직보다도 상대적으로 보다 현저한 성장성향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이 특권적 위치에서 비롯된다. 시장제도가 독점적 성장에로의 경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론에 증거가 없는 반면 국가통제주의적 제도가 그러할 것이라는 이론은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풍부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21) 사실상 역사적으로, 정부의 반독점정책은 뒤떨어진 기업에게 그들의 성공적인 경쟁자의 활동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를 제공하는 유일한 제도였다. 반독점정책의 이러한 효과에 대한 뛰어난 사례연구는, D. Armentano, *Antitrust and Monopoly*, New York, 1982; Y. Brozen, *Is Government the Source of Monopoly? And other Essays*, San Francisco, 1980 참조.

제 10 장

자본주의적 생산과 공공재의 문제

Capitalist Production and the Problem of Public Goods

우리는 도덕적 전선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전선에서도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사회주의를 전적으로 사회심리적 의미를 가지는 한 형상으로 바꾸어놓았으며(즉 그의 존립을 위하여 옳은 경제적 이유나 옳은 도덕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 그의 뿌리는 침해와 분할통치의 정책이 일반여론을 부패화시키는 영향의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전장은 사회주의의 경제적으로 우수한 경쟁상대로서 어느 때건 채택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본주의의 경제질서의 운용을 설명하는 건설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의하여 사회주의에 대하여 최후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학으로 돌아왔다.

소비자평가의 방법으로 자본주의는 생산요소들의 배분, 생산된 재화들의 품질과 시간을 통하여 자본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보존과 관련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한 시장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주장된 소위 독점문제는 사실 아무런 특별한 문제를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신 자본주의의 통상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능에 관하여 언급된 모든 것은, 독점적 생산자들이 진정으로 소비자들에 의한 자발적 구매나 구매로부터의 자발적 기권의 지배하에 예속되어 있는 한, 그들(독점적 생산자들에 대해서도 또한 진실이다.

이 마지막 장은 자본주의의 경제적 우수성의 이론에 대하여 제한적인 수정을 가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장된 좀더 자주 인용된 특별한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즉 이는 소위 공공재생산의 경우이다. 특히 보안security의 생산이 고찰될 것이다.

만약 시장경제의 운용에 관하여 전장에서 설명된 것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만약 소비자들이 독점을 보이코트하고, 그들 자신이 경쟁적 생산자들의 시장에 자유롭게 참입할 권리를 갖고 있는 한, 독

점이 소비자들에게 전적으로 해가 없는 것이라면, 도덕적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서도 모든 재화들과 용역들의 생산이 민간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법과 질서, 정의와 평화(즉 제8장에서 설명된 여러 이유에서 국가가 공급해야 하는 재화들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게 하는 것들)의 생산조차도 경쟁시장에 의하여 민간에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명한 벨기에의 경제학자 모리나리G. de Molinari가 일찍이 1849년에, 즉 고전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지배하는 이념적 세력이었고, 따라서 ‘경제학자’와 ‘사회학자’가 일반적으로(그리고 그것이 옳다) 반대어로 간주되던 시대에 구축한 결론이다.

만약 정치경제 속에 하나의 잘 수립된 진실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즉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의 유형·무형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소용되는 모든 상품들에 있어서, 노동과 상거래가 자유롭게 유지된다는 것은, 노동과 상거래의 자유는 그것들의 필연적 및 영구적 결과로서 가격의 최대한의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비자의 최상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다. 즉 어떠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항상 생산자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와 같은 원칙들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준엄한 결론에 도달한다. 즉 보안의 생산은 이 무형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경쟁의 법칙하에 예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다음이 도출된다. 어떠한 정부도 또다른 정부가 그와 경쟁에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소비자들이 이 재화를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데 담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¹⁾

1) G. de Molinari, "The Production of Security", Center for Libertarian Studies, Occasional

그리고 그는 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은 논리적이며 진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과학이 근거하고 있는 원칙들은 정당화되지 않는다.”²⁾

분명히 이 즐겁지 못한(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결론에서 벗어날 단 하나의 길이 존재한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들에서 상기의 경제적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재화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소위 공공재이론가들이 증명하고자 마음먹은 것이 이것이다.³⁾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그와 같은 특별한 재화들이나 특별한 이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따라서 특히 보안의 생산이 어느 다른 재화나 용역의 생산과는 다른(그것이 주택, 치즈, 또는 보험이든) 어떠한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그의 많은 지지자들에게도 불구하고 공공재이론의 체계는 내부적 비일관성과 불합리한 추론에 시달림을 받아온 결합있는 피상적 논리로서, 대중적 편견과 가정된 신념에 호소하고 있고, 그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으나, 조금도 과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⁴⁾

그렇다면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 모리나리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찾아낸 그 ‘탈출로’는 어떠한 모양을 띠고 있

는가? 모리나리의 시대 이래 다른 종류의 경제적 분석들이 적용되는 재화들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점점 더 일반화되어 왔다. 당연한 사실로 오늘날 개인재(이에 대하여 자본주의 생산양태의 경제적 우수성의 진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와 공공재(이에 대하여 그것이 일반적으로 부정되고 있는)간의 구분의 불가결한 중요성을 논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는 경제학 교과서는 단 한 권도 찾아볼 수 없다.⁵⁾

어떤 재화들이나 용역들은,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보안을 포함하여 그것들의 향유가 그것들의 생산에 실제로 자금을 댄 바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될 수 없는 특별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대신 그것들의 자금지원에 참여한 바 없는 사람들도 그것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와 같은 재화를 공공재, 또는 공공용역이라 부른다(돈을 낸 사람들만이 독점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재, 또는 개인용역에 대하여). 그리고 시장이 그것들을 생산할 수 없음이, 또는 적어도 충분한 양과 질로 생산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보완적 국가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되는데, 이는 공공재의 이와 같은 특성에 연유한다.⁶⁾

여러 저자들에 의하여 제시된 공공재로 주장된 예들은 넓게 가지 각색이다. 저자들은 어떤 특정재화의 분류를 의의가 없도록 해놓지 못한 채 흔히 똑같은 재화나 용역들을 달리 분류하기도 한다.⁷⁾ 이것은 분명히 전체적 구분의 가상적 성격을 미리 암시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재로서, 특히 일반적 인정을 향유하고 있는 몇몇 예를 들어보면, 이웃집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방지하는 소방대가 있으

Paper No. 2, New York, 1977, p.3 참조.

2) 같은 책, p.4 참조.

3) 여러 공공재이론가들의 접근들을 위하여, J. Buchanan and G. 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 Ann Arbor, 1962; J. Buchanan, *The Public Finances*, Homewood, 1970; *The Limits of Liberty*, Chicago, 1975; G. Tullock, *Private Wants, Public Means*, New York, 1970; M.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New York, 1965; W. Baumol, *Welfare Economics and the Theory of the State*, Cambridge, 1952 참조.

4) M.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1970, pp.883ff; “The Myth of Neutral Taxation”, *Cato Journal*, 1981; W. Block, “Free Market Transportation: Denationalizing the Road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979; “Public Goods and Externalities: The Case of Road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983 참조.

5) W. Baumol and A. Blinder, *Economics, Principles and Policy*, New York, 1979, Chapter 31 참조.

6) 또다른 자주 사용되는 공공재의 기준은 ‘비경쟁적 소비’이다.

7) W. Block, “Public Goods and Externalitie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참조.

며, 이에 의하여 설사 그가 소방대를 재정지원하는 데 아무것도 기여한 바 없어도 그로 하여금 나의 소방대로부터 이득을 보게 하며, 또는 경찰이 있는데, 나의 재산 주위를 배회함에 의하여 잠재적 강도들을 설령 그가 경찰의 자금지원을 도운 적이 없어도 나의 이웃의 재산으로부터도 멀리 쫓아보내며, 배들이 길을 찾도록 돕는 등대가 있다(이는 특히 경제학자들에게 소중한 예가 되는데⁸⁾). 설사 배들이 등대의 건설이나 유지에 한푼도 기여한 바 없다는 전제하에서도 그러하다.

공공재이론의 설명과 중요한 검토를 계속하기에 앞서 개인재와 공공재간의 구분이 무엇이 개인에 의하여, 그리고 무엇이 국가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지원으로 생산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조사해보자. 가장 피상적인 분석조차도 (증거 없이) 주장된 이 기준을 사용함은 어떤 현명한 해를 제시해줄기보다는 차라리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얼핏보기에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들과 용역들 가운데 일부는 정말 공공재로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실제 국가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재화들과 용역들 가운데 진정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공공재의 표제하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철도, 우편서비스, 전화, 가로 및 기타는 그의 사용이 그것들을 실제로 자금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될 수 있는 재화들로 보이며, 따라서 개인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차원의 재화인 ‘보안’의 많은 측면이 동일한 경우로 보이는데, 즉 보험에 들 수 있는 모든 것은 개인재로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가가

공급하는 많은 재화들이 개인재들로 보이는 것처럼 개인이 생산하는 것처럼 많은 재화들이 공공재의 범주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나의 이웃들은 나의 잘 가꾸어진 장미정원으로 이득을 볼 것이다. 그들은 내가 정원을 가꾸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의 재산에 가하는 모든 종류의 개량 역시 마찬가지로인데, 이는 이웃의 재산가치도 높여줄 것이다.

거리의 악사의 모자에 돈을 던져주지 않는 사람들도 그의 연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다. 나와 버스에 함께 탄 승객들은 내가 그것을 사는 데 도운 바 없어도 나의 방취체로부터 이득을 볼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재정적 지원 없이 착수된, 나 자신을 가장 매력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나의 노력으로부터 이득을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모든 재화들(장미정원, 재산개량, 거리음악, 방취제, 인격개선 등)이 분명히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국가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지원으로 공급되어야 하는가?

이들 후자의 개인적으로 생산된 공공재의 예들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이들 재화가 개인에 의하여 생산될 수 없고 대신 국가관여를 필요로 한다는 공공재이론가들의 주장에는 무엇인가 심각한 잘못이 있다. 분명히 그것들은 시장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역사적 증거는 현재 국가가 공급하고 있는 공공재라고 주장된 그 모두는 과거 한때는 실제로 민간기업가들에 의하여 공급된 바 있으며 또는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들에서 그렇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편서비스는 한때 거의 모든 곳에서 개인사업이었으며, 가로는 개인적인 자금으로 지원되었으며,

8) J. Buchanan, *The Public Finances*, Homewood, 1970, p.23; P. Samuelson, *Economics*, New York, 1976, p.160 참조.

아직도 그러한 경우가 존재한다. 심지어 사랑받는 등대들도 원래는 개인사업이었다.⁹⁾ 사설경찰, 탐정들 및 중재인들이 존재하며, 병자, 가난한 사람, 노인, 고아 및 미망인들을 돕는 일은 전통적으로 개인 자선단체의 분야였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것들이 순수한 시장제도에 의하여 생산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경험에 의하여 그 잘못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개인재 구분이 무엇을 시장에 맡기고 무엇을 맡기지 않고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또다른 어려움이 발생한다. 예로서 소위 공공재생산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 결과를 미친다면, 또는 그 결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정적,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만약 나의 소방대에 의하여 집을 태우지 않고 구조된 이웃이 자기 집이 타버렸기를 원했다면(아마도 그가 과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또는 나의 이웃들이 장미를 싫어하거나, 또는 나의 동승자들이 나의 방취제 냄새에 구역질을 낸다면 어찌할 것인가? 게다가 기술의 변화는 그 재화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케이블TV의 개발과 더불어 이전에(그렇게 보인) 공공적이었던 재화가 개인적이 되었다.

재산법의 변경은(재산의 처분에 관한) 어떤 재화의 공공-개인성격을 변화시키는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등대는 오로지 바다가 공공적으로(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소유되는 한에 있어서 공공재이다. 그러나 만약 순수한 자본주의 사회질서 속에서 하듯이 대양을 조각내어 개인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등대가 단지 제한된 영역만을 비춤에 따라, 명확히 돈내지 않은 사람들을 등대서비스의 향유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다소 개략적 수준의 토의에서 떠나 개인재와 공공재간의 구분을 좀더 철저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완전히 가상적 구분임이 드러난다. 개인재와 공공재간의 명확한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주어진 재화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토록 많은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이다. 모든 재화는 크든작든 개인적이거나 공공적이며, 그것들의 개인성-공공성의 정도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가치와 평가에 따라,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것들은 결코 영구적으로 어느 하나, 또는 다른 범주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점을 인식하려면 단지 무엇이 무엇을 재화로 만드는가를 상기하면 될 것이다.

무엇이 재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누군가에 의하여 희소한 것으로 인식되고 취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이 그 자체로서 재화가 아니며, 말하자면 재화는 단지 보는 사람의 눈에 재화일 것이다. 적어도 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재화로 평가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재화가 아니다. 그렇다면 재화가 결코 그 자체로서 재화가 아닌 이상(즉 물리·화학적 분석이 무엇을 경제재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재화들을 개인적, 또는 공공적인 것으로 분류하기 위한 고정된 객관적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결코 그 자체로서 개인재나 공공재일 수 없다. 그것들의 개인적 공공적 성격은 얼마나 적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재화로 간주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것들이 개인적 공공적이 되는 정도는 이들 평가들이 변함에 따라 변할 것이며, 그 수는 하나에서 무한대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내부나 내의색깔과 같은 걸로 보기에 완전히 개인적인 것들조차도 다른 누군가 그것들에 관하여 신경을 쓰기 시

9) R. Coase, "The Lighthouse in Economic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74 참조.

작하는 순간 공공재가 될 수 있다.¹⁰⁾ 그리고 겉으로 보아 공공재인, 집의 외장이나 작업복의 색깔과 같은 것들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하여 신경쓰는 것을 중지하는 순간 지극히 개인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모든 재화는 거듭거듭 그의 특성을 변화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이와 같은 신경쓰거나 신경쓰지 않는 변화 여하에 따라 심지어 공공, 또는 개인 ‘선’(즉 good)에서 공공, 또는 개인 ‘악’(즉 bad)으로 (그리고 그 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그러하다면, 도대체 아무 결정도 개인, 또는 공공재로서의 재화의 분류에 근거할 수는 없다.¹¹⁾ 사실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또 이에 따라 누가 이의 자금조달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개인에게 모든 개별재화에 관하여 그가 그것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지 여부를, 그리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아마도 어느 정도로 그 런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해질 것은 물론이다(또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평가에 있어서 모든 변화를 계속적으로 감지하는 것 또한 필요해질 것이며, 그 결과는 모든 것의 생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확정적 결정도 도대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넉센스 같은 이론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¹²⁾

10) W. Block는 “Public Goods and Externalities”,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1983)에서 양말을 공공재로 취급하고 있다.

11) 여기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모든 단일생산자와 공동의 결정들을 내리는 생산자들의 모든 연합은 어느 때건 재화의 개인성, 또는 공공성의 평가에 근거하여 재화를 생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실 공공재들을 사적으로 생산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들은 시장경제의 테두리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불가능한 것은 어떤 재화의 개인성, 또는 공공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자유시장 운용의 결과를 무시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12) 그런데 개인재와 공공재간의 구분의 도입은 경제학의 주관주의 이전 시대로 되돌아

그러나 설사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들을 무시하고 논의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공공재 구분이 틀림없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시인할 의사가 있다 해도 그 논의는 그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을 결코 입증하지 못한다. 그것은 왜 공공재들이(그것들이 어떤 특유한 범주의 재화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해도) 생산되어야 하는지, 또는 왜 개인기업보다는 국가가 그것들을 생산해야 하는지의 결정적 이유들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것은 공공재이론이 상기 언급한 개념상의 구분을 도입한 다음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것들의 생산이나 자금조달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공공재의 긍정적 효과는 이들 재화들이 요구되는 것임을 입증한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들의 생산으로부터 이득을 받는 모두가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생산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충분한 양과 질로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분명히 요구되는 것이면서도 달리는 생산되지 않을) 국가가 그것들의 생산에 뛰어들어 돕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는, 거의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노벨상 수상자들을 빼놓지 않고¹³⁾),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특히 다음의 두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로 국가가 아니면 달리 생산되지 않을 공공재를 국가가 공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고리 속에 한 노르

가는 것이다. 주관주의적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개인재, 또는 공공재로 분류될 수 있는 재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13) P. Samuelson,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54; *Economics*, New York, 1976, Chapter 8; M.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1962, Chapter 2; F.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3, Chicago, 1979, Chapter 14 참조.

마를 몰래 들여오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재화들이 그것들이 지닌 몇몇 특성 때문에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석명으로 부터 우리는 결코 이들 재화가 생산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재이론가들은 그들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어떤 노르마를 가지고 분명히 실증적·몰가치론적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영역을 떠나버렸다. 대신 그들은 도덕이나 윤리학의 분야에 넘어 들어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도출하고 있는 그 결론을 정당화할 수 있게끔 도출하기 위하여 한 인식론적 학문으로서의 윤리학이론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공공재이론의 문헌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론적 윤리학이론을 희미하게나마 닮은 그 무엇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못하다.¹⁴⁾ 따라서 공공재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저술이 가리키고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도대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문제들에 대하여 단정을 내리기 위해 실증적 경제학자로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권위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애초부터 분명히 언급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들은 정교한 도덕이론으로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올바른 그 무엇에 걸려 비틀거리게 된 것인가?

우리가 국가가 공공재의 공급을 도와야 한다는 데 대한 위에서 언급된 결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해질 그 노르마를 명시적으로 구축하는 순간 아무것도 진실에서 멀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상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노르마는 이것이다. 즉 어떤 특

14) 최근 들어 경제학자들, 특히 시카고학파는 재산권에 대한 분석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재화나 용역의 생산이 누구에게나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의 자금조달에 참여하지 않는 한 전혀 생산되지 않거나, 어떤 확정적 수량이나 품질로 생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해서든 증명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침해적 폭력의 사용이 국가의 지원과 더불어 직접적·간접적으로 허용되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재정적 부담의 몫을 떠맡도록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가 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그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므로 이 법칙의 집행으로부터 혼돈이 결과하게 되리라는 것을 제시하는 데는 많은 코멘트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규범적 석명들의 정당화의 문제에 관한 토의로부터(제7장) 이 노르마를 결코 공정한 노르마로서 정당화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논의하고, 이 논의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노르마가 말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물리적으로 독립된 의사결정단위로서의 모든 사람의 존엄성이 보증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재이론이 붕괴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잘못된 도덕적 사유 때문이 아니다. 심지어 상기 논의 속에 담겨져 있는 효용주의적 경제적 사유조차도 확연하게 틀린 것이다. 공공재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러하다는 선험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그렇다면 이는 공공재이론가들의 사유를 바로 여기에서 종식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것이 망각되어서는 안된다 할지라도, 공공재를 가지는 것이 그것들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그토록 심하게 국가행위를 혐

오하는 나머지 국가에 의하여 그것들을 공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공공재들을 가지지 않는 것을 선호하게 되리라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사실임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¹⁵⁾

설사 그 논의가 여기까지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공재가 요구된다는 석명으로부터 그것들이 국가에 의하여 공급되어야 한다는 석명으로 비약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요구되는 것으로 가정된 공공재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돈, 또는 기타 자원들이 가능한 대체적 사용들에서부터 철회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해당되는 적절한 문제는 그 돈이 쓰여질 수 있는 이들 대체적 사용들(즉 획득될 수 있었으나 지금 그 돈이 대신 공공재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될 수 없는 개인재들)이 공공재들보다 가치있는(보다 긴급한) 것인지 아닌지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소비자평가의 관점에서 그의 절대수준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공공재의 가치는 경합되는 개인재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데, 만약 선택이 소비자들에게 맡겨졌다면(그리고 만약 어떤 대안이 그들에게 강요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돈을 달리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다(그렇지 않다면 강요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공공재들은 소비자들에게 기껏해야 단지 2급의 중요도를 가지는 재화들과 용역들을 제공하므로, 공공재들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된 그 자원들은 낭비된 것이라는 것을 어떠한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해준다.

요약하면 설사 개인재와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공공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주어진 공공재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공재는 여전히 개인재와 경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보다 긴급하게 요구되는지 아닌지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지를, 또는 (상세한 사항들을 생략하고) 그것들의 생산이 보다 긴급히 요구되는 개인재들의 비생산, 또는 감축된 생산을 대가로 하여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 존재한다. 즉 모든 것이 자유로이 경쟁하는 개인기업들이 공급하게 하는 것에 의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재이론가들에 의하여 도달된 결론과는 달리, 논리는 오로지 순수한 시장제도만이 어떤 공공재를 생산할 결정의 합리성을,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옹호할 수 있다는 결과를 우리들로 하여금 수락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오로지 순수 자본주의제도하에서만 어떤 공공재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이(만약 그것이 생산되어야 한다면) 합리적이 보증될 수 있다.¹⁶⁾ 어떤 다른 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는 참으로 ‘조지 오웰적’ 차원에 버금가는 어휘상의 혁명을 필요로 할 것이다. 오로지 누가 어느 누구의 ‘노’를 진실은 ‘에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엇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진실은 그것은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구매하지 않는 것 대신에 행하는 것이 선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제’는 ‘자유’를 의미하고, ‘계약하지 않는 것’은 ‘계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등등으로 해석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공공재이론가들의 관점은 ‘입증’될 수도 있을 것이다.¹⁷⁾

16) 근본적으로 비배제성 기준the criterion of nonexcludability에 의거하여 정의된 공공재의 독특한 성격 위에서 구축된 사회주의적-국가통제주의적 이론을 버리게끔 인도하는 동일한 사유는 그와 같은 재화들이 비경쟁성 소비기준의 방법에 의하여 정의되었을 때에도 적용된다.

15) M. N. Rothbard, "The Myth of Neutral Taxation", *Cato Journal*, 1981, p.533 참조.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말할 때,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그것들이 진실로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대신 그 정확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는 어떤 확정적 내용을 가진 아무것도 전혀 의미하지 않고 그저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로드바드가 공공재 이데올로기 신봉자들이 공공재의 비생산, 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생산으로 인한 소위 시장의 실패를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 비평한 것은 옳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와 같은 견해는 경제과학이 자유시장행위는 항상 최적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학자의 개인적 윤리관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의 관점에서, 그리고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표출욕구를 만족시킴에 있어서 최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간섭은 항상 그와 같은 최적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¹⁸⁾

사실인즉 시장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 그 논의들은 완전히 공공연하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기술적 전문용어의 위장을 벗기고 보면 그들이 증명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것이다. 즉 시장이 희소성으로 특징지어진 조건들 위에 부과된 비침해원칙으로 특성화되어 있으므로 시장은 완전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17) J. Buchanan and G. 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 Ann Arbor, 1962; J. Buchanan, “A Contractarian Perspective on Anarchy”, *Freedom in Constitutional Contract*, College Station, 1977 참조.

18) M. N. Rothbard, *Man, Economy and State*, Los Angeles, 1970, p.887 참조.

침해가 허용되는 경우에만 생산되고 공급될 수 있는 어떤 재화들이나 용역들은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충분히 사실이다. 어느 시장이론가도 이를 감히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이것은 결정적인데) 공공재이론가들에 의하여 전파된 시장의 ‘완전성’(가정된)이 방어될 수 없는 데 반하여¹⁹⁾ 이 시장의 ‘불완전성’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방어될 수 있다.

공공재들을 공급하는 현 국가관행의 종식은 기존의 사회구조 및 부의 분배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필히 수반한다는 것은 충분한 사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개편은 분명히 일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사실 이것은 정확히, 설사 장기적으로는 전반적 사회적 부가 바로 이 정책에 의하여 고양될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기능을 민간화하는 정책에 대한 널리 확산되어 있는 일반의 저항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실은 시장의 실패를 밝혀주는 타당한 논의로 수락될 수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때리는 것이 허용돼왔는데, 지금은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는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때리는)법칙들을 지지하기 위한 정당한 구실로 수락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손해를 볼 것이나, 그를 손해보게 만든다는 것은 모든 소비자가 무엇을, 얼마만큼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할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사회질서의 대체를 의미하게 된다. 즉 일부 소비자들만이 그와 같은 결정권을 가지고 다른 소비자들은 그들이 정당하게 번 돈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구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제도를

19) 케인즈와 같은 국가통제주의적-간섭주의적 논의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할 때는 항상 이러한 점이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J. M. Keynes, “The End of Laissez Faire”, *Collected Writings*, London, 1972, vol. 9, p.291 참조.

대체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와 같은 대체는 자발적 소비자들로서의 모든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보다 나은 것이다.

그렇다면 논리적 사유에 의거하여 우리는 소비자들을 위하여 모든 재화들과 용역들이 시장에 의하여 공급되어야 한다는 모리나리의 위에서 인용된 결론을 수락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⁰⁾ 명확히 구분지을 수 있는 범주의 재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은(그런데 이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우수성에 관한 일반이론에 특별한 수정을 가할 것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릇된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틀림없이 존재한다 해도 왜 공공재로 특별히 가정된 이들 재화들이 그것들이 언제나 개인재와 결합되어 존재하는 이상 민간기업들에 의하여 또한 생산되어서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발견될 수 없다.

사실상 공공재이론가들의 모든 선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비교하여 시장이 가지는 보다 큰 효율성이 점점 더 많은 소위 공공재들과 관련하여 실현된 바 있다. 일상경험에 직면하여 이들 문제들을 심각하게 검토해온 어느 누구도 오늘날 시장이 우편서비스, 철도, 전기, 전화, 교육, 화폐, 도로 등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즉 국가가 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들이 보다 좋아할 수 있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거의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부문에 있어서 논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수락하는 것(보안의 생산분야)으로부터 달아난다.

따라서 본장의 나머지 부분은 이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경제의 우수한 기능을 설명할 것이다. 즉 그 우수성의 논리적 주장이 이미 제시된 바 있는, 한편 몇몇 실증적 자료가 그 분석에 첨

20) J. Hospers, *Libertarianism*, Los Angeles, 1971; T. Machan, *Human Rights and Human Liberties*, Chicago, 1975 참조.

가되고, 그것이 그의 고유의 문제로 검토되면,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들어질 우수성을 검토할 것이다.²¹⁾

비독점적으로 경쟁하는 보안의 생산자들이 존재하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까? 이 문제를 답함에 있어서 우리는 순수논리적 분석의 영역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 시작에서부터 분명하며, 따라서 그 대답은 확실성을, 즉 공공재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견해의 자명성을 필시 결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어떻게 시장이 햄버거생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묻는 것과 흡사하다(특히 만약 이 시점까지 햄버거가 전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생산되어 왔다면, 따라서 아무도 과거의 경험에 의지할 수 없다면).

단지 잠정적 대답들만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햄버거산업의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경쟁회사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이 산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어떤 중요성을 가지며, 햄버거는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이며, 얼마나 많은 상이한 종류의 햄버거가 시장에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아마도 수요의 부족으로 다시 사라질 것인지 등등. 아무도 시간을 통하여 일어날 햄버거산업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모든 상황과 변화에 대해 알 수 없는

21) 경제적 관점에서 소비자만족의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로서 민간기업에 의한 보안생산의 사상을 수락하게끔 요구하는 동일한 논리는, 도덕적-이념적 주장에 관한 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치이론을 포기하게 하고, 자유의지주의, 또는 사유재산의 무정부주의 이론으로 향하여 작으나마 결정적인 결음을 내디디게 한다. 금세기에 미세스에 의하여 가장 중요하게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재산의 자연이론의 근본적인 법칙들에 기초하는 사회제도를 주장한다. 이것들은 자유의지주의가 주장하는 법칙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와 같은 법률들이 독점적 기관(정부, 국가), 즉 그 조직은 그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발적 및 계약적 지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일방적으로 그 자신의 소득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즉 보안생산의 영역에 있어서 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기관에 의하여 집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소산인 자유의지주의(즉 순수 자본주의철학)는 보안의 생산이 민간기업에 의하여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

일이다. 즉 여러 소비자단체들의 수요의 변화, 기술의 변화, 직접·간접으로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각종 재화들의 가격의 변화 등이 보안의 개인생산의 문제에 이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어야겠다.

그러나 이는 결코 결정적인 아무것도 그 문제에 대하여 언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세계를 보전대 여하튼 현실적인 일로 알려진 보안서비스 수요의 일반적 조건들을 가정할 때, 언급될 수 있고, 또 언급될 사항은 보안산업이 (그 아래에서) 운용되어야 할 다른 구조적 제약조건들에 의하여 특성화된 보안생산의 다른 사회적 제도가 어떻게 상이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²²⁾ 첫째, 독점적 국가운영의 보안생산의 상세한 세목을 분석하자. 적어도 이 경우 우리는 도달된 결론들의 타당성에 관한 풍부한 증거에 의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그와 같은 제도가 어떤 비독점적 제도에 의하여 대치되었을 경우 예상될 수 있는 것을 이것과 비교해 보는 분석으로 눈을 돌리자.

실사 보안이 공공재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희소자원들의 배분에 있어서 그것은 다른 재화들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안에 쓰여진 것은 더이상 소비자만족을 증가시켜 줄 다른 재화들에 쓰여질 수 없다. 게다가 보안은 단일의 동질적 재화가 아니며 차라리 각종 구성부분들과 양상들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 예방, 탐지 및 집행 뿐만 아니라 절도범들, 강간범들, 오염자들, 자연재난들 등등에 대한

22) 경제적 보안생산의 문제에 관해, G. de Molinari, "The Production of Security", Center for Libertarian Studies, Occasional Paper No. 2, New York, 1977; M. N. Rothbard, *Power and Market*, Kansas City, 1977, Chapter 1; *For A New Liberty*, New York, 1978, Chapter 12; W. C. Wooldridge, *Uncle Sam the Monopoly Man*, New Rochelle, 1970, Chapters 5~6; M. and L. Tannehill, *The Market for Liberty*, New York, 1984, part 2 참조.

보안이 존재한다. 게다가 보안은 한 '덩어리'로 생산되지 않으며, 한 계적 단위로 공급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 특성, 각종 위험요소들에 대한 그들의 과거의 경험들 및 그들이 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전체로서의 보안에, 그리고 총체적인 것의 여러 다른 측면에 상이한 중요도를 부가한다.²³⁾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결합되는 용도들에 희소한 자원들을 배분하는 근본적인 경제적 문제에 눈을 돌려서, 국가(전적으로 자발적 기부와 그의 제품들의 판매에 의하여 자금조달이 되는 것이 아닌, 대신 부분적으로, 심지어 전체적으로 세금에 의하여 자금조달이 되는 한 조작)가 얼마나 많은 보안을 생산할 것이며, 그의 무수히 많은 측면들의 하나하나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이며, 누구에게, 어디에 무엇의 얼마만큼을 공급해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국가가 이 문제를 결정할 합리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보안수요에 대한 국가의 반응은 말하자면 임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한 명의 경찰관과 한 명의 판사를, 또는 각기 10만 명씩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에게 매달 1백 달러, 또는 1만 달러씩 지불해야 할 것인가? 경찰관들이, 숫자가 얼마든간에, 거리를 순찰하는 데, 절도범들을 추적하는 데, 도난당한 장물을 회수하는 데, 또는 매춘, 약물사용, 혹은 밀수와 같은 희생자를 내지 않는 범죄들의 연루자들을 정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할 것인가? 그리고 판사들이 이혼사건, 교통위반, 상점절도사건, 살인, 또는 반트러스트 사건들(즉 공정거래법 위반사건들)을 청문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이들 문제들의 전부에 대해 (희소성이 존재하고,

23) M. Murck, *Soziologie der oeffentlichen Sicherheit*, Frankfurt/M., 1980 참조.

우리가 에텐동산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 어떤 일에 쓰여진 시간과 돈은 다른 일에 쓰여질 수 없기 때문에) 해답이 구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는 또한 이들 문제들에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한편 그가 무엇을 하든 그는 이윤-손실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그것을 행할 것이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임의적이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필시 무수히 많은 낭비적인 잘못된 배분을 초래할 것이다.²⁴⁾ 대다수 소비자들의 필요와 상관없이 국가가 고용한 보안생산자들은 대신,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행하는 대신 어슬렁거리며, 일을 하더라도 제일 쉬운 것이나 하고, 소비자들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직권을 휘두를 수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선호한다.

경찰관들은 많은 시간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사소한 교통위반자들을 괴롭히며, 다른 희생자가 없는 범죄들을 조사하는 데 대단히 큰 금액을 사용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비연루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이 그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것들과 싸우는 데 그들의 돈을 사용하려고 할 사람은 적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긴급하게 원하는 한 가지 사항에 있어서(희생자를 수반하는 강력범죄의 예방, 강력범죄자들의 탐지와 이들에 대한 실효있는 처벌, 장물의 회수 및 침해자들로부터의 범죄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의 확보), 그들은 끊임없이 상승하는 예산할당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생산의 품질저하문제(주어진 배분으로)를 다시 검토하건대, 국가가 고용한 경찰이나 판사들이 무엇을 하게 되든(그것은 임의적인 것임에 틀림없는), 그들의 소득이 각자의 봉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와는 무관하므로 형편없이 일하기 쉽다. 따라서 경찰의

24) 민주적으로 통제된 배분결정의 결함에 관하여, 제9장 주 4 참조.

임의성과 난폭함과 느린 사법처리를 목격하게 된다. 게다가 경찰이나 사법제도가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소비자가 발동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명확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봉사계약 같은 것을 닮은 그 무엇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대신 양자는 시간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임의로 절차에 관한 규칙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상의 무효상태에서 업무를 운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는 경찰 및 판사들을 일방으로, 그리고 개인시민들을 타방으로 하는 양자간의 분쟁조정이 독립된 제3자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분쟁중에 있는 정부를 고용주로 함께 가지고 있는 또다른 경찰이나 판사에게 위임되고 있다는 참으로 우스운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경찰서나 법원들을 보아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교도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같은 보안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데 사용된 생산요소들이 과사용되고 있고, 열악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리고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진실인가를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제공해주는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어떠한 유사한 개인기업의 그것들보다 비교적 훨씬 높은 비용으로만 가능한 것이다.²⁵⁾

의심할 바 없이 독점적 보안생산체도에 따르기 마련인 이들 모든 문제들은 일단 보안서비스에 대한 어떤 주어진(가정된) 수요가 이의 생산자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다른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

25) Molinari("Production of Security", Center for Libertarian Studies, Occasional Paper No. 2, New York, 1977, pp.13~14) 참조.

쟁적 시장에 의하여 충족된다면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다. 이는 보안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다. 여전히 절도범들과 살인자들이 있을 것이며, 모든 장물이 회수되지도 모든 살인자들이 체포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평가의 방법으로 상황은 인간의 천성이 이를 허용하는 데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쟁적 제도가 존재하는 한, 즉 보안서비스의 생산자들이 자발적 구매에 의존하는 한, 그 서비스의 대부분은 아마도 위험이나 침해의 어떠한 실제적 ‘발생’에 앞서서 합의된 용역 및 보험계약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어떠한 생산자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바의 서비스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함 없이는 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보안 생산자들을 모두 묶어, 무슨 이유에서이든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다른 재화들보다 보안을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하지 않는 한, 그래서 보안의 생산이 경합되는 개인재로서, 말하자면 치즈의 비생산, 또는 감축된 생산을 대가로 하여 결코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그들의 특수산업의 중요성을 떠받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여러 수백만의 소비자들 사이에는 보안제품에 대한 고도로 다양화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안서비스의 생산자들은 상당한 정도로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들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자발적 소비자 지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소비자들의 각종의 필요나 필요의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즉각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소비자들은, 아무리 적을지라도 보안시장에 나타나거나 보안시장에서 사라지는 재화들의 생산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국가생산정책의 특징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누구에게나 일률적인 ‘보안꾸러미’를 제공하는 것 대신에 다수의 서비스 패키지가 시장에 등장할 것이다. 그것들은 상이한 직업들을, 상이한 위험부담 행위를, 상이한 보호받을 및 보험보증될 사항들을, 상이한 지리적 위치와 시간계약들을 고려하면서 여러 다른 계층 사람들의 여러 다른 보안필요들에 알맞게 맞추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다. 다양화외에도 제품들의 내용과 질 또한 개선될 것이다. 보안기업의 피고용자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보살핌은 즉각 개선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찰 및 사법제도의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식의 태도, 임의성과 심지어 난폭함, 태만과 느림보는 궁극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게다가 그들이 자발적 소비자 지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나쁜 보살핌, 상냥하지 못함, 또는 부적합함은 그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된 특이성(고객과 그의 서비스 제공자간의 분류의 조정이 변함없이 후자의 판단에 위임되고 있다는 것)은 책에서 사라질 것이며, 따라서 독립된 관계자들에 의한 분쟁조정이 보안생산자들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준거래가 될 것이다.

한편 보다 중요하게, 고객들을 끌고 확보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용역의 생산자들은 계약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계약은 소비자로서 하여금 그가 구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며, 또한 보안생산자의 실제의 업무수행이 그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상호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들은 각자 자신들의 위험을 단독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하여 지불이 고객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개인화된 서비스계약이 아니고 대신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자신의

위험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공동으로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보험 계약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이상, 현재의 국가통제주의적 관행과는 반대로 이들 계약들은 가장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어떤 계획적으로 짜놓은 재분배 계획과 같은 것을 더이상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어느 누가 그에게 제공된 계약이 다른 사람들의 특이한 필요나 위험에 대하여 그가 지불할 것을 초래시키는 느낌을 갖는다면(말하자면 자신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느끼지 않은 불안요소들), 그는 단지 그것을 서명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그의 지불을 중단하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언급되면 피할 수 없이 문제가 표출될 것인데, 즉 ‘보안생산의 경쟁적 제도가 그래도 반드시 영구적 사회적 분쟁으로, 혼란과 무정부상태로 결과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주장과 비평에 대하여 몇 가지가 언급될 수 있다.

첫째, 그와 같은 생각은 결코 역사적 경험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의되어야 하겠다. 경험적 법원제도는 현대 민족국가의 등장 이전에 고대 아일랜드나 한자동맹 시기에 여러 곳에서 존재한 바 있는데, 우리가 아는 한 그것들은 잘 운용되었다.²⁶⁾ 당시에 존재한 범죄율(1인당 범죄)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서부 개척시대의 사설경찰(그것은 일부 영화들이 보여주듯이 거칠기만 하지는 않았다)은 오늘날의 주경찰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성공적이었다.²⁷⁾

둘째, 현대의 경험과 사례들에 눈을 돌릴 때, 여러 수백만의 국제적 접촉이 지금에도 존재하고 있는데(무역과 여행의 접촉), 예로서 국내

26) 주 21 참조. 또한 B. Leoni, *Freedom and the Law*, Princeton, 1961; J. Peden, "Property Rights in Celtic Irish Law",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977 참조.

27) T. Anderson and P. J. Hill, "The American Experiment in Anarcho Capitalism: The Not So Wild, Wild West",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1980 참조.

관계에서보다 더 많은 사기, 더 많은 범죄, 더 많은 계약위반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과장으로 보인다. 유의되어야 할 것은 하나의 거대한 독점적 보안생산자 및 법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것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셋째,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와 나란히 각종 사설보안생산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사설조사자들, 보험탐정들 및 사설중재자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공공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사회적 분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계가 아니라 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주장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 증거는 특히 그로부터 어떤 일반적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도 상기 비판에서 나타난 그 우려가 잘 근거된 것이 아니라는 체계적 이유들이 또한 존재한다. 우선은 모순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보안생산자들로 구성된 어떤 경쟁적 제도를 수립한다는 것은 법질서와 분쟁해결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최고도의 대다수 합의를 구현하는 법 집행을 생산할 어떤 제도화된 인센티브 구조를 창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독점적 보호하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사회적 불안과 분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다.²⁸⁾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회의자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유일한 대표적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조직된 보안생산제도의 우수한 장점을 신봉하게끔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 상황인데, A와 B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양자는 서로 다른 회

28) H. H. Hoppe, *Eigentum, Anarchie und Staat*, Opladen, 1987, Chapter 5 참조.

사들에 의하여 보험보증이 되어 있고, 그 회사들은 그들의 각기 고객들에 의하여 제기된 상충하는 주장들의 정당성에 관하여 즉각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이다(만약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또는 두 고객들이 하나의 동일한 회사에 의하여 보험보증이 되어 있다면, 문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 적어도 문제는 국가통제주의적 독점하에서 등장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은 항상 무력대결로 결과하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첫째, 회사들간의 어떠한 폭력적 싸움은 희생이 크고 위험한 것이 된다. 특히 이들 회사들이 무엇보다 그들의 유망고객들에게 보안의 효과적 보증자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가지는 것이 중요한 어떤 상당한 규모에 도달해 있다면 그러하다. 그런데 보다 중요하게, 각 회사가 자발적 소비자지불의 계속에 의존하고 있는 경쟁적 제도하에서 어떤 싸움도 두 회사의 각기 모든 고객에 의하여 신중하게 지지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지금 당장 문제가 되어 있는 분쟁에서 그 싸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지불을 철회한다면, 그 회사에 그 분쟁에 대하여 어떤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즉각적인 경제적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²⁹⁾

따라서 어떤 경쟁적 보안생산자도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난폭한 조치의 행사에 헌신하는 데 극히 조심하게 될 것이다. 대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평화적 분쟁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각기 모든 보안생산자는 그의 고객들에게 그와 같은 평화적 조치들을 제공하고, 상충하는 주장들의 평가에 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

29) 이것을 조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충실한 지지 없이도 전쟁에 참여하는 정부의 정책과 비교해보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정부의 외교정책이 싫다고 납세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자문해보자.

우 그 자신과 그의 고객들로 하여금 감수케 하고자 의도하는 중재 조정과정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사전에 분명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중재상의 조치들에 관하여 그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와 같은 계획이 진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비로소 다른 사회고객들에게도 나타내 보일 수 있으므로 모든 경쟁적 보안생산자들의 고객들에게 보편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사회들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한 법체계가 자연히 발전되어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쟁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다수 합의를 대표하는 법칙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제적 압력은 한층 더 멀리 미치게 될 것이다. 경쟁적 제도하에서 분쟁들에 평화적 해결을 찾는 임무를 수임받은 독립적 조정자들은 그들이 만약 분쟁의 어느 일방이 그들의 조정작업의 결과에 대하여 죽히 불만스럽다고 할 때 다른 판사를 선정할 수 있고, 또 할 용의가 있는 한에 있어서 그 두 의견이 엇갈리는 회사들의 계속된 지지를 의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판사들은 송부받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찾아야 하는 압력하에 놓이는데, 그 해결은 이번에는 법률의 절차적 측면이 아니라 내용에 관한 것으로, 당해 사건에 관련된 기업들의 모든 고객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해결로서 수락될 수 있어야 한다.³⁰⁾ 그렇지 않으면 모든 회사들은 고객들을 잃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는 그들 기업들로 하여금 다음 필요시에는 다른 중재자한테로 등을 돌리게끔 촉진하게 될 것이다.³¹⁾

30) 여기서 다시 강조해야 할 사항은, 여론을 가능한 최대로 수용하는 노르마는 물론 논쟁에서 전제된 것들이며, 그것들의 수용은 제7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론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쟁적 제도하에서 보안을 생산하는 기업이 무법회사가 될(말하자면 기업이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침해를 시작할)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확실히 이것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것을 부정할 방법은 없으나, 그런데 다시금 여기에서 그것은 실증적 사회과학의 영역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과 아무도 확실하게 그와 같은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보안기업이 무법회사가 될 가능성은 순수자본주의 사회질서의 철학과 경제학에 어떤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무언의 시사는 잘못된 것이다.³²⁾

첫째, 어떠한 사회제도도 순수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국가통제주의적 사회주의질서도 그의 계속적 존립을 위해서는 여론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 상기되어야 하며, 또한 어느 때에도 여론의 어떤 특정한 상황이 어떤 특정사회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거나 없는 것, 또는 크든작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기되어야 하겠다. 예로서 서독 여론의 현상상은 오늘날의 러시아형 국가통제주의적 사회주의제도가 서독인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그와 같은 제도에 대한 일반의 지지의 결여는 이를 실패로 운명짓게 할 것이며, 또한 붕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여론을 보건대, 러시아형 질서를 부과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기도도 미국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하리라 희망조차 해

31) 다시 이것을 정부에 고용된 판사들과 비교해보자. 그들은 세금에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고객만족에 별관심이 없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국민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 언젠가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판사가 사건의 사실을 평가하는 데 조심스럽지 않거나, 사기꾼이라고 여겨질 때마다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자문해보자.

32) M. N. Rothbard, *For A New Liberty*, New York, 1978, pp.233ff 참조.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한층 더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법회사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하여 상기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의 고유한 여론의 상황을 지니고 있는 어떤 주어진 사회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떠한가? 문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식화할 때 그 대답은 여러 다른 사회들에 대하여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주의적 이념이 민중 속에 깊이 파고 들고 있는 특성을 지닌 일부 사회에 있어서 침해자 회사들이 재등장할 가능성은 보다 클 것이며, 기타 사회들에 있어서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적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보안생산의 경쟁적 제도의 전망이 국가통제주의적 제도의 존속보다 나올 것인가, 못할 것인가? 오늘날의 미국을 보자. 입법조치에 의하여 국가(주)가 조세자금으로 보안을 제공하는 그의 권리를 폐지하고, 보안생산의 경쟁적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정하자. 여론의 상황을 감안할 때, 무법생산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만약 생겨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그 대답은 이 달라진 상황에 대한 일반의 반응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보안의 민간시장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첫 대답은 이것이 될 것이다. 즉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무법회사들에 대한 당신의 우려는 곧 당신이 밖으로 뛰쳐나가 다른 사람들 및 그들의 재산에 대하여 침해하는 보안생산자와의 거래에 관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분명히 그 비평들은 이 반격에 의하여 훨씬 잠잠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개인적 반격 속에 함축되어 있

는 체계적 도전이다. 분명히, 설명된 상황의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일단 그의 결정을 해야 할 때 직면하게 되는 비용-편익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를 암시한다. 보안생산의 경쟁적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국가)침해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하는 것이 합법적이었다. 이제 그와 같은 활동은 불법적 활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각자 자신의 결정을 크든작든 각자의 올바른 행동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의(그 기업의) 행동을 심사숙고 끝에 지지할 의사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착취에 관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감안할 때 정직한 장사에 전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들의 돈을 지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그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당장 국가에 지원해주었을 사람까지 포함하여) 증가할 것이며, 또한 이 사회실험이 시도된 어느 곳에서도 증가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착취정책에 계속 몰두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이 효과가 얼마나 강할 것인가는 물론 여론의 상황에 좌우될 것이다. 당장의 사례에서(미국에서 재산의 자연이론은 지극히 널리 전파되고, 개인의 가치관으로 수락되어 있으며, 또한 자유의지론적 철학은 근본적으로 그 나라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는 그 가치관을 미국이 도달한 바 있는 높이까지 이르도록 발전시켰다³³⁾ 상기에서 언급된 그 효과는 의당 특히 뚜렷할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지론적 법률을 옹호하고 집행하는 철학에 헌신하는 보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가장 큰 규모의 일반의 지지와 재정적

33) B. Bailyn, *The Ideological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Cambridge, 1967; J. T. Main, *The Anti-Federalists: Critics of the Constitution*, Chapel Hill, 1961; M. N. Rothbard, *Conceived in Liberty*, 4 vols., New Rochelle, 1975~79 참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일부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는 특히 구질서로부터 이득을 본 바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침해의 정책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계속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는 반면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데 성공할 만큼 숫자와 재력에 있어서 충분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차라리 있을 법한 결과는 정직한 회사들이 어떠한 무법생산자들의 출현을 차단하고, 또 그들이 존립하게 되는 어디에 어느 때에도 그들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힘을(단독이나 공동노력으로, 그리고 이 노력에 대하여 그들 자신들의 자발적 고객들의 지원을 받아) 발전시키게 되리라는 것이다.³⁴⁾ 그리고 만약 강력

34) 당연히 보험회사는 무법회사의 출현을 억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주요한 부문인 보험회사들은 모든 침해자와 관계맺기를 거부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자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사업적인 역량을 동원할 동기도 갖고 있다. 침해적 폭력은 가치의 상실을 초래하며, 보험회사는 대부분 이러한 가치상실로 피해를 입는다. 제어되지 않은 침해자는 손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모든 보험회사들은 침해의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든지간에 다음에 자신의 고객에게 해를 입힐지도 모르는 침해자를 그대로 방치해두려고 하지 않는다. 더욱이 침해자와 그들의 친구들은 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보험회사는 아마도 침해가 가져올 손실을 예견하고 미래의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그와 같은 예견에 따라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보험료의 급작스러운 인상을 초래하거나, 침해자의 폭력성에 따른 과도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보험가입을 완전히 취소할 것이다. 경제체제하에서는 어떤 보험회사도 침해자와 그들의 친구들을 계속 보호하고 이로 인한 비용을 정직한 고객에 간단히 전가할 수 없다. 그러한 행위는 저렴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회사에게 고객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유경제하에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침해자가 어떤 침해나 보복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경제적으로 필요불급한 재화 없이 생활해야 한다. 그는 자동차사고, 천연재해, 계약분쟁에 대비한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자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초래된 피해보상 고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그리고 화재보험회사의 부산물인 민간소방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침해의 행위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상의 오스트라시즘으로 인해 부과되는 처벌 이외에 종업원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보안요원이 의도적 무력사용과 관련된 명령을 수행하였다면 보안요원, 그에게 명령을 하달한 경영자-기업가, 그리고 명령과 관련된다고 인식되는 피고용인 모두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M. and L. Tannehill, *The Market for*

에 맞서 정직한 보안생산자들이 보안생산에 있어서 자유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들의 싸움에서 지고 무법독점이 재등장한다면, 우리는 그저 다시 국가를 가지게 될 것이다.³⁵⁾

하여간 보안의 개인생산자들을 가지는 순수자본주의 사회제도(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를 실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설사 그와 같은 질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침해와 착취정책에 몰두해 있는 나머지 곧 붕괴된다 할지라도 인류는 적어도 영광스러운 막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질서가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보다 가능성이 있는 결과로 보이는데, 이는 한 정의로운 제도의, 그리고 전대미문의 경제적 변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Liberty, New York, 1984, pp.110~11).

35) 무법회사가 국가로 등장하는 과정은 보다 복잡하다. 그것은 현존하는 국가의 존재를 특징지었던, 수세기의 끊임없는 선전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이념적 합법성을 재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경험을 통해서 합법성이 상실되면, 그것이 복원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